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이철선 · 김영란 · 변수정 · 김난주 · 김지경 · 최서지
최혜선 · 선보영 · 이민경 · 김은경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 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Overseas Legislation for Youth
Support and Ways to Institutionalize Policies for
Supporting Youth in Korea

연구책임 :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Cheol Seon Lee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Young-Ran Kim

공동연구 : 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Soo-Jung Byoun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Nan Jue Kim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i-Kyung Kim

최서지(제주대 법과정책대학원 연구원)

Seo-Ji Choe

최혜선(스포츠개발원 연구위원)

Hye Seon Choi

연구보조원 : 선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Bo Young Sun

이민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Min-gyeong Yi

김은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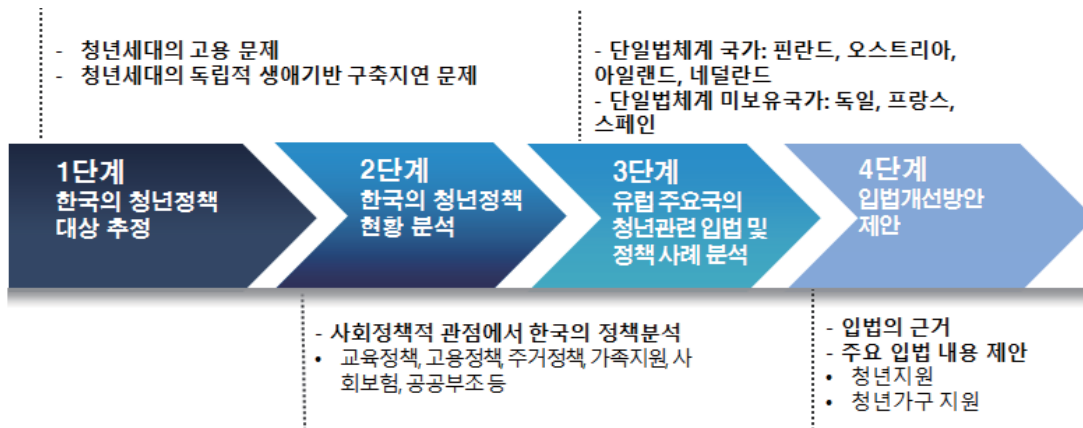
Eun Kyung Kim

2016. 11. 30.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청년세대의 실업문제가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사회문제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였고, 청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일자리 제공 등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됨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에서 학자금, 실업, 결혼 비용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고용문제 중심의 청년정책 접근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즉 고용 정책이외에도 일자리, 주거, 가족형성 지원,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에 대한 사회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정책 추진 기반으로서 법안이나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도 중요하기 때문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규모를 추정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외의 청년정책 관련 입법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 단계별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II. 주요 내용

1.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 19세-34세 청년 중에서 청년정책 대상 규모를 추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소득이 있어 본인 명의로 가입한 청년과 부모인 가입자의 부양자로 되어 있는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출하여 전체 청년 중 규모를 파악함
- 25세-34세 청년 중 정책대상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의 규모는 1,819,029명으로 25세-34세 전체 7,158,761명중 25.4%에 해당함
 - 이중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1,181,939명으로 25세-34세 청년전체의 16.5%임

-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369,196명으로 5.2%임
- 의료급여 대상자인 25-34세 청년은 50,886명임

□ 19세-24세 청년 중 정책대상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규모는 1,343,365명으로 19세-24세 전체 4,170,567명의 32.2%에 해당됨
- 이 중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534,052명으로 19세-24세 청년 전체의 12.8%임
-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589,619명으로 14.1%임
- 의료급여 대상자인 19세-24세 청년은 107,392명임

□ 2010년 대비 2015년 추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5세-3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28.7%에서 2015년 25.4%로 3.3%p 감소
-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청년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 역시 2010년 18.8%에서 2015년 16.5%로 2.3%p 감소함
- 그러나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부모 피부양 청년은 2010년 4.8%에서 2015년 5.1%로 증가함
- 19세-2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31.3%에서 2015년 32.2%로 약1.0%p 증가함
- 본인 소득이 있는 19세-24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19세-24세 청년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는 2010년 12.1%에서 2015년 12.8%로 0.7%p 늘어남

- 또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19세-24세의 부모 피부양 청년도 2010년 12.8%에서 2015년 14.1%로 증가함

□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결과, 25-34세 청년 중 25.4%, 4명중 1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19세-24세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32.2%에 이르고 있음.

○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 중에서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한국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주로 높은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고용지원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음

○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정책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지금까지 주로 청년 실업자나 구직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왔음

○ 소득이 없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이나, 부모 피부양 청년 중에 부모의 소득이 불충분한 저소득가구의 청년 등이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였음

○ 청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모의 청년자녀 부양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 소득이 불충분한 근로빈곤 청년층의 경우 취업 이후에도 부모의 부분적 부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 청년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미취업 청년과 더불어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인 근로빈곤 청년까지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고용정책을 포함한 통합적인 사회보장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3. EU 주요국의 청년보장제도 추진체계 및 한국에의 시사점

- 청년실업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청년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EU 국가에서 청년정책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를 조사함
- 청년보장 관련 단일법체계가 있는 국가와 단일법 체계 미보유 국가로 구분하여 입법과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단일법체계 보유 국가: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 단일법체계 미보유 국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 청년관련 입법 사례가 있는 국가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이며, 국가별 청년보장제도 관련 입법과 추진체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핀란드
 - 법령: 청년법(Youth Act, 72/2006), 수정청년법(The Act Amending the Youth Act, 693/2010)
 - 추진체계: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아동청년계획(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청년의성장자립, 청년지원분야횡단적 협력, 대상연령은 29세미만

○ 오스트리아

- 법령: 연방청년대표법(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연방청년진흥법(Federal Youth Promotion Act)
- 추진체계: 경제가족청년부(Ministry of Economy, Family and Youth)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고용과 학습, 참여와 구상, 삶의 질과 협력, 14-24세 및 30세 미만

○ 아일랜드

- 법령: 청년노동법 2001(Youth Work Act 2001), 청년노동법 2014(Youth Work Act 2014.6. 개정)
- 추진체계: 아동청년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 정책 목표 및 대상연령: 청소년의 노동개발과 조정, 대상연령은 15-24세

○ 네덜란드

- 법령: 청년보호법(The Youth Care Act 2005), 사회지원법(Social Support Law 2007)
- 추진체계: 보건복지스포츠부(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청소년의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18세이하(간혹 23세까지 가능)

□ 단일법체계 보유국과 미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비교

○ 단일법체계 보유국가(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 교육, 고용, 공공부조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보장정책 추진
- 단일법령에 근거하여 부처간 협력적 추진 체계 기반 마련

○ 단일법체계 미보유국가(독일, 프랑스, 스페인)

- 독일과 프랑스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발달한 국가로 별도의 법 체계 없이도 다양한 영역의 청년보장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 스페인은 청년보장정책 추진동력으로서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정책추진. 그러나 고용정책 중심으로 그 외의 사회정책은 미흡함

□ 입법 사례 및 청년정책 비교 시 한국의 벤치마킹 사례는 핀란드의 단일법체계에 기반한 부처간 협력체계 및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 사례, 독일과 프랑스의 보편적 사회정책 중에서 공공부조와 청년부양가족지원정책 사례임

Ⅲ. 기대효과: 청년정책 입법 방향 및 정책 제안

□ 입법제안의 근거

- 19세-34세 연령중 청년정책 대상 규모가 25%이상임
- 취업준비생, 졸업유예생 등 부모 피부양 청년이나 근로빈곤 청년 등 청년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 중심의 청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조 등 복지정책, 사회정책, 교육

정책, 주거정책 등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입법 목적과 기대효과

- 입법 목적은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법안의 기대효과
 - 청년세대의 성공적 노동시장 이행을 통해 청년의 독립적 생애 기반 구축 지원
 - 근로빈곤 청년,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공공부조 등 보편적 지원을 통해 계층간 소득양극화 완화
 - 경제적 사유로 결혼을 연기하는 청년에 대한 고용 및 공공부조 지원을 통해 결혼여건 조성
 - 청년부양가족의 자녀부양부담 완화를 통해 부모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

□ 주요 청년 정책 제안

- 학비, 직업훈련기간동안의 생활비 등 청년 교육지원 확대
- 저소득청년대상의 공공부조제도로 실업부조 도입
- 장기실업자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확대정책대책

▶ 주제어 : 청년, 청년부양 가족, 청년정책, 청년보장, 해외 청년정책 사례, 해외 청년입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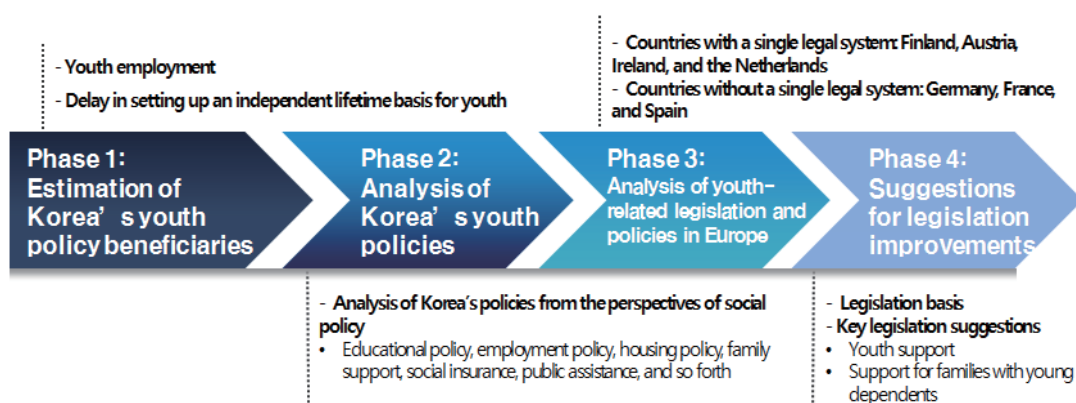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e continued rise in youth unemployment has brought about a diversity of youth-related social issues in Korea. To resolve such issues, the government has focused on employment policies including job creation.
- However, in the course of their lives consisting of learning, employment, and marriage, the young generation in Korea has encountered various difficulties including school expenses, unemployment, and wedding expenses, leading related experts to point out that current youth policies focusing on job creation have limitations in coming up with effective measures to deal with such problems.
- In other words, as well as employment policies, many other youth guarantee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housing, family form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 To this end, youth policy beneficiaries in Korea should be more effectively identified. It's because the number of policy beneficiaries needs to be first grasp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implementation system including legislation as the main framework for policy promotio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number of youth policy beneficiaries, to review whether related laws should be enacted, to examine overseas cases of youth policy-related legislation, and to present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by phase are as follows: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II. Main Contents

1. Estimation of the number of youth policy beneficiaries

□ The estimated number of youth policy beneficiaries among the youth aged 19 to 34

○ This refers to the number of youth in low-income brackets whose income does not exceed 50% of the median income.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data, among youth who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eir own name or as their

parents' dependents, those whose income is 50% or lower of the median income were sampled to identify their proportion among the youth population.

The estimated number of policy beneficiaries among youth aged 25 to 34:

○ Youth whose income does not exceed 50% of the median income numbered 1,819,029, accounting for 25.4% of the youth population aged 25 to 34, which numbers 7,158,761.

- Of those, low-income youth whose income is 50% or lower of the median income numbered 1,181,939, taking up 16.5% of the youth population aged 25 to 34.

- Of youth who are their parents' dependents, those whose parents' income does not exceed 50% of the median income numbered 369,196, making up 5.2% of the youth population aged 25 to 34.

- Medical benefit recipients aged 25 to 34 numbered 50,886.

The estimated number of policy beneficiaries among youth aged 19 to 24

○ As of 2015, those aged 19 to 24 numbered 4,170,567. Of these, youth whose income is 50% or lower of the median income, who are deemed to be policy beneficiaries, numbered 1,343,365, taking up 32.2% of the youth population aged 19 to 24.

- Low-income youth aged 19 to 24, whose income does not exceed 50% of the median income, numbered 534,052, making up 12.8% of the youth population aged 19 to 24.

- Of youth who are their parents' dependents, those whose parents' income is 50% or lower of the median income numbered 589,619, accounting for 14.1% of the youth population aged 19 to 24.
- Medical benefit recipients aged 19 to 24 numbered 107,392.

Changes in the number of policy beneficiaries between 2010 and 2015

- The percentage of policy beneficiaries in the youth population aged 25 to 34 dropped by 3.3%p from 28.7% in 2010 to 25.4% in 2015.
 - The percentage of young regional (householders) and employee subscribers whose income is 50% or lower of the median income also dwindled by 2.3%p from 18.8% in 2010 to 16.5% in 2015.
 - However, the proportion of youth aged 25 to 34, who are their parents' dependents, jumped by 1.0%p from 19.5% in 2010 to 20.5% in 2015. The proportion of youth who are their parents' dependents and whose parents' income does not exceed 50% of the median income also rose from 4.8% in 2010 to 5.1% in 2015.
- The percentage of policy beneficiaries among the youth population aged 19 to 24 grew by 1.0%p from 31.3% in 2010 to 32.2% in 2015.
 - The proportion of young regional (householders) and employee subscribers whose income is 50% or lower of the median income, among the youth population who earn money, swelled by 0.7%p from 12.1% in 2010 to 12.8% in 2015.

- Also, the percentage of youth aged 19 to 24 who are their parents' dependents and whose parents' income is 50% or lower of the median income jumped from 12.8% in 2010 to 14.1% in 2015.
-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25.4% and 32.2% of youth aged 25 to 34 (one out of four) and youth aged 19 to 24, respectively, belonged to low-income classes.
- The rise in the number of low-income youth who are their parents' dependents signifies that parents' income has continuously declined.
- Korea's youth policies have been carried out, concentrating on employment support schemes for reducing unemployment, but the effects on youth employment are deemed to have been insignificant.
- The main problem is that lack of information about policy beneficiaries has caused policy blind spots to be created. The government has regarded unemployed youth or young job seekers as its policy beneficiaries.
- Youth not earning any income and thereby financially relying on their parents, who are not reflected in unemployment statistics, as well as youth from low-income brackets who are their parents' dependents but whose parents do not make sufficient income, should be included in policy beneficiaries but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craf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 Taking into account that parents have to more heavily bear the burden of supporting their children with the aggravation of youth issues and that the working poor with insufficient income need to be partially supported by their parents even after they land jobs,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more effective measures to support families with young dependents.
- Against this backdrop, not only unemployed youth but also the working poor who make insufficient income should be included in policy beneficiaries. More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policies including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devised and carried out to help the youth overcome the aforementioned difficulties.

2. Youth guarantee systems in the EU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 For this study, we have examined youth-related legislation and policy cases in the EU that has promoted youth guarantee systems to effectively react to youth unemployment.
- Nations in the EU were classified into countries with and without a single legal system. Legislation and policy cases in the nations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 Countries with a single legal system: Finland, Austria, Ireland, and the Netherlands
 - Countries without a single legal system: Germany, France, and Spain

□ Youth-related legislations cases were found in Finland, Austria, Ireland, and the Netherlands. Their youth guarantee-related legislation systems and other key contents are as follows:

○ Finland

- Laws: The Youth Act (72/2006), The Youth Act Revised (693/2010)
- Implementation system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 Policy objectives and target age: youth's independent growth, cross-sectional cooperation in youth support, those younger than 29

○ Austria

- Laws: The 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The Federal Youth Promotion Act
- Implementation system: The Ministry of Economy, Family, and Youth
- Policy objectives and target ages: employment and learning, participation and planning, quality of life and cooperation, those aged 14 to 24 and younger than 30

○ Ireland

- Laws: The Youth Work Act 2001, The Youth Work Act (revised in June 2014)

- Implementation system: The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 Policy objectives and target age: youth's labor development and adjustment, those aged 15 to 24

○ The Netherlands

- Laws: The Youth Care Act 2005, The Social Support Law 2007
- Implementation system: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s
- Policy objectives and target ages: youth's growth as independent and productive members of society, those aged 18 or under (often aged up to 23)

□ Differences in policy between countries with and without a single legal system

○ Countries with a single legal system (Finland, Austria, the Netherlands, and Ireland)

- Youth guarantee policies have been carried out in diverse area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and public assistance.
-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based policy implementation systems have been set up, based on a single legal system.

○ Countries without a single legal system (Germany, France, and Spain)

- Germany and France with advanced universal social welfare systems are able to promote youth guarantee policies in various

areas without a separate legal system.

- Spain suffering from high unemployment revised its Constitution to facilitate youth guarantee policies, focusing on employment systems. However, it has yet to sufficiently develop and promote other social policies.

- In terms of legislation cases and youth policies, Korea needs to benchmark Finland's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ystems and comprehensive policy promotion schemes based on a single legal system, as well as 'public assistance' and 'policies for supporting families with young dependents' adopted by Germany and France.

III. Expected Effect

- Legislation basis
 - 25% or higher of those aged 19 to 34 are subject to youth policies.
 -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policy beneficiaries such as youth supported by parents (job seekers, those who delayed their graduation, etc.), the working poor, and so forth, employment-based youth policies have their own limitations in resolving youth issues. Therefore, comprehensive systems including social welfare (public assistance, etc.), education, and housing should be established and effectively carried out.
- Legislation objectives and expected benefits

- The aim of legislation is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promotion of comprehensive youth policies.
- Expected benefits
 - Support youth in establishing an independent lifetime basis via youth's successful entry into labor markets.
 - Relieve income polarization between social classes through universal support including public assistance to the working poor and youth in low-income classes.
 -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 youth can get married via employment services and public assistance to those who delay marriage due to economic reasons.
 - Support the parent generation to effectively plan for their later years by easing the burden of supporting children in families with young dependents.

Key youth policy suggestions

- Expand support for youth education by bearing educational and living expenses during the period of vocational training.
- Introduce an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as part of a public assistance scheme for youth in low-income brackets.
-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by creating more public jobs in order to prevent youth from being unemployed for a long period of time.

▶▶ Key Words : Youth, families with young dependents, Youth Policy, Youth Guarantee, Overseas cases of youth policy, Overseas cases of youth policy ac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11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35
1. 연구내용	35
2. 연구방법	36
제2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39
제1절 한국의 청년 고용 및 정책 현황	39
1. 청년 고용현황	39
2. 한국의 청년정책 현황 및 문제점	52
제2절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65
1. 청년정책과 대상 범주	65
2.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66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84
제3장 유럽국가의 청년관련 입법 사례	89
제1절 유럽국가의 청년관련입법 사례 조사	89
제2절 단일법 체제 보유국가의 입법 사례	91
1. 핀란드	91

2. 오스트리아	100
3. 아일랜드	104
4. 네덜란드	11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20
제4장 유럽국가의 청년정책 사례	123
제1절 EU의 청년 고용 현황	123
제2절 EU의 청년보장 정책	126
1. 추진 배경 및 과정	126
2.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성공 요건 및 주요 성과	130
제3절 단일법체계 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136
1. 핀란드	136
2. 오스트리아	143
3. 아일랜드	158
4. 네덜란드	167
제4절 단일법체계 미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179
1. 프랑스	179
2. 독일	205
3. 스페인	221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34
제5장 청년정책 추진 방안 제안	239
제1절 청년정책 관련법 제안	239
1. 입법 배경 및 근거	239
2. 입법 방향	243
제2절 주요 정책 제안	247

참고문헌	251
부록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2년-2015년)	263
부록 2: 연도별 청년고용현황	277
부록 3: 국가별 법령 전문	283

표 목 차

<표 2-1> 연도별 연령별 청년 고용률(2002-2015)	41
<표 2-2> 연도별 연령별 청년 실업률(2002-2015)	43
<표 2-3> 연도별 연령별 청년 비정규직 비율(2002-2015)	46
<표 2-4> 연도별 연령별 청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2005-2015)	49
<표 2-5> 연도별 연령별 청년 취업준비자 비율(2003-2015)	51
<표 2-6> 청년층 고용지원 관련 주요 종합정책 내용	53
<표 2-7> 대학학비 및 생활비 관련 정책 현황	56
<표 2-8> 대학생 대상 주거 정책	57
<표 2-9> 고졸 이상 취업준비생 대상 고용정책	58
<표 2-10> 대학 재학생 대상 고용정책	59
<표 2-11> 대졸 이상 취업준비생 대상 고용정책	61
<표 2-12> 대졸 이상 취업준비생 대상 기업지원정책	63
<표 2-13>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73
<표 2-14> 성별에 따른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74
<표 2-15>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0년)	75
<표 2-16> 성별에 따른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0년)	76
<표 2-17> 25-34세 청년정책 대상 2010년과 2015년 비교	78
<표 2-18>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79
<표 2-19> 성별에 따른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80
<표 2-20>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0년)	81
<표 2-21> 성별에 따른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0년)	82
<표 2-22> 19-24세 청년정책 대상 2010년과 2015년 비교	84
<표 3-1> EU국가의 청년보장제도 관련 법령 현황	89
<표 3-2> 오스트리아의 청년 전략	102

<표 3-3> 사례국가의 입법 및 주요 내용	120
<표 4-1> 2015년 EU 국가별 성별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	124
<표 4-2> 청년고용장려(Youth Employment Initiative)에 대한 설명 ...	128
<표 4-3> EU 회원국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시행 성과 사례	135
<표 4-4> 중등학교 (secondary education) 지급기준	137
<표 4-5>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2014.8.1. 이후 등록자) 지급기준	138
<표 4-6> 핀란드의 주요 청년정책	142
<표 4-7> 2016년 오스트리아 가족보조금 급여액	147
<표 4-8> 주거보조금 사례: 빈(Wien), 2015년 기준	154
<표 4-9> 오스트리아의 주요 청년정책	156
<표 4-10> FET 훈련 수당 (FET training Allowance)	161
<표 4-11> 아일랜드의 주요 청년정책	166
<표 4-12> 청년 보장정책 수행 주요 기관	169
<표 4-13> 청년학생 장애지원수당	172
<표 4-14>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계획	174
<표 4-15> 네덜란드의 주요 청년정책	178
<표 4-16> 프랑스의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의 단계별 지원금액	180
<표 4-17> 프랑스의 활동연대수당 지급액(2013년 1월 기준)	186
<표 4-18> 프랑스의 견습생 법정임금(월 최저임금 기준)	196
<표 4-19> 프랑스의 법정 의료보험 유형	201
<표 4-20> 프랑스의 주요 청년정책 수단	204
<표 4-21> 독일의 기타 학자금 제도 현황	208
<표 4-22> 독일의 학생을 위한 실업부조Ⅱ 자격조건	211
<표 4-23> 독일 대학 커리어서비스 센터의 일반 직업준비 교과목 과정의 서비스 형태	215
<표 4-24> 독일의 주요 청년정책 수단	220

<표 4-25> 청년고용전략의 역할 및 프로그램	230
<표 4-26> 스페인의 주요 청년정책	234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37
[그림 2-1] 연도별 청년 고용률(2002-2015)	40
[그림 2-2] 연도별 청년 실업률(2002-2015)	42
[그림 2-3] 연도별 청년 비정규직 비율(2002-2015)	45
[그림 2-4] 연도별 청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2005-2015)	48
[그림 2-5] 연도별 청년 취업준비자 규모(2003-2015)	50
[그림 2-6] 국민건강보험 직접가입자(25-34세)	68
[그림 2-7] 국민건강보험 부모피부양자(25-34세)	69
[그림 2-8] 국민건강보험 직접가입자(19-24세)	70
[그림 2-9] 국민건강보험 부모피부양자(19-24세)	71
[그림 4-1]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청년실업률(2006-2015)	123
[그림 4-2] 독일 25세 미만 청년실업률(2006-2015)	125
[그림 4-3] 프랑스의 주거지원 제도	199
[그림 4-4] 프랑스의 의료보험제도 기본구조	201
[그림 4-5] 청년고용전략(Strategy for Entrepreneurship and Youth Employment) 2013-2016내에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의 실행 구조	225
[그림 4-6] 국가별 청년정책 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237
[그림 5-1] 청년정책 추진체계 근거(요약)	242
[그림 5-2] 청년관련 입법 발의안	24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외환위기 이후 가계경제가 악화되고 청년세대의 실업문제가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사회문제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청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일자리 제공 등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 동안 각각 학자금, 실업, 결혼 비용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철선 2016, p.14).

1996년 4.7%였던 15-29세 청년실업률은 1998년 12.2%로 상승 후 감소하였지만 2016년 4월 기준 10.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1996; 1998; 2016). 2014년 현재 대학진학률은 70.9%로 고교졸업생 10명중 7명은 대학에 진학(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p.14; 김지경, 정연순 2015, p.35, 재인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부모월평균소득에 따른 등록금 대출 경험은 중위소득-하위 50%이하는 37.7%, 중위소득+상위 50%이상은 17.8%로 부모소득이 낮을수록 대출경험율이 높다(김지경, 정연순 2015, p.140). 한국의 학자금 규모가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높고, 장학금 및 기타 학비보조금 비율이 OECD 평균이나 미국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청년과 부모가 지는 학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다(반상진 2012; 김지경, 정연순 2015, p.35, 재인용). 그 결과 청년세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자금 등으로 인한 부채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 세대로 하여금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25-29세 혼인율 변화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29세의 혼인율을 보면 '05년 남성 54.5%, 여성 76.9%에서 '15년에는 남성 41.2%, 여성 72.9%로 낮아진다. 평균 초혼 연령은 2015년 남성 32.6세, 여성 30.0세(통계청 보도자료 2016.4.7.)로 청년세대의 만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만혼현상은 결혼 비용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10~ '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약 7천만원, 여성 5천만원(김승권 외 2012, p.25)으로 청년세대의 독자적인 근로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또한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과 비교하여 빈곤율이 높아진 집단은 가구주 연령이 35세미만과 65세 이상으로 나타난다(강신욱 2016, p.36). 노인 연령대의 가구는 전통적으로 빈곤하지만 최근 들어 청년층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35-50세 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9.7%에서 2014년 6.3%로, 50-65세 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15.2%에서 2014년 12.4%로 낮아지는 추세이다(강신욱 2016, p.36). 그러나 35세 미만 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10.7%에서 2014년 12.2%로 오히려 높아졌다(강신욱 2016, p.36)

이러한 청년문제의 배경에는 저성장 기조에 따른 일자리 부족, 가계 경제구조의 악화 등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주로 가족과 부모의 책임이었으며, 이는 부모계층에 따른 청년세대의 기회의 불평등으로 귀결되어 계층 갈등 양상으로 발현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산층의 삶의 질에 대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중산층이 소득은 늘었으나 교육·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에 의하여 중산층으로 분류된 집단 중 55%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며, '중산층 의식'이 약화되면서 경제적 내핍생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2; 2013; 2014). 결국 청년 문제는 청년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영향

을 주게 된다. 독자적 생애기반을 가지지 못하는 청년자녀로 인하여 자녀 부양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부모세대는 자녀 부양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에 빠지거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여 노년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청년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용정책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체계로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논의로써 청년기본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기존의 고용 중심의 청년정책과 달리 일자리, 주거, 가족형성 지원,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철선 외(2016)는 한국의 청년정책 및 해외 주요국의 청년정책 현황을 조사하여 한국의 청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철선 외(2016)의 연구에 이어 한국에서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규모를 추정하고 청년정책 관련 해외법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로서 진행되었다. 사회정책으로서 포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정책대상으로써 청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청년정책의 대상으로 그동안 주목해온 집단은 미취업자로, 미취업 청년 규모 등이 청년세대의 문제를 보여주는 주요 자료로 제시되어왔다. 그 결과 일자리 중심의 고용정책에 초점을 둔 청년대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저성장기조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정책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직까지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모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직청년은 실업자로 통계에 포함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어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는 청년의 규모는 취업준비생이나 졸업유예생 또는 부모동거 비율 등으로 추정할 뿐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의 대상이 되는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청년정책 관련 법안의 추진이 필요한 지, 청년정책 관련 법안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한국의 청년 정책 방향은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해외의 관련 입법사례 및 정책 사례를 조사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청년정책 대상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청년정책 추진 사례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법안 도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청년정책은 EU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U는 역내 국가의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청년보장계획(Youth Guarantee Scheme)을 마련하여 각국에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근거하여 EU 28개국은 청년관련 단일 법안을 마련하고 청년보장계획을 추진하거나, 별도의 법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청년보장계획을 추진하는 등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EU 28개국의 청년보장계획 관련 입법 사례를 조사하고 단일 법 체계 보유 국가를 선정하여 입법 배경과 입법 목표,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청년관련 단일법령이 존재하는 국가의 청년관련 주요 정책사례를 정리하였다. 청년관련 단일 법 체계가 없이 청년정책을 추진한 국가 중에서도 벤치마킹할 정책 사례가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정책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EU 국가의 청년 관련 입법 사례와 정책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의 청년문제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과 정책 방향, 그리고 세부정책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한국의 청년세대 문제가 단순한 고용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향후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연구목적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청년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보장 정책이 필요한지와 만약 필요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하는 지를 제안하기 위함이다.

제 2 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6개의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우선, 한국의 청년정책 대상 규모를 추정하였다. 청년 연령을 19세-34세로 정의하고, 세부적으로 19세-24세, 25세-34세 2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청년정책 대상 규모를 청년 중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즉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인 차상위 계층으로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데이터에서 자기소득이 있어 본인 명의로 가입한 청년과 부모인 가입자의 부양자로 되어 있는 청년을 추출하였다.

둘째, 한국의 청년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청년층 관련 주요 종합정책을 살펴보고, 청년문제의 현실에 비추어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정리하였다.

셋째, EU국가의 청년보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년정책 관련 단일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입법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EU국가의 청년지원정책 동향을 파악하였다. 유럽 주요국 중 단일법 체계 보유국가인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미 보유국가인 독일, 프랑스와 스페인의 청년정책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유럽 주요국가의 입법 및 정책사례를 한국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한국의 청년문제 대응 입법의 필요성 근거를 정리하고 입법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자료 분석이다. 청년 정책 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DB의 가입자 정보를 분석하여 저소득층 청년 규모를 산출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으로 구분된다. 청년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이며, 본인 명의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로 분류된다. 이들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추정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하는 청년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데이터는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하여 규모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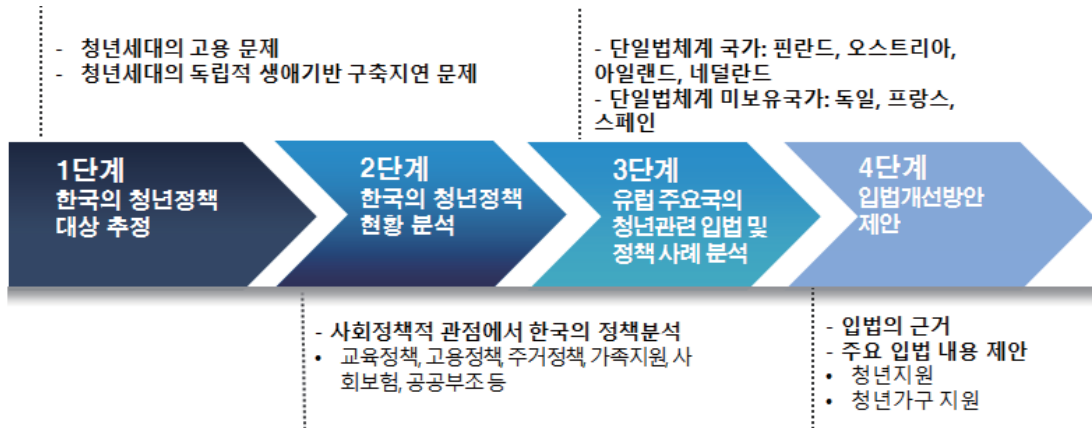
둘째, 입법 사례 조사이다. 청년보장제도를 실시한 EU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관련 입법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석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셋째, EU 주요국의 입법 내용 분석이다. 분석 대상 국가는 청년 관련 단일법 체계 보유 국가인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이다.

넷째, EU 주요국의 정책 사례 조사 및 분석이다. 단일법 체계 보유 국가인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단일법 체계 미보유국가인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다섯째, 연구 내용에 대한 점검, 한국의 입법 방향 및 주요 입법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연구진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단계별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제 2 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제 1 절 한국의 청년 고용 및 정책 현황

1. 청년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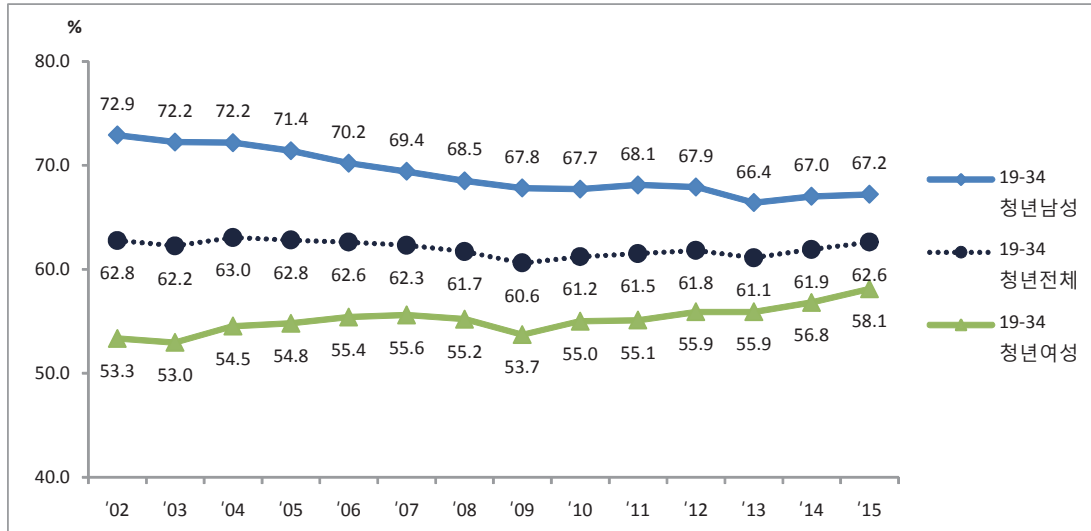
본 절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청년 대상 연령을 19-34세를 기준으로 고용 추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용율과 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취업준비생 비율의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19-34세 청년의 고용률은 남성은 2002년 72.9%에서 2013년 66.4%까지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인다 2014년 전년 대비 0.6%p 상승한 67.0%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에도 고용률은 다소 상승하여 67.2%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하락한 청년남성에 비해 청년여성은 2002년 고용률 53.3%에서 2015년 58.1%까지 상승하였다. 청년여성고용률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전년 대비 1.5%p 하락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15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 2 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자료: 통계청, 「2002-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1] 연도별 청년 고용률(2002-2015)

청년 연령별 고용률은 청년남성은 19-24세는 2002년 43.5%에서 2015년 38.3%로 분석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고용률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남성은 25-29세의 경우 2002년 77.6%에서 2015년 69.3%, 30-34세는 2002년 91.2%에서 2015년 90.0%로 청년연령 전 구간에서 2002년~2015년까지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19-34세 전체 청년남성 고용률 추이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년여성의 경우는 19-24세는 2002년 54.2%에서 2015년 47.9%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상회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취업 전선으로 나서는 여성의 비율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24세 청년여성 고용률은 2002년~2015년 사이 하락 추세인 것인 비해 25-29세, 30-34세는 동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19-34세 청년여성고용률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19-34세 청년여성고용률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청년남성과 고용률 격차는 10%p 내외로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청년남성

에 비해 낮다.

<표 2-1> 연도별 연령별 청년 고용률(2002-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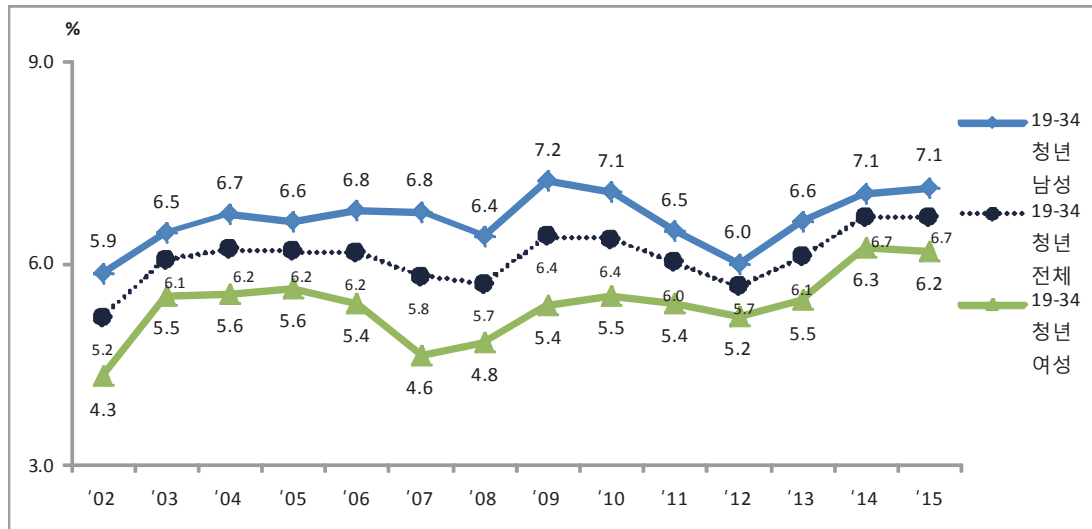
(단위: %)

	남성				여성				전체			
	19-24	25-29	30-34	19-34	19-24	25-29	30-34	19-34	19-24	25-29	30-34	19-34
'02	43.5	77.6	91.2	72.9	54.2	57.5	48.6	53.3	49.6	67.7	70.2	62.8
'03	41.8	76.5	91.4	72.2	53.0	58.1	48.4	53.0	48.2	67.5	70.2	62.2
'04	43.0	75.5	90.5	72.2	54.3	61.2	48.9	54.5	49.5	68.5	70.0	63.0
'05	41.0	74.7	89.8	71.4	53.6	63.0	48.6	54.8	48.2	68.9	69.6	62.8
'06	39.4	72.6	89.0	70.2	50.7	64.3	51.6	55.4	45.9	68.5	70.7	62.6
'07	38.3	71.3	88.5	69.4	49.0	65.4	52.0	55.6	44.4	68.4	70.6	62.3
'08	35.8	70.7	88.8	68.5	47.0	66.3	51.7	55.2	42.2	68.5	70.7	61.7
'09	35.6	69.4	87.9	67.8	45.0	65.6	50.1	53.7	41.0	67.5	69.5	60.6
'10	35.2	70.0	87.5	67.7	45.6	66.2	52.9	55.0	41.1	68.2	70.6	61.2
'11	34.9	71.6	87.9	68.1	44.9	67.8	53.2	55.1	40.6	69.7	71.0	61.5
'12	36.5	70.4	89.0	67.9	46.0	68.0	54.8	55.9	41.8	69.2	72.2	61.8
'13	35.2	69.6	88.4	66.4	44.6	68.0	56.7	55.9	40.3	68.8	72.9	61.1
'14	37.1	69.4	89.8	67.0	46.1	68.8	57.7	56.8	41.9	69.1	74.1	61.9
'15	38.3	69.3	90.0	67.2	47.9	68.6	59.8	58.1	43.5	69.0	75.3	62.6

자료: 통계청, 「2002-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9-34세 청년남성 실업률 2002년 5.9%로 2002년~2015년 기간 중 가장 낮고 2003년 6.5%로 상승하였다. 2007년 6.8%까지 되었고 2008년에는 6.4%로 전년대비 0.4%p 하락하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2%까지 상승을 한 이후 2012년 6.0%까지 하락을 하지만 2013년 6.6%로 전년대비 0.6%p 상승을 한다. 2014년과 2015년은 연간 실업률 7.1%로 2002년 이후 청년남성의 실업률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2015년까지 청년여성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청년남성 보다 1%p 이상 낮은 가운데 청년여성 실업률도 청년남성 실업률 등락 패턴과 유사하다. 2002년 청년여성 실업률은 4.3%로 2002년~2015년 기간 동안 가장 낮았으나 2003년에는 전년 대비 1.2%p 상승한 5.5%로 청년여성실업률은 5%대에 진입하였다. 이후 2007년 4.6%로 5%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2008년도 4.8%로 5% 미만을 유지하였지만 이후 연도는 다시 실업률 5%를 상회하였다. 최근 청년여성 실업률은 2014년 6.3%, 2015년 6.2%로 청년여성 실업률도 6% 시대가 되었다.



자료: 통계청, 「2002-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2] 연도별 청년 실업률(2002-2015)

연령별로 청년실업률을 보면 19-24세가 가장 높고 25-29세, 30-34세 순서로 연령이 많을수록 실업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24세의 경우 성별로 청년남성은 2002년 실업률 9.3%에서 2014년 11.3%, 2015년 11.4%로 19-24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남성 10명 중 1명 이상이 실업 상태였다. 연도별로는 과거 2005년 19-24세 청년남성 실업률이 12%까지 상승하다 2012년에 9.7%로 10% 미만으로 하

락하였으나 2014년 다시 11%대로 회귀하였다. 청년여성의 경우도 19-24세 집단의 실업률이 25-29세, 30-34세 보다 높은 것은 청년남성과 유사하였다. 2014년 19-24세 청년여성 실업률은 9.2%로 과거 2004년 9.1% 이후 10년 만에 9%를 상회하여 높아졌다. 2015년 19-24세 청년여성 실업률도 9.9%로 2년 연속 9%대이다.

2002년~2015년까지 연령별로 청년남녀 모두 19-24세가 가장 높고 25-29세가 30-34세 보다 낮아 30-34세 실업률이 가장 낮은 것은 동일하나 절대 실업률 수치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19-24세의 경우 남성은 실업률이 11% 내외, 여성은 8%내외로 성별간 3%p 내외 차이가 있고 25-29세는 남성이 8%내외, 여성은 5%p 내외로 성별간 약 3%p 내외 격차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30-34세는 남성이 4%내외, 여성이 3%내외로 30-34세 성별 실업률 격차는 19-24세, 25-29세 보다 크지 않았다. 연령별 성별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연령 구간은 25-29세로 2015년 25-29세 청년남성 실업률은 10.1%로 청년여성 실업률 5.8%에 비해 4.2%p나 높다. 25-29세 연령은 4년제 대학 이하 학력자의 경우 청년여성은 졸업을 완료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 상태에 있는 비율이 청년남성 보다 높은 연령이다.

<표 2-2> 연도별 연령별 청년 실업률(2002-2015)

(단위: %)

	남성				여성				전체			
	19-24	25-29	30-34	19-34	19-24	25-29	30-34	19-34	19-24	25-29	30-34	19-34
'02	9.3	7.1	3.5	5.9	6.7	3.2	2.5	4.3	7.7	5.5	3.2	5.2
'03	11.6	7.8	3.6	6.5	8.7	4.3	3.1	5.5	9.8	6.3	3.4	6.1
'04	11.8	8.3	3.6	6.7	9.1	4.1	3.0	5.6	10.1	6.5	3.4	6.2
'05	12.0	7.8	3.9	6.6	8.7	4.7	3.3	5.6	9.9	6.4	3.7	6.2
'06	11.9	7.9	4.2	6.8	8.9	4.7	2.7	5.4	10.0	6.5	3.7	6.2

제 2 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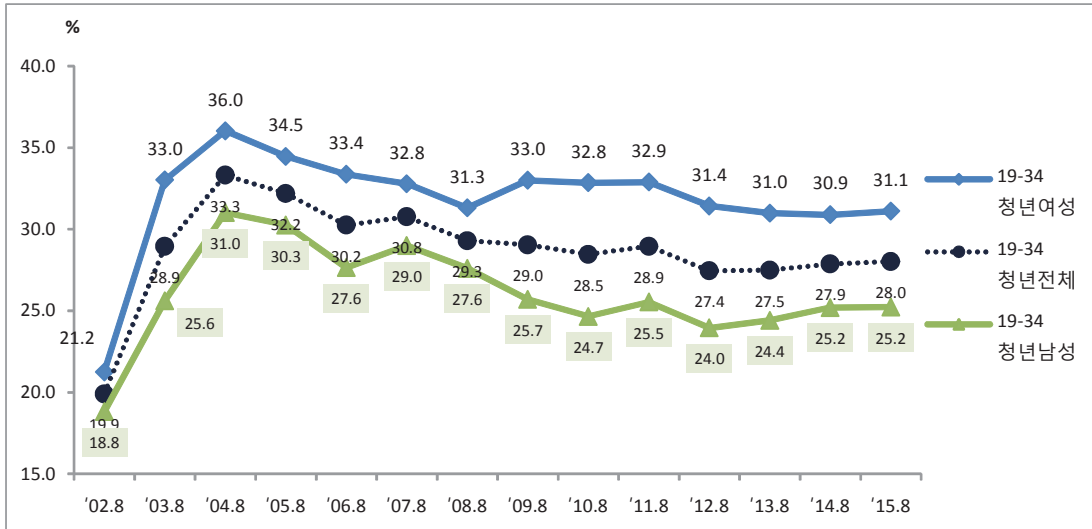
	남성				여성				전체			
	19-24	25-29	30-34	19-34	19-24	25-29	30-34	19-34	19-24	25-29	30-34	19-34
'07	11.6	8.2	4.1	6.8	7.0	4.1	3.2	4.6	8.7	6.3	3.7	5.8
'08	11.3	7.5	4.0	6.4	7.9	4.3	2.9	4.8	9.2	6.0	3.6	5.7
'09	11.6	9.0	4.5	7.2	8.3	4.9	3.4	5.4	9.6	7.1	4.1	6.4
'10	10.8	8.6	4.8	7.1	8.9	5.1	3.2	5.5	9.6	7.0	4.2	6.4
'11	11.8	7.7	4.0	6.5	7.9	5.0	3.9	5.4	9.4	6.5	4.0	6.0
'12	9.7	8.0	3.4	6.0	8.4	5.0	2.8	5.2	8.9	6.6	3.1	5.7
'13	9.4	8.8	4.1	6.6	8.9	5.3	3.0	5.5	9.1	7.1	3.7	6.1
'14	11.3	10.1	3.3	7.1	9.2	6.3	3.7	6.3	10.1	8.3	3.5	6.7
'15	11.4	10.1	3.3	7.1	9.9	5.8	3.2	6.2	10.5	8.1	3.3	6.7

자료: 통계청, 「2002-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청년 비정규직 비율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19.9%에서 2015년 28.0%로 2002년과 2015년 두 연도만을 비교하면 8.1%p 상승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을 성별로 보면 청년남성 2002년 18.8%에서 2015년 25.2%이고 청년여성은 2002년 21.2%에서 2015년 31.1%로 분석되었다. 2002년부터 2015년 전 기간 동안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청년여성이 청년남성에 비해 5%p 내외로 높았다.



자료: 통계청, 「2002-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원자료

[그림 2-3] 연도별 청년 비정규직 비율(2002-2015)

연령별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청년남성층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일관되게 19-24세 비정규직 비율이 40%대로 가장 높다. 이어 25-29세가 20%로 낮아지고 30-34세는 10%대로 낮아져 청년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여성의 경우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9-24세의 비정규직 비율이 2008년 41.4%로 상승하여 2015년 44.4%로 4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여성 연령 구간별 비정규직 비율은 19-24세가 25-29세와 30-34세 보다 높은 것은 청년남성과 동일하였으나 청년남성과 달리 25-29세 보다 30-34세가 비정규직 비율이 낮지는 않았다. 즉, 청년여성의 경우 25-29세, 30-34세 비정규직 비율이 25% 내외로 연령별 격차가 크지 않았다. 30-34세 청년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25-29세 보다 낮아지지 않는 것이 청년여성이 청년남성 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상에 이르게 한다고 본다.

제 2 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표 2-3> 연도별 연령별 청년 비정규직 비율(2002-2015)

(단위: %)

	남성				여성				전체			
	19-24	25-29	30-34	19-34	19-24	25-29	30-34	19-34	19-24	25-29	30-34	19-34
'02.8	28.6	17.1	16.3	18.8	21.1	18.3	25.4	21.2	23.8	17.6	19.2	19.9
'03.8	44.2	23.0	20.3	25.6	34.6	27.9	37.3	33.0	38.0	25.1	25.8	28.9
'04.8	41.2	30.3	27.8	31.0	37.3	31.4	40.4	36.0	38.7	30.8	31.9	33.3
'05.8	50.8	26.1	26.3	30.3	37.7	31.1	34.8	34.5	42.3	28.4	29.0	32.2
'06.8	45.0	24.5	24.2	27.6	36.5	30.5	33.8	33.4	39.7	27.3	27.5	30.2
'07.8	42.8	27.6	25.7	29.0	39.6	27.6	33.1	32.8	40.7	27.6	28.3	30.8
'08.8	45.7	26.1	23.2	27.6	41.5	26.6	28.1	31.3	43.1	26.4	24.9	29.3
'09.8	48.1	25.2	19.2	25.7	43.3	27.9	30.5	33.0	45.1	26.5	23.0	29.0
'10.8	52.1	22.8	18.4	24.7	43.8	27.9	29.6	32.8	46.8	25.3	22.4	28.5
'11.8	51.3	24.2	18.9	25.5	44.1	26.9	30.6	32.9	46.8	25.5	23.1	28.9
'12.8	47.3	22.2	17.7	24.0	44.7	26.4	25.8	31.4	45.7	24.2	20.7	27.4
'13.8	49.6	21.8	17.7	24.4	44.8	25.9	25.2	31.0	46.7	23.7	20.6	27.5
'14.8	45.7	24.6	17.2	25.2	44.5	25.9	23.9	30.9	45.0	25.2	19.8	27.9
'15.8	49.9	23.8	16.0	25.2	44.4	24.4	25.6	31.1	46.7	24.1	19.8	28.0

자료: 통계청, 「2002-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3) 청년 최저임금¹⁾ 미만 근로자 비율

청년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비율을 보면 2005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등락을 반복하여 꾸준히 상승세이거나 반대로 꾸준히 하락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2005년과 2015년만을 비교하면 2015년에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청년의 비율은 상승하였다. 기간 동안 일관된 현상으로 청년여성이 청년남성 보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p 내외로 높은 것은 2005년부터 2015년 기간 내내 변동이 없었다.

성별로 보면, 청년남성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2005년 3.3%에서 2015년 5.3%이고 전년도인 2014년은 6.5%로 최고 비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청년여성은 2005년 5.7%에서 2015년 7.3%로 1.6%p 상승하였고 청년남성과 동일하게 2014년 8.6%까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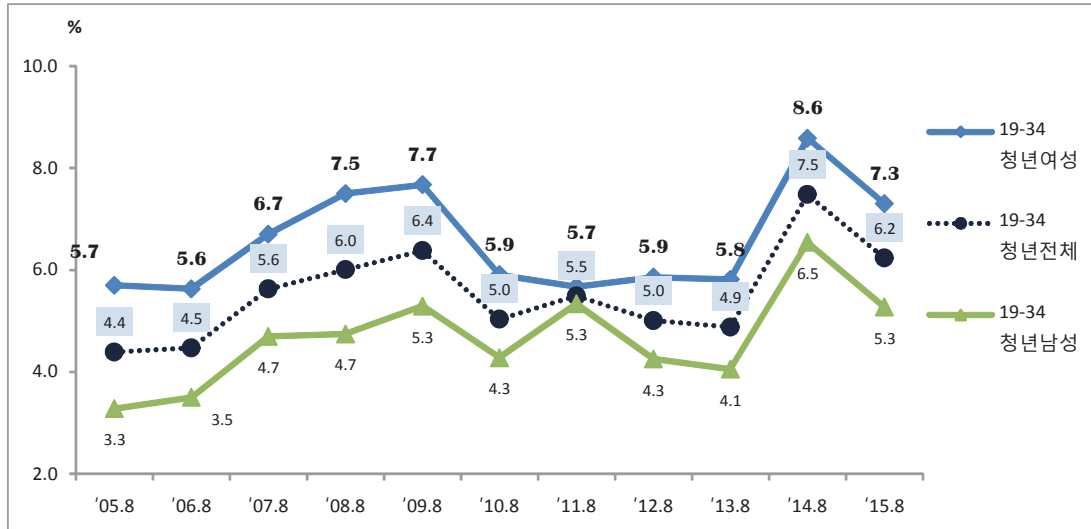
1)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단위 : 원)

적용년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05.9~'06.12	'04.9~'05.8	'03.9~'04.8
시간급(원)	5,580	5,210	4,860	4,580	4,320	4,110	4,000	3,770	3,480	3,100	2,840	2,510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제 2 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자료: 통계청, 「2005-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원자료

[그림 2-4] 연도별 청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2005-2015)

청년 연령별로는 청년남성은 최저임금 미만 받는 근로자 비율이 19-24세가 가장 높고 25-29세와 30-34세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청년여성은 19-24세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5-29세와 30-34세 보다 높은 것은 청년남성과 동일하였으나 이후 연령에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하락하지는 않아 청년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청년여성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19-24세는 청년남성 보다 낮았는데 25세 이후부터는 청년남성 보다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낮지 않았다. 이는 전체 19-34세 연령 구간에서 청년여성이 청년남성 보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낮을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2-4> 연도별 연령별 청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2005-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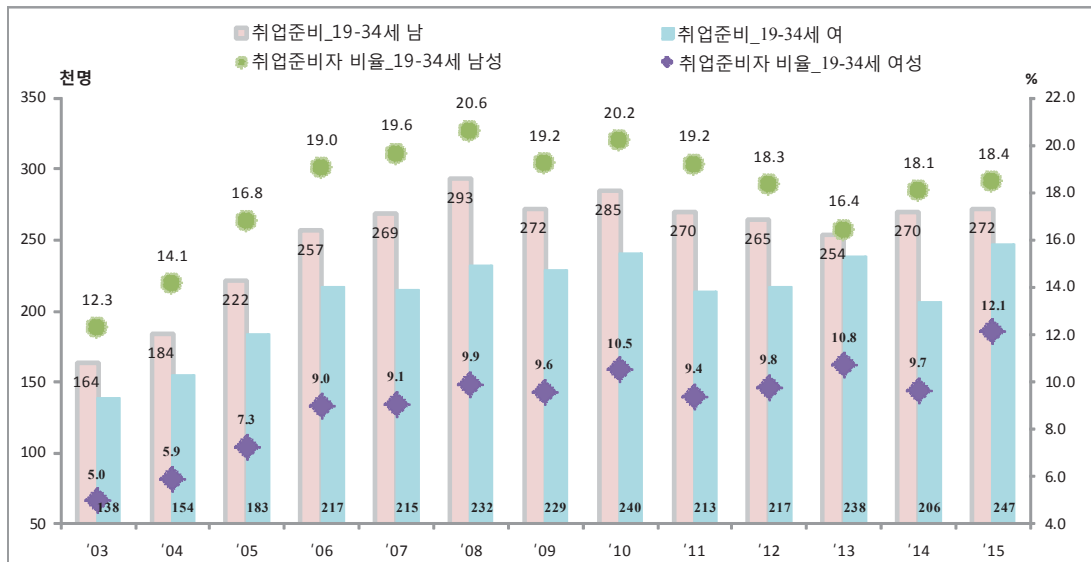
	남성				여성				전체			
	19-24	25-29	30-34	19-34	19-24	25-29	30-34	19-34	19-24	25-29	30-34	19-34
'05.8	12.3	1.8	1.2	3.3	9.0	2.6	5.7	5.7	10.1	2.2	2.7	4.4
'06.8	12.2	2.7	1.1	3.5	10.1	2.1	5.5	5.6	10.9	2.5	2.6	4.5
'07.8	18.5	3.1	1.6	4.7	12.3	3.1	6.1	6.7	14.5	3.1	3.2	5.6
'08.8	19.2	2.9	1.8	4.7	14.5	3.5	6.4	7.5	16.3	3.2	3.4	6.0
'09.8	19.3	3.8	2.1	5.3	14.9	3.4	6.9	7.7	16.5	3.6	3.8	6.4
'10.8	15.7	4.1	1.2	4.3	12.3	2.9	4.2	5.9	13.5	3.6	2.2	5.0
'11.8	20.3	4.5	1.5	5.3	12.4	2.5	3.7	5.7	15.4	3.5	2.3	5.5
'12.8	17.0	2.9	1.1	4.3	12.5	3.2	3.2	5.9	14.3	3.1	1.9	5.0
'13.8	14.3	3.5	1.0	4.1	12.5	3.0	3.3	5.8	13.3	3.3	1.9	4.9
'14.8	20.7	5.0	1.9	6.5	18.4	4.1	3.8	8.6	19.4	4.5	2.6	7.5
'15.8	17.5	3.7	1.4	5.3	13.3	4.5	4.6	7.3	15.0	4.1	2.7	6.2

자료: 통계청, 「2005-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4) 청년 취업준비생 비율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비경제활동 사유가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인 청년들을 취업준비자로 하여 이들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2015년 취업준비자는 청년 남성이 272천명, 청년 여성이 247천명으로 남성이 여성 보다 25천명 많았다.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 중 취업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이 18.4%, 여성이 12.1%로 19-34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은 취업준비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3년 취업준비자 규모는 청년 남성이 164천명, 청년 여성이 138천명으로 2015년에 비해 남성은 108천명, 여성은 109천명 적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청년 남녀 모두 꾸준히 상승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인 2009년에는 청년 남성은 전년 대비 1.4%p, 청년 여성은 0.3%p 하락하여 취업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승세가 꺾이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듬해 2010년엔 전년 대비 남성은 1%p, 여성은 0.9%p 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시 상승하였고 2012년까지 하락하다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다시 상승을 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주 1. 취업준비는 비경제활동인구 사유 중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해당
 2. 취업준비자 비율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 「2003-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5] 연도별 청년 취업준비자 규모(2003-2015)

청년층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상승하는 반면, 여성은 19-24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30-34세가 4%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최근 청년 취업난과 함께 25-29세 청년 여성층에서도 취업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19.2%로 20%에 육박한 이후 2014년 17.9%로 주춤하였지만 2015년

도 19%로 다시 상승하였다.

<표 2-5> 연도별 연령별 청년 취업준비자 비율(2003-2015)

(단위: %)

		취업준비자(A)				비경제활동 인구(B)				(A/B)*100			
		전 체	19- 24	25- 29	30- 34	전 체	19- 24	25- 29	30- 34	전 체	19- 24	25- 29	30- 34
‘03	남성	164	52	82	30	1,336	885	334	116	12.3	5.9	24.6	25.9
	여성	138	80	45	13	2,772	942	744	1,086	5.0	8.5	6.0	1.2
‘04	남성	184	54	96	33	1,303	829	340	134	14.1	6.5	28.2	24.6
	여성	154	93	46	15	2,609	868	675	1,066	5.9	10.7	6.8	1.4
‘05	남성	222	58	122	42	1,324	816	367	141	16.8	7.1	33.2	29.8
	여성	183	106	58	19	2,524	851	637	1,036	7.3	12.5	9.1	1.8
‘06	남성	257	60	152	46	1,351	790	413	148	19.0	7.6	36.8	31.1
	여성	217	122	75	18	2,414	855	620	940	9.0	14.3	12.1	1.9
‘07	남성	269	55	164	50	1,370	771	444	155	19.6	7.1	36.9	32.3
	여성	215	107	86	22	2,374	866	615	892	9.1	12.4	14.0	2.5
‘08	남성	293	65	179	49	1,425	807	469	148	20.6	8.1	38.2	33.1
	여성	232	115	92	26	2,346	872	589	885	9.9	13.2	15.6	2.9
‘09	남성	272	53	169	48	1,415	793	465	157	19.2	6.7	36.3	30.6
	여성	229	114	86	29	2,395	910	584	900	9.6	12.5	14.7	3.2
‘10	남성	285	67	155	63	1,414	810	444	160	20.2	8.3	34.9	39.4
	여성	240	124	92	23	2,286	885	551	850	10.5	14.0	16.7	2.7
‘11	남성	270	60	151	59	1,408	833	408	167	19.2	7.2	37.0	35.3
	여성	213	110	78	24	2,268	922	501	845	9.4	11.9	15.6	2.8
‘12	남성	265	60	153	52	1,449	881	410	158	18.3	6.8	37.3	32.9
	여성	217	112	80	25	2,219	907	473	840	9.8	12.3	16.9	3.0

제 2 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취업준비자(A)				비경제활동 인구(B)				(A/B)*100			
		전 체	19- 24	25- 29	30- 34	전 체	19- 24	25- 29	30- 34	전 체	19- 24	25- 29	30- 34
‘13	남성	254	65	138	52	1,548	983	409	157	16.4	6.6	33.7	33.1
	여성	238	125	87	26	2,213	948	453	811	10.8	13.2	19.2	3.2
‘14	남성	270	82	139	49	1,495	965	388	142	18.1	8.5	35.8	34.5
	여성	206	107	75	24	2,133	944	420	769	9.7	11.3	17.9	3.1
‘15	남성	272	84	143	45	1,477	947	395	135	18.4	8.9	36.2	33.3
	여성	247	140	81	27	2,038	904	426	708	12.1	15.5	19.0	3.8

자료: 통계청, 「2003-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한국의 청년정책 현황 및 문제점²⁾

(1) 청년정책 현황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높은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해 아래 <표 2-6>과 같이 2003년부터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고용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청년세대가 느끼는 정책 체감도 역시 높지 않다³⁾.

2) 이철선 외, 해외주요국의 청년정책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p.21-33. 재정리함

3) 3포세대, 흠수저, 헬조선 등의 신조어들은 청년세대의 좌절을 보여주는 용어들로 청년고용대책의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현실임을 의미함

<표 2-6> 청년층 고용지원 관련 주요 종합정책 내용

시기	정책	주요내용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중점 -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 공표 실시 - 대학생 연수체험 확대 - 대학 취업지원실 확대 및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설치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지원센터 설치
2005년	청년고용 촉진대책	인력수급전망 정보 수집 등 취업인프라 강화 -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청년 워크넷 구축 및 청년층 종합취업지원서비스 도입 - 대학평가에 취업률 반영 및 교육과정의 산업(고용시장) 수요 적합성 평가
2008년	청년고용 촉진대책	일자리창출 및 대학교육 구조 개혁 - 청년일자리 지원위한 인턴제 실시 및 확대 - 해외취업 확대, 청년기업가 육성, 우량기업 발굴 - 청년층 맞춤형 취업서비스(청년 뉴스타트) 실시 - 취업캠프, 직장체험 프로그램 강화 - 산업수요 기반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2010년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수요적합 인력 양성 - 청년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공공부문 중심) - 청년사회적 기업가 육성, 일자리창출 금융지원 확대, 신성장 동력분야 창업기업 채용 지원 - 중소기업 인턴 확대 및 취업연계 강화(행정인턴 폐지) - 대학 취업아카데미 운영 등 취업역량강화
2011년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실무적합형 인재 양성, 중소기업취업·창업활성화 유도 - 산업현장과 연계된 학교 확충(계약학과 등) -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등 교육훈련과정 개편 - 일-자격-훈련 연계 인프라 강화, 일자리정보망 구축 등 - 중소기업 청년취업 유인 제고 및 취업인턴 강화 - 취업지원관 배치 포함 학교 취업지도역량 강화 - 지방인재 채용기회 확대 및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강화 - 대학을 통한 창업촉진 및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2014년	일자리 단계별 청년	일자리 단계별 ‘약한 고리’ 해소 - (교육·훈련) 기업수요 반영한 맞춤형 교육, 일·학습 병행 활성화, 스위스식 직업교육 시범도입 등

제 2 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시기	정책	주요내용
	고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취업) 스펙초월 채용, 후진학 제도 다양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 (근속·전직) 장기근속자 취업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등
2015년	청년고용 절벽 해소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시적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정책 효과성 제고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장 - 청년인턴에 우량기업 참여 확대 및 취업연계형으로 재설계 - 노동시장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제조업 혁신 등 - 계약학과, 일-학습병행제 등 현장중심교육과 대학구조개편 -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해외취업 촉진 등

자료: 이철선 외(2016). 해외주요국의 청년정책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

이는 기존의 청년 대책들이 고용정책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복지대상으로 청년을 설정, 총체적인 국가정책으로 청년정책을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청년정책이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의 청년정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한국의 복지정책 사업에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수당, 사회서비스 등 잔여적 복지정책인 사회보장정책 측면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이 이미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육, 고용, 의료, 주거 등 사회정책 측면에서 보는 복지정책의 대상 측면에서도 이미 청년들은 복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보편적 복지 대상이 아닌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택적 복지정책의 대상이었다.

결국 한국의 청년정책 조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회보장정책 대상의 한 부분이며, 최근에는 교육과 고용 중심의 사회정책으로 청년문제에 접근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보험의 경우 미취업 청년은 사회보험 기여가 부재한 점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생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산재보험은 사업자 기여 중심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생은 개별적인 사회보험 기여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포함함으로써 청년 직업훈련생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개 부분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2015년 기준 15-29세 수급자는 310,960명으로 전체 1,554,484명 중 20.0%에 해당한다(통계청 2015). 직업훈련은 조세(일반회계)를 기반으로 청년대상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2종이 제공되고 있다. 고등학생 대상의 교육지원으로 대학입사의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보완적 내용들도 실시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과도한 학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2년부터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제도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소득 10분위 하에서 차별적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는 제도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재학 중 이자 상환을 유예 받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⁴⁾이다.

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재구성

<표 2-7> 대학학비 및 생활비 관련 정책 현황

종류	사업명	대상	내용	소관 기관
국가 장학금	I 유형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 충족(직전학기 12학점이상, 80점 이상의 성적) - 첫 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완화 - 기초생활수급권자(학기별 최대260만원) ~ 소득분위 8분위(34만원)지원	한국 장학재단
	II 유형	- 대학 자체기준 - 최소한의 대학별 성적 기준 충족	-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든든 (취업후 상환) 학자금	- 35세 이하 -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 - 다자녀가구(소득분위 관계없음) - 최소한의 성적기준 충족(전학기 12학점이상 & C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대출 가능 - 연 2.5%변동금리('16.2학기 기준) - 학기당 10~150만원 생활비대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1~3분위는 무이자 - 대출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유예	한국 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 55세 이하 모든 소득분위 대학원생 - 소득9분위 이하 학부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 충족(전학기 12학점이상 & C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대출 가능 - 2.5% 고정금리('16.2학기 기준) - 학기당 10~100만원 생활비 대출 가능 -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선택 가능	한국 장학재단

자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철선 외(2016). 해외주요국의 청년정책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6. 재인용

주거 지원 제도는 대학생대상으로는 전세임대 주택('12)과 행복주택('14) 등이 운영 중이며, 교육부, 국토부, 기재부, SH 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각 지자체가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기숙사가 있다⁵⁾. 주거지원제도를 보면 임대주택, 기숙사 등 대부분이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고졸 및 대졸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주거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5)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www.kfpp.or.kr) 및 정부3.0 홈페이지(www.korea.go.kr/service/serviceInfo/B55145200001)에서 재구성

<표 2-8> 대학생 대상 주거 정책

종류	사업명	대상	내용	부처	
주거 지원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대학생, 100%이하 장애인 - (3순위) 1.2순위 비해당 대학생	- LH와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 체결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 * (13) 3,454호 3,879명 → (14) 3,000호 → (15) 3,000호 → (16) 5,000호	LH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상 - '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 호 중 5천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이 중 2천호는 '17년까지 입주추진) - 대학가 인근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	- 청년들의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LH	
	희망 하우스	-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서울시 총 1,038호 공급)	-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및 건설한 원룸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	SH	
	기숙사 건립 지원	행복 기숙사	-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 부경대(2000명), 15~17년까지 공급 확대(대학 밀집 도심 지역 중심-성북구 동소문동, 동대문구 휘경동)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50%씩 출자한 특수 목적법인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을 장기 저리 지원하여 다수 대학 학생들이 공동 사용	교육부, 기재부, 국토부, 사학진흥재단
		사립대 공공 기숙사	- 8개 대학 4,411명 지원 (경동대, 광운대, 단국대, 서영대, 서원대, 유한대, 충북보건과학대, 동의대)	- 사립대 캠퍼스에 공공기금을 장기 저리 지원하여 건립함	교육부, 국토부, 사학진흥재단
		재경 기숙사 (행복 학사)	- 본가 자방의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 국·공유지에 자방비 및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 출신 학생들이 공동 사용	- 해당 지역의 고교출신자, 친권자 주소지, 주소유지기간, 거주기간 등을 확인, 월 10~20만원	교육부, 기재부, 지자체, 사학진흥재단

자료: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www.kfpp.or.kr) 및 정부3.0 홈페이지(www.korea.go.kr/service/serviceInfo/B55145200001); 이철선 외(2016). 해외주요국의 청년정책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7. 재인용

고용지원정책은 기술 기반의 이공계 또는 스포츠 등 특정 전공 관련 고용지원정책은 다수인 반면 인문계 졸업생 관련 고용지원 정책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기준, 중앙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총 139개(고용노동부 2015)에 달하나, 이 중 청년실업 감소와 직접 관련된 청년일자리 사업은 79개이다. 고졸이상 취업준비생 관련 사업

18개, 대학재학생 관련 사업 21개, 대졸이상 취업준비생 관련 사업 26개, 청년고용지원 기업관련 사업 14개이다. 기타 기업 내 청년 근로자 지원 정책, 단발성인 연수성격이 강한 사업, 사업 대상의 연령이 중장년 등을 포함한 사업들은 제외하였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67개 사업의 예산을 모두 합하면 2015년의 경우 2.1조원으로 예산대비 사업(1개 평균 사업비 31억 원 정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고졸 취업준비생 대상 고용정책을 보면 대학생 대상 고용정책과 달리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부재한 반면, 중소기업 인턴제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18개 사업 중 진로 및 취업지원(6개)과 교육·훈련·인력양성사업(7개)이 가장 많다.

<표 2-9> 고졸 이상 취업준비생 대상 고용정책

종류	사업	대상	내용	부처
진로·취업지원 (6개)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청소년 및 성인 구직자	- 채용지원 서비스, 작업진로지도서비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8~34세 청년	- 취업상담, 훈련비지원, 프로그램 참여·훈련참여·취업성공 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15~34세 미취업 청년	- 취업준비 청년에게 3개월 이내 직장체험 기회 지원, 참여수당 월 40만원 수당 등	고용노동부
	스펙초월 멘토스쿨	15~34세 청년	- 잠재력 있는 인재 선발, 산업분야 전문멘토의 멘토링, 청년인재은행 등록 및 취업 매칭	고용노동부
	찾아가는 청년버스	19~39세 청년	- 상담버스 활용하여 일자리 및 진로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정보 제공	청년위원회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졸예정자 34세 이하 대학 졸업예정자	- 기업·대학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제공, 1인당 374만원 교육비 전액 지원, 연수 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고용노동부
교육·훈련·인력양성 사업 (7개)	기술·기능인력양성	비진학청소년 미취업자	- 교육훈련 비용, 훈련장려금(기능사 과정 등) 제공 (폴리텍 대학위탁)	고용노동부
	국가기간 전략산업직 종훈련	15세 이상 실업자 대학 최종학년	- 훈련생에 훈련장려금 월 316천원(취성패참여자 최대 6개월 월10만원 추가지원)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15~24세 학교 밖 청소년	- 훈련비용 지원, 훈련생에 자립수당 월30만원(훈련비, 기숙사비 무료)지원	고용노동부
	맞춤특기병제 내실화 및 확대	18~24세 고졸 이하 비진학·미취업 청년	- 입영 전(기술훈련비, 수당), 군 복무(특기 입영, 복무 중 자격 취득), 전역 후(취업지원, 복지 보장, 취업성공수당 지급)	병무청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방송제작, 마케팅에 관심 있는 예비인력	- 주5일 10개월 과정, 50명 교육비 전액, 취업연계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내일배움카드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 구직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고용노동부

제 1 절 한국의 청년 고용 및 정책 현황

종류	사업	대상	내용	부처
			관리	
	청년일자리 지원 오션플라텍 양성과정	해기사가 되고자 하는 일반인	- 외항상선3급(9개월, 1,020만원), 원양어선3급(8개월, 345만원), 내항상선5급(5개월, 250만원)	해양수산부
일자리 창출· 인턴제 (2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5~34세 미취업 청년	- 인턴기간 3개월간 매월 6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390만원 정액지원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제도	고교졸업 만 18세 전후	- 공통적합직무 외 기관 특성에 맞는 적합직무 적극 발굴	기획재정부
창업 지원 (3개)	ICT 분야 재도전 창업 사업화 지원	재도전기업인이 참여하는 ICT분야 중소벤처 및 창업예정자	- 계획수립, 아이템구현, 사업성분석, 사업화 등 각 단계별 예산 지원	미래창조 과학부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창업예정자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대표자	- 해외 창업자에게 전문가 특강, 공간 제공, 멘토링, 체제비 지원 등의 현지 보육	중소기업청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벤처기업(예비)창업 자, 창업경진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 연기	병무청

자료: 고용노동부(2015).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 고용정책; 김지경 외(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 전략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철선 외(2016). 해외주요국의 청년정책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9. 재인용

대학생 대상 고용정책은 특정학과 중심 교육·훈련·인력양성사업(6개)과 연수중심 해외인턴 및 취업지원사업(5개)을 제외 시 일반 대학생 사업은 약 10개이다. 총 21개 사업 중 진로 및 취업지원(6개)과 교육·훈련·인력양성사업(6개)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표 2-10> 대학 재학생 대상 고용정책

종류	사업명	대상	내용	부처
진로 및 취업지원 (6개)	취업지원관 사업	- 4년제 - 전문대학	- 취업전문 취업지원관 인건비 최대 60% 지원, 73개 대학에 116명 취업지원관 배치, 지원	고용노동부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 대학 - 산업대학 및 - 전문대학	- 대학은 공간·시설 제공, 운영기관은 민간건설 턴트 채용, 정부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 대학졸업예정자 - 3년 이내 미취업자	- 중소기업 현장 실무교육과 중소기업 취업연 계를 위한 취업·면접 교육과 잡페어 개최 등 지원	중소기업청
	여대생커리어 개발 지원 사업	- 여대생 - 지역사회 청년여성	- 젠더의식 강화훈련, 개인별 커리어코칭, 직 무능력훈련 등 여대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제공	여성가족부
	사이버멘토링 운영	- 여대생 - 취업준비여성	- 온오프라인 멘토링, 성공여성 공개멘토링, 온라인 1:1 매칭, 그룹멘토링	여성가족부
	동영상 멘토링 팟캐스트	- 대학생	-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온	청년위원회

제 2 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종류	사업명	대상	내용	부처
		- 사회초년생	라인멘토링 프로그램 제작, 방송	
교육·훈련 · 인력양성 사업 (6개)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 한국기술교육대 학부생	- 직업훈련교원 양성경비(재료비, 실험실습비 등), 장기현장실습 경비지원	고용노동부
	의과학자육성 지원사업	- 의·치의·한의대 재학 중 의과학자 과정 대학원생	- 연 등록금 전액(실 납입액) 및 교육연구지원비(5백만원)지원(최대 7년간)	교육부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교육훈련(집합교육+현장교육+해외교육)	환경부
	생태 독성·위해성 평가전문인력 양성사업	-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자(석박사 포함)	- 환경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비 전액, 생태위해성 평가 전문가과정 운영	환경부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 공모 선정된 고교·전문대·대학(원) 재학생	- 국내외 현장실습·견학, 인턴, 전문가 특강, 장학금, 물류장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	국토교통부
	해운항만물류인력 신학연계지원사업	-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 4개 선정 대학생	- 6개월간 기업특강 등 사전교육 실시 4~6주 인턴실습기간 체재비, 지원금 지원	해양수산부
해외 인턴 및 취업지원 (5개)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 대학·전문대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	- 왕복 항공료 지원, 참가비, 체재비를 소득이나 인턴십 조건에 따라 차등지원(12개월)	교육부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재학생 (4학기 이상 수료)	- 연간 150명에게 4~6개월간 220~450만원 지원	교육부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 전문대 대학생 (2학기 이상 수료)	- 연간 550명에게 4~6개월간 개인당 400~750만원 지원	교육부
	ODA 청년인턴	- 18세 이상 미취업자	- KOICA 해외사무소 및 ODA사업수행기관 청년 인턴 고용비용, 해외상주 파견 출장 경비 지원	외교부
	월드 프렌즈 코리아	- KOICA 봉사단 등 해외봉사 사업 참여자	- 생활비, 주거비, 국내정착금 등 KOICA봉사단(2년), 과학기술지원단(1년)	외교부
창업지원 (4개)	창업인턴제	- 대학(원)재학생 - 미취업 졸업생	- 멘토링 비용(월90만원 1년+1년 연장), 인턴근무 종료 후 창업자금지원(최대 1억원)	중소기업청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 창업 희망 대학생 - 창업동아리	- 학점인정형 실전창업강좌 제공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창업자 - 창업희망대학생	- 시제품개발비 등 사업화자금(10개월 내 의)·창업경진대회·투자상담회 등 지원	중소기업청
	예비창업자 창업 아카데미	- 대학생 - 예비창업자	- 실전창업교육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중소기업청

주: 단발성 연수성격이 강하거나, 재직자 및 연령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은 제외함
 자료: 고용노동부(2015).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 고용정책; 김지경 외(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 전략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철선 외 (2016). 해외주요국의 청년정책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0. 재인용

대졸 취업준비생 대상 고용정책은 인문계 미취업자보다는 이공계·대학원 졸·문화 및 스포츠 등 과학 및 기술 중심의 고용지원 정책 사업이 다수이다. 총 34개 사업 중 교육·훈련·인력 양성(9개)과 해외 인턴 및 취업지원(9개), 일자리 창출·인턴 사업(8개)이 2/3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훈련·인력양성 사업(9개)의 경우, 이공계 또는 대학원생이 중심이며, 일

자리 창출·인턴제의 경우 문화·스포츠 전공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1> 대졸 이상 취업준비생 대상 고용정책

종류	사업	대상	내용	부처
진로·취업지원(3개)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 이공계 졸업 미취업 대학생	- 지식재산서비스 전문 인력으로 양성교육, 채용 지원(교육기관:1개월)	특허청
	여성재도일하기 센터 운영	- 취업희망 여성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직업교육훈련·인턴쉽·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취업 연수지원사업	- 대학 졸업(예정)자	- 매회 60명, 84회 운영(5,000명), 1인 600천원 - 중소기업 인식제고를 통한 취업연계	중소기업청
교육·훈련·인력양성사업(9개)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	- 이공계 졸업자(공업고 학사, 석사)	- 1인당 월 110~150만원, 채용일로부터 11개월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 이공계 대졸 - 32세 미만 미취업자	- 전문연수(4개월 이내), 기업연수(2개월 이내)	미래창조과학부
	핵심연구 분야 우수인력 발달사업	- 이공계 박사	- 1인당 연간 50백만원(법정부담금 별도), 채용일로부터 2년간 정부출연연 연수기회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 대학 및 복수 기업 컨소시엄 선정	- 석사과정 전액 지원(정부지원+대학·기업 매칭 펀드), 수료 후 참여기업 2년간 의무 근무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사업	- 경력단절 및 학위취득 후 미취업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여성과학기술인-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매칭 후 R&D 복귀과제 지원, 재취업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이러닝 인력양성	- 재직근로자 및 미취업자	- 이러닝산업 직무계층별 교육과정 운영, 신규 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
	생물자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	- 미개척 전공 석박사과정,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 경영 등 관련분야 석박사	- 인건비 지급 및 1개월 이상 국외연수 지원, 석사 1천5백만원 이내, 박사 2천만원 이내, 융합과제 5천만원 지원	환경부
	항공인력양성사업	- 항공안전검사 1종 토의 700점 이상 군필(면제)자	- 항공 조종인력, 특성화대 석박사급 인력, 항공 인턴 및 기초인력 4개분야 총 500여명 인력 양성	국토교통부
U-City 인력양성사업	- 관련학과 졸업생(예정자)의 석박사급 인력	-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연구 비용, 인턴십과 실습 지원	국토교통부	
일자리 창출·인턴제(8개)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 15~34세 청년	- 인턴의 최소 70%이상 정규직 채용	기획재정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사, 해당 예술분야 전공자	- 인건비 월 1,184천원(10개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 17개시도/사군구 생활체육지도사	- 인건비 및 활동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 체육지도자	- 인건비 월 1,854천원, 11개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 특수체육전공자	- 수당, 인건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제 2 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종류	사업	대상	내용	부처
	박물관 진흥지원	- 사립박물관 학예사, 교육인력	- 학예인력(월 138만원), 교육인력(월 125만원) 연중 채용	문화체육관광부
	이공계대 인턴ship운영	- 이공계-농학계 대학 석사학위 취득후 5년 미경과자	- 기간 1년~최대 2년 이내, 임금 월 170만원 및 보험료 일부와 초과근무 수당 지원, 해당 연수과제에 연구원으로 참가	농촌진흥청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 이공계 석박사 취득 후 3년 이내자	- 기업별 2명씩 최대 3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인턴 및 취업 지원 (9개)	해외산립인턴지원	- 35세 이하 산림관련 대졸 미취업자	- 체재비, 왕복 항공료, 파견준비비 지원	산림청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 농과계대학 재학생, 졸업생	- KOPIA 연구원 체재비, 항공료, 파견준비비 지원	농촌진흥청
	교사대 졸업자 해외 진출	- 미임용 수학과학 2급 정교사	- 10개월간 2000만원 지원	교육부
	K-Move 스쿨	- 34세 이하 미취업자	- 양질의 해외 일자리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1인 최대 8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K-Move 멘토단 운영	- 34세 이하 미취업자	- 해외에서 2년 이상 취·창업 경험자를 멘토로 해외 취업 필요사항 온·오프라인 멘토링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알선	- 34세 이하 미취업자	- 해외취업 희망자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고용노동부
	해외 인턴	- 34세 이하 미취업자	- 해외인턴 청년들에게 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용 등 지원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성공 장려금	- 34세 이하 - 소득 8분위 이하	- 취업 1개월 후 150만원 - 6개월 후 추가 1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등 청년해외진출 사업 확대	- 연령, 학력, 병역제한 없음 - 수출입은행 인사규정에 결격사유 없는 자	- 5개월간 수출입은행 해외지점에 인턴으로 근무하며 비용 일체 지원	기재부
창업 지원 (5개)	지적재산권 활용한 청년벤처창업활성화	- 이공계 졸업 미취업 대학생	- 지식재산서비스 채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특허청
	청년창업사관학교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창업공간,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청
	청년창업특례보증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7천만 원까지 보증	중소기업청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 2인 이상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미만 기업	- 선도벤처기업 내 입주하여 창업보육지원 - 투자, 구매, 마케팅 등 협력 비즈니스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연 2.9% 고정, 5년(2년 거치), 1억원 한도	중소기업청	

자료: 고용노동부(2015).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 고용정책; 김지경 외(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 전략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철선 외(2016). 해외주요국의 청년정책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31-32. 재인용

청년관련 기업지원 정책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한 청년 훈련과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중심 사업으로 현재 15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창업관련 지원 기관 사업(8개)이 가장 많고, 교육·훈련·인력양성(5개),

일자리창출·인턴제(3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2> 대졸 이상 취업준비생 대상 기업지원정책

종류	사업명	대상	내용	부처
교육· 훈련· 인력 양성 사업 (4개)	일학습병행제	- 학습근로자 채용 기업	- 취업과 훈련을 희망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1~4년간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및 학습자 지원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 근로자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 시설·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고용노동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중소기업 사업주	- 사업주가 계약학과 운영 대학(이공계열)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비용 제공	고용노동부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기업·대학	- 공동기술개발 과제 지원(학생 5명 이상 참여, 지원금의 4~50% 인건비로 지원)	교육부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중소기업	- 학사급 이하의 기술개발인력(연구전담요원 자격) - 최대 2년동안 기업별 2명 이내, 1인당 최대 1.650만원(학사기준)	중소기업청
일자 리 창출· 인턴 제 (3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제도	- 해당 시도 단위 기준으로 설정	- 전년 대비 목표비율 설정, 달성계획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공공·국립도서관, 국립박물관 현대미술관	- 월 근로시간 160~209시간, 월 120~155만원, 4대보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 장년고용유자+청년정규직(신규)	- 장년고용유자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1쌍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연 540만원)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창업 지원 (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예비창업자/벤처기업	-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연계, 판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 국내 엑셀러레이터	- 해외 엑셀러레이터와 공동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대학교, 학생 등 대학사회 전반	-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산, 전문가 연수, 멘토링 체제 구축, 창업 EXPO 지원	교육부
	학교기업지원사업	- 대학, 전문대, 특성화고 내 학교기업	- 현장실습비, 신제품제작 등 학교기업 사업비 지원	교육부
	대학 기업가센터	- 4년제 대학 기업가센터	- 연간 센터당 5억원 내외(6년간)	중소기업청
	청년기업가 연대보증 폐지	- 창업자금 및 정책자금 연대보증	-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 확대	중소기업청
	대한민국 창업리그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 창업기업	- 상금(최대 1억원) 및 부상품, 멘토링, 투자유치, 해외연수 지원	중소기업청
청년가젤형 기업지원	- 3년 평균 고용증가율 또는 매출증가율 20%이상 기업	- 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시설8년, 운전 5년), 해외마케팅 비용(1년), 기술개발 자금(2년) 지원	중소기업청	

주: 기업 내 재직자 중심 훈련 사업은 제외함

자료: 고용노동부(2015).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 고용정책; 김지경 외(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 전략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철선 외(2016). 해외주요국의 청년정책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3. 재인용

(2) 청년정책의 문제점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제공 등 고용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현재의 청년 문제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기반이 되는 소득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때 일자리 등 고용지원이 핵심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일자리 제공 중심의 청년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정책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청년 실업자나 대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고용지원정책은 고졸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대상특성에 따라 별도의 방안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지만 대부분 취업지원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구직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니트(NEET)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경제활동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나, 취업준비생, 니트(NEET) 등이 정책대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주거지원이나 생활비 지원 등 사회정책적 지원제도는 주로 대학재학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학졸업자의 경우 수혜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거의 경우 저출산 심화로 신혼부부 주택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결혼하지 않은 청년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본인 소득이 없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이나 부모 피부양 청년 중에 부모의 소득이 불충분한 저소득가구의 청년 등이 바로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년부양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 또한 미흡하다.

따라서 즉 미취업 청년과 더불어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인 근로빈곤 청년까지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모의 청년자녀 부양기간이 길어지고 부양부담이 커지는 문제, 즉 부모 피부양 청년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인 소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저소득층인 근로빈곤 청년층이 부모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청년자녀가 취업한 이후에도 부모의 부분적 부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년을 부양하는 가족의 자녀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세대의 비혼, 만혼으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2절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1. 청년정책과 대상 범주

이철선 외(2016, p.21)는 청년대상의 정책 범위가 고용정책을 넘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하여 청년이 복지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존에는 자립의지와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청년들은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이철선 외 2016, p.21).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하면 복지 대상은 모든 국민이며, 실업, 빈곤, 교육, 주거 등의 복지정책에 청년층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철선 외 2016, p.21)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지속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양극화 등 청년층이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청년층의 결혼 기피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청년층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 취업에만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 단계에서 청년세대가 속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층에 따른 격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 정책은 청년세대의 학업-취업-결혼에 이르는 전생애주기에 대해 독립적인 생활기반을 가지지 못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교육정책, 고용정책, 공공부조, 주거정책 및 의료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청년정책 대상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 이외에 저소득층 청년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2.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청년정책 대상 규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으며,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본인의 명의로 의무가입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청년과 소득이 없는 청년을 구분하기 적절한 정보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세대주, 의료급여세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본인은 자기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는 자기소득이 없는 가입자이다.

분석대상 연령은 19세-34세로 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고려하여 시작 연령을 19세부터로 정하였다. 34세를 상한으로 한 것은 해외 각국의 청년연령 규정 중 일본의 프리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 들로 인해 청년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하여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책대상 규모 추정은 19세~34세를 기반으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25세-34세 집단, 19세-25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5세에서 34세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고용을 고려할 때 주로 대학졸업 이후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25세 이후에는 대부분 취업 등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19세-24세는 후기청소년기로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이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어 25세-34세과 구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1) 청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추이:2002년-2015년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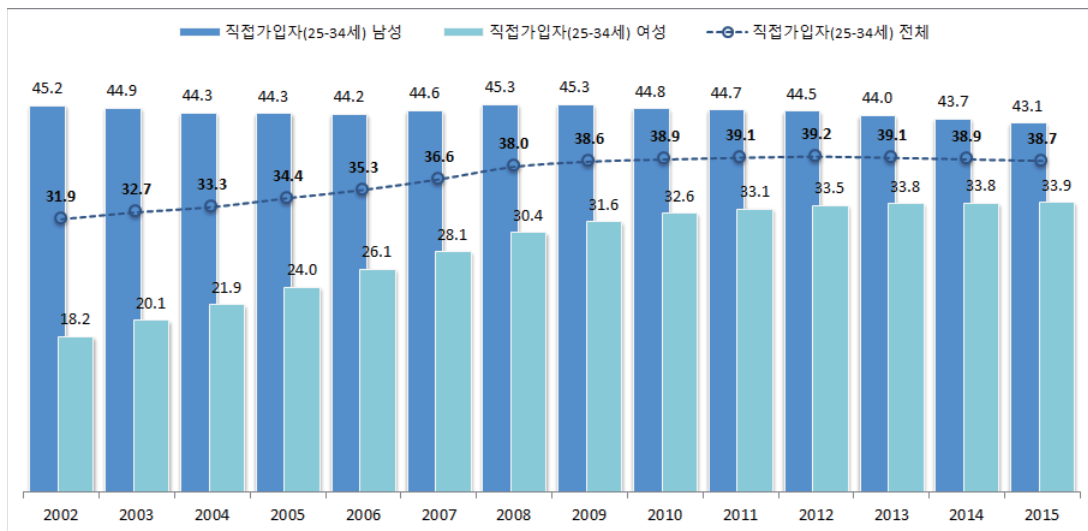
먼저 2002년에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추이를 살펴 보았다. 연령은 25세-34세, 19세-24세로 구분하였으며, 가입자격은 본인명의 직접가입자와 부모피부양자로 나누었다. 본인명의 가입자는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로 본인의 소득이 발생할 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부모피부양자는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로 본인의 소득이 없어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들이다.

아래 [그림 2-6]과 [그림 2-7]은 25세-34세 청년의 직접가입자 및 부모 피부양자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25-34세 청년의 직접가입자 비율은 2002년 31.9%에서 2012년까지 39.2%까지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3년에는 39.1%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38.9%로 하락하였고

6) 청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추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부록1 참조

2015년에는 38.7%까지 하락하였다. 직접가입자 비율은 2002년부터 2015년 두 시점을 비교하면 6.8%p 상승하였으나 2014년 이후 연속 하락하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직접가입자 비율은 일정 기간 상승하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직접가입자 비율의 성별 격차이다. 즉, 청년 여성의 직접가입자 비율은 기간 내내 청년 남성 보다 낮았다. 단, 격차는 매년 감소하여 2002년 기준 청년여성이 청년남성 보다 18%p 직접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에 비해 2015년에는 격차가 9.2%p로 축소되었다. 청년남성의 직접가입자 비율이 큰 변동이 없는 것에 비해 청년 여성의 직접가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앞서 확인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 기간 동안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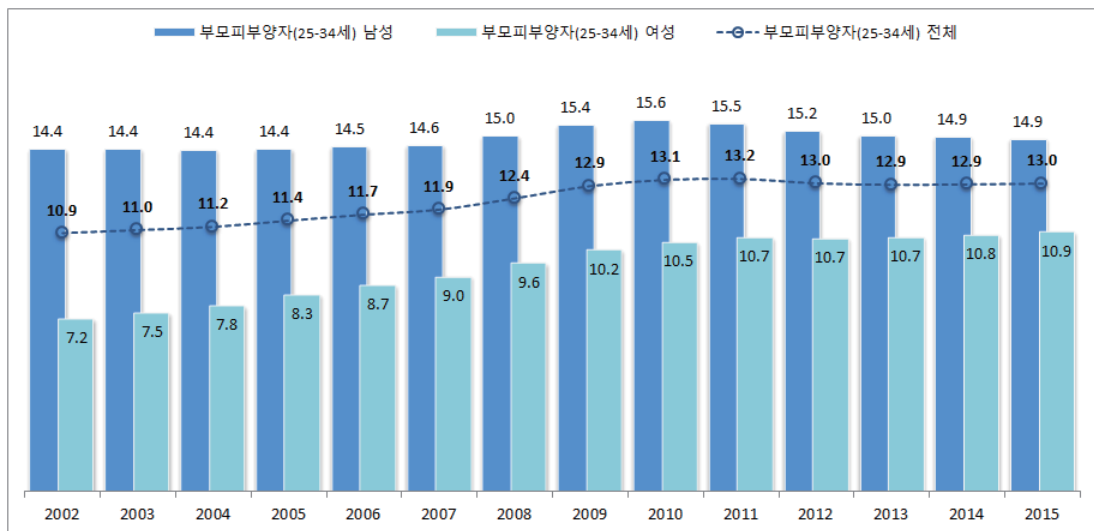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5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그림 2-6] 국민건강보험 직접가입자(25-34세)

25-34세 청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부모피부양자 비율은 2002년 10.9%에서 2011년까지 13.2% 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2년

에는 13%, 2013년과 2014년은 12.9%, 2015년은 13%로 2012년 이후 13%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 성별로는 2002년부터 2015년 전 기간 동안 청년남성의 부모피부양자 비율이 청년여성 보다 높은 가운데 청년남성의 부모피부양자 비율은 2002년 14.4%에서 2010년 15.6%로 상승한 이후부터는 전년 대비 0.1~0.3%p 내외로 하락하고 있다. 청년여성은 청년남성과 달리 2002년 7.2%에서 2015년 10.9%까지 해당 기간 동안 전년 대비 하락 없이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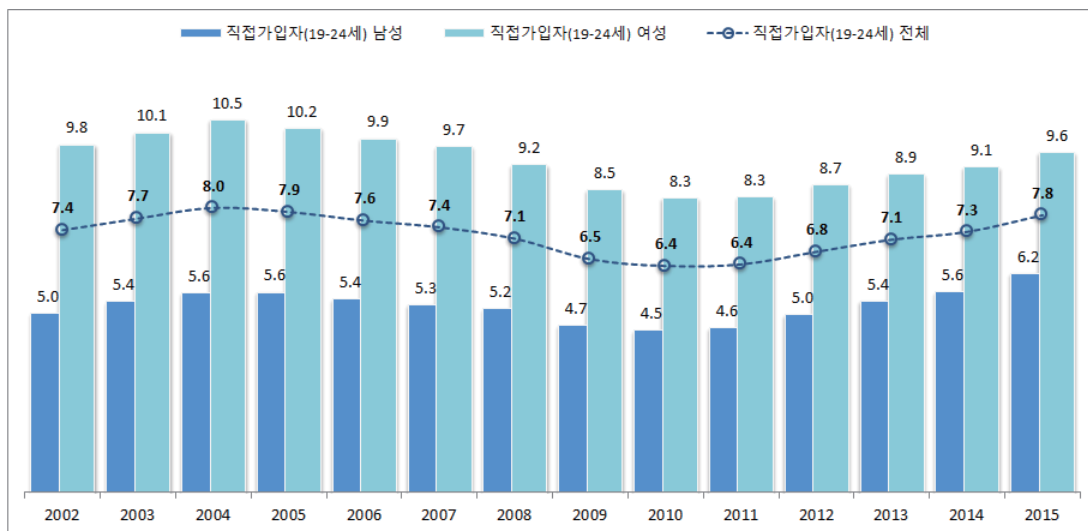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5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그림 2-7] 국민건강보험 부모피부양자(25-34세)

아래 [그림 2-8]과 [그림 2-9]는 19세-24세 청년의 직접가입자 및 부모피부양자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24세 청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접가입자 비율은 2002년 7.4%에서 2011년까지 6.4%까지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12년부터는 전년 대비 0.3%p 상승하여 연속하여 상승하고 있다. 2015년 25-34세 청년의 직접가입자 비율은 7.8%이다.

19-24세 성별 직접가입자 비율은 앞서 본 25-34세와 동일하게 청년남성이 청년여성 보다 높은 것은 일치하였으나 가입 비율 추세가 남

녀가 동일한 것은 달랐다. 즉, 19-24세 청년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남녀 모두 2004년 직접 가입 비율이 남성 10.5%, 여성 8.0%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부터는 2010년까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는 청년 남녀 모두 직접 가입자 비율은 상승하여 2015년 기준 청년남성은 9.6%, 청년여성은 6.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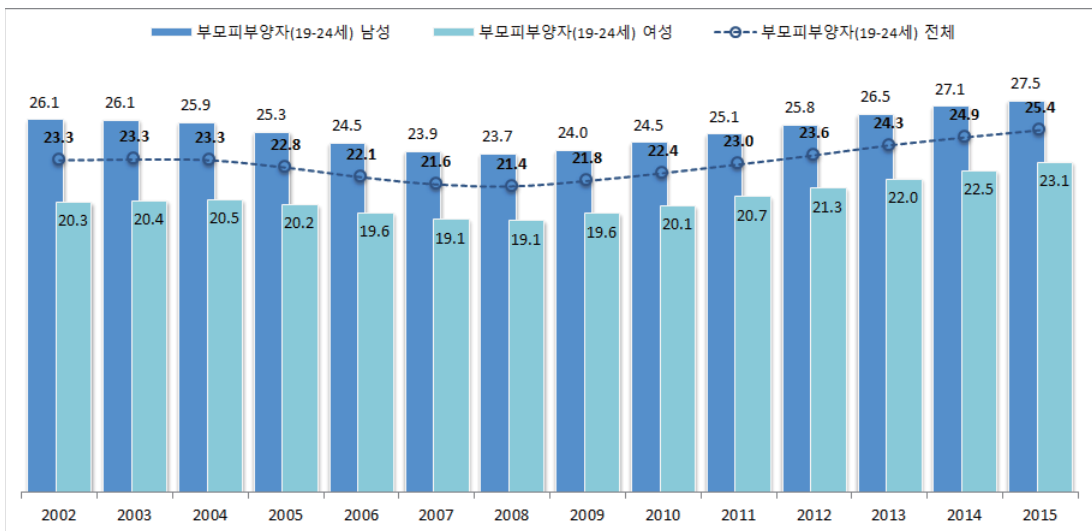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5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그림 2-8] 국민건강보험 직접가입자(19-24세)

19-24세 청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부모피부양자 비율은 2002년 23.3%에서 2008년까지 21.4%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09년부터는 전년 대비 매년 상승하여 2015년은 25.4%이다. 성별로는 2002년부터 2015년 전 기간 동안 19-24세 청년남성의 부모피부양자 비율이 청년여성 보다 높았다. 19-24세 청년남성의 부모피부양자 비율은 2002년 26.1%에서 2008년 23.7%까지 하락하다 이후 연도부터는 전년 대비 매년 상승하여 2015년에는 27.5%가 부모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청년여성도 청년남성과 유사하게 2002년 20.3%에서

2007년과 2008년 19.1%까지 하락하다 이후 부모피부양자 가입 비율이 상승하여 2015년에는 23.1%이다. 25-34세는 부모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이후 하락 내지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19-24세는 부모피부양자 가입 비율이 2010년 이후 성별에 관계없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연령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5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그림 2-9] 국민건강보험 부모피부양자(19-24세)

(2) 25세-34세 연령

우선 25세-34세 연령의 청년 가운데 청년정책 대상규모를 추정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규모를 파악하고 2010년과 대비하여 변화여부를 살펴보았다.

1) 2015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25-34세 연령의 청년은 2015년 기준 총

7,158,761명이다. 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입자의 가구소득을 추정하고 중위소득 기준 40%이하(최저생계비)인 규모,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인 규모를 추출하였다⁷⁾. 그런데 건강보험료 산정시 지역보험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등이 모두 고려되어 부과되는 반면 직장보험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구소득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납부하는 근로자 규모를 산출하여 제외하고, 이들을 중위소득 50%이하 집단으로 산입하여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5년의 25세-34세 청년의 가입자별 소득수준별 규모는 다음 <표 2-13>과 같다.

우선,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의료급여 대상자 포함)에서 정책대상이 되는 청년 규모는 1,819,029명으로 25세-34세 전체의 25.4%에 달한다. 이중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1,181,939명으로 25세-34세 청년전체의 16.5%이다.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369,196명으로 5.2%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인 25-34세 청년은 50,886명이다. 다음 전체 청년가운데 본인 소득이 없으면서 부모의 부양을 받는 자녀는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자녀인 경우로 총 1,469,997명, 20.5%에 해당한다.

7) 월 납부 보험료액수를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중위40%이하)와 차상위(중위50%이하) 규모를 추출함. 중위40%와 중위50%는 보건복지부의 3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산정기준표에 근거, 보험료 납부액이 0원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2015년 기준 표는 아래와 같음

	중위40%	직장	지역	중위50%	직장	지역
3인 가구	1,359,688	41,287	18,495	1,631,626	49,488	28,087

자료: 보건복지부(201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표 2-13>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단위: 명)

구분	전체 규모	2015년		근로소득세만 적용		2015년 종합소득 포함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50% 초과		
지역 세대주	586,159	112,282	177,608	112,282	177,608	112,282	177,608	408,551		
지역 세대 원	자녀	722,756	88,621	117,010	88,621	117,010	88,621	117,010	605,746	
	그외	384,402	44,045	64,097	44,045	64,097	44,045	64,097	320,305	
직장가입자	3,799,929	598,365	1,035,829	555,283	961,249	555,283	961,249	+43,082*	2,795,598	
직장 피부 양자	자녀	747,241	185,657	257,348	172,290	238,819	172,290	238,819	+13,367*	495,055
	그외	867,388	99,553	157,051	92,385	145,743	92,385	145,743	+7,168*	714,477
의료급여세대주		27,130				27,130		-		
의료급여세대원		23,756				23,756		-		
합계	7,158,761	1,179,409	1,859,829	1,115,792	1,755,413	1,115,792	1,819,029	5,339,732		
비율	-	16.5%	26.0%	15.6%	24.5%	15.6%	25.4%	74.5%		

주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비율 7.2%(2015년 기준)를 중위소득기준 40%이하 규모에서 제외하고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규모로 산입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이들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14>와 같다.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규모는 남성 871,676명, 여성 947,354명으로 25-34세 성별에 따른 전체 청년 중 각각 23.5%, 27.4%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남성 560,269명, 여성 621,672명으로 25세-34세 성별 간 청년전체규모 대비 15.1%와 18.0%이다. 즉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남성보다 청년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남성 215,592명으로 전체 남성 중 5.8%이며, 여성은 153,604명으로 4.4%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인 청년은 남성 24,953명, 여성 25,933명으로 여성이 좀 더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다음 전체 청년 가운데 본인 소득 없이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은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자녀인 경우로 남성 877,367명(전체 남성 중 23.7%) 여성 592,630명(전체 여성 중 17.2%)이다.

<표 2-14> 성별에 따른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단위: 명, %)

구분	2015년 남성(25-34세) 종합소득 포함				2015년 여성(25-34세) 종합소득 포함				
	전체 규모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50% 초과	전체 규모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50% 초과	
지역세대주	356,956	58,579	93,364	263,592	229,203	53,703	84,244	144,959	
지역 세대원	자녀	420,808	42,542	58,644	362,164	301,948	46,079	58,366	243,582
	그외	86,989	16,297	22,274	64,715	297,413	27,748	41,823	255,590
직장가입자	2,189,588	251,651	466,905	1,722,683	1,610,341	303,631	537,428	1,072,913	
직장 피부양자	자녀	456,559	107,419	156,948	299,611	290,682	64,871	95,238	195,444
	그외	168,701	28,534	48,589	120,112	698,687	63,851	104,322	594,365
의료급여세대주		12,700		-		14,430		-	
의료급여세대원		12,253		-		11,503		-	
합계	3,704,554	529,975	871,676	2,832,878	3,454,207	585,816	947,354	2,506,853	
비율		14.3%	23.5%	76.5%		17.0%	27.4%	72.6%	

주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비율 7.2%(2015년 기준)를 중위소득기준 40%이하 규모에서 제외하고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규모로 산입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2) 2010년

2010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25세-34세 청년은 총 7,817,468명이며, 소득수준별 규모는 다음 <표 2-15>와 같다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규모는 2,240,949명으로 25세-34세 전체의 28.7%에 해당한다. 본인소득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1,467,275명으로 25세-34세 청년전체의 18.8%이다.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372,655명으로 4.8%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인 25-34세 청년은 66,479명이다. 전체 청년가운데 본인 소득이 없으면서 부모의 부양을 받는 자녀는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가입자와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로 총 1,522,545명, 19.5%에 해당한다.

<표 2-15>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0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규모	2010년		근로소득세만 적용		2010년 종합소득 포함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50% 초과		
지역 세대주	824,868	164,577	292,293	164,577	292,293	164,577	292,293	532,575		
지역 세대원	자녀	824,926	63,954	106,221	63,954	106,221	63,954	106,221	718,705	
	그외	558,337	51,222	89,486	51,222	89,486	51,222	89,486	468,851	
직장가입자	3,680,933	790,121	1,199,984	741,924	1,126,785	741,924	1,126,785	+48,197*	2,505,951	
직장 피부양자	자녀	697,619	220,559	269,414	207,105	252,980	207,105	252,980	+13,454*	431,185
	그외	1,164,306	170,390	249,904	159,996	234,660	159,996	234,660	+10,394*	919,252
의료급여세대주	36,893					36,893			-	
의료급여세대원	29,586					29,586			-	
합계	7,817,468	1,527,302	2,273,781	1,455,257	2,168,904	1,455,257	2,240,949	5,576,519		
비율	-	19.5%	29.1%	18.6%	27.7%	18.6%	28.7%	71.3%		

주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비율 6.1%(2010년 기준)를 중위소득기준 40%이하 규모에서 제외하고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규모로 산입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2010년 25세-34세 청년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총 4,003,567명 여성 총 3,813,901이다. 그 중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규모는 남성 1,112,214명, 여성 1,128,733명으로 각각 25세-34세 성별에 따른 전체규모의 27.8%와 29.6%에 해당

한다.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남성 742,202명으로 25-34세 전체 청년남성 중 18.5%이며, 여성은 725,073명(19.0%)으로 2010년과 2015년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근로상황이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남성 227,794명(전체남성 중 5.7%), 여성 144,861명(전체여성 중 3.8%)이며, 의료급여 대상자인 25-34세 청년은 남성 31,518명, 여성 34,961명이다. 전체 청년 가운데 본인 소득이 없으면서 부모의 부양을 받는 자녀는 남성 932,649명으로 전체남성 중 23.3%를 차지하며, 여성은 589,896명으로 15.5%에 해당한다.

<표 2-16> 성별에 따른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0년)

(단위: 명, %)

구분	2010년 남성(25-34세) 종합소득 포함				2010년 여성(25-34세) 종합소득 포함				
	전체 규모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50% 초과	전체 규모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50% 초과	
지역세대주	519,773	86,911	156,345	363,428	305,095	77,666	135,948	169,147	
지역 세대원	자녀	508,420	35,084	61,332	447,088	316,506	28,870	44,889	271,617
	그외	103,054	18,302	27,669	75,385	455,283	32,920	61,817	393,466
직장가입자	2,151,510	360,353	585,857	1,565,653	1,529,423	381,571	589,125	940,298	
직장 피부양자	자녀	424,229	129,819	166,462	257,767	273,390	77,286	99,972	173,418
	그외	265,063	53,621	83,031	182,032	899,243	106,376	162,022	737,221
의료급여세대주		17,254		-		19,639		-	
의료급여세대원		14,264		-		15,322		-	
합계	4,003,567	715,607	1,112,214	2,891,353	3,813,901	739,650	1,128,733	2,685,168	
비율		17.9%	27.8%	72.2%		19.4%	29.6%	70.4%	

주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비율 6.1%(2010년 기준)를 중위소득기준 40%이하 규모에서 제외하고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규모로 산입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3) 2010년과 2015년 비교

25세-3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28.7%에서 2015년 25.4%로 3.3%p 감소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율이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청년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 역시 2010년 18.8%에서 2015년 16.5%로 2.3%p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부양을 받는 25세-34세 청년 규모는 2010년 19.5%에서 2015년 20.5%로 1.0%p 늘어났다.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부모피부양 청년 역시 2010년 4.8%에서 2015년 5.1%로 증가하였다.

또한 주목할 점은 청년정책 대상 집단인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25세-34세 청년을 모집단으로 할 때 부모 피부양 청년의 비중이 2010년 16.6%에서 2015년 20.3%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저소득집단에 해당하는 부모에 의존하는 쉼터가족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성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5년 청년정책대상규모의 경우 남성 23.5%, 여성 27.4%로 여성이 약 4%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쉼터가족 규모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쉼터가족 중 부모소득이 중위 50%이하인 비율 역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청년남성의 부모소득이 청년여성의 부모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에 직접가입 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가입자 중 본인소득이 중위 50%이하인 남성은 15.1%, 여성은 18.0%로 청년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세대 중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17> 25-34세 청년정책 대상 2010년과 2015년 비교

(단위: %)

구분	2010년			2015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중 청년정책대상 (중위50%이하)	28.7	27.8	29.6	25.4	23.5	27.4
전체 중 본인소득 중위50%이하 규모 ¹⁾	18.8	18.5	19.0	16.5	15.1	18.0
전체 중 부모피부양 청년규모 (갱거루족) ²⁾	19.5	23.3	15.5	20.5	23.7	17.2
중위50%이하 중 부모피부양 자녀 ²⁾	16.6	20.5	12.8	20.3	24.7	16.2

주 1) 본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규모만 고려함

2)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 중 가입자와의 관계가 ‘자녀’로 속해있는 규모만 고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2015년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3) 19세-24세 연령

두 번째로 19세-24세 연령 청년 가운데 청년정책 대상규모를 추정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규모를 파악하고 2010년과 대비하여 변화 여부를 살펴보았다.

1) 2015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19세-24세 연령의 청년은 2015년 기준 총 4,170,567명이다. 다음 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입자의 가구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수준별 규모를 알아보았다. 2015년의 19세-24세 청년의 가입자별 소득수준별 규모는 다음 <표 2-18>과 같다.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 규모는 1,343,365명으로 19세-24세 전체의 32.2%에 해당한다. 이 중 본인소득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19세-24세 저소득 청년은 534,052명으로 19세-24세 청년 전체의 12.8%이다. 그리고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589,619명으로 14.1%이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인 19세-24세 청년은 107,392명이다. 다음 전체 청년 가운데 본인 소득이 없으면서 부모의 부양을 받는 19세-24세 자녀는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자녀인 경우로 총 2,877,198명, 69.0%에 해당한다.

<표 2-18>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규모	2015년		근로소득세만 적용		2015년 종합소득 포함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50% 초과		
지역세대주	101,759	48,298	63,138	48,298	63,138	48,298	63,138	38,621		
지역 세대원	자녀	866,072	35,804	64,791	35,804	64,791	35,804	64,791	801,281	
	그외	117,347	27,177	37,424	27,177	37,424	27,177	37,424	79,923	
직장가입자	780,349	315,228	482,993	292,532	448,218	292,532	448,218	+22,696	309,435	
직장 피부양자	자녀	2011,126	381,672	535,935	354,192	497,348	354,192	497,348	+27,480	1,486,298
	그외	186,522	46,540	77,077	43,189	71,527	43,189	71,527	+3,351	111,644
의료급여세대주		30,904				30,904			-	
의료급여세대원		76,488				76,488			-	
합계	4,170,567	962,111	1,368,750	908,583	1,289,838	908,583	1,343,365	2,827,202		
비율		23.1%	32.8%	21.8%	30.9%	21.8%	32.2%	67.8%		

주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비율 7.2%(2015년 기준)를 중위소득기준 40%이하 규모에서 제외하고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규모로 산입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이들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19>와 같다.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규모는 남성 663,795명, 여성 679,571명으로 19-24세 성별 간 전체 청년 중 각각 30.2%, 34.5%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

제2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남성 211,988명으로 전체 청년남성 중 9.6%이며, 여성은 322,064명으로 전체 청년여성 중 16.3%에 해당한다. 즉 저소득층 내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규모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남성보다 청년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남성 335,582명으로 전체 남성 중 15.3%이며, 여성은 254,037명으로 12.9%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남성 55,202명, 여성 52,190명으로 남성이 좀 더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다음 전체 청년 가운데 본인 소득 없이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은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자녀인 경우로 남성 총 1,621,028명(전체 남성 중 73.7%) 여성 총 1,256,170명(전체 여성 중 63.7%)으로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빠른 사회진출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2-19> 성별에 따른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단위: 명, %)

구분	2015년 남성(19-24세) 종합소득 포함				2015년 여성(19-24세) 종합소득 포함				
	전체	중위40%	중위50%	중위50%	전체	중위40%	중위50%	중위50%	
	규모	이하	이하	초과	규모	이하	이하	초과	
지역세대주	59,054	30,445	38,029	21,025	42,705	17,853	25,109	17,596	
지역 세대원	자녀	491,357	20,871	37,301	454,056	374,715	14,933	27,490	347,225
	그외	56,417	14,118	19,412	37,005	60,930	13,059	18,012	42,918
직장가입자	304,592	107,863	173,959	130,633	475,757	184,668	296,955	178,802	
직장 피부양자	자녀	1,129,671	201,250	298,281	831,390	881,455	152,942	226,547	654,908
	그외	102,054	23,691	41,610	60,444	84,468	19,498	33,268	51,200
의료급여세대주	20,562			-	10,342			-	
의료급여세대원	34,640			-	41,848			-	
합계	2,198,347	453,440	663,795	1,534,552	1,972,220	455,143	679,571	1,292,649	
비율		20.6%	30.2%	69.8%		23.1%	34.5%	65.5%	

주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비율 7.2%(2015년 기준)를 중위소득기준 40%이하 규모에서 제외하고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규모로 산입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2) 2010년

2010년 19세-24세 건강보험 가입자 규모는 총3,771,317명이며, 소득 수준별 규모는 다음 <표 2-20>과 같다.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규모는 1,180,723명으로 19세-24세 전체의 31.3%에 해당한다.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의 19세-24세 저소득 청년은 457,549명으로 19세-24세 청년 전체의 12.1%이다.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인 경우는 482,779명으로 12.8%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인 19세-24세 청년은 106,171명이다. 다음 전체 청년 가운데 본인 소득이 없으면서 부모의 부양을 받는 19세-24세 자녀는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자녀인 경우로 총2,593,083명, 68.8%에 해당한다.

<표 2-20>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0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규모	2010년		근로소득세만 적용		2010년 종합소득 포함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50% 초과		
지역세대주	109,812	43,926	67,789	43,926	67,789	43,926	67,789	42,023		
지역 세대원	자녀	1,056,703	30,969	80,587	30,969	80,587	30,969	80,587	976,116	
	그외	132,465	25,724	40,706	25,724	40,706	25,724	40,706	91,759	
직장가입자	627,110	290,803	396,189	273,064	372,021	273,064	372,021	+17,739	237,350	
직장 피부양자	자녀	1,536,380	323,550	407,300	303,813	382,455	303,813	382,455	+19,737	1,134,188
	그외	202,676	64,793	95,384	60,841	89,566	60,841	89,566	+3,952	109,158
의료급여세대주	29,271					29,271		-		
의료급여세대원	76,900					76,900		-		
합계	3,771,317	885,936	1,194,126	844,508	1,139,295	844,508	1,180,723	2,590,594		
비율		23.5%	31.7%	22.4%	30.2%	22.4%	31.3%	68.7%		

주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비율 6.1%(2010년 기준)를 중위소득기준 40%이하 규모에서 제외하고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규모로 산입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제 2 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2010년 19세-24세 청년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남성의 규모는 1,957,787명이고 여성은 1,813,530명이다. 그 중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규모는 남성 572,719명, 여성 608,005명으로 각각 전체 대비 29.3%와 33.5%에 해당한다.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남성 171,725명으로 전체 청년 중 8.8%이며, 여성은 285,824명(15.8%)으로 19-24세 청년 역시 2010년과 2015년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근로상황이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남성 275,295명(전체 남성 중 14.1%), 여성 207,484명(전체 여성 중 11.4%)이며, 의료급여 대상자인 19-24세 청년은 남성 55,766명, 여성 50,405명이다. 전체 청년 가운데 본인 소득이 없으면서 부모의 부양을 받는 자녀는 남성 1,463,117명으로 전체 남성 중 74.7%이며, 여성은 1,129,966명으로 62.3%에 해당한다.

<표 2-21> 성별에 따른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0년)

(단위: 명, %)

구분	2010년 남성(19-24세) 종합소득 포함				2010년 여성(19-24세) 종합소득 포함				
	전체 규모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50% 초과	전체 규모	중위40% 이하	중위50% 이하	중위50% 초과	
지역세대주	55,108	21,806	33,514	21,594	54,704	22,120	34,275	20,429	
지역 세대원	자녀	603,680	17,769	46,276	557,404	453,023	13,200	34,311	418,712
	그외	59,187	12,543	19,303	39,884	73,278	13,181	21,403	51,875
직장가입자	216,100	98,541	138,211	77,889	411,010	174,523	251,549	159,461	
직장 피부양자	자녀	859,437	172,922	229,019	630,418	676,943	130,891	173,173	503,770
	그외	108,509	32,554	50,629	57,880	94,167	28,286	42,889	51,278
의료급여세대주		20,016		-		9,255		-	
의료급여세대원		35,750		-		41,150		-	
합계	1,957,787	411,901	572,719	1,385,068	1,813,530	432,607	608,005	1,205,525	
비율		21.0%	29.3%	70.7%		23.9%	33.5%	66.5%	

주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비율 6.1%(2010년 기준)을 중위소득기준 40%이하 규모에서 제외하고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규모로 산입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3) 2010년과 2015년 비교

19세-2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31.3%에서 2015년 32.2%로 약1.0%p 증가하였다. 본인 소득이 있는 19세-24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19세-24세 청년인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는 2010년 12.1%에서 2015년 12.8%로 0.7%p 늘어났다. 또 부모의 부양을 받는 19세-24세 청년의 규모는 2010년 68.8%에서 2015년 69.0%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19세-24세의 부모 피부양 청년은 2010년 12.8%에서 2015년 14.1%로 증가하였다. 또 주목할 점은 청년정책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청년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였을 때 19세-24세 부모피부양 청년의 비중은 2010년 40.9%에서 2015년 43.9%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 중에서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 피부양 청년 중 저소득층의 증가는 이러한 세대의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를 부모가 충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5년 청년정책대상규모의 경우 남성 30.2%, 여성 34.5%로 여성이 약 4%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대비 대략 1%p 내외 상승한 규모이다. 특히 캥거루족 규모는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캥거루족 중 부모소득이 중위 50%이하인 비율 역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보다 빠른 여성의 사회진출 효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에 직접가입 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가입자 중 본인 소득이 중위 50%이하인 남성은 2015년 9.6%, 여성 16.3%로 청년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년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이며 오히려 그 수치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근소한 수치의 상승을 보인다.

<표 2-22> 19-24세 청년정책 대상 2010년과 2015년 비교

(단위: %)

구분	2010년			2015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중 청년정책대상 (중위50%이하)	31.3	29.3	33.5	32.2	30.2	34.5
전체 중 본인소득 중위50%이하 규모 ¹⁾	12.1	8.2	15.8	12.8	9.6	16.3
전체 중 부모피부양 청년규모 (갱거루족) ²⁾	68.8	74.7	62.3	69.0	73.7	63.7
중위50%이하 중 부모피부양 자녀 ²⁾	40.9	48.1	34.1	43.9	50.6	37.4

주: 1) 본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규모만 고려함

2)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 중 가입자와의 관계가 ‘자녀’로 속해있는 규모만 고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2015년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청년 문제는 일자리, 취업에만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 단계에서 청년세대가 속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층에 따른 격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 정책은 청년세대의 학업-취업-결혼에 이르는 전생애주기에 대해 독립적인 생활기반을 가지지 못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교육정책, 고용정책, 공공부조, 주거정책 및 의료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정책의 대상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 이외에 저소득층 청년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우선 청년문제에서 고용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34세 청년 고용율은 2002년에서 2015년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2013년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 다소 상승

하였으며, 여성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남성은 모든 연령구간에서 2002년에서 2015년까지 하락추세이다. 청년여성은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19-24세는 하락추세이지만, 25세-34세는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고용율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특히 여성의 경우 상승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19.9%에서 2015년 28.0%로 2002년과 2015년 두 연도만을 비교하면 8.1%p 상승하였다.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연령별 성별 추이를 보면 청년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청년 여성은 연령별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지 않다. 또한 임금근로자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비율을 2005년과 2015년만을 비교하면 2015년에 최저임금 미만 받는 청년 비율이 상승하였다. 청년 연령별로는 청년남성은 최저임금 미만 받는 근로자 비율이 19-24세가 가장 높고 25-29세와 30-34세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청년여성은 19-24세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5-29세와 30-34세 보다 높은 것은 청년남성과 동일하였으나 이후 연령에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하락하지는 않아 청년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음 전체 청년 중에서 사회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청년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25세-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규모는 1,819,029명으로 전체 7,158,761명중 25.4%에 해당한다. 이중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중위소득기준 50%이하 저소득 청년은 1,181,939명으로 25세-34세 청년전체의 16.5%였고,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369,196명으로 5.2%였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인 25-34세 청년은 50,886명이었다.

둘째, 19세-24세 연령의 청년 중 정책대상 규모이다. 19세-24세는 2015년 기준 총 4,170,567명이다.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규모는 1,343,365명으로 19세-24세 전체의 32.2%에 해당한다.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 저소득 청년은 534,052명으로 19세-24세 청년 전체의 12.8%이다.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589,619명으로 14.1%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인 19세-24세 청년은 107,392명이다.

셋째, 2010년 대비 2015년 추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5세-3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28.7%에서 2015년 25.4%로 3.3%p 감소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율이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청년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 역시 2010년 18.8%에서 2015년 16.5%로 2.3%p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부양을 받는 25세-34세 청년 규모는 2010년 19.5%에서 2015년 20.5%로 1.0%p 늘어났다.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부모 피부양 청년 역시 2010년 4.8%에서 2015년 5.1%로 증가하였다.

19세-2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31.3%에서 2015년 32.2%로 약1.0%p 증가하였다. 본인 소득이 있는 19세-24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19세-24세 청년인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는 2010년 12.1%에서 2015년 12.8%로 0.7%p 늘어났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19세-24세의 부모 피부양 청년은 2010년 12.8%에서 2015년 14.1%로 증가하였다.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 중에서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 피부양 청년 중 저소득층의 증가는 이러한 세대의 청

년들의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를 부모가 충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주로 높은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며 정책 체감도 역시 높지 않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정책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청년 실업자나 대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고용지원 정책은 고졸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대상특성에 따라 별도의 방안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지만 대부분 취업지원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구직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인 소득이 없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이나 부모 피부양 청년 중에 부모의 소득이 불충분한 저소득가구의 청년 등이 바로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년부양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 또한 미흡하다. 이에 미취업 청년과 더불어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인 근로빈곤 청년까지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추정한 청년정책 대상 규모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25-34세 청년 중 25.4%, 4명중 1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19세-24세의 경우에는 32.2%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모의 청년자녀 부양기간이 길어지고 부양부담이 커지는 문제, 즉 부모 피부양 청년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인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불충분한 근로빈곤 청년층이 부모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년자녀가 취업한 이후에도 부모의 부분적 부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청년에 대한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 3 장 유럽국가의 청년관련 입법 사례

제 1 절 유럽국가의 청년관련입법 사례 조사

EU는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유럽국가 28개국에 대하여 청년보장계획(Youth Guarantee Scheme)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EU 28개국은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보장계획 추진을 위한 단일법령을 마련하거나, 법령 없이 기존 정책안에서 추진한 국가들로 나눌 수 있다.

<표 3-1> EU국가의 청년보장제도 관련 법령 현황

구 분	국 가	법령 현황
청년관련 단일법령 국가	오스트리아 ¹⁾	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핀란드 ²⁾	The Youth Act(2006), The Act Amending the Youth Act(2010)
	네덜란드 ³⁾	The Youth Care Act 2005
	아일랜드 ⁴⁾	Youth Work Act 2001
	룩셈부르크 ⁵⁾	2008 Youth Act (Loi du 4 juillet 2008 sur la jeunesse)
	에스토니아 ⁶⁾	Youth Work Act (2010)
	라트비아 ⁷⁾	The Youth Law
	리투아니아 ⁸⁾	Youth Policy Law (2003)
	슬로바키아 ⁹⁾	National legislation on youth(the Act No.282/2008 coll)
	슬로베니아 ¹⁰⁾	The Youth Sector Act(2010)
	불가리아 ¹¹⁾	Youth Law(2012)
	크로아티아 ¹²⁾	Youth Advisory Boards Act(2014)
헌법조항 국가	벨기에 ¹³⁾	벨기에헌법 Part 2 에서 어린이 보호 조항
	스페인 ¹⁴⁾	the Royal Decree Law RDL 8/2014 of 4 July : 청년보장제도 구축
	이탈리아 ¹⁵⁾	헌법 제5부 제117조:모든 분야에 대하여 국가 법제에 의한 청년정책과 일반적 사회적 정책에 대한 권력 부여 정형화하여 규정

제 3 장 유럽국가의 청년관련 입법 사례

- 자료: 1)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2015a).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Austria
2) FINLEX 홈페이지 www.finlex.fi/fi/
3) European Commission(2012a).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Netherlands
4) European Commission(2012b).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Ireland
5) European Commission(2012c).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Luxembourg
6) European Commission(2012d).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Estonia
7) European Commission(2012e).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Latvia
8) European Commission(2012f).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Lithuania
9)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2015b).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Slovakia
10)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2012a).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Slovenia
11)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2012b).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Bulgaria
12)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2016a).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Croatia
13)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2016b). Country Sheet on Youth in Belgium
14)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2009). Country Sheet on Youth in Spain
15) European Commission(2012g).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Italy

본 고에서는 EU 28개국의 청년관련 입법 추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청년관련 단일법령에 의하여 정책을 추진한 국가들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12개국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청년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기타 이외의 국가들은 청년관련 별도의 법 없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관련 단일법체계는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제도화를 위한 추진체계라 할 수 있다. 즉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단일 법령이 있는 국가 중에서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를 선정하여 청년 관련 입법 배경, 주요 내용과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제 2 절 단일법 체계 보유국가의 입법 사례

1. 핀란드

(1) 입법제정배경

핀란드는 1972년부터 청년에 관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첫째는 청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노동 국가보조금에 관한 법(The Act on Youth Committees and State Subsidies for Municipal Youth Work(117/1972)으로 핀란드의 청년에 관한 법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노동(Youth Work)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보조금을 활용한 급여, 청년단체의 활동비용, 청년노동(Youth Work) 시설의 전세 비용과 임대차 비용, 청년노동(Youth Work)에 따른 여비, 청년노동(Youth Work) 시설의 건축과 보수와 관련된 재정경비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능력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청년노동(Youth Work) 비용의 20~60%를 국가보조금으로 교부하였다. 당시의 해당 법률은 7세~2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둘째로, 1974년에 시행된 국가 청년노동(Youth Work)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법(The Act on Government Transfers for National Youth Work)(1035/1973)은 전국 청년조직 지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로, 1986년에 시행된 청년노동법(The Youth Work Act(1068/1985)은 청년노동(Youth Work) 시설을 위한 임대차 제도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권리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학생 조직 요청으로 청년의 연령 상한을 29세 까지로 상향시킴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청년센터(Youth Centre)와 그 운영·투자 보조금을 법률에 의해 지급하게 하였다.

넷째, 1993년에 신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제도는 청년노동(Youth Work)에 관한 부분에서 크게 변경된다. 원래의 보조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구분과 청년노동(Youth Work) 대상자에 따른 것이었으나, 신법 제정으로 계산식 기반으로 변경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29세 미만의 주민 수로 결정되게 된 것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이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청년위원회에 관한 법은 폐지되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위원회의 수는 몇 년 동안에 10개 정도까지 급감한다 (Government Proposal to Parliament for a Youth Act 2005).

다섯째, 이들 법률에 이어 청년노동(Youth Work)을 통제하게 된 법률은 1995년에 시행된 청년노동법(Youth Work Act(235/1995))이다. 이 법률은 사업 범위를 청년정책으로 확장하면서 청년 업무를 시민활동의 촉진과 청년의 생활 상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청년활동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성장과 시민으로서의 기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자신의 시민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청년의 연령범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국가보조금은 여전히 29세 미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청년노동(Youth Work)을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일부로 규정함과 동시에 청년활동을 기본적으로 청년 그룹과 청년 조직의 책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청년노동(Youth Work)의 조정과 발전은 지역(주) 수준의 정부사무소(State Provincial Office)에 의해 보조되며, 교육문화부의 책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문화부 담당 장관(Minister of Culture)이 청년노동(Youth

Work) 부문과 청년노동(Youth Work) 자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Government Proposal to Parliament for a Youth Act 2005). 이후 청년법(Youth Act, 72/2006)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그동안의 법률과 달리 보다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 법안 내용

1) 청년법(Youth Act, 72/2006)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청년법(Youth Act, 72/2006)은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시민성과 사회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촉진하며, 청년의 성장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공동성·연대·반차별·평등, 다문화주의·국제주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생명과 환경의 존중”을 근거로 한 것이다.

2011년 초 청년법(72/2006)은 청년법 개정 법률(The Act Amending the Youth Act(693/2010)에 의해 무효가 된다. 이 새 수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제7조)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교육과 노동시장 접근 개선을 위한 서비스와 상담(제7b조)을 청년노동(Youth Work)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자립 촉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다른 부처의 협력은 이미 2007년-2011년 아동·청년 정책 프로그램(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2007-2011)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은 2011년 12월에 승인되었다. “아동·청년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는 연령에 따른 아동과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노동시장을 보다 확장시키고, 공정한 접근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아동과 청년의 능동적 시민성과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2).

청년법에서 청년 대상자는 29세 미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지방자치단체 청년노동(Youth Work)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청년 수에 따라 결정되고, 관련사업 당 비용(unit cost)도 교육부가 매년 결정하게 하였다(Act on the Financing of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Culture 1705/2009).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청년노동(Youth Work)의 주 영역과 목표 대상을 지정하게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청년노동(Youth Work)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었다(Government Proposal to Parliament for a Youth Act 2005).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청년노동(Youth Work)의 대상과 고용인의 자격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2) 수정 청년법(The Act Amending the Youth Act, 693/2010)

이 수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 계획 및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리지침서하에 지역교육·사회복지·보건관리부서 및 청소년관리부서와 노동부서 및 경찰부서의 대표와 함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동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었다.

(3) 주요 정책 내용

1) 청년노동(Youth Work) 정책의 목표

청년법(72/2006)에서 정의하는 청년노동(Youth Work)은 청년들이 여가 시간을 통해 능동적인 시민성과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촉진하는 것이며, 청년노동(Youth Work)의 목적은 청년의 성장과 자립 및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원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년노동(Youth Work)은 청년 교육의 일부이며, 학교나 가정에서, 또 이외의 청년들의 학습 환경에서 개방적인 교육을 떠받치는 것이 되었다. 이에 청년노동(Youth

Work)은 전문화에 기초해 청소년 사업 목적을 보다 명료하게 정의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는 청년노동(Youth Work)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국가로서 청년노동(Youth Work)은 젊은 층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의 ‘주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동성을 촉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청년노동(Youth Work)은 사회와 지역사회의 멤버로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부처간 다양한 협력과 확장을 위해 청년노동(Youth Work)에 관한 청년법은 특히 청년들의 생활 개선과 성장을 ‘사회적 임파워먼트’로 지원하였다.⁸⁾ 결국 청년노동(Youth Work)는 청년 자신의 자발적 참여라는 특징을 갖는 교육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청년노동(Youth Work)의 목적은 청년들이 커뮤니티에의 참가를 촉진하고 능동적 시민성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의 질은 청년노동자(Youth Worker)에게 적절한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청년노동(Youth Work)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서 청년 조직이나 기타의 청년 그룹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⁹⁾

2) 청년노동(Youth Work)의 세부 내용

①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청소년 사업 방법은 학교 밖에서, 목표지향의 비규범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비규범적 교육은 목표지향의 자발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노동(Youth Work)의 학습도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한

8) Kimmo Aaltonen, Nuorisopolitiikka [Youth Policy]. In Aaltonen, K. (ed.) Nuorten hyvinvointi ja monialainen yhteistyö [Youth well-being and cross-sectoral collaboration]. Helsinki: Tietosanoma, 2011, p.16. 발췌·번역 및 요약

9) Lasse Siurala, A European framework of youth policy. Brussels: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5, p.9. 발췌·번역 및 요약

학습결과와 성과를 기록하거나 평가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¹⁰⁾ 따라서 청년노동(Youth Work)은 청년들로 하여금 생활관리 기술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청년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활과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뒷받침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청년노동(Youth Work)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임파워먼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능동적인 시민성 향상

참가와 개입은 청년노동(Youth Work)의 틀과 발전과정 상의 모든 문맥에서 언급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참여와 개입은 청년노동(Youth Work)의 필수 요소이며, 능동적인 시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스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능동적 시민성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청년노동(Youth Work)은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를 위해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서 청년이 필요한 스킬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지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성 측면에서 실천적인 경험과 열성, 그리고 동기와 스킬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¹¹⁾

핀란드 헌법(731/1999)은 모든 사람들이 시민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에 관한 결정에 스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생활환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권리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단 유일한 예외는 지방선거와 국정선거

10) Council of Europe European Union 홈페이지 <http://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검색일 2016.8.15.) 발췌·번역 및 요약

11) Lasse Siurala, A European framework of youth policy. Brussels: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5, p.45. 발췌·번역 및 요약

투표권에서 적어도 18세 미만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는다.¹²⁾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365/1995)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¹³⁾

청년법(72/2006) 제8조는 청년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417/2007) 또한 아동복지에 관련된 조치의 필요성을 요구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⁴⁾ 또한, 핀란드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이 스스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사회에 참가하는 평등한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다양한 국제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고 있다.¹⁵⁾ 유엔이나 유럽평의회, EU의 멤버로서 핀란드는 청년층의 사회 참여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결정, 예를 들어 『백서 “유럽의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추진”』 (A New Impetus for European Youth, the White Paper 2001); 『유럽 청년 전략: 투자와 임파워먼트』 (An EU Strategy for Youth-Investing and Empowering 2009); 『청년 분야에서 유럽의 협력에 관한 새로운 틀을 위한 평의회 결의』 (Council Resolution on a renewed framework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 2010-2018)를 비준하였다.

12) Liisa Nieminen, Nuoren perus- ja ihmisoikeudet [Young people's basic and human rights]. In Litmala, Marjukka & Lohiniva-Kerkela, Mirva (eds.) Nuoren oikeudet [Young people's rights]. Helsinki:Edita Publishing Oy, 2005, p.9. 발췌·번역 및 요약

13) Kunta nuorten osallisuusymparistona [Municipality as young people's participation environment]. Jyvaskyla: University of Jyvaskyla, 2002, p.46. 발췌·번역 및 요약

14) Child Welfare Act, Section 5.

15) UNICE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발췌·번역 및 요약

③ 사회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

청년법(72/2006)에 따르면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청년노동(Youth Work)은 대략적으로는 개인과 집단 양쪽에서 측면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초기 청년노동(Youth Work)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등 경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기는 청년노동(Youth Work)의 청년과 지도자의 강력한 협동 관계에 의해서 추진된다. 물론 이 관계가 실제 상호작용만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과 지도자의 교육적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적 임파워먼트의 목표는 사회적 배제의 예방이다. 사회적 배제는 청년의 배경과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시작 시점부터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과 차별 없는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핀란드의 청년노동(Youth Work) 관련 정책에 담겨있다고 보여진다.

(4) 시사점

핀란드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핀란드는 장기간에 걸쳐 스웨덴의 통치를 받았으며, 한때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기간도 있었으나 러시아혁명과 함께 독립하였다. 독립 이후, 국가통치 기본원칙,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한 정체법(1919년), 국회법(1928년), 각료책임법(1922년) 및 탄핵재판소법(1922년)의 4개의 기본법이 헌법이 되었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 이러한 위 4개의 법이 기본법군(群)으로 구별되었으나, 각 법률의 개정을 통해 1999년에는 헌법(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기존의 기본법군(群)의 개정을 통해 규범범위의 확대, 국가 기본기관 관계성의 변경 등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법제에 있어서도 스웨덴의 영향이 컸으며,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대륙법계의 국가에 속한다. 헌법 외의 형법, 민법, 소송법 등이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의 법률은 모두 일반법으로 위치하고 있다. 청년노동(Youth Work) 제도의 기초를 마련한 청년법 역시 일반법으로 위치하고 있다.

청년법(72/2006)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노동(Youth Work)에 대해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노동(Youth Work)의 중점 영역과 목표 집단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 받고 있다. 따라서 청년노동(Youth Work)은 능동적 시민성에 필요한 스킬 강화와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성장, 사회적 임파워먼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청년 수정법(693/2010)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청년들이 요구하는 지원 분야에 있어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청년들이 같은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참여와 경험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점은 우리의 법제 및 정책에도 그 시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오스트리아

(1) 입법제정배경¹⁶⁾

오스트리아에서는 경제적 상황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시장, 그리고 복지서비스 등에 있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시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청년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로 경제가족청년부(Federal Ministry of Economy, Family and Youth, BMWFJ)가 있지만 각 부처의 관련 정책과 각 연방에서의 정책들이 적절하게 연계되지 못하다는 단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청년정책에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었다.

(2) 주요 법안 내용

2000년 12월, 연방 정부는 청소년 관련 문제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방청년대표법(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은 30세 이하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책 전반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청년단체에 의해 지목된 구성원들로 하여금 연방청년의원단을 구성하고, 집행부로서 의원 총회와 집행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연방 청년의원단은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주요 정책 내용

1) 국가 정책

16) Alban Knecht, Karin Kuchler, Roland Atzmüller, Youth Policies and Gender-sensitive Youth Work in Austria, "YOUTH POVERTY, YOUTH INEQUALITY, AND YOUTH POLICY IN AUSTRIA", FORBA Research Report, 2016, p.34. 발췌·번역 및 요약

오스트리아의 청년 정책의 목적은 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과 청년들의 좋은 삶 보장이다. 따라서 경제가족청년부(Federal Ministry of Economy, Family and Youth, BMWFJ)가 청년정책의 주관 부서를 담당하고, 각 부처는 각각 청년 관련 정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 중 경제가족청소년부(BMWFJ)는 국가정책 수준에서 모든 부처의 대표 및 연방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인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uncil)을 운영하면서 전문가, NGO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실례로, 견습생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적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견습생 제도를 시행 회사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보조금을 견습생제도 시행 기업에 지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여성 및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보조금(통상은 6,000실링인데, 이 경우에는 8,000실링을 지원함)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는 25세 이하로 한정하였다.

2) 연방정부의 청년정책¹⁷⁾

오스트리아는 연방 구조와 역사적 이유 등으로 청년 정책을 국가 중앙기관과 9개의 연방정부가 각각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수준에서는 가족 및 청년 정책,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입법 및 그 이행
- 국가유소년전략의 개발 및 이행
- 청소년 복지에 대한 기본 입법
-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협정
- EU청년프로그램 등 국제적 의제

17) Federal Ministry of Economy, Family and Youth, “Austrian Youth Strategy”, 2013, pp.7-8. 발췌·번역 및 요약

- 청년 조직, 청년 이니셔티브 등 단체와 청년사업의 재정지원
- 청년의 정보
- 청년 연구의 촉진
- 청소년에 대한 폭력, 건강증진 및 예방의료, 뉴미디어, 참여, 청년 리더 양성 등

특히, 연방법은 어린이와 청년의 정치적, 신체적, 물리적, 종교적·윤리적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 교육과 청년노동(Youth Work)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청년 정책을 직접 구현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연방 부처의 전문가들, 정책 컨설턴트 및 청년의 참여로 개발되었다. 이는 전략의 목표 및 정책을 체계적이며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정책 입안자들의 다양한 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현업분야 관련자들에게 액션과 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발견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부처인 오스트리아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이 분야에 대해 간접적으로는 개입하고 있으며, 청년 업무 및 청년의 정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국가 레벨의 네트워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청년 전략은 세 가지의 주요 프레임워크로 나뉜다. 목표는 고용과 학습, 참여와 구상 그리고, 삶의 질과 협력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표 3-2> 오스트리아의 청년 전략

고용과 학습	참여와 구상	삶의 질과 협력
- 청년 고용	- 선거에의 참여	- 미래에 대한 시각
- 교육	- 청소년 참여	- 보건
- Start-Up과 청년 기업	- 자원 봉사	- 지속 가능성

자료: Federal Ministry of Economy, Family and Youth(2013). Austrian Youth Strategy.

(4) 시사점

오스트리아는 9개 주(Land)로 구성된 연방제 공화국으로 의회는 매 4년마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상원(Nationalrat)과 각 주에서 파견된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Bundesrat)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주가 각각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나, 입법 권한 범위에서 주의 권한이 연방에 비해 약하다는 점이 독일과 비교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법률체계는 로마법을 기반으로 하는 독일 게르만법의 전통 하에(박강우 2003, p.2), 인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법률문화가 흡수·융합된 형태로 발전되어온 특징을 보인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까지는 신성로마제국과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분야 역시 공통된 재판제도를 가지고 있던 시기가 있었고, 실체법은 민사와 형사 부분 공히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박강우 2003, p.2).

오스트리아는 헌법(Verfassungsgesetz), 법률(Gesetz), 명령(Verordnung)이라는 법질서의 단계구조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전형적인 성문법 국가로, 국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법률들이 체계적으로 제·개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과정 또한 손쉽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이정봉 2010, p.8). 오스트리아에서 청년정책의 근거가 되는 청년대표법은 일반법의 위치에 있으며,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화한 법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법체계적 위치를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의 청년정책은 각종 정책 추진 및 정책개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 외에 청년관련 정책으로는 실업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청년에 대해 국가가 직접 또는 민간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도 하며,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청년 구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 이는 청년

층 직업훈련통합법(Youth Training Consolidation Act, JASG)의 제정을 통하여 의무교육을 마친 후 청년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통합훈련(Integration Training)프로그램을 통해 부분적 기술교육이나 기술습득이 더딘 사람들을 위하여 연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¹⁸⁾

3. 아일랜드

(1) 입법제정 배경

1997년 청소년노동법은 당시 정부가 정권을 이양하기 전에 2가지의 안전을 시행하였는데, 첫째는 자발적인 청소년 노동 분야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아일랜드 국가청소년위원회(NYCI) 신설이고, 둘째는 청소년노동법 시행과 관련해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청소년 사업 서비스 및 정책 조정과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청소년노동자문위원회(NYWAC)를 신설한 것이었다(Breen 2001, p.13). 이와 같이 아일랜드가 청소년노동 관련 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청소년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이후 청소년노동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에 출발점이 되었다.

2001년 제정된 청년노동법(Youth Work Act)은 1984년 아일랜드 청소년정책위원회 보고서를 시작으로, 자발적인 청소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Breen 2001, p.15). 청소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에 반대하는 견해로 인해 입법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제8조의1),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제8조(c)) 및 제9조(a)

18) 최요철, 배성중, 이상호, 임웅지,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2008 발췌·요약

와 같은 제한 조항이 존재했지만, 결국 정부¹⁹⁾가 청소년의 노동개발과 조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을 갖게 되었다(Jenkinson 2013, p.6). 이 법에서 의미하는 ‘청소년 노동’이란 봉사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 자신들이 개인적·사회적 발전을 돕고 증진할 목적으로 고안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정규교육 이외에 보완적으로 자발적인 청소년 노동 단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직업교육과 훈련을 의미한다.²⁰⁾ 2014년 6월 청년노동법(Youth Work Act, 2001)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 제정된 법안을 행정적으로 통합한 것으로서 관할 위원회의 명칭이 부분적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 내용상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2001년 법안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2) 주요 법안 내용

1) 목 적

2001 청년노동법(Youth Work Act)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 노동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의하고, 교육부의 정책·예산·연구·파악·평가 기능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절차, 계획 및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보고와 관련된 직업교육위원회의 기능 정의, 각 직업교육위원회 내 특별 청소년노동위원회 설치, 국가청소년노동자문위원회 구성, 청소년 노동을 위한 교부금 배부의 체계화, 지역단위에서 자발적 분야의 요구와 수요를 대표하기 위한 자발적 청소년위원회 설치, 청소년 노동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공적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청소년사업평가관 선임 등을 세부 목적으로 하였다(Jenkinson 2013, p.16).

19) 아일랜드에서 동 법과 관련 정책 주무부처는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이다.

20) Youth Work Act 제3조

2) 주요내용

청소년노동법은 청소년 노동에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을 장관의 책임으로 최초로 규정함과 동시에 장관은 교육 및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조정을 포함하여 청소년 노동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Jenkinson 2013, p.17).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 노동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연간 예산 제공

청년노동법(Youth Work Act) 제8조 1항 3에서 장관은 사용가능한 재정적 자원의 영역 내에서 청소년 노동프로그램과 청소년 노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매 재정 년도에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② 청소년노동에 관한 연구 수행 또는 발주

청년노동법(Youth Work Act) 제8조 1항 4에서는 청소년 노동프로그램과 청소년 노동서비스를 등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청소년 노동 연구를 1회 혹은 그 이상으로 실시하거나 연구가 실시되도록 위원회에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③ 해마다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 1곳 이상에 대하여 청소년 노동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파악

청년노동법(Youth Work Act) 제8조 제1항 5, 6에서의 청소년 노동프로그램 또는 제 9절 1조 1항 34목에 의해 금액을 지원받는 자발적 청소년 사업 단체가 제공하는 청소년 노동서비스, 청년노동법(Youth Work Act)하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청소년 사업프로그램 또는 청소년 사업서비스를 매년 1개 이상 모니터링 할 것과, 제16절에 의해 공인된 국가자원활동 청소년사업 단체, 지정지역 자원활동 청소년사업단

체, 제3절에 의해 금액을 지원받는 공인단체와 이들 단체들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 관련 청소년 사업프로그램 또는 청소년 사업 서비스에 대해 최소 3년에 1회 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④ 국가 청소년노동 자문위원회 구성²¹⁾

⑤ 10세-21세 남성과 여성 및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처우 파악

기본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장관은 그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의 노동시장 접근성과 관련된 남성 및 여성 청년들의 처우와 청소년 노동프로그램 및 청소년 노동서비스에 참가 가능한 남성 및 여성 청년들의 숫자, 그리고 특정 지역에 살거나 제1언어가 아일랜드인 국민들의 청소년 노동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10세~21세 미만의 사람과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규정하였다.

⑥ 청소년 노동의 기능²²⁾

2013 교육 및 훈련 이사회는 청년노동법(Youth Work Act)에 의해 또는 부여된 기능에 추가하여, 현실 가능성이 있고 재정적 자원이 허용하는 하에서, 해당 교육 및 훈련 이사회 내의 청소년 사업프로그램 또는 청소년 사업서비스의 제공을 다음과 같이 보장하고 있다.

- 해당 계획, 제안, 활동을 국가인증 자원활동 청소년 노동 단체, 지역지정 자원활동 청소년 노동단체 그리고 교육 및 훈련 이사회 하에 승인된 단체와 조정하여 청소년 사업프로그램과 청소년사업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한다.

21) Youth Work Act 제17절

22) Youth Work Act 제9조 제1항

- 국가인증 자원활동 청소년 노동단체, 지역지정 자원활동 청소년 노동단체 그리고 승인된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하며, 재정적 지원은 교육 및 훈련 이사회에 의해 장관이 국가 청소년 사업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공포하거나 마련한 지침과 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 또한 이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의 경우 특별한 대우가 적용되는 위와 같다.

(3) 주요 정책 내용

아일랜드의 청소년 관련 정책은 구조적으로 5가지의 기준에 맞추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더욱 향상된 조정 달성을 목적으로, 시행과 모니터링과정에서 외부의 조언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 당사자들로부터 감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구조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구조와 관련된 정책적인 5가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성, 건강, 육체적, 정신적 안녕²³⁾

적극성과 건강은 전체사회의 안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는 교육, 건강 지식, 개인적 강인함의 육성과 보호요인의 증진, 그리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책임질 수 있도록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좋지 않은 건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또는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건강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가난, 사회적 배제, 표준 이하의 주거, 소수집단 소속 사람들의 건강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인정한다.

23) Better Outcomes Brighter Futures,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children & young people 2014-2020, 2014, p.45. 발췌·번역 및 요약

2) 학습과 발달과정을 통한 잠재력 실현²⁴⁾

아일랜드의 청년 중 압도적인 다수가 교육을 받고 있다. 92%의 청년들이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30%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상담결과, 청년과 아이들은 ‘교육’을 아일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꼽았다. 교육이 그들의 삶에서 갖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수업 종류나 시설규모 등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영역이다.

정부는 특수한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 제 1언어가 영어가 아닌 아이들 그리고 가난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아이들의 잠재력을 교육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 건강으로 인한 학교 결석, 보호시설 또는 법 제도의 경험 등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는 정식 학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다양한 인생 경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 안에서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과 해악으로부터의 보호

아이들과 청년들이 안전하고 해악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다. 특히 아이들과 청년들 스스로가 위험에 대해 그리고 해롭고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받고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아일랜드 정부는 특정한 집단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추가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인신

24) Better Outcomes Brighter Futures,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children & young people 2014-2020, 2014, p.63. 발췌·번역 및 요약

매매 피해 아동, 보호시설에 있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 여행자, 집시, 이민자, 망명자의 아이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그들이다. 또한 왕따나 차별에 더욱 취약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인 청년들, 구류되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소수 집단의 아이들과 청년들도 포함된다²⁵⁾.

4) 경제적 안정과 기회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 하고 삶의 진전을 원한다. 그들의 태생적 재능, 기업정신, 창조성은 양성되어야 하고 필요한 자격요건과 소중한 근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경제, 일자리 혹은 그 기회의 부재에 대한 염려와 그들의 부모들이 느끼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2012년도 어린이와 청년들과의 상담에서 발견된 강력한 주제 중 일부였다. 24%의 아이들과 19%의 청년들은 현재의 불경기를 아일랜드의 삶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빈곤과 표준 이하의 주거 및 사회적 배제가 인간의 삶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상승하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정가족의 경우 더 커다란 빈곤의 위협에 노출되곤 하는데, 특히 한부모 가정과 실직자 가정이 그러하다.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분리된 성장, 대물림되는 가난, 기회의 불공평성과 무직이 아이와 청년들의 성장기회를 방해하기 때문이다.²⁶⁾

5) 연결에 대한 존중과 세상에 대한 기여

아이들과 청년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현재와 미래의 삶과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따

25) Better Outcomes Brighter Futures,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children & young people 2014-2020, 2014, p.75. 발췌·번역 및 요약

26) Better Outcomes Brighter Futures,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children & young people 2014-2020, 2014, p.87. 발췌·번역 및 요약

라서 의사결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사회에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독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일부 어린이와 청년들이 그들 또래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장애물과 차별에 대면하고 있다는 인정하고 있다. 개인 정체성, 성, 사회적 계급, 홈리스, 부모의 중독, 정신 건강의 어려움과 감금 등의 문제들이 이와 관련이 있다.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그들 자신으로부터 존중받아 그들이 자유롭게 정체성을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²⁷⁾

(4) 시사점

영국의 법제도는 잉글랜드법, 스코틀랜드법 및 북아일랜드법 3개의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잉글랜드법은 게르만법의 지류인 앵글로색슨법을 배경으로 성립한 법체계이며, 대륙법과 대치되는 영미법 국가 법제의 기초가 된다.

최근 아일랜드의 청소년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재원의 급격한 축소로 인하여 관련 청소년 사업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활동의 성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사업 접근방식의 효과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이다(Jenkinson 2013, p.15). 이것은 재원확보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구축차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책 시행과정에서 적절한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만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체계화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정책 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아일랜드 청소년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성되

27) Better Outcomes Brighter Futures,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children & young people 2014-2020, 2014, p.99. 발췌·번역 및 요약

고 있다²⁸⁾. 이는 기존 청소년사업의 정체성과 제도적 토대 유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4. 네덜란드

(1) 입법제정배경

최근 네덜란드 청소년 관리시스템은 지방자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예방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다. 즉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중심으로 한 관리를 목적으로 전문가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Bosscher 2012, p.1). 이러한 변환은 대부분의 청소년 보호 업무들이 지자체로 전환됨으로써, 보호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이 더욱 커짐을 의미하며, 더 많은 예방과 더 많은 서비스의 협력 및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청소년법(Youth Act)은 육아 및 양육의 문제, 심리적 문제 및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과 부모들에게 예방과 지원 그리고 그 지원의 책임에 대한 관리 규칙을 제시한다.²⁹⁾ 세부적으로는 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집행의 당사자, 아동보호에 관한 이사회, 관련 기관, 위탁관리, 법원에 의한 감독사항,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재정 및 책임, 감시기구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과 가족들의 양육 및 발달의 문제, 심리 문제 및 정신 질환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고 돌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큼, 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은 이 법이 아닌 장기요양

28)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홈페이지 <http://www.dcyg.gov.ie/viewdoc.asp?fn=%2Fdocuments%2Fyouthaffairs%2Fpolicies.htm>(검색일 2016.9.20.) 발췌·번역 및 요약

29) Youth Act 전문

법(Long-Term Care Act)에서 다루고 있으며, 보장되는 돌봄의 종류는 일반적인 예방 조치부터 특별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돌봄까지 다양하다.³⁰⁾

네덜란드 전 청소년 가정 장관은 13-15세 젊은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들과 관련된 지역정책 이슈에 참여할 권리를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참여가 어떻게, 어떠한 범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결정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네덜란드 청소년과 함께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2012c, p.12).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정책 계획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지역적 차원의 사업들이 지자체에 의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지원법(WMO, 2015)’에 의한 지역 단위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아직 지역 정치 의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에 특화된 청소년 목표 정책은 지자체 단위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단위의 청소년 참여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 청소년 정책의 트렌드는 청소년 정책의 위험부담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접근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³¹⁾

(2) 주요 법안 내용

1) 청소년 보호에 관한 네덜란드의 법률³²⁾

① 국가의 청소년 정책에 의한 청소년법(Jeugdwet, 2015)은 지자체들

30)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s, Health Care in the Netherlands, 2016, p.22. 발췌·번역 및 요약

31) Netherlands Youth Institute 홈페이지 <http://www.youthpolicy.nl/yp/Youth-Policy/News/Archive/News2012x/New-brochure-about-positive-youth-policy>(검색일 2016. 9. 10) 발췌·번역 및 요약

32) Nynke Bosscher, The decentralis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Dutch youth care system, Netherlands Jeugd instituut, 2012, p.3. 발췌·번역 및 요약

이 보호가 필요한 특정 아이들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적인 조기 개입과 사회적 연결망 사용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② 사회지원법(WMO, 2015)은 모든 시민들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 설립에 대해 지자체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참여법(Participatiewet, 2015)은 발달적, 행동적 문제가 있는 젊은 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④ 적절한 교육에 관한 법(Wet Passend Onderwijs, 2014)은 의무교육에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에게 보호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주요내용

청소년법(Jeugdwet, 2015, 영문명 Youth Act)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능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³⁾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18세 이하. 어떤 경우에는 23세까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이며, 그 가족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양육, 심리, 정신질환에 대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³⁴⁾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사업, 청소년 재활서비스 시행 및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조언, 처리, 보고를 담당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공적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전보다 쉬워졌다.³⁵⁾ 지방자치단체는 개별화·개인화된 지원을 할 수 있고, 구체

33) Youth Act 전문

34) Youth Act 1.1

35) Youth Act 2.3

적인 환경과 대상에 맞는 최적의 청소년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는 재량을 갖게 된다.³⁶⁾ 어린이, 청소년 및 그 부모들 역시 청소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자를 바꾸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³⁷⁾ 청소년 서비스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법(Youth Act)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 의료 예산으로 부모나 청소년 보호자가 직접 구입하는 청소년 서비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비용을 사회보험 은행(Social Insurance Bank)에 지급하며, 개인 의료 예산을 배당 받은 부모는 청소년 건강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은 의료비 청구서를 사회보험 은행에 제출한다. 또한 개인 의료 예산을 배당 받은 부모들은 직접 청소년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면서 그 예산에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 및 그 부모가 지금과 다른 형태의 청소년 서비스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불복 절차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³⁸⁾

(3) 주요 정책 내용

1) 개요³⁹⁾

2015년 초부터 393개의 모든 네덜란드의 지자체들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가족에 대한 모든 범위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이 변화는 정신건강 제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서비

36) Youth Act 2.2

37) Youth Act 8.1.1

38) Youth Act 6.1.2, Youth Act 6.1.12

39) Netherlands Youth Institute 홈페이지 <http://www.youthpolicy.nl/en/Introduction-to-Dutch-youth-policy>(검색일 2016. 9. 20.) 발췌·번역 및 요약

스와 연관이 있다. 지자체들은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에서부터 0세에서부터 18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특화보호까지 관리하게 되었다.

2015년 이전에 청소년 보호제도는 12개 주의 의무사항이었으며, 지자체의 의무는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아동 청소년 법률’의 아동, 청소년, 가족에 대한 모든 예방적 서비스와 보호 제공은 이제 지자체의 의무사항이 되었다. 이는 모든 행정 및 재정적 책임까지 지역 차원으로 전환하는 아주 큰 변화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스포츠부(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가 전반적인 청소년 정책과 가족 및 아동 대부분의 특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안전법무부는 청소년 사법정책과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만, 교육부는 모든 교육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 사회고용부는 유치원과 놀이터를 위한 ‘아동보호법률’을 포함한 노동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 주요 국가정책

① 청소년·가정 센터⁴⁰⁾

‘청소년·가정 센터’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은 지역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가정 센터’는 아동 및 청소년 건강관리, 유아 복지 클리닉, 지자체 건강 서비스 등과 함께, 사회 지원법에 명시된 5가지 기능 즉 정보와 조언, 문제 발견, 도움 안내, 사회복지, 가족 코칭, 육아 지원을 포함한 복지 코디네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청소년 보호 기관”과의 연결과 “학교 서비스”와 “조언 팀”과의 연결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40)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the Netherlands, 2012c, p.10. 발췌·번역 및 요약

② ZonMW 프로그램⁴¹⁾

ZonMW(건강연구와 보호혁신 촉진을 위한 국가기관)의 R&D 프로그램인 ‘청소년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는 2012년 4월, 향후 7년 동안(2013-2019) 2,100만 유로의 예산을 승인받았다. 또한 ZonMW은 ‘아동학대에 관한 종합적 접근에 대한 지지 및 평가’라는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 부문에 대한 연구지원도 포함하고 있다.⁴²⁾

③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에 대한 권고 및 보고 센터(AMK)⁴³⁾

2009년 6월, 전 청소년가족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 스포츠부 장관은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신고 규정’이라는 법규를 함께 발표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아동학대(의심)의 경위에 대한 법적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아동과 함께 일하는 단체들에게 아동 학대(의심)의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지에 관한 강령을 갖고 일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신고 법령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혹은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 규칙과 신고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였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네덜란드 아동학대 자문 및 신고 센터(Advies-en Meldpunten Kindermishandeling, AMK)’에 연락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아동학대 및 방치를 신고할 수 있다. 12개의 각 주와 4개의 주요 수도권에는 고유의 AMK가 있고, 이는 ‘청소년 보호 기관’ 소속이다. 신고 시, 가족의 사생활보다는 아이들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그 시점으로부터 AMK는 상황을 조사하고 실제로 아동학대 사

41)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the Netherlands, 2012c, p.11. 발췌·번역 및 요약

42) 본 프로그램은 이동과 가정, 전문가, 기구(개입, 신호, 스크리닝 및 평가적 장치), 조직의 네 가지 주제를 갖는다.

43) Netherlands Youth Institute 홈페이지 <http://www.youthpolicy.nl/en/Introduction-to-Dutch-youth-policy>(검색일 2016. 9. 20.) 발췌·번역 및 요약

례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책임을 가진다. 만약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고 밝혀지면, 센터는 적절한 조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도한다.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받아들일 경우에 센터는 ‘아동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이 케이스를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위험에 놓여있고 부모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보호조치,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신체를 숙박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형법에 의한 처벌 조치 등이 가능하다.

④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참고⁴⁴⁾

네덜란드의 각 지자체는 이른바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참고(Verwijsindex Risicjongeren, VIR) 작업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VIR은 사회복지사, 건강관리 전문가, 교사 및 경찰에 의해 신고된 23살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위험 신호를 통합하는 국가차원의 전자 감시 시스템이다.⁴⁵⁾

⑤ 학교 내 보호 및 자문 팀⁴⁶⁾

학교 내 보호 및 자문 팀(Zorg en Adviesteams, ZAT)은 정서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키고, 균형 잡힌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조기 퇴학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ZAT와 청소년 가족센터는 아이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를 서로 강화시키는 목적을 공유한다. 결국 네덜란드 청소년 기구들은 학교와 같이 청소년 보

44)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the Netherlands, 2012c, p.11. 발췌·번역 및 요약

45) IR은 규정하자면 다음과 같은 4개의 목표를 가진다:

1. 문제의 악화를 막음
2. 서로 다른 전문가 시스템들 간의 정보 교류의 향상
3. 전문가와 조직된 지원 간의 효율적인 협업을 도움
4. 위험에 놓여있는 아동들에 대한 보조개선

46)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the Netherlands, 2012c, p.12. 발췌·번역 및 요약

호, 사회복지, 경찰, 의무교육의 구조적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4) 시사점

네덜란드는 입헌국주제 국가로 12개의 주(Provincie)로 나뉘어 있으며, 주는 또한 441개의 기초자치단체(Gemeente)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도는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은 대륙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청소년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첫째는 특별서비스의 경우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무나 다양한 서비스와 법적기반, 책임 및 예산 지휘권, 직업적 유대와 부문별 조직 등으로 인해 투명성이 부족하여 혁신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는 특정기구에서 아이들과 청소년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을 다른 부서로 위탁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이며, 넷째는 보호서비스 이용이 꾸준한 증가세라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류의 서비스가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다른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만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Bosscher 2012, pp.3-4).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청소년 서비스 제도를 더 일관성 있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청소년보호 정책은 0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 발달, 양육, 심리 문제의 해결과 같은 보호와 책임의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정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예산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건복지스포츠부, 안전법무부, 교육부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결국 구조적 차원에서 업무분담이 이루어진 후 체계적으로 조직화된다면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 3 절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별 청년보장제도 관련 입법과 추진체계,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 3-3>과 같다. 우선, 핀란드의 경우 법체계가 기본법 체계이며, 정책의 목표가 29세 미만의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청년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시민성 향상과 사회적인 임파워먼트 부여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처간 협력지원 분야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오스트리아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14~24세 까지의 청년과 관련된 일반법 체계와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안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아일랜드는 고용정책으로 접근하면서 오스트리아와 같이 15~24세 청년의 직업능력개발과 사회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법체계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와 달리 영미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넷째, 네덜란드는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보호측면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생산적이고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핀란드와 동일하지만 정책방향에 있어 핀란드는 청년들에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반면에 네덜란드는 수동적인 예방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핀란드의 정책이 29세 미만의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네덜란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표 3-3> 사례국가의 입법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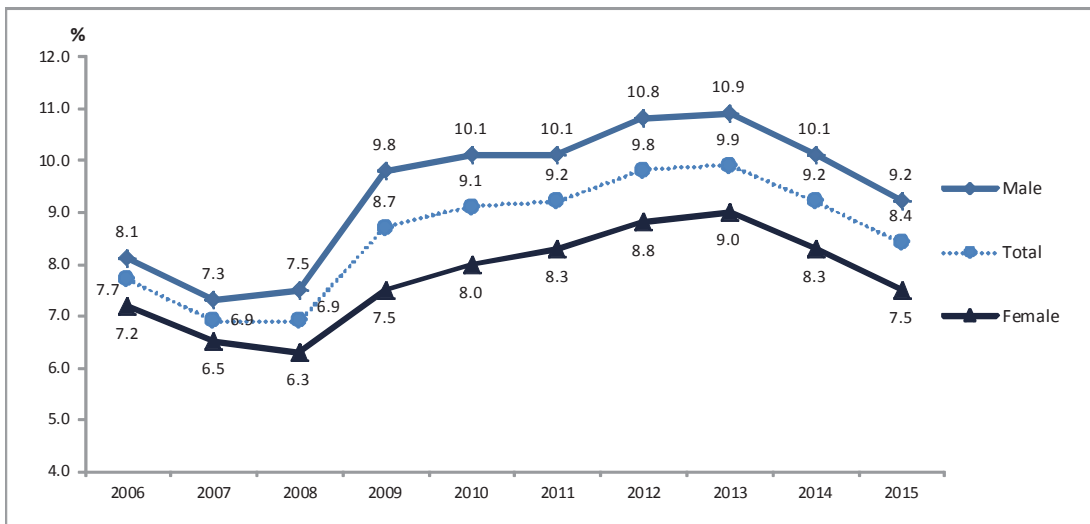
국 가	법 령	추진체계	정책목표	주요내용
핀란드	- 청년법(Youth Act) (72/2006) - 수정청년법(The Act Amending)	- 교육문화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 청년의성장 자립 - 청년지원분야 횡단적 협력	- 성장과 자립 지원 - 능동적 시민성 향상 - 사회적 임파워먼트

국 가	법 령	추진체계	정책목표	주요내용
	the Youth Act) (693/2010)	- 아동청년계획 (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 대상 연령 : 29세 미만	
오스 트리아	- 연방청년대표법 (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 연방청년진흥법 (Feral Youth Promotion Act)	- 경제가족청년부 (The Ministry of Economy, Family and Youth) - 청년경쟁센터 (Youth Competence Centre)	- 고용과 학습 - 참여와 구상 - 삶의 질과 협력 - 대상연령 :14-24세 / 30세 미만	- 직업 훈련 제공 - 기업고용보조금 지급 - 청년구직자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
아일 랜드	- 청년노동법 (Youth Work Act 2001) - Youth Work Act (2014.6. 개정)	- 아동청년부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2011)) - 아동가정기관 (Child and Family Agency, 2014)	- 청소년의 노동개발과 조정 - 대상 연령 : 15-24세	- 건강, 육체적 정신 적안녕 - 학습과 발달 지원 - 안전과 해악으로부터보호 - 경제적 안정과 기회 보장
네덜 란드	- 청년보호법 (The Youth Care Act 2005) - 사회지원법 (Social Support Law 2007)	- 보건복지 스포츠부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청소년의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18세 이하(간혹 23세 까지 가능)	- 아동, 청소년, 가족에 대한 예방적서비스와 보호 제공

제 4 장 유럽국가의 청년정책 사례

제 1 절 EU의 청년 고용 현황

28개 EU 가입국의 25세 미만 청년 평균 실업률은 2006년 7.7%에서 2015년 8.4%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세계경제에 미치기 전인 2008년 EU 가입국의 청년 평균 실업률은 6.9%였고, 남성은 7.5%, 여성은 6.3%였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9년에는 전체 청년 평균 실업율이 8.7%, 남성은 9.8%, 여성은 7.5%로 전년 대비 1%p 이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2013년까지 평균 청년실업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대에 육박하게 되었고, 그 이후 2014년에는 9.2%, 2015년에는 8.4%로 하락하였다. 비록 2015년 청년 평균 실업률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9%미만이 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1.5%p 높은 수치이다.



자료: Eurostat 홈페이지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그림 4-1]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청년실업률(2006-2015)

그리고 2015년 EU 가입국 평균 청년 실업률 8.4% 보다 높은 국가로는 스페인(16.8%), 크로아티아(14.3%), 그리스(12.9%), 키프러스(12.3%), 포르투갈(10.7%), 핀란드(11.7%), 스웨덴(11.2%) 등이 있는 반면, 낮은 국가는 독일(3.5%), 체코(4.1%), 벨기에(6.6%) 등이 있다.

<표 4-1> 2015년 EU 국가별 성별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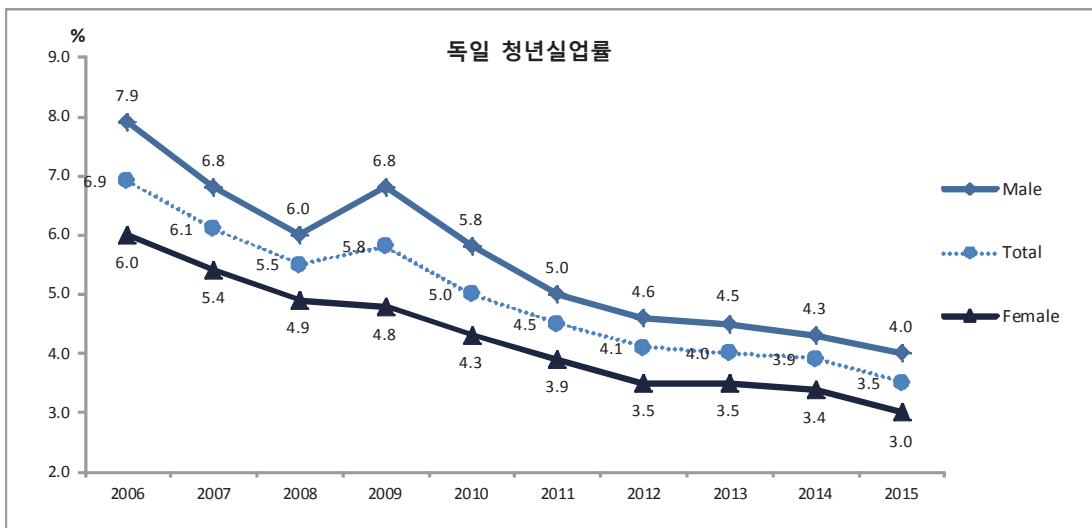
(단위: %)

2015년	계	남	여
EU 평균 (28개국)	8.4	9.2	7.5
벨기에 (Belgium)	6.6	7.8	5.4
불가리아 (Bulgaria)	5.6	6.5	4.7
체코 (Czech Republic)	4.1	4.2	3.9
덴마크 (Denmark)	6.7	7.2	6.3
독일 (Germany, 1990년 이전은 서독 자료)	3.5	4.0	3.0
에스토니아 (Estonia)	5.5	6.3	4.6
아일랜드 (Ireland)	7.6	9.1	6.0
그리스 (Greece)	12.9	12.5	13.4
스페인 (Spain)	16.8	17.6	15.9
프랑스 (France)	8.9	10.1	7.7
크로아티아 (Croatia)	14.3	16.0	12.5
이탈리아 (Italy)	10.6	11.8	9.2
키프로스 (Cyprus)	12.3	12.7	12.0
라트비아 (Latvia)	6.7	8.2	5.3
리투아니아 (Lithuania)	5.5	5.9	5.1
룩셈부르크 (Luxembourg)	6.1	6.8	5.3
헝가리 (Hungary)	5.4	6.3	4.4
몰타 (Malta)	6.1	7.4	4.7
네델란드 (Netherlands)	7.7	7.7	7.8
오스트리아 (Austria)	6.1	6.7	5.4
폴란드 (Poland)	6.8	7.9	5.6
포르투갈 (Portugal)	10.7	10.1	11.3
루마니아 (Romania)	6.8	7.6	5.9
슬로베니아 (Slovenia)	5.8	6.9	4.6
슬로바키아 (Slovakia)	8.4	9.9	6.8
핀란드 (Finland)	11.7	13.0	10.5

2015년	계	남	여
스웨덴 (Sweden)	11.2	11.4	11.1
영국 (United Kingdom)	8.6	9.7	7.4

자료: Eurostat 홈페이지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이 중 2015년 기준으로 EU 가입국 중 청년실업률이 3.5%로 가장 낮은 독일의 경우,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청년실업률이 전년 대비 0.3%p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5년까지 한 번의 상승도 없이 지속적으로 청년실업률 하락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고 판단된다.



자료: Eurostat 홈페이지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그림 4-2] 독일 25세 미만 청년실업률(2006-2015)

제 2 절 EU의 청년보장 정책

1. 추진 배경 및 과정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자, 경기 변동과 노동시장 구조에 더 민감한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2012년 EU의 25세 미만 청년들의 평균 실업률은 25세 이상 성인의 두 배에 달하는 22.7%로, 당시 EU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은 실업상태에 있었다⁴⁷⁾.

특히 그리스(54.3%)와 스페인(52.4%)은 청년 2명 중 1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을 정도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EU회원국들 사이에 청년 실업률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⁴⁸⁾. 이에 더하여 2012년 당시 EU의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청년의 규모는 15세~24세 EU 청년 인구의 12.9%를 차지하여 750만명으로 증가한 상태였다⁴⁹⁾.

급증하는 니트(NEET) 청(소)년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대응도 취하지 못한데 따른 EU의 경제·사회적 비용(실업급여 등 사회보장비용 + 조세수입 감소 등)은 매년 1,520억 유로로 EU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1.2%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무엇보다도 미래의 소득수준, 실업의 위험, 건강상태, 복지 및 연금서비스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될지 모른다는 ‘공포효과’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었다⁵⁰⁾.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EU의회는 청년

47)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36>(검색일 2012.12.5.)

48) European Youth Forum, 2012; EU, 2015.02.04.

49) 김문희 2015, p.103; EU,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Proposal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on Establishing a Youth Guarantee, 2012.12.5., p.2;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Youth Guarantee.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langId=en>(검색일 2013.2.19.)

50) 김지경, 정연순 2015, p.67; European Youth Forum 2012, p.2-8; EU, 2012.12.5., p.9;

실업 해소를 위한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에서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된 “사회보장(Social Guarantee)”을 모태로 삼아 EU집행위 차원에서 2012년 12월에 “청년보장계획(Youth Guarantee Scheme)”을 개발하였다.

EU집행위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이 단순히 청년들의 일자리 알선이나 보장(job guarantee)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니트(NEET)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일임을 강조하였다⁵¹⁾. 다시 말해,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은 청년들의 학교로부터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임과 동시에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과 조치들을 모두 포괄하였다⁵²⁾.

핀란드는 EU집행위가 “청년보장계획(Youth Guarantee Scheme)”을 개발하기 이전, 즉 1990년대 이후부터 “청년보장(Youth Guarantee)”과 유사한 성격의 청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5년부터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실업자로 등록 한 후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사회보장(Social Guarantee)”을 시행해 왔다. 핀란드 정부는 EU의회에서 “청년보장계획(Youth Guarantee Scheme)”의 도입·시행이 확정되자, 기존에 시행해오던 “사회보장(Social Guarantee)”제도를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정책으로 확대 개편하여, 25세 미만 모든 청(소)년과 30세 미만 대졸자 중 실업자로 등록된 이들에게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중등교육, 직업교육, 도제 교육, 워크숍 또는 다른 형태의 학습 장소에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Youth Guarantee.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langId=en>(검색일 2013.2.19.)

51) European Youth Forum, 2012; EU 2012.12.5., p.3;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Youth Guarantee.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langId=en>(검색일 2013.2.19.); EU, 2015.02.04.; 김지경, 정연순 2015, p.67.

52) EU, 2015.02.04.

서의 교육이나 재할 교육을 보장하였다(김문희 2015, p.106).

“청년보장계획(Youth Guarantee Scheme)” 개발 후 곧이어 2013년 1월에 EU의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투자정책 이행을 전 회원국에 촉구하면서, 그 이행의 핵심으로 회원국들이 “청년보장계획(Youth Guarantee Scheme)”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⁵³⁾.

이후 바로 2013년 2월, EU의회 의장국인 아일랜드 주도 아래 “청년보장계획(Youth Guarantee Scheme)” 이행과 관련한 회원국의 고용부장관이 참석하는 EU이사회(European Council)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6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2020년 동안 청년고용프로그램(YEI: Youth Employment Initiative)을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청년보장(Youth Guarantee)”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⁵⁴⁾.

<표 4-2> 청년고용장려(Youth Employment Initiative)에 대한 설명

Youth Employment Initiative(Y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I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연합 재정지원의 하나로, 25세 미만 청년실업률이 25%이상인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특히 장기실업상태 또는 구직자로 등록하지 않은 니트족을 지원함.

53) “청년보장(Youth Guarantee)” 명칭을 지닌 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에 도입된 것은 아니며, 1980년대 이후 청년실업 해소와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OECD 국가들에서 활용되어온 제도이다. 특히 북유럽의 노르딕 국가들은 1980~1990년대에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를 조기에, 즉 스웨덴은 1984년, 노르웨이 1993년, 핀란드는 1996년에 도입하였다(김문희 2015, p.104).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Youth Guarantee.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langId=en>(검색일 2013.2.19.)

54) 김문희 2015, p.104;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Youth Guarantee.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langId=en>(검색일 2013.2.19.); European Youth Forum, 2012

-
- 2012년 청년실업률 25% 이상이었던 20개 회원국은 YEI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이행 계획을 제출하여 EU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YEI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시행을 목적으로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지원을 포함하여 회원국 차원에서 수행되며, ESF는 회원국의 고용구조개혁, 사회 및 교육서비스 등을 지원함.
 - YEI의 2014년~2020년 기간 동안의 예산은 64억 유로이고, 이중 32억은 ESF의 청년고용 예산이며, ESF기금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충당됨.
- 자료: 김문희(2015); European Youth Forum(2012);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Youth Guarantee.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langId=en>(검색일 2013.2.19.)
-

2013년 4월 22일에는 EU집행위가 제안한 “청년보장계획(Youth Guarantee Scheme)”을 토대로 “청년보장추천(Youth Guarantee Recommendation)”이 2013년 4월 22일 EU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2013년 6월 EU위원회의 승인으로 전 회원국에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듬해 2014년 9월 G20 노동장관회의에서는 G20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을 시행하여, 청년들의 교육, 훈련 및 작업 등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⁵⁵⁾.

현재 “청년보장(Youth Guarantee)”는 유럽의 다른 구조개혁에 비해 EU회원국들에서 가장 빠르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청년보장(Youth Guarantee)”가 빠른 속도로 회원국들에 도입되어 시행될 수 있는 것은 회원국들이 EU의회가 설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포괄적인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집행위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회원국들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체계를 지원하고, 이행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55) EU, 2015.02.04.; EU 홈페이지,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76&langId=en>(검색일 2016.07.20.)

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다⁵⁶⁾.

2.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성공 요건 및 주요 성과

(1)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의 성공 요건

EU집행위가 회원국들에 “청년보장계획(Youth Guarantee Scheme)” 도입을 촉구하면서 제안한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시행의 성공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즉 ① 협력기반 접근 방식의 구축(Building up partnership-based approaches), ② 조기 개입 및 활성화(Early intervention and activation), ③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Supportive measures for labour market integration)이다⁵⁷⁾.

첫 번째 ‘협력기반 접근 방식의 구축’은 공적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학교, 청년단체, 훈련기관, 고용주, 개인서비스 제공자 등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청년들이 고용서비스 기관과 진로 가이드 제공자, 교육 및 훈련 기관, 청년지원서비스 기관들 사이에 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고용과, 훈련 및 견습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서비스기관, 정부기관, 노동조합과 청년센터 등이 강한 파트너십을 가져야 하며, 공공부문과 NGO, 청년센터 및 협회 등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외 고용주나 노조의 참여,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핀란드, 영국)도 파트너십 접근의 요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⁵⁸⁾.

56) EU, 2015.02.04.

57) EU 2012.12.5., pp.13-24.

58) EU 2012.12.5., pp.13-16; 김지경, 정연순 2015, p.68.

두 번째 ‘조기 개입 및 활성화’는 서비스 제공처로 청년들이 찾기를 기다리기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가 발굴하고 사회적 배제와 빈곤 또는 차별과 같은 다양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취약 청년들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고용서비스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⁵⁹⁾. 정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업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한 이유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GDP의 수준이 높고,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고 시민의식이 높은 선진국이다. 특히 자료수집 및 정보 공유체계 또는 지원 대상자 추적시스템(tracking or catch up service)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북유럽 선진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에 집중되어 있다.

세 번째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은 크게 기술 향상(enhancing skills)과 관련된 조치들과 노동시장과 관련된 대책들로 구성된다. 기술향상과 관련된 조치들에는 정규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한 청년들이 다시 교육이나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니트(NEET) 상태로의 편입 예방, 노동 수요에 매치되는 기술과 역량 개발 지원, 직업훈련기관이나 고용서비스 기관을 비롯하여 초·중고 학교에서도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정규학교 이외 비공식 학습 인정이 해당된다. 또한 노동시장과 관련된 대책들에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노동 비용 줄이기, 노동시장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청년들에게 훈련이나 견습 또는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인건비 또는 채용보조금의 지급, 고용 서비스, 사업 지원 및 마이크로 금융 제공자 사이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한 더 많은 스타트-업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⁶⁰⁾.

59) EU 2012.12.5., pp.16-19.

(2) 주요 성과⁶¹⁾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사례와 성과는 EU의 각 회원국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설치 또는 운영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확대 개선하거나 개편하는 방식이며, 그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실행 근거를 확보한 사례들을 들 수 있다.

먼저 벨기에의 경우, 브뤼셀 지역에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서비스 전담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으로 “Actiris”를 설치하여 구직자로 등록한 청년들이 일자리나 인턴십 자리를 찾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브뤼셀 지역의 25세 미만 청년들의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발표(2014.8 Actiris)된 바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 유럽사회기금의 지원을 받아 27개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센터를 만들고,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개인맞춤형 통합패키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관계 법률(Royal Decree-Law 8/2014)에 근거하여 청년보장(Youth Guarantee)체계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는데,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의 등록 절차와 수혜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였으며, 청년보장(Youth Guarantee)에 등록한 이들을 대상으로 훈련계약 등에 대한 추가적인 비임금 채용 보조금이 채택되었다. 또한 2014년 8월 5일자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시스템에 등록한 청년들은 무료로 4개의 온라인 훈련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고용서비스(The Spanish Public Employment Service) 또한 이들을 위한 전문 훈련 활동과 ICT분야의 훈련,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 개발한 언어과정 운영에 대해 42백만 유로의 예산을 할당하였다.

60) EU 2012.12.5., pp.19-24; 김지경, 정연순 2015, p.69.

61) European Commission, EU Youth Guarantee: Questions and Answers, 2015.02.04., p.2-3. 발췌·번역 및 요약

이탈리아의 경우, 통합적 전자포털을 구축하였는데, 이 포털은 구직 청년들이 직접 온라인에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의 충족에 대한 자동승인과 제안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는 국가 등록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직업 교육 및 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비 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s, Active Labor Market and Policies)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법개혁이 이루어졌고,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8월 기준 29세 이하 구직자를 위한 총 12,532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Act on Employment Services)을 개정하여 2015년 1월부터 24세 이하 구직자와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25세~29세 청년에 대한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 이외, 몇몇 EU 회원국에서는 채용 인센티브와 스타트-업 보조금으로 청년 구직자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에서는 2년 동안 실업수당이나 사회서비스 지원을 받은 청년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세금 환급(tax rebate)을 부여하였고, 폴란드의 경우 30세 이하 청년들에게 사회보험 부담금을 면제하였다.

또 다른 방식으로 대다수 EU회원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직업 교육 및 훈련 체계(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개선이다. 스페인의 경우 이중(dual) 직업 교육 및 훈련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2013년 172개였던 이중훈련 프로젝트가 2014년 375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도 같은 기간 513개에서 1,570개로 증가하였고, 참여자의 수도 4,292명에서 9,555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몇몇 국가들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 체계의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프랑스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직업 교육

및 훈련이 낮은 자격요건을 가진 이들을 위한 도제교육 지원을 증가시켰으며, 루미니아에서는 고등교육 졸업자들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전문적 훈련 단계를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였다.

한편, 교육과정을 개선하거나 개편한 사례들도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견습제를 채택하였고, 포르투갈에서는 직업 교육 및 훈련의 교과 과정을 14세 연령에서의 기초 직업과정 교육과 15세~17세 연령대의 중등교육과정으로 개편하였다. 덴마크의 경우, 2014년 6월 직업 교육 및 훈련이 개정되면서 직업 교육 및 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청년들은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의 완료를 보장받게 되었다. EU회원국의 주요 성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EU 회원국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시행 성과 사례

구 분	국 가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
①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설치, 운영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벨기에	• YG 전담서비스기관 “Actiris” 설치	
	루마니아	• YG 27개 센터 설치 • NEET청년 대상 개인맞춤 통합 지원서비스 실시	
	스페인	• YG 등록 절차, 수혜자 범위 법률 명시 • YG등록자 비임금 채용보조금 지급 • YG등록자 4개 온라인 훈련 과정 무료 • ICT훈련, 언어과정 운영 예산 지원	Royal Decree Law 8/2014
	이탈리아	• 등록 및 자격요건 자동 승인이 가능한 통합 전자 포털 구축	
	슬로바키아	• YG실행을 위한 입법개혁 • 29세 이하 청년 일자리 창출 • 취업알선 촉진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개정
② 채용 인센티브 및 스타트업 보조금	네덜란드	• 2년 동안 실업수당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받은 청년을 채용한 고용주 세금 환급	
	폴란드	• 30세 이하 청년 사회보험 부담금 면제	
③ 직업교육 및 훈련 체계 개선	스페인	• 이중 직업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발	
	프랑스	• 도제교육(견습) 지원 증가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
	루마니아	• 고등교육졸업자 보조금지원 전문적 훈련 단계 제공	관련법 제정
④ 직업교육 과정 개편	스웨덴	• 노동시장 이행 지원 견습제 채택	
	포르투갈	•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 기초과정(14세)과 중등과정(15세~17세)으로 개편	
	덴마크	• 직업교육 및 훈련 희망자 모두 교육 완료 보장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EU Youth Guarantee: Questions and Answers, pp.2-3.

이러한 EU회원국의 청년보장 정책을 각국의 현실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관련 단일법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한 국가, 별도의 법체계 마련 없이 추진 중인 사회정책에서 청년관련 정책을 강화한 국가로 구분해볼 수 있다.

다음 2절과 3절에서는 단일법 체계 보유국가와 미보유국가로 구분하여 정책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단일법 체계 보유국가는 3장에서 입법사례로 살펴본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4개국이며, 미보유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청년보장 정책을 추진한 스페인 등 3개국을 살펴보았다. 정책사례는 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교육정책, 고용정책, 공공부조, 주거지원, 의료지원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별 정책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제 3 절 단일법체계 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1. 핀란드

가. 정책 개관

앞서 입법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 핀란드의 청년 보장 제도는 청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에서 청년보장제도는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단위의 보장제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은 2016년도에 50% 정도 삭감될 예정이며, 2017-2019년도에는 삭감의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European Commission 2016).

핀란드의 청년 정책은 이들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학습 경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가장 주요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다양한 행정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탑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014-2020년까지 정부에서 보조금(유럽 사회 기금, European Social Fund)을 교부, 전국적으로 33개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Finland 2016).

이밖에도 핀란드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청년보장법 (Youth Act)에 기반한 아동과 청년 정책 프로그램(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2012 - 2015)을 관련 부처 간 정책협력 및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할 예정이다.

나. 주요 분야별 지원 정책

(1) 교육지원정책

1) 학자금 지원(study grant)⁶²⁾

17세 이상 풀타임 학생을 대상⁶³⁾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학교급(secondary education, higher education)과 연령, 부모동거여부, 기혼여부, 자녀여부에 따라 지급기준이 상이하다.

<표 4-4> 중등학교 (secondary education) 지급기준

	월금액	부모소득관련여부
기혼, 부양가족 있는 경우	25028유로	×
단독주거, 20세이상	25028유로	×
단독주거, 18-19세	250.28	부모소득에 따라 차감(0-250.28)
단독주거, 17세	101.74	부모소득에 따라 증액(0-203.48)
부모동거, 20세이상	81.39	부모소득에 따라 증액(81.39-183.13)
부모동거, 17-19세	38.66	부모소득에 따라 증액(0-97.67)

자료: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검색일 2016.11.28.)

62)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검색일 2016.11.28.) 발췌·번역 및 요약

63) 17세 이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학자금 보조 수혜불가

<표 4-5>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2014.8.1. 이후 등록자) 지급기준

	월금액	부모소득관련여부
기혼, 부양가족 있는 경우	336.76유로	×
단독주거, 18세이상	336.76유로	×
단독주거, 17세	163.8유로	부모소득에 따라 차감(163.80-311.32)
부모동거, 20세 이상	137.35유로	부모소득에 따라 증액(137.35-284.87)
부모동거, 17-19세	62.06	부모소득에 따라 증액(62.06-138.37)

자료: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검색일 2016.11.28.)

2) 학자금 대출(student loan)⁶⁴⁾

학자금 지원과 함께 정부보증 대출금도 지원된다. 학자금 대출은 풀타임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데, 부모와 비동거하고 있지만 아동수당 대상자로 학생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17세 이하), 부모소득문제로 학생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18-19세)에 이용 가능하며, 성인교육수당(adult education allowance)을 받는 경우도 활용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의 보증기간은 30세까지이다.

3) 등하교 교통비 지원금⁶⁵⁾

학교의 등교 및 하교를 위해 드는 교통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전일제 직업학교 재학생 중 편도 거리가 10Km가 넘는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등하교 지원금은 한 달을 완전히 채워 등교했을 시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4) 새로운 교육 환경과 디지털화된 종합 중등학교⁶⁶⁾

교육 개혁은 새로운 교육법, 새로운 교육 환경, 그리고 디지털화 이

64)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검색일 2016.11.28.) 발췌·번역 및 요약

65)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검색일 2016.12.10.) 발췌·번역 및 요약

66) Finland,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ey project and reforms defined in the Strategic Government Programme, 2016, p.32. 발췌·번역 및 요약

상의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과 기술을 높여 성과물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육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평생학습 분위기를 고양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목적이다.

프로젝트의 주요 부분은 궁극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이 매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기초 및 보수교육 개혁을 실시하는 것으로, 디지털화된 교구 도입 및 훈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핀란드의 모든 교사들은 개별 역량 기반의 훈련을 제공받을 예정 이다. 둘째, 교육방법에서 디지털화된 방식이 도입될 것이며 이에 대한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셋째 교육부에서는 각 지역마다 ‘실험 센터’를 설립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별하여 국가 차원에서 그 방식을 도입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지역별로 현대식 교육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각 교육 시설은 전반적으로 시설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2) 공공부조⁶⁷⁾

청년지원과 관련된 핀란드 공공부조는 노동시장 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과 실업보조금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1) 노동 시장 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

노동시장 보조금은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구직자와 실업수당을 모두 소진하고도 장기간 실업상태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자산조사 기반의 보조금으로 다른 소득이 있거나 동거가구원의 소득을 조사하여 감액 지급한다. 주로 6개월 이상의 취업 경력이 없

67) 공공부조의 모든 정책은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검색일 2016.11.28.) 발췌·번역 및 요약

는 경우 이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된다.

2) 실업 보조금(기본 실업 수당, 소득 기반 실업 수당)

실업 보조금은 실업자로 실업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고용경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최대 500일까지⁶⁸⁾ 지급된다. 이때 실업기금 가입자에게는 소득 기반 실업 수당(earnings-related allowance)이, 실업기금 미가입자에게는 기본 실업 수당(basic unemployment allowance)이 지급된다.

(3) 고용지원제도⁶⁹⁾

1) 산시 카드 제도(Sanssi Card)

산시 카드는 30세 이하 청년실업자를 증명하는 카드로, 산시카드를 소지한 구직자를 채용시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졸자 및 전문자격 없는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자 증명카드인 산시카드 발급, 산시카드를 가지고 있는 실업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청년보장 프로그램(Nuorten Yhteiskuntatakuu)

청년들의 고용지원을 위해 핀란드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실직한지 3개월이 넘어가는 25세 이하 청년들과 30세 이하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워크숍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68) 추후 300일로 축소 예정

69) 고용지원제도는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검색일 2016.11.28.) 발췌·번역 및 요약

(4) 주거보조: 학생 주거보조(housing supplement)⁷⁰⁾

플타임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용의 80%까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와 동거하거나, 기혼자로 파트너와 아이와 동거하는 경우,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을 받는 경우, 성인교육수당(adult education allowance)을 받는 경우, 무료 기숙사 거주인 경우에는 주거 보조 지원이 제한된다. 만약 학생주거보조 대상이 아닌 경우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 신청이 가능하다.

(5) 의료보조

1) 아동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 지원⁷¹⁾

핀란드는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Child and Youth Programme에 의거하여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정신 이상으로 발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을 이루고 있다(MSAH, MI, MD, MEC).

구체적인 가정지원 내용으로는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술이나 도박이 사회적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광고를 규제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지역 및 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가정지원은 청년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70)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검색일 2016.11.28.) 발췌·번역 및 요약

71)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2012-2015, 2012, p.16. 발췌·번역 및 요약

2) 국민 건강 보험(sairaanhoitokorvaus)⁷²⁾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의료보험은 없다. 단 핀란드 거주 허가자를 대상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개인 병원에서의 진료도 행해지므로 청년도 수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병원에서의 진료는 공공 의료 서비스보다 더 비싼 진료비를 요구 하지만 국민 건강 보험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 보상은 보통 서비스 이용 후 지불할 때 반영되지만 원한다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 행위는 Kela 보험 제도에서 지불할 때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감면이 되며, 의약품은 살 때는 의약품 가격에서 감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직접적으로 금액을 청구하고 싶다면 핀란드 사회 보장 시스템의 혜택과 kela 카드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살펴본 핀란드의 주요 청년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4-6> 핀란드의 주요 청년정책

구분		주요 내용
교육		교육비 전액 무료 대학생 대상 생활보조금 지급
공공부조		노동시장 보조금: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구직자와 실업수당을 모두 소진하고도 장기간 실업상태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 자산조사 기반 실업수당 제공(기본 실업 수당, 소득 기반 실업 수당)
고용 지원	고용	청년보장프로그램: 취업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기업 지원	산시 카드 제도(Sanssi Card):30세 이하 청년 실업자 증명 카드로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0개월간 임금 보조

72)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09&langId=en&intPageId=3756>
(검색일 2016.12.10.) 발췌·번역 및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주거보조	학생 주거 보조 : 풀타임 학생이면 모두 지급. 단 아이가 있거나 개인소유 집이 있는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 지급대상임. 주거비의 80% 지원
의료지원	국민 건강 보험(sairaanhoitokorvaus) 아동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가정지원

2. 오스트리아

가. 정책개관

오스트리아의 청년지원정책은 청소년정책과 대학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초기(19세~24세)에 고등교육에 진학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교육현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정책수단을 강화하고, 조기개입을 통한 정규교육체계와 노동시장(재)편입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직업교육 및 견습제도(Dual System) 지원정책과 니트(NEET)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직업교육 준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분야별 지원정책

(1) 교육지원정책

1) 대학보조금(Studienbeihilfe)⁷³⁾

73) 오스트리아 대학보조금청(Österreichische Studienbeihilfenbehörde) <https://www.stipendium.at/studienfoerderung/studienbeihilfe/>(검색일 2016.11.15.); 오스트리아 대학 정보사이트 <http://www.studieren.at>(검색일 2016.11.15.) 발췌·번역 및 요약

대학보조금제도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된 대학지원법(Studienförderungsgesetz)을 근거로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학보조금은 소득조사를 바탕으로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대학생에게 지급되는데, 오스트리아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무국적자⁷⁴⁾의 경우에도 보조금 청구가 가능하다.

대학보조금 청구권은 관할 연방부의 규정에 근거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대학생에게 부여되며, 학부학위과정 시작연령이 만 30세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자기 생계부양, 유자녀 대학생, 장애 학생, 석사전공 시 만 30세 이상일 경우 지원가능하며, 내국 또는 외국에서 동일한 학부학위과정을 졸업했을 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가능 여부는 소득·가족상황·가족크기를 고려한 재정상태와 대학등록증명서 및 학업성과 증명서를 참조하여 결정되며, 지원금액 또한 지원가능여부 결정요인과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 대학보조금 산정방식

월 대학보조금액 = (연간 대학보조금 상한액 - 차감액) × 1.12 / 12 (단위:유로)

※월 대학보조금 상/하한액: 5유로~475유로(부모 거주지로부터 대학소재지까지 거리 상 통학이 어려울 경우, 대학 소재지역에 행정상 등록이 필요하여 대학소재지에 거주해야만 하는 경우 679유로)

※추가지원금 : 장애 학생, 자녀의 요양과 양육을 위한 법적 책임이 있는 학생(자녀 당 월 112유로), 27세 이상 학생(월 30유로) 등

※보조금 감액: 학생 본인 연간소득액이 10,000유로를 넘을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8,000유로), 학생의 부모, 배우자 또는 동성파트너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등

자료: 오스트리아 대학보조금청(Österreichische Studienbeihilfenbehörde) <https://www.stipendium.at/studienfoerderung/studienbeihilfe/>(검색일 2016.11.15.); 오스트리아 대학 정보사이트 <http://www.studieren.at>(검색일 2016.11.15.)

74) 대학보조금 청구권은 유럽경제지역(EU국가와 EFTA국가) 국가 국민들 중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노동자일 경우이거나 대학입학 전에 오스트리아 교육체계 또는 사회체계에 충분히 통합된 이주자일 경우 오스트리아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획득하거나 영주권자, 대학입학 전에 최소 5년 동안 일반 소득세의무를 지닌 부모 중 한 명과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한 무국적자, 난민자격증명서를 가진 협정난민(제네바 난민협정에 따라 법적 난민지위를 얻은 자)에게도 부여된다.

대학보조금 지급은 정식 학업기간 동안 지급되며, 학위졸업 신청 또는 총 학업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학기만 연장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질병, 임신, 자녀의 요양보호나 6세 미만 자녀 양육, 장애, 군복무, 산업체근무, 대체복무, 사회복무법에 따른 복무,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사유로 할 경우 이후 학기에 대한 대학보조금 청구가 가능하다.

2) 장학제도⁷⁵⁾

국가 장학금은 대학지원법(Studienförderungsgesetz)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자기생계부양자 장학금, 졸업장학금, 유학 장학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자기생계부양자 장학금은 대학입학 전에 최소 4년간 자기생계부양자였던 학생에게 지원되는데, 학업시작 상한연령이 30세 미만인 일반 재정지원과 달리 4년 이상 자기 생계부양자로 일을 한 경우 1년 당 상한연령이 1년 연장되며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군복무, 대체근무도 자기생계부양 시간으로 인정되며,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장학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원액은 최대 월 679유로, 연간 8,148유로이며, 유자녀 대학생의 경우 월 67유로 증액된다. 본인 소득으로부터 자기부양이 가능할 경우, 배우자의 생계부양이 가능할 경우, 만 26세 미만이며 가족보조금을 통해 연 2443.20유로이상 수급할 경우에는 지원이 감액된다.

졸업 장학금은 전공졸업시기⁷⁶⁾에 있는 모든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학생 대상으로 학위취득시점까지 최대 18개월간, 월 700유로~1,040유로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장학금 승인 기간 동안 직업 활동은 중지되며, 실업급여, 재교육급여, 실습급여, 연금, 모성보호급여 등 다른

75) 오스트리아 대학보조금청(Österreichische Studienbeihilfenbehörde) <https://www.stipendium.at/>(검색일 2016.11.15.); 오스트리아 대학 정보사이트 <http://www.studieren.at/>(검색일 2016.11.15.) 발췌·번역 및 요약

76) 학위졸업시험을 거의 통과했고 학위논문을 이미 시작하였으나 마치는 않은 상태를 의미

기관의 생활비 지원 정도에 따라 감액된다.

유학 장학금은 외국 대학진학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외국에서 공인된 대학, 전문대학, 교육전문대학에서 학사 또는 석사과정을 하는 학생(박사과정은 미해당)에게 지급된다. 오스트리아에서 동시에 학위과정 이수 불가능하며, 대학지원법에 따른 다른 지원과 중복 불가능하다. 대학보조금 수급 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원필요성과 정상적인 학업성취도가 고려되며, 지급액은 대학보조금 급여액 산정방법 및 지급액과 동일하다.

(2) 공공부조: 가족보조금(Familienbeihilfe)⁷⁷⁾

가족보조금은 가족부담보상법(Familienlastenausgleichsgesetz, FLAG)에 근거,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직접적 이전소득을 통해 경감시켜줌으로써 아동의 기본육구 충족과 발달에 기여하는 제도로, 소득에 관계없이 유자녀부모에게 청구권을 부여한다. 청구권한은 어머니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지만 조부모, 의붓부모, 양부모도 법률상 부모로서 청구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도 아동의 생활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족보조금 청구가 가능하다. 아동 본인의 가족보조금 청구권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예외상황일 때만 인정된다.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의 경우 추가적인 요구사항 없이 가족보조금이 지급되며, 아동이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는 일반 가족보조금에서 추가가산금이 보장된다. 직업교육이나 고등교육과정에 있는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만 24세까지(2011년까지는 만26세까지) 가족보조금 수급이 가능하여⁷⁸⁾ 청년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 의미를

77) 연방가족·청소년부 <http://www.bmfj.gv.at/familie/finanzielle-unterstuetzungen/familienbeihilfe0.html>(검색일 2016.11.15.) 발췌·번역 및 요약

78)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만 25세까지 수급연령이 연장 가능하다.

①자녀가 군복무, 산업체복무, 대체복무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2011년까지는

가진다.

가족보조금 급여액은 자녀 연령에 따라 상이하하며(<표 4-7> 참조), 두 자녀인 경우 자녀 당 6.9유로, 세 자녀인 경우 자녀 당 17유로, 네 자녀인 경우 자녀 당 26유로, 다섯 자녀인 경우 자녀 당 31.4유로, 여섯 자녀인 경우 자녀 당 35유로, 일곱 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 당 51유로가 증액된다.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월 152.9유로의 추가가산금이 지급된다.

<표 4-7> 2016년 오스트리아 가족보조금 급여액

자녀연령	월 급여액(유로)
출생이후	111.8
3세 이후	119.6
10세 이후	138.8
19세 이후	162

자료: 연방가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www.bmfj.gv.at/familie/finanzielle-unterstuetzungen/familienbeihilfe0.html>(검색일 2016.11.15.)

가족보조금은 가족부담보상기금(Familienlastenausgleichsfonds)⁷⁹⁾에서 재정조달을 담당하는데, 기금은 모든 고용자의 세전 총 소득액에 기초한 고용주 분담금,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분, 농업 및 임업 기업 부담금, 주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3) 고용지원제도

만27세) ② 만 24세가 되는 날에 임신 상태이거나 중증 장애로 인해 인상된 가족보조금 자격을 갖게 된 경우 ③ 자녀가 19세 이상일 때 대학과정을 시작하고, 최소 전공기간을 이수했을 때 가능한 대학졸업시점까지 최소한 10학기 동안 대학학위과정을 해야 하는 경우(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 ④ 국내에서 활동하는 민간 공익단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했을 때 ⑤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녀의 경우 연령상한선 미적용(만 21세 이전에 경제활동 불가능하거나 만 25세 이전에 직업교육을 시작한 경우)

79)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와 부양의무가 없는 개인이 모두 부담금에 기여함으로써 유자녀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부담보상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1) 직업교육제도(견습제도)⁸⁰⁾

오스트리아 직업교육체계는 실용적 능력, 전문이론적 배경지식, 핵심적인 자격취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직업적 능력을 배양하고 직업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견습제도는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 직업교육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제도로, 실용적인 훈련과 교육이 진행되는 사업장과 전문이론 교육이 시행되는 직업학교의 연계를 통해 견습이 진행된다(이중 견습제도). 오스트리아에는 약 200여개의 견습직이 있으며, 직업교육기간은 견습직에 따라 2년에서 4년 소요(대부분 3년)된다. 견습생에게는 임금협약서에서 최소액으로 정한 보수 이상을 견습보상금으로 지급하며, 견습생을 위한 준비강좌와 직업숙련도 시험⁸¹⁾이 2008년부터 연방교육부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제공(견습생당 약 6,000유로 지원)된다. 견습기간 동안 직업숙련도시험을 위한 준비강좌를 수강하면, 추가적인 학교방문 횟수에 따라 견습기간도 연장(일반적으로 약 6개월) 가능하다. 또한 직업숙련도시험 합격 이후에는 오스트리아 대학과 전문대학에 제한 없이 진학할 자격이 부여되고, 추가적인 교육기관이나 숙련도시험을 전제로 하는 다른 직업교육기관 선택도 가능하다.

2) 견습생과 견습사업장을 위한 코칭⁸²⁾

사업장에서 견습직 지원을 통해 견습의 질을 개선하고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대책 중 하나로 2012년 오베르외스터라이히(Oberösterreich) 주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5년 오스트리아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견습과정에서 어려운 점

80) BMASK, Jugend und Arbeit in Oesterreich, Wien, 2016; BMWFW,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 Austria, 2014 발췌·번역 및 요약

81) 직업숙련도를 평가하는 최종 시험으로, 이 시험의 합격여부에 따라 최종 이수가 가능하다.

82) BMASK, Jugend und Arbeit in Oesterreich, Wien, 2016 발췌·번역 및 요약

이 발생 시 견습생, 사업장에서 견습책임자, 직업학교, 부모는 전문적인 코칭 신청이 가능하다. 실습생에게는 견습 사정면담 실시, 전망 제시, 중재과정 실행, 이후 자격취득 또는 고등자격취득, 진학 선택 안내, 견습졸업시험 준비 안내 등의 코칭이 이루어지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실시를 위한 정보, 견습생 견습지도방법, 견습생과 견습책임자를 위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지원 등이 제공된다.

3) AMS(노동시장서비스)의 기업 및 교육기관 지원

AMS(Arbeitsmarktservice)는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에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공공법 상 노동관청의 기능을 하고 구직 및 구인 중개를 담당한다.

① 견습직 지원⁸³⁾

AMS는 일반적 견습생이 아닌 추가적 견습교육⁸⁴⁾을 시행하는 기업과 직업교육기관에 견습교육 비용, 연장된 견습기간의 견습교육, 부분자격취득에 대해 월 보조금 지급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해당 견습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① 일반적인 견습보상에 해당되고 추가적 견습생 인적집단 중 최소한 하나에 속하거나 학교중퇴자인 18세 이상 견습생이 있는 기업에는 월 400유로, ② 범기업적 견습교육기관에는 최대 월 453유로, ③임금협약서를 체결한 고액 견습보상금에 해당되거나 임금협약서를 체결 또는 임시직보수를 받는 18세 이상 견습생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는 최대 월 755유로를 지급한다. 2015년 현재 AMS의 지원 견습직은 총 14,102개로, AMS는 약 2천8백만 유로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83) BMASK, Jugend und Arbeit in Oesterreich, Wien, 2016 발췌·번역 및 요약

84) 추가적 견습교육 대상자: ① 여성비율이 낮은 견습직에 있는 여성 청소년 ② 질병이나 장애, 대안학교 졸업자 등을 이유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견습 구직자 ③ 연장된 견습기간 또는 부분자격취득 직업교육에 있는 참가자

② 통합지원금(Eingliederungsbeihilfe)⁸⁵⁾

통합지원금은 실업자 및 구직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AMS와 정당, 정당 단체, 급진적 단체, 연방정부를 제외한 모든 고용주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단, AMS에 실업자 또는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① 실업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45세 이상, ② 최소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25세 미만 구직자, ③ 12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25세 이상 구직자, ④ 장기실업 위협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을 요하는 자(예: 부족한 실무경험을 가진 직업교육이수자 또는 재취업자)에 해당해야 하며, 연령제한 및 지원전제조건, 지원액과 지원기간 등 구체적 지원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4) 청소년 직업교육보장/ 범기업적 견습⁸⁶⁾

범기업적 견습제도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로, 적절한 견습직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졸업자 중 견습이 중단된 구직자는 범기업적 직업교육 시작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직업교육기관에서 전체 직업교육을 이수하거나 견습사업장과 협력하는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범기업적 견습 1), 전체 견습기간이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적절한 파트너기업에서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이행하는 직업교육계약도 가능하다(범기업적 견습 2). 또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일반 사업장 견습뿐만 아니라 범기업적 견습 제도 안에서 직업교육보조

85) AMS 홈페이지 <http://www.ams.at/service-unternehmen/foerderungen/eingliederungsbeihilfe-come-back>(검색일 2016.12.7.) 발췌·번역 및 요약

86) Michael Trinko, *Ausbildungsgarantie in Österreich*, Friedrich-Ebert-Stiftung, 2012; Liebeswar & Steiner, *Österreichs Strategie zur Bekämpfung der Jugendarbeitslosigkeit: Eckdaten und Maßnahmen im Überblick*, 2014; BMASK, *Jugend und Arbeit in Oesterreich*, Wien, 2016 발췌·번역 및 요약

인의 지도 아래 연장된 견습기간을 가지거나 부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범기업적 견습생에게 1, 2년차에 세후 월 약 300유로, 3년차에는 세후 약 700유로 견습보조금이 지급된다. 범기업적 견습보조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2013년 8월 1일부터 범기업적 견습제로부터 청소년들을 위임받은 사업장들은 일정조건⁸⁷⁾ 하에서 1,000유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015/2016년에 범기업적 견습직에는 약 12,000명이 참여하였고, AMS의 예산은 약 1억 6300만 유로에 달했다.

5) 청년 미래대책⁸⁸⁾

청년 미래 대책은 20세~24세 모든 실업 청년에게 6개월 이내에 구직 서비스와 교육, 정부지원 고용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AMS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결정한 자격취득 지원을 받거나 특별 고용지원을 받는다. 2015년 20세~24세 청년 중 AMS 강좌 서비스 이용은 약 56,400명이었으며, 자격취득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영역에서 20세~24세 연령 그룹을 위해 AMS가 지출한 예산은 1억 6,000만 유로였다.

6) 장애 청소년 대상 고용서비스⁸⁹⁾

2013년 장애인 노동시장 지원전략이 세워지고, 이 전략이 연방사회부 서비스에 반영되면서 청년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청년 장애인 대상 고용서비스는 장애인의 고용분야 통합을 위한 서비스들과 15세~24세 청소년 대상 지원 서비스들을 결합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청소년, 학습장애나 사회

87) 직업교육 1년 이후,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 교직이나 유사 교직에서 견습을 하고 있거나, 이미 이수한 직업교육시간을 산입해서 계산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지원 신청 가능

88) BMASK, Jugend und Arbeit in Oesterreich, Wien, 2016 발췌·번역 및 요약

89) BMASK, Jugend und Arbeit in Oesterreich, Wien, 2016 발췌·번역 및 요약

적응 곤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코칭, 제작학교(Produktionsschule), 부분 자격취득 및 연장된 견습 등의 형태로 시행되는 직업교육, 청소년사업보조인, 직업코칭(Job Coaching), 자격취득 프로젝트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들이 시도되고 있다.

① 청소년 코칭

교육이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을 재통합, 직업이나 직업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돕기 위한 청소년 코칭은 교육과정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또는 교육체계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19세까지 청소년과 25세까지 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청소년 코칭은 청소년들의 강점과 능력을 조사하고 적절한 발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첫 면담, 구체적 상담, 최대 1년간 지속가능한 지도 및 안내 등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② 제작학교

제작학교는 경쟁적인 직업교육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초적인 직업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안정화, 참여동기부여, 기초능력획득, 전문지식전달)한다. 주요 대상은 15세~19세 청소년이며, 구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참여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점적 훈련 모듈(노동시장진입지원), 연습(훈련, 직업지도등), 전문화(전문 직업교육), 코칭(상담 진행, 사업장 실습생 케어), 지식작업장(다음 직업교육단계를 위해 필요한 능력 훈련), 스포츠활동(스포츠와 기타 여가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제작학교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며, 성공경험 부여) 등이 있다.

7) 기업가 자격증(Unternehmerführerschein/Entrepreneur's Skill Certificate)⁹⁰⁾

90) 오스트리아 경제회의소 홈페이지 https://www.wko.at/Content.Node/kampagnen/ufs_de/index.html(검색일 2016.11.18.); WKO, Unternehmerführerschein, 2015 발췌·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업가적인 능력’을 평생교육을 위한 8가지 핵심능력 중 하나로서 정의하고, 창의성, 혁신, 기업가 정신에 근거한 기업가 교육을 장기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먼저 기업가 자격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오스트리아의 기업가 자격증은 경제 및 금융지식 교육을 바탕으로 기업가적인 능력을 배양하여, 청년들이 졸업 후 창업을 하거나 경제 분야 진학이나 취업을 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된 자격을 부여한다. 운영주체는 오스트리아 경제회의소이며, 비즈니스와 금융능력 배양을 위한 4가지 모듈⁹¹⁾로 구성되는데, 모든 4개 모듈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적으로 명시된 기업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기업가 자격증은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 시 유리하게 작용하며 창업뿐만 아니라 취직 및 관련 전공 진학 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 및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지역으로서 오스트리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엄격하게 공인된 자격을 기준으로 피고용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8) aws First⁹²⁾

aws First는 첫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코칭, 재정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직업으로서 기업가가 되길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 대상은 대학졸업이나 직업경력을 가진 18세~26세 청

역 및 요약

91) 기업가 자격증은 다음의 4개 모듈로 구성되어있다.

- 모듈 A: 기초개념과 기본적인 경제 관련 내용 중심
- 모듈 B: 국가경제
- 모듈 C: 비즈니스 경제학 기초
- 모듈 UP: 심화과정

92) aws First 홈페이지

http://www.awsg.at/Content.Node/foerderungen_alle/-gruenden/-121711.php(검색일 2016.11.19)

발췌·번역 및 요약

년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명에서 4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이며, 비즈니스 모델 훈련, 현실성 점검 워크숍, 기존 기업가와의 팀별 멘토링, 공동작업공간(coworking space)⁹³⁾에서 사업장 준비,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 월별 학술 보조금과 아이디어에 대한 프로젝트 예산 등이 지원된다.

(4) 주거보조: 주거보조금(Wohnbeihilfe)⁹⁴⁾

주거보조금은 대학보조금과 함께 무소득이거나 낮은 소득을 가진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주거보조금 청구권 규정과 지급액은 주정부 차원의 규정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주거보조금액은 주거크기, 주거비, 가계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표 4-8> 주거보조금 사례: 빈(Wien), 2015년 기준

- 소득상한선: 가계소득으로 전체 가계 구성원의 모든 세후소득 포함(장학금, 양육비 포함)하여, 월 세후소득 1인 기준 827.82유로(성인 한명당 413.37유로 상승)
- 주거크기: 적정 사용면적은 1인당 50평방미터, 2인당 70평방미터, 추가 인원당 15평방미터(실제 제시된 주거면적이 적정 사용면적을 초과하면 적정 사용면적의 산입가능한 주거비용이 초과면적에 상응하여 감소)

자료: 빈 홈페이지 <https://www.wien.gv.at/>(검색일 2016.11.19)

93)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협업의 공간 또는 커뮤니티.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94) 오스트리아 대학 정보사이트 <http://www.studieren.at/studienfinanzierung/wohnbeihilfe> (검색일 2016.11.19) 발췌·번역 및 요약

(5) 의료지원제도⁹⁵⁾: 대학생 건강보험

오스트리아에서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최대 만 27세까지 부모의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부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고용에 따른 의무적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무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공공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학생은 대학생 자가건강보험과 저임금 노동자 대상 자가건강보험, 일반 자가건강보험 등 세 종류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대학생 자가건강보험

만 27세 이상인 대학생도 이용 가능하며, ① 오스트리아 내 정식 거주지 ② 전공이 2번 이상 바뀌지 않았을 것(3학기 등록이후에는 전공변경이 더 이상 불가능) ③ 4학기 이상 초과학기 시 신청 불가능(질병 등 중대한 사유 제외) ④ 전문대학교에서 이미 졸업하지 않았을 것(예외: 박사과정) ⑤ 소득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소득상한선인 연 10,000유로를 넘지 않는 등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월 55.40유로(2016년 기준)이다.

○ 저임금 노동자 대상 자가건강보험

저임금 노동자 대상 자가건강보험은 매달 수입이 법적인 규정에 따라 415.72유로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다. 단 ① 본인연금(노령연금, 외국연금)이 있거나, ② 고용에 따른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의무가입 있을 경우, ③ 자영업자로서 공인된 전문직에 속할 경우(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관, 토목기사 등) ④ 국경 노동자⁹⁶⁾, 실업급여수급

95) 오스트리아 보험관련 정보 사이트 <http://www.versicherungen.at/>(검색일 2016.11.20); 대학생 법률대리기관 사이트 <https://www.oeh.ac.at/rund-ums-studieren/versicherung#Selbstversicherung>(검색일 2016.11.20) 발췌·번역 및 요약

자 또는 해고유예수당수급자, 양육수당수급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료는 월 58.68유로(2016년 기준)이다.

○ 일반 자가건강보험

오스트리아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나 공공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입 가능하며, 피보험인의 경제적 상황에 준해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소득상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학생의 경우 부모의 생활비지원도 고려된다. 보험료는 월 397.35유로이나 일반적으로 학생은 감액 가능하며, 보통 최소 보험료인 월 99.34유로를 납부한다.

<표 4-9> 오스트리아의 주요 청년정책

구분	주요 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등록금: 정규 학기 내 등록금 없음 - 대학 보조금(Studienbeihilfe): 부모와 학생이 자력으로 대학학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 5유로에서 최대 679유로까지 지원 (예외규정 있음) - 장학금: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은 대학보조금이 주요 수단이며, 장학금은 이 외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생계부양자장학금, 졸업장학금, 유학 장학금 지급
공공 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보조금(Familienbeihilfe): 아동수당의 일종으로 미성년 자녀는 조건없이 지급되며, 성년 자녀(만 24세, 예외적인 경우 만 25세까지)가 (직업)교육과정에 있을 경우 월 급여액 162유로(다자녀가구의 경우 추가증액)
고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견습제: 오스트리아 청소년 고용지원의 핵심으로 사업장과 직업학교 연계를 통해 2년~4년간 견습 시행, 직업숙련도시험을 통해 견습과정 이수, 견습생에게 견습보상금 지급 - 청소년 직업교육보장(Ausbildungsgarantie für Jugendliche): 2008년 이후 범기업적 견습제도의 확장을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직업교육자리 보장

96) 인접국의 국경지대에서 거주하면서 오스트리아에서 일하는 노동자, 또는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면서 인접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미래대책: 20세~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확장된 직업교육보장 6개월 이내에 본인이 결정한 자격취득 지원 또는 특별 고용지원 - 장애 청소년 대상 고용서비스: 장애, 학습장애, 사회적응 곤란 청년 대상 고용 통합서비스, 다양한 사업형태 시도, 청소년코칭·제작학교 등 - 기업가 자격증 (Unternehmerführerschein/Entrepreneur's Skill Certificate): 청년들에게 비즈니스와 금융 관련 교육 제공, 창업이나 관련 분야 취업 시 공인된 자격 부여 - aws First: 첫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코칭, 재정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체계적 준비 기회 제공
기업 지원	<p>AMS(Arbeitsmarktservice)의 기업 및 교육기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습직 지원: 불리한 조건을 가진 견습생을 대상으로 견습을 실시하는 기업과 교육기관에 월 보조금 지원 - 통합지원금: 실업자 및 구직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 월 보조금 지급, 25세 미만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일 경우 지원(25세 이상은 12개월 이상), 직업교육이수 후 실업상태일 경우 장기실업 위협 대상자에 해당되어 조기 지원 가능
주거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보조금(Wohnbeihilfe): 기본적으로 소득수준, 주거크기, 주거비, 가계규모를 기준으로 책정, 대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주요 제도, 주정부별 세부규정
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만 27세까지 부모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 고용에 따른 의무적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자가 건강보험에 가입 - 대학생 자가건강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여타 자가 건강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건강보험 가입 가능

3. 아일랜드

가. 정책개관

아일랜드의 청년관련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교육이 고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 실업자들이 교육을 통해 고용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아일랜드의 청년보장 정책은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고 학교를 중퇴한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두 번째 기회, second-chance)과 18세-24세 실직 및 구직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알선, 직업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을 중심으로 기관 및 지방 정부간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Ireland 2016).

나. 주요분야별 지원정책

(1) 교육지원정책⁹⁷⁾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훈련지원(Youthreach)

학교를 중도에 떠난 청년에게 기초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직업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비고용상태에 있고 직업훈련경험이 없는 15세~20세 청년을 대상⁹⁸⁾으로 시행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97) 교육지원 정책은 Citizens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검색일 2016.12.5.) 발췌·번역 및 요약

98)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ETB) Youthreach programme은 15~20세를 대상으로, Community Training Centre는 16세~21세를 대상으로 함. 단 25세 이하이면서 장애가 있거나 실업상태인 청년의 경우 Community Training Centre 참여 가능함

훈련지원(Youthreach)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수학, 생활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 직업훈련, 직업 체험 등이 제공되는데, 과정은 1년에서 2년 까지 필요에 따라 운영되며, 기초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증(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 (QQI) or the Junior Certificate)을 통해 전문과정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훈련지원(Youthreach) 프로그램의 훈련비용은 무료이며, 16세 이상인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2016년 현재 16~17세의 경우 주당 40유로,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당 160유로가 지급되며, 이밖에 교통비(거주지역과 원거리인 경우), 보육시설 무료 이용, 식대 등도 지원된다. 또한 12개월 이상 구직자 급여(Jobseekers Benifit) 또는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s)를 받았거나, 최소 12개월 이상 지역고용계획(community Employment Scheme)에 참여한 경우(위 2개의 프로그램 연결이용한 경우도 가능) 추가적인 훈련 보너스(20유로)도 수령 가능하다.

2) 추가교육 및 훈련 과정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FET) courses)

정리해고자, 실업자, 풀타임 학생이 아닌 경우, 한부모급여대상자, 장애관련 사회보장급여(social welfare payment)대상을 위한 추가교육 및 훈련과정도 제공된다. FET 과정은 The Traineeship Programme(풀타임 훈련과정, 자격증 과정 등)과 Specific Skills Training(장단기 주간 과정, 온라인과정, 야간과정 등)의 두 가지 유형의 훈련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직업훈련기회 지원 (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Scheme: VTOs)

21세 이상이며 사회보장급여(JB, JA, 한부모급여, 장애수당 등)를 받

는 실업자에게는 최소 6개월간의 직업훈련기회도 부여된다. 2014년부터 26세 이하의 신규 VTOs 참여자를 대상으로 JA에 추가하여 주당 160유로가 지급되고 있다.

(2) 공공부조⁹⁹⁾

1) 구직자 급여(Jobseeker's Benifit)와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7일 중 최소 4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부분실업자에게는 구직자 급여(Jobseeker's Benifit, JB)와 수당(Jobseeker's Allowance, JA)이 지급된다. 구직자 급여는 일시적 사유로 근로시간이 감축된 경우, 체계적인 단기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job-sharing 포함), 계절적 실업자 또는 파트 타임, 보조 고용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보험(PRSI)에 의해 보장되며, 구직자 급여의 수급요건이 안될 경우 구직자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구직자 수당은 근로일수가 감축된 경우, 일시적 해고, 자영업자 중 소득이 감소된 경우, 파트타임이거나 비정기적 고용인 경우를 대상으로 사회보험(PRSI)자격이 안되는 경우 자산조사에 의해 기준 충족 시 지급된다. 구직자 수당은 연령에 따라 지급비율이 감소되는데 26세 이하이면서 교육훈련 또는 고용지원계획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금액 차감 없이 지급한다. 2014년부터 26세 이하의 BTEA(Back to Education Allowance) 참여자 중 연령연계감소(age-related reduced rate, JA)에 해당되는 경우 BTEA 최대금액인 16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99) 공공부조는 Citizens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검색일 2016.12.5.) 발췌·번역 및 요약

2) FET 훈련 수당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FET) courses Allowance)

FET 과정 등록자 중에서 JB, JA와 같은 사회보장급여대상자와 18세 미만, Community Training Centre 참여자는 연령 관련 훈련수당을 지급 받는다. FET 훈련수당(FET training Allowance)은 수령하는 사회복지급여(social welfare payment)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2014년부터 26세 이상이고 JA를 받거나 Supplementary Welfare Allowance를 받는 경우 기존의 급여는 정지되고 FET 훈련수당을 동일한 금액으로 수령하며, 26세 이상인 경우는 160유로가 지급된다. 구직자 급여(Jobseeker's Benifit)를 받는 경우 역시 기존 급여는 정지되고 FET 훈련수당을 동일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된다.

<표 4-10> FET 훈련 수당 (FET training Allowance)

FET 훈련 수당 (training allowance)	주당지급(full-time)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또는 사회복지급여대상자(SWA)(26세 이상)	사회보장급여와 동등한 수준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또는 사회복지급여대상자(SWA)(26세 이하)	€ 160
구직자 급여대상자(Jobseeker's Benefit)	사회보장급여와 동등한 수준
한부모급여대상자, 질병급여 또는 장애연금 등 장애수당대상자(Disability Allowance)	사회보장급여와 동등한 수준
(18세 이상)	
장애수당대상자(Disability Allowance)(17세)	€ 95.75*
장애수당대상자(Disability Allowance) (16세)	€ 76.65*
사회복지급여 미대상자(16세-17세)	€ 40

자료: Citizens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검색일 2016.12.5.)

(3) 고용지원제도¹⁰⁰⁾

1) 이직지원 프로그램(Work Placement Programme)

이직지원 프로그램(WPP)은 대학졸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9개월 간의 직무연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WPP Stream 1은 대학 졸업자를, WPP Stream 2는 34세 이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복지급여(Social welfare payment)를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경우 2개 과정 모두 모두 해당되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복지급여 외에 추가로 주당 50유로가 지급된다.

2) JobsPlus

JobsPlus는 실업자를 채용할 때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실업자 채용시 1인당 7,500유로를, 24개월 이상 실업자 채용시 1인당 10,000유로를 지급한다. 단 25세 이하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4개월인 경우(Jobplus Youth part of Scheme)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① 지역 사회 고용 계획(Community Employment scheme)¹⁰¹⁾

지역사회 고용(CE)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내에서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장애로 인하여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전까지 지역

100) 고용지원제도는 Citizens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검색일 2016.12.5.) 발췌·번역 및 요약

101) Citizens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검색일 2016.12.10.) 발췌·번역 및 요약

사회 내에서 임시 일자리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아일랜드의 사회가족부는 지역사회 고용 계획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정규직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임시로 비정규직 일자리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비정규직 일자리에 일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후 정규직 일자리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다.

② Tús¹⁰²⁾

Tús란 실업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자리는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단체가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제공된다. Tús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사회 가족부가 주관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업 범위로는 환경 서비스(국도 관리 및 보존), 돌봄 서비스(요양보호사, 보육교육사), 지역사회 일반 서비스(뉴스 레터나 지역사회 정보제공), 유산 및 문화 서비스, 파라 교육 서비스(지역사회 놀이 그룹)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지역사회 프로그램(Community Services Programme Information)¹⁰³⁾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 사회에 있는 회사나 협동조합에 기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공공의 복리가 낙후된 지역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도서지역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 프

102) Citizens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검색일 2016.12.10.) 발췌·번역 및 요약

103) Citizens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검색일 2016.12.10.) 발췌·번역 및 요약

로그랩은 다른 영역의 공적인 투자도 허용하고 있다.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있는 사업장은 같은 경우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놓고 발전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선발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록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채용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집 단열, 장애인 운송 서비스, 식사 배송서비스 등
- 지역사회 사업장에서 장애인, 여행자, 약물 중독 회복자, 전과자를 채용한 경우
- 지역사회 편의 시설 점검 및 공공시설 운영

4) 게이트 웨이(Gate way)¹⁰⁴⁾

게이트 웨이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장기 실업자에게 단기 일자리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 촉진 계획이다. 일자리는 주로 지역 사회에 있는 사업장에서 제공된다. 운영 주체는 지역 의회이다. 아일랜드 사회가족부에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제공되는 일자리는 보통 옥외에서 작업하는 직종의 경우가 많지만 지역사회 내에 있는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다. 새로운 프로젝트거나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상관없으며 채용문제로 인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해도 상관없다. 주로 지역 발전 계획, 지역 조경 계획,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내 야생 동물 관리, 도내 도서관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104) Citizens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검색일 2016.12.10.) 발췌·번역 및 요약

(4) 주거보조¹⁰⁵⁾

1) 사회주택(Social Housing) 제공 및 임대료 보조(Rent Supplement)

주거급여(Social Assistance Payment)대상자이면서 가구소득기준 충족 시, 사회주택 제공 및 개인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 지급도 이루어진다.

2) 2016년 자가 주거보조 계획(Incremental purchase - 2016 scheme)

연간소득이 15,000유로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구입비용의 60%, 50%, 40%가 차등 지원된다.

(5) 의료지원제도: 의료카드(Medical Card) ¹⁰⁶⁾

의료카드는 자산 및 소득기준에 따라 부여되는데, 주당 소득이 가족 구성원의 수와 비례하여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심사 후 적용대상으로 선정된다. 대상 선정 후에는 무료 가족 주치의 서비스, 의약품 처방, 내원 및 입원 서비스와 의료기기, 보건·간호/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105) 주거보조는 Citizens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검색일 2016.12.5.) 발췌·번역 및 요약

106) 의료지원제도는 Citizens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검색일 2016.12.5.) 발췌 후 번역 및 재구성

<표 4-11> 아일랜드의 주요 청년정책

구분		주요 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교육·훈련지원(Youthreach): 학교중단 청년대상 기초교육, 직업훈련, 직업체험제공. 주당 훈련수당 지급 - FET 훈련과정(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새로운 직업기술이나 새로운 이직을 위한 직업 훈련 제공 - 직업훈련기회 제공(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Scheme): 21세 이상이며 특정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실업자에게 최소 6개월간의 직업훈련 기회를 부여하는 계획(VTOs)으로 JB, JA급여대상자 한부모급여대상자, 장애수당대상자 등임. 2014년부터 26세 이하의 신규 VTOs 참여자를 대상으로 JA에 추가하여 주당 160유로 지급
공공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 급여(Jobseeker's Benefit)와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 FET 훈련 수당(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Allowance): 새로운 직업기술이나 새로운 이직을 위한 직업 훈련 수당 제공
고용 지원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지원 프로그램(Work Placement Programme): 대졸자, 실업자 대상 9개월간의 직무연수 제공. WPP Stream 1은 대학졸업자 대상, WPP Stream 2는 34세 이하 실업자 대상임. 참여자에게 복지급여 외에 추가로 주당 50유로 제공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bsPlus: 12개월이상 구직자 채용 인센티브 부여제도. 25세 이하인 실업자 채용 경우 실업기간을 4개월이상으로 인정(Youth part of Scheme)
주거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택(Social Housing) 제공 및 임대료 보조(Rent Supplement) - 2016년 자가 주거보조 계획(Incremental purchase - 2016 scheme)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카드(Medical Card)

4. 네덜란드

가. 정책 개관

네덜란드 사회복지체계의 기본전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 수준(minimum)의 소득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3층(three pillars)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층(first pillar)은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용자보험제도(employee's insurance scheme)로 상병보험(ZW), 장애보험(WAO), 실업보험(WW), 그리고 의료보험(ZFW)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층(second pillar)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이며, 노령연금(AOW), 유족급여(ANW), 장기돌봄(Wetlangdurige zorg), 그리고 아동수당(AKW)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층(third pillar)으로는 최저소득(minimum guaranteed income)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부조제도(social assistance scheme)를 들 수 있다(정기혜 외 2012).

나. 주요 분야별 지원 정책

(1) 교육지원제도¹⁰⁷⁾

2013년 3월 청년 실업 접근에 관한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추가적으로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이와 관련 교육부(OCW)를 주체로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107) 교육지원제도는 Garanzia Giovani, Dutch initiatives to prevent and tackle youth unemployment, 2015. 발췌·번역 및 요약

수 있는 기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1) 학교 조기 중퇴자 방지

청년층의 실업의 악순환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실업으로 고통을 겪는 청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문화적 차이로 교육에 적응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중도 탈락자에게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조기 중퇴자를 관리한다. 39개 시구에 조기 중퇴자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으며 지방 관리 센터(RMC)에서는 조기 중퇴자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한다.

2) 고용 복지 서비스

실업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노동 시장과의 거리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는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학습자에 맞춰 제공하기도 한다. 2013년 기준 30여개 정도의 고용 복지 서비스 사무소가 존재하며 물리적인 거리나 기술적인 제약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2013-2015년도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군 단위의 청년 실업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각 시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다.

3) 청년 실업 해결 방안 (Action Plan youth unemployment)¹⁰⁸⁾

네덜란드에서는 지속적인 청년 실업의 원인 중 하나로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학교 교육과 실제 직무에서 이루어지는 직무 내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108) Garanzia Giovani, Dutch initiatives to prevent and tackle youth unemployment, 2015, p.6. 발췌·번역 및 요약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하여 구직을 원하는 청년 중 25세 이하에게는 실업 기간 4달 동안 중등교육, 도제식 훈련, 직업 연수기회 제공 등과 같은 교육 보장을 보장한다. 또한 산학 연계 강화 프로그램 및 중등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 현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였지만 2016년엔 종료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종료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도 학교 조기 중퇴 방지 프로그램, 교육 훈련 워크숍 보조금 지급, 지역별 직업 훈련 학교 기금, 상급 직업 훈련 학교 제공 용 정보지 제작, 테크놀로지 분야 산·관·학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다음 <표 4-12>와 같이 청년 교육 및 고용 연계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이 협력하에 움직이고 있다. 사회보장 고용부는 청년보장정책을 기획하고 주무부처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이 고용과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 집행을 위하여 사회 각분야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협력하고 있다.

<표 4-12> 청년 보장정책 수행 주요 기관

연번	기관명	기관 형태	책임 범위	청년 보장 계획 역할	협력 기관
1	사회 보장 및 고용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공공 기관	국가 단위	- 사회 통합 계획의 큰 틀을 결정하는 제도. 구직자에게 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고용 서비스(UWV)를 통해 구직자에게 혜택이 닿을 수 있게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함 - 실업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이끌며 청년 실업을 이끄는 선두 기관	- 지방 정부와 보조금 협의 - 사회 각 분야별 협력 - 공동용자
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공공 기관	국가 단위	1. 조기 중퇴자에 관한 집중 케어. 학교를 조기에 중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을 집중 2. 기업에서 직무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1. 교육 문화 과학부(OCW)에서는 각 지방 정부의 중등 교육 기관에 보조금 교부 실시 예정 2. 실질적인 기량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에 집중

제 4 장 유럽국가의 청년정책 사례

연번	기관명	기관 형태	책임 범위	청년 보장 계획 역할	협력 기관
				3. 직무연수와 견습기간 받는 교육의 활용도 높이기	3.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집중하여 충분한 직무연수와 견습 기간 활용. 지역 직업상담사와 연계하여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
3	사회 각 분야	사회 각 분야	분야 별	1. 청년들을 위한 추가적인 직무연수와 견습제도 운영 2. 취약 계층의 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 협력과 공조 용자
4	지방 자치단체, 중앙 지자체 35개 노동 시장	파트너 십	지역	- 훈련과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구직자 지원(청년 포함) -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직자 지원. 18세 까지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	- 공동책임
5	학교		지역	- 양질의 교육	- 각 교육 기관은 청년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자료: Garanzia Giovani(2015). Dutch initiatives to prevent and tackle youth unemployment.

(2) 공공부조¹⁰⁹⁾

네덜란드 공공부조제도는 18~65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과 공공부조를 연계하는 제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18세 혹은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가구 단위 혹은 부모에 대한 소득보장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부조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사회고용부(SZW,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이다. 사회고용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급여수준의 결정, 관련된 고용지원정책을 집행, 그리고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109) 네덜란드의 공공부조는 정기혜 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2012, pp.236-260. 발췌·요약

보충급여와 지원을 포함하여 공공부조 수혜자에 적합한 형태의 맞춤형(tailor made) 급여를 제공한다.

1) WIJ (investment in sustainable work for young people act)

이 제도는 기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급여 혹은 보충급여를 정리하여 일원화 한 것이다. WIJ를 새로 도입한 이유는 21~26세의 경우 대부분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WIJ 수급대상자가 전업학생(full time student)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와 연계되는 공공부조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WIJ 급여 기준선은 급여대상자의 연령, 결혼 여부, 그리고 자녀유무에 따라 상이하다.

2) 장기보충급여(long-term supplement)

수급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22세 이상 64세 이하의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장기보충급여(long-term supplement)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장기보충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 급여기간이 5년이상이고, 근로 또는 근로와 관련된 소득이 없어야 하며, 구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 청년학생 장애부조제도(Wajong, Disablement Assistance Act for Handicapped Young Persons)

18세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선천성 장애) 혹은 18~30세까지 학업이나 직업훈련 중 발생한 질병 혹은 사고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 동안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MSZW 2011; 정기혜 외 2012, 재인용). 이때 장애 전 학업 및 직업훈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아울러 1년 이내에 회복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근로를 통한 소득이 최저임금의

75% 미만으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청년장애수당은 사회고용부(노동소득감독국)에서 관장한다. 피용자보험공단(UWV, Institute for Employee Benefits)이 수당의 지급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청년장애인은 UWV의 지역사무소(종전: 근로소득센터:Centre for Work and Income)나 임시직 고용청(temporary employment agency)에 실업을 등록해야 한다. 각 해당기관은 직업소개, 시험고용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표 4-13> 청년학생 장애지원수당

구분	주요내용
취지 및 목적	선천성장애자 및 학령기 장애의 소득보전 및 소득활동지원
수급요건	18세 이전 장애발생, 18~30세 사이 학업 및 직업훈련 중 장애 발생
급여수준	최대 최저임금의 100%(장애정도, 연령, 개호필요여부, 소득활동여부 등에 따라 차등)
재원	전액 국고
관리운영	일반장애연금과 함께 피용자보험공단(UWV)에서 운영

자료: 정기혜 외(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고용연계급여(소득비례성격의 보험급여 salary-related benefit)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실업자 혜택(WW, werkloosheidsuitkering)을 받을 수 있다. 급여는 직전소득의 70%정도로, 모든 WW는 정부기관인 UWV에서 실행된다. 고용연계급여는 직전 36주간 26주 동안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3개월 이상 기본 복리후생제도에 속해 있는 65세 미만의 대상자가 주당 5시간 이상의 근로기간 감소(원래 주당 10시간 미만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주당 1/2 이상 근로시간 상실), 비자발적 실업, 공공실업관리기관에 실업등록을 한 경우, 일할 능력과 적정일자리 제안에 대한 수용의사, 최소 가입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급되며

(MSZW 2011; SSA 2011; 정기혜 외 2012, 재인용), 근로기간에 따라 기본 3개월에서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3) 고용지원제도¹¹⁰⁾

네덜란드 고용 및 실업정책은 크게 고용보험대상자와 비대상자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대상자(일반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틀 내에서 소득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고용보험의 비대상자인 나머지 계층(청년,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은 주로 실업부조(사회부조)의 테두리 내에서 소득보장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1992년부터 23세 이하의 청년실업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에 처한 청년에게는 가능한 한 조기에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적근거는 청년근로보장법(Youth Work Guarantee Act)이며, 1998년에 구직자재고용촉진법(WIW, Job Seeker' Re-employment Act)에 통합되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은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먼저 고용사무소에 실업을 등록하거나 지자체 사회 서비스국에 사회부조를 신청하는 모든 청년은 해당 사무소의 담당자(counsellor)와 함께 취업계획(joint plan)을 수립하게 된다. 즉, 초기에는 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구직청년과 담당자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취업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이다. 모니터링 중 스스로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공동으로 교육, 직업체험, 취업원서작성훈련(job application training) 등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음으로 교육이나 직업체험 등의 취업노력이 12개월 내에 취업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공공, 공익 및 기업

110) 정기혜 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2012, pp.120-149. 발췌·요약

사업장 등의 일자리(주당 32시간 근로+법정최저임금)를 제공하는데, 고용기회 제고를 위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인턴십(Apprenticeship training) 등 다양한 직업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1) 통합적 노동 시장을 위한 지원(Supportive measures for labour market integration, 2013-2015)

청년들은 고용 시장에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부에서는 현재의 상태보다는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청년들이 고용되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실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35개의 주요 고용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50%까지 기금을 마련하였다. 각 분야별로 청년을 위한 직업 및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5,8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Garanzia Giovani 2015).

<표 4-14>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계획

연번	항목명	주요대상	목표그룹	단위	주체	시행시기	예산금액
실행 예정 입법안							
1	사회 참여 개선 입법	실업자	직업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구직자	국가	고용 복지부	2014년에 하원 통과 후 2015년 효력 발휘	
2	고용 안정 개선 입법	실업자 고용안정	경제참여 인구	국가	고용 복지부	2015년에 하원 통과 후, 2015년과 2016년 실행	

연번	항목명	주요대상	목표그룹	단위	주체	시행시기	예산금액
실행 예정 계획안							
1	지역별 접근	협력강화	청년층	지역	지자체	2013-2015	€25 + €30만
2	분야별 계획	고용시장 유지 및 추가훈련	청년층 포함	분야별	고용주와 각 사회주체	2013-2015	€600,000만 그 중 200,000만 청년 정책 투입
3	청년 실업 대상 제도	지역과 분야별 연계강화	고용주, 사회 각 분야 경제 주체와 지자체	국가	고용복지부	2013-2015	
4	프리미엄 조세 감면 제도	조세감면	재직자와 실직자	국가	고용복지부/국세청	2014-2015	총 €300만
5	공석률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청년	국가	고용보협서비스(UWV)	2014-2016	
6	연간 사회 통합 보고서	이민 청년자들에게 동등한 기회주기	이민자	국가 / 지방	고용복지부, 지자체, 각 경제 주체		

자료: Garanzia Giovani(2015). Dutch initiatives to prevent and tackle youth unemployment.

(4) 주거보조¹¹¹⁾

네덜란드에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정책적으로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2013년과 2012년에는 주요 도시에서는

111) 주거보조정책은 Koen Hermans, The Dutch Strategy to Combat Homelessness: From Ambition to Window Dressing?, 2012 발췌·번역 및 요약

청년 노숙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더치 노숙 청년 재단에서는 청년 노숙자들이 복지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코호트 조사를 통해서 보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까지 진행된 연구 조사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 숙소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2014년에는 정부의 정책이 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 생애 첫 집 지원 제도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애 첫 집을 구매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지원된다(현재 103%까지 가능, 2%는 세금). 다만 최근 들어 주택 대출 정책은 신용 조건을 강화하고 주택 대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자산에 대한 상세보고서, 구매하는 집에 보험가입 의무, 자산 가치 점검 등 까다로운 인증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2) 청년 노숙자 지원

2012년과 2013년에 정부와 지자체의 합의하에 긴급 주거 액션 플랜(2014년 종료)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정책 실행 시에는 긴급 주거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두 번째 정책 실행 시에는 노숙자가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노숙자 생활에서 탈피 할 수 있도록 갱생을 돕는 정책을 펼쳤다. 긴급 주거 정책은 39개 주요 지자체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주요 지자체에서는 청년 노숙자를 지원하였는데 더치 노숙자 재단(Stichting Zwerfjongeren Nederland)에서는 노숙 청년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보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출현하였다.

(5) 의료지원제도¹¹²⁾

네덜란드의 의료보장제도는 1) 사회건강보험제도(Zorgverzekeringswet) 2) 장기보장제도 3) 사회보장제도 4) 청년보장제도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관련 제도는 사회건강보험제도와 청년보장제도이다.

1) 사회건강보험제도(Zorgverzekeringswet)

네덜란드에서 의약품 공급은 국가에서 운영되던 사회건강보험 제도에서 운영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국영 사회 건강보험과 민영 건강보험으로 분리되었다. 대략 60%정도의 의료지원 제도는 60%정도가 사회건강보험제도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개인은 기본 건강 보험을 구매해야만하며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본인의 선택이다. 국영이나 민영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혜택은 인종이나 나이 학력 배경과는 상관없이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보험 제공자는 계약자를 돌봐야할 의무가 있고, 계약자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에게 기본적인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법률로 보장된다.

2) 청년보장제도

청년보장제도는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률로 201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각종 질병이나 장애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과 그 가족들을 돕는 법률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심리적인 질병과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은 장기 보장제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청년보장제도에서 주로

112)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Healthcare in the Netherlands, 2016 발췌·번역 및 요약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원봉사나 의무적인 돌봄이다. 청년보장제도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4-15> 네덜란드의 주요 청년정책

구분		주요 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세 이하 교육 보장(실업 기간 4달 동안 중등교육, 도제식 훈련, 직업 연수 기회 제공) - 산학 연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2014 운영 종료) - 학교 조기 중퇴 방지 프로그램 운영(2010-2016 운영) - 중등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 현장 프로그램 연계(2015 운영 종료) - 교육 훈련 워크숍 보조금 지급(2014-지속 운영 예정) - 지역별 직업 훈련 학교 기금(2014-2017) - 상급 직업 훈련 학교 제공용 정보지 제작(2014 시작 지속 예정) - 테크놀로지 분야 산·관·학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2013-2020)
공공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J(investment in sustainable work for young people Act): 청년대상 부가급여 - 청년학생장애부조제도: 18세이전장애 혹은 18-30세까지 학업이나 직업훈련중 장애 발생시 소득보장
고용 지원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근로보장법(Youth Work Guarantee Act), 1998년 구직자재고용촉진법(Job Seeker' Re-employment Act, WIW)으로 통합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통합적 노동시장을 위한 지원: 해고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차별없이 실업혜택지원 등
주거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첫 집 지원 제도 - 청년노숙자 지원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건강보험제도 - 청년보장제도(2015): 각종 질병, 장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청년과 그 가족을 돕는 법률, 지방정부 주관법률입

제 4 절 단일법체계 미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1. 프랑스¹¹³⁾

(1) 프랑스의 청년정책 개관

사회정책 측면에서 청년문제를 접근하면서 니트와 니트 이외 청년 대상의 차별화된 실업부조-고용지원-기업 연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정책은 구체적으로 니트 대상 청년수당-미션로컬-미래고용계약과 청년실업자-통합고용센터-세대계약 등 2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대상 고용지원기관은 따로 없는 특징이 있다.

특히 프랑스는 고용지원과 실업부조 이외에 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등 기업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 교육 특히 학자금 및 의료보험의 경우,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이철선 외 2016, p.80).

(2) 교육지원제도

1) 장학금 지원¹¹⁴⁾

학업 중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청년들의 경제적 특성, 거주 환경 등을 반영하여 학자금 지원, 거주비용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프랑스의 장학금 제도는 청년들의 고등교육 접근 기회 확대 및 학업 성취도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 지원 정

113)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p.80-104. 재구성함

114) 한국교육개발원, 프랑스의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현황, 2013;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p.81-82. 재인용

책의 대상자는 장학금 내용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28세 미만의 학생이 주요 대상자라 할 수 있다. 장학금 지원 업무는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장학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의 유형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우수인재 장학금, 해외연수 장학금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은 만 28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가계소득 등에 따라 신청가능하고, 2012~2013년 연간 가계소득기준은 33,100유로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장학금을 수혜 받는 모든 학생은 등록금과 의료보험료가 면제되며, 장학금은 10개월의 학기 동안 나누어 지급된다. 부모의 소득, 학교-집 통학거리, 부모의 부양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0~6단계로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특징이 있다.

<표 4-16> 프랑스의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의 단계별 지원금액

(단위: 유로)

단계	0	1	2	3	4	5	6
지원금액	0	1,640	2,470	3,165	3,858	4,430	4,69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프랑스의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현황; 이철선 외(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p.81.

둘째, 우수인재 장학금은 전공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청년 중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입학 시 심사하며,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수혜자도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학부과정의 경우 프랑스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성적이 “매우 우수”인 경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석사과정 입학의 경우 학부과정 성적이 최우수이면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총 지원 금액은 1년에 1,800유로이다.

셋째, 해외연수 장학금은 교환학생 또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우수인재

장학금과 동일하게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장학금은 월 400유로까지 2개월~9개월간 지급된다.

2) 학자금 지원¹¹⁵⁾

프랑스의 모든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발급주체에 따라 국가학위 등록금과 대학학위 등록금으로 구분되며, 등록금 대출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증 형태의 은행대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국가학위 등록금은 국가가 발급주체인 등록금으로 고등교육연구부와 예산담당부에서 매년 책정하며 그 금액은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2014~2015년 기준, 학위별 연간 등록금은 학사 학위 184유로, 석사 학위 256유로, 박사 학위 391유로이다. 반면 대학이 발급주체인 대학학위 등록금은 각 대학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고등교육기관 학위 등록금은 2012년 가계소득 기준 1,620~5,940유로, 가계소득 35,000유로 미만은 국가가 책정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2014~2015년 기준). 대학학위의 경우에는 공증인 고등학위는 국가가 책정한 금액을 납부하며, 나머지 대학학위는 860유로~4,284유로 수준이다.

학자금 지원의 도입목적은 국가보증 학생대출(*Prêt étudiant garanti par l'État*) 운영을 통해 학생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정책 대상자로는 프랑스 고급 전문기술인 양성교육기관인 그랑제꼴(*Grandes écoles*) 재학생과 만 28세 미만의 학생(장학생 포함)이다.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① 경쟁시험(콩쿠르) 준비 또는 고등교육 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에 등록 ② 대출확정일

115) 이상일, 해외 주요국가의 학자금대출 종류와 상환 방식을 통해 본 우리나라 학자금대출제도 개선방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료집, 2015, p.31-36;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p.82-83. 재인용

자 기준으로 만 28세 미만 ③ 프랑스·EU 국적자로 대출확정일자 기준, 프랑스에서 최소 5년 이상 일정거주지 체류자 등 이상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가보증학생대출 자금은 정부 투자기관인 Bpifrance에서 관리하며, 보증기간은 대출자금의 첫 거래일로부터 최대 10년이다. 프랑스 정부는 첫 상환 이후부터 10년간 이자를 제외한 대출금의 70%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특히 부모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금이나 일정수준의 재산조건 충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최대 15,000유로, 분할 또는 일시 상환여부는 학생이 선택하며, 대출신청 가능 은행으로는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상호신용금고(Crédit mutuel), 산업·상업신용(Crédit industriel et commercial), 대중은행(Banques populaires), 저축금고(Caisses d'épargne) 등이 있다.

3) 긴급지원 국가기금(Le Fonds National d'Aide d'Urgence, FNAU)¹¹⁶⁾

부모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가족 해체·단절로 인해 대학 재학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생활비, 학비, 집값, 전기세 등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긴급지원 국가기금은 복학생을 포함한 만 36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Aide Ponctuelle과 Aide Annuelle로 구분 후 Échelon 0~6단계별로 차등 지급한다. Aide Ponctuelle은 1년에 한번 신청 가능하나, 재정상태가 심각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1년에 최대 2번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2015~2016년 기준, Échelon 1단계의 경우 1년간 최대 1,669유

116) 한국교육개발원, 프랑스의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현황, 2013; 이상일, 해외 주요국가의 학자금대출 종류와 상환방식을 통해 본 우리나라 학자금대출제도 개선방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료집, 2015, p.31-36;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84. 재인용

로가 지원되며, 여러 지원이 있을 경우 총 금액은 3,338유로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ide Annuelle은 장기적으로 재정상태가 심각한 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Aide Ponctuelle와 달리 매월 지급되는 방식으로 1년간 6개월~9개월 동안 지급된다. Échelon 1단계는 연간 1,669유로, Échelon 6단계는 연간 4,778유로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해당지역 학군의 크루스(CROUS)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크루스 위원회의 의견과 학생의 소득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설치된 프랑스 국립 기숙사 기관인 크루스의 장은 위원회에서 신청서류 심사 전, 최대 200유로 상당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 가능하다.

(3) 공공부조제도 : 청년 대상

1) 니트 대상 청년수당(Allocation)¹¹⁷⁾

프랑스는 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와는 별도로 2013년 10월부터 자체적인 청년보장제도(La Garantie Jeunes)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보장제도는 2013년 11월부터 10개 구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9월까지 총 61개 구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확대 시행 중이다. 프랑스의 자체 청년보장제도는 구체적으로 생활비 수당(Allocation)을 지급하여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만 18~25세 저소득 니트 청년이 그 대상자이다. 대상자 선정 시 청년 개인의 소득수준 외에 가족 또는 사회적응 문제 등도 선정기준에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심의위원회에서의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4만 명이 지원을 받았고, 2017년까지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7)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p.85-86.
발췌·요약

개인 면담, 직업 관련 일자리나 실습 및 견습 제안에 대한 의무적 이행을 조건으로 1년 동안 관리 및 지원(1회 추가연장 가능)이 이뤄지며, 저소득, 구직활동에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속적인 구직활동이 수급조건인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민관협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관부서로는 프랑스의 교육부, 노동부, Mission Locale, 청년단체/협회 등이 함께 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부처는 관리감독, 실무업무는 Mission Locale에서 담당한다. 즉 신원파악을 위한 서류접수, 구직활동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인턴쉽 알선, 기업과의 연계 등 세부적인 업무는 Mission Locale에서 수행한다.

청년수당제도는 지속적인 구직활동 조건하에 일상생활비(교통비, 거주비, 전화비 등) 매월 461.26유로를 지급하며, 취업 후 월급이 300유로를 초과 시, 지급액은 감소하고, 800유로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지된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2013년 시행 초기에는 프랑스 정부의 예산만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EU의 청년기금과 프랑스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 중이다. 프랑스 사회 내에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드러난 실질적인 성과로는 중간 조사결과, 1년 동안 청년보장제도에 의해 관리 및 지원을 받은 청년 2명 중 1명은 1년 후에도 취업상태이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14년 10개 지역 시범사업 결과, 8,400명의 청년층이 계약을 맺었고, 2017년까지 100,000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활동연대수당(RSA, Revenu de Solodarité Active)¹¹⁸⁾

프랑스는 1980년대 기존 실업급여 제도로 지원할 수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배제” 문제가 부각되었다. 그로 인해 기존의 최소통합수당(RMI)¹¹⁹⁾, 한부모수당(API)¹²⁰⁾, 기타 취업지원수당을 대체하여

118)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p.86-87. 발췌·요약

119) 최소통합수당(RMI, Revenu Minimum d'Insertion)은 1988년 도입된 최저소득보장

활동연대수당이 새로이 도입('09.6.1)되게 되었다.

활동연대수당의 목적은 실업자나 취업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는 수급자가 아닌 취업빈곤층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정 금액 수급이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거주 3개월 이상, 만 25세 이상이 원칙적인 수급대상자(단, 임신상태이거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이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이고 다른 수당(실업수당 등)을 받을 수 없을 때 수급 가능하다. 초기에는 만 18~25세의 경우 근로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조건에 부적격해 활동연대수당의 수급자격이 없었으나, 2010년 9월 1일 이후, 만 25세 미만 청년도 포함하게 되었다. 자녀가 없는 만 25세 미만 수급대상자는 최근 3년간 전일제 기준으로 2년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육아휴가·안식휴가, 휴직 중일 때와 학생일 경우는 RSA수급이 불가능하다.

급여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개 급여 중 1개 급여만 수급 가능하거나 2개 모두 수급 가능하다.

첫째 자산조사급여(RSA-Scole)는 가구 내 경제활동인구가 없어야 하며, 다른 급여를 누적하여 받을 수 없고, 급여상한액이 수급 가능한 최대급여액이다.

둘째 근로연계급여(RSA-Activite)는 가구 내 경제활동인구가 있어 근로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급여 외에도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발생이 가능하다.

제도(MIG, Minimum Income Guarantee)로 만 25세 이상 또는 임신상태이거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본래 취업활동촉진 및 빈곤감축을 위한 사회부조 수당이었으나 빈곤에 대한 개인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활동연대수당으로 대체되었다.

120) 한부모수당(API, Allocation de Parent Isolé)은 1976년에 도입되었으며, 임신상태 또는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이다. 만 3세 미만이면 최대 3년간, 만 3세 이상이면 최대 1년간 지급 가능하였다.

<표 4-17> 프랑스의 활동연대수당 지급액(2013년 1월 기준)

(단위: 유로)

부양가족수	0	1	2	1인 추가시
혼자일 경우	483.24	724.86	869.83	193.30
커플일 경우	724.86	869.83	1,014.80	193.30

자료: 주프랑스대사관(2013).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추진동향, p.19; 이철선 외(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p.87. 재인용

3)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PPE, Prime pour l'Emploi)¹²¹⁾

2000년대 초반 프랑스는 단기 계약직과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로 ‘근로빈곤’ 가정이 증가하면서 비숙련근로자들의 높은 실업률(2002년 기준 11.8%)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인해 다수의 많은 비숙련근로자들은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저하되었고 그로인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비숙련근로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찾도록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근로행위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01.2)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취업 중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독신가구 또는 기혼가구가 모두 포함되며, 2011년 기준으로 약 63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주당 12시간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상자 선정 시 소득세 공제를 위해 과세 가구 소득을 고려하긴 하지만, 일정 한도 내의 자본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간 과세 대상 가구소득은 독신인 경우 16,251유로, 부부는 32,498유로(자녀 1인당: 4,490유로 추가) 미만이어

121) Henri Sterdyniak, 프랑스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 PPE,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5, p.23-31;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88. 재인용

야 하며, 수급자 개인의 연간근로소득은 3,743유로 이상이되,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17,451유로, 기혼의 경우 26,572유로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액수는 개인별로 산출되지만, 상한액은 가구당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시, 12개월마다 평가, 급여는 전년도 과세연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차년도 10월에 납세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없는 독신가구의 경우에는 연간근로소득이 연간 전일제 최저임금의 0.3~1.3배(3,743~17,451유로)만 해당되며, 공제 한도는 연간 800유로이다.

(4) 고용지원: 청년고용알선 제도

1) Mission Locale을 통한 청년취업지원¹²²⁾

프랑스는 청년층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단순히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청년층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1982년 Mission Locale을 설립한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특히 구직 후 재취업 시, 스스로 취업을 하고 직업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Mission Locale은 2016년 기준, 전국에 450개가 설치되었으며, 제3섹터 등 민간 비영리법인들이 정부와의 협약 하에 위탁 운영 중에 있다. 대상자는 중·고등학교 중퇴자를 포함한 저숙련-저학력 청년 및 니트로 만 16~25세 청년 구직자이며, 재정 및 인구 대비 Mission Locale이 안배되어, 연방, 지방, 각 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운영방식은 통합고용센터(Pôle Emploi)와 업무협약 후, 직업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원 파악을 위한 서류접수, 구직활동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청년수당제공 업무, 인턴쉽 알선, 기업연계 등의 세부 업

122)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89. 발췌·요약

무들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턴십을 통해 니트 등 근로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직업 및 사회경험을 강조하며, 인턴십 과정에서 청년-기업-상담가가 함께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업연계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청년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으로 1:1 또는 그룹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청년층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Pôle Emploi(통합고용센터)¹²³⁾

2009년 직업알선 등을 담당하는 국가고용센터¹²⁴⁾와 지역단위 실업보험 업무를 주관하는 상공업고용협회¹²⁵⁾가 통합되면서 통합고용센터가 신설되었다. 통합고용센터는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고용센터 중심으로 시행하여 직업알선과 실업급여 등 실업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용 대상자는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 구직자로 제한이 없으며, 2016년 현재, 전국 약 900여 개 지점에 약 50,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별로 40여명의 상담가와 15명 내외의 행정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고용센터는 비록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법안을 만들고 행정은 민간형태로 운영하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하여 여러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주 업무로는 취업·직업 상담, 취업서류 작성지원, 구직정보 제공, 인턴십 및 취업알선 지원의 역할 수행과 실업급여 제공 등이 있으며,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의 욕구 및 직무능력에 따른 맞춤형으로 1:1 또는 그룹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고용센터와 Mission Locale은 정보와 업무를 공유하여 구직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123)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90. 발췌·요약

124) 국가고용센터(ANPE, 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125) 상공업고용협회(ASSEDIC, 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는 지역단위 실업보험 업무를 주관하는 UNEDIC의 지역단위 기구

양 기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은 물론 매년 업무평가와 필요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는 실업보험 제도 및 운용과 관련해 3년 단위로 통합고용센터,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협상을 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개입하지 않고 최종결과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방식이다.

3) 직업교육과 훈련¹²⁶⁾

프랑스의 직업교육 및 훈련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변화와 높은 중·고등학교 중퇴자 비중을 고려해 자격증 취득 장려와 직업훈련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 16~25세 청년, 구직자, 재직자들이 대상자가 되며, 교육과정 이수학생들의 100% 학위 혹은 인증된 자격 취득, 또는 같은 해 학생들 중 80%가 대학입학자격시험에 지원가능한 단계에 도달, 같은 학년의 학생들 중 50%가 고등교육 학위 취득 등의 목표설정을 따르고 있다. 직업교육을 위해 1990년대에 기술대학입학자격시험과 직업대학입학자격시험을 도입하였고, 고등기술과정(Bac+2) 및 제3차 산업직업관련 학위과정(Bac+3)을 개설하였다.

일부 중앙부처와 각 지방정부는 직업훈련 위원회, 부서 또는 이사회 형식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는 학생과 견습제도를 통한 직업훈련 교육정책, 농업·어업부는 농업관련 직업훈련, 경제·산업·고용부는 청년포함 구직자 평생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직업교육 및 훈련은 ‘초급직업 교육 및 훈련’, ‘직업교육고교’, ‘평생직업훈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초급직업 교육 및 훈련은 15세에 중학교를 졸업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및 기술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일반 또는 기술 학위를 위해

126) 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 저, 김미경 번역, 프랑스의 직업교육과 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91. 재인용

3년간 수학 하는 방식이다. 직업교육고교는 직업적성증서·직업교육증서(BEP) 취득을 위해 2년 이상 수학하거나 중등직업교육학위(Bac Pro)를 받기 위해 3년 이상 수학하는 방식이며, 평생직업훈련은 1970년대 도입된 것으로 국가, 지역, 기업 및 사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용인-피고용인 여부와 연령대(만 26세 이하, 만 26~45세 또는 만 45세 이상)에 따라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업훈련에 접근하는 것이다.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재정은 2005년 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는 학교제도 내 초급직업훈련에 117.9억 유로(GDP의 6.9%),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체는 평생직업 훈련에 25.9억 유로(GDP의 1.5%)를 투자하고 있다.

(5) 고용지원: 청년고용기업 지원 제도

1) 미래고용계약(Emplois d'avenir)¹²⁷⁾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였고, 청년층의 낮은 직업안정성, 청년층과 중고령층 간 일자리 경쟁, 임금격차 확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저학력·저숙련 청년층의 노동시장 최초진입을 돕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프랑스는 2012년 기준, 전체 실업률 9.8%, 15~24세 실업률 24.4%, 대졸 이상 실업률 10.6%, 중졸 또는 고교 중퇴자 실업률 46.9%였으며, 저숙련·저학력 청년층은 직무능력 및 경험이 부족하여 최초 및 2차 고용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또한 2012년 프랑스에서 고졸 미만의 아무런 학위가 없는 청년구직자는 약 55만 명(프랑스 연

127) 안정현, 프랑스 미래고용계약 2년의 성과- 해외 고용 및 고용서비스 심층 분석, 해외고용 리포트, 한국고용정보원, 2014;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p.92-93. 재인용

방고용청 자료)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세대간연대고용계약(Contrat de génération)외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청년층 실업타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미래고용계약 제도를 실행한다.

미래고용계약은 노동시장 진입 타개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세계 경험과 직무능력 및 경력 축적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대상자는 만 16세~25세 이하(장애인은 만 30세 이하) 현재 미취업 상태이며, 최근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중이고 노동시장 진입에 큰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다. 특히 중학교 졸업 후 다른 학위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아무런 학위가 없는 청년 또는 중학교 졸업 후 2년 교육과정을 수료 후 취득 가능한 취업적성증서(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또는 직업교육 수료증(Brevet d'étude professionnelle) 소지자로 지난 1년간 6개월 이상 구직상태에 있는 청년, 도시 우선관심지역(Zus), 농촌 재생지역(ZRR), 해외 주거주자(Dom)의 경우, 지난 18개월간 1년 이상 구직상태에 있는 청년으로 거주지역 고용사정의 열악성을 감안하여 학사 학위나 동등 학위 소지자 등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고용자-근로자-사회적 파트너 등 3자 양해각서 작성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며 양해각서에는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및 직무능력 제공 프로그램을 명시한다. 계약을 통한 직무능력 획득 후에는 해당 기업에서 채용 또는 다른 기업에서 유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직무능력과 경력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보조금과 사회보장분담금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보조금은 영리부문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35%, 비영리부문은 75%를 지급한다.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란 파트타임 보다는 풀타임 일자리를 의미하며, 기간제 고용(1~3년)보다는 비기간제 정규직 고용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보건의료기관 등 비영리부문 고용주, 사

회·환경적 가치가 인정된 사업 분야, 향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각 지역에서 선정한 우선 영리분야 등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채용방식은 공기업 또는 사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주당 최소 17시간 30분, 최대 35시간의 1~3년 기간제 계약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반 근로계약과 달리 고용주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세전 최저임금의 최소 35%, 최대 75%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이다. 고용된 청년에게는 튜터를 정하여 직업 훈련 및 상담, 근로 등 어려움에 대하여 개입 및 중재 실시, 지역기관에 정기적으로 근로상황 보고 및 관리를 시행하게 한다. 시행규모는 2014년 9월, 미래고용 목표치인 고용계약 150,000건을 달성¹²⁸⁾하였다.

2) 세대간 연대고용계약(Contrat de génération)¹²⁹⁾

2012년 9월, 올랑드 정부가 도입한 세대간 연대고용계약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중고령 근로자의 노하우 전수를 통합한 고용 정책이다. 이는 청년들의 무기근로계약 고용·일자리 유지와 중고령 근로자 일자리 유지, 그리고 중고령 근로자의 노하우 및 능력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과 연장자의 고용을 동시에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청년 1인과 시니어 1인이 한 조를 이루는 지도교사(tutorat)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세대간 연대고용계약은 기업이 만 57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 일자리를 보존하면서 만 26세 미만 청년과 만 30세 미만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 지원금은 계약 1건당 1년에 4,000유로를 지원(통합고용센터(Pôle Emploi)에 신청, 청년

128) 노동부 조사결과('15.7)(<http://www.gouvernement.fr/action/les-emplois-d-avenir>)이며, 오민애, 프랑스의 청년 실업과 청년 고용정책 -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93. 재인용

129)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p.94-95. 발췌·요약

고용 3개월 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근로자 지원금은 청년 신규고용 1명 당 2,000유로, 고령층 고용유지 1명에 대해 2,000유로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단, 고용유지 상황에 따라 분기별로 1,000유로씩 지급하며, 청년근로자와 고령근로자를 동시 채용할 경우 재정지원 금액은 8,000유로이다. 또한 고령근로자 고용 후 6개월 안에 청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격과 노사단체협상의무는 기업의 근로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근로자 50명 이하 기업은 단체협상의 의무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단체협상을 통한 청년 고용 및 고령 일자리 유지 목표치 제시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 50~300명 미만 기업은 단체협상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별 혹은 부문별 단체협상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 의무사항으로는 ① 기업 내 청년층 및 고령층 실태조사 ② 청년 고용 확대와 고령층 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사 단체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 ③ 합의에는 청년 신규고용 및 고령층 기존고용 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 ④ 청년 신규노동자의 기업 적응과 노하우 전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며, 이러한 단체협상 결과를 제시하거나 단체협상 로드맵을 제출하되, 단체 합의나 로드맵은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은 보조금이 없으며 단체협상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단체협약을 도출하지 못했거나 기업주가 협상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기업임금총액의 1% 혹은 총 세제감면혜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제도의 목표치는 연 75,000건(5년에 500,000건)의 계약체결을 설정하였으나, 2015년 9월 현재 51,768건(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포함)을 체결¹³⁰⁾하였다.

130) 세대계약 프랑스 정부 안내(<http://www.gouvernement.fr/action/le-contrat-de-generation>), 오민애, 프랑스의 청년 실업과 청년 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3) 견습생 제도¹³¹⁾

프랑스 정부는 2014년 7월, 향후 2017년까지 견습생 수를 5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견습생 제도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실제 견습생 수는 1992년 21.1만 명에서 2013년 41.5만명('13)으로 증가하였는데, 견습생들의 고용률이 같은 시기 일반 교육기관 졸업자들 비해 10%p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정규직·전일제가 많아 취업에 효율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어 견습생 계약을 맺는 청년층 중 저학력층보다 고학력층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견습생의 변화로는 2013년, 견습생 중 2년제 대학 이상 학위 보유자 비중은 18.8%로 1993년 1.2% 대비 급증하였으며, 견습생의 평균 연령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변화로는 전통적인 1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견습생의 약 60%가 10인 미만의 기업과 계약 체결)에서 2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점차 이전되고 있다. 250인 이상 대기업 역시 2010년 약 13%에서 2012년 16%로 증가하였다.

견습생 제도는 ‘대안계약(contrat d’alternance)’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 하에 발전하여 왔으며,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강제로 구분된다. 제도적 강제는 대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견습생 고용 할당제가 적용되어 250인 이상 기업은 직원의 4%를 견습생으로 채용, 2015년부터 5%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은 지불 임금의 0.5%를 견습생 제도 세금으로 납부하며 지불 임금의 0.18%를 발전분담금으로 납부한다. 또한 총 직원 수 대비 채용한 견습생의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지불 임금의 0.5%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한다.

반면 경제적 지원으로써 2010년 기업에 제공된 경제적 혜택은 41억 유로로 국가 및 지방정부가 견습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 상여

2016;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95. 재인용
131) 김상배, 프랑스의 견습생 제도 활성화 대책과 방향-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4;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p.95-97. 재인용

금,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회보장 분담금은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분담금을 제외하고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면제되며, 수공업자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수공업자(장인)와 10인 이하의 기업, 11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일부의 사회적 분담금 완전면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견습생을 채용하는 10인 이하 기업에 대해 최소 1천 유로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250인 이상 기업이 견습생 의무 채용기준인 4%를 초과하고, 직원 대비 최고 6%에 이르는 견습생 고용 시, 1인당 매년 400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상의 세금공제는 견습생을 채용한 첫해에만 적용되며, 2년제 대학 이하의 학위를 준비하는 견습생을 채용하는 기업에만 해당한다. 이는 1년간 평균 견습생 수 기준, 1인당 1,600유로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이다.

이후 견습생 제도는 2014년 9월 10일 ‘직업교육에 관한 법’(2014년 3월 5일 시행)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기존 만 16세~25세 연령층에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즉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직업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 혹은 직업교육센터(CFA, Centre de Formation d’Apprentis)에 등록할 경우와 그 해 12월 31일 안에 15세에 도달하는 청소년은 견습생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계약방식은 정규직(CDI) 및 비정규직(CDD) 형식으로 체결되며, 견습생 제도 세금 및 발전분담금의 절반 이상을 지방정부가 수령하도록 하여 2014년부터는 새롭게 견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10인 이하의 기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센터 설립 결정권이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어 견습생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립도 및 정책 결정권이 강화되었다.

<표 4-18> 프랑스의 견습생 법정임금(월 최저임금 기준)

(단위: %)

구분	18세 미만	18세 이상 20세 이하	21세 이상
견습생 계약 1년차	25	41	53
견습생 계약 2년차	37	49	61
견습생 계약 3년차	53	65	78

주 : 직종별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의 조건보다 이로우면 경우, 단체협약의 기준이 적용됨
 자료: 김상배(2014). 프랑스의 견습생 제도 활성화 대책과 방향.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p.74; 이철선 외(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p.97. 재인용

4) 청년신서비스직종정책(NSEJ, Nouveaux Services Emplois Jeunes)¹³²⁾

1990년대 초반 불경기 여파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자 프랑스 정부는 만 26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35만개 창출 및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정책('97.10)을 실시하였다. 이는 시장경제 하에서 성장하기 어려우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사회적 서비스 활동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서비스 부문으로는 비영리부문은 스포츠, 문화, 환경, 통신서비스 등이며, 공공부문은 지방단체기관, 공공 및 준정부단체, 정부교육시스템, 국립경찰인력(주로 안전요원), 사법행정 등이다. 정책 대상자는 만 18~25세 청년층 중 구직활동 중인 청년과 만 26~29세의 청년층 중 실업자이면서 취업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청년이지만 청년층 가운데 고학력·고속련 기술을 보유한 청년들은 지원사업 참여에서 제외한다.

132)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와 청년층 인력활용방안;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98. 재인용

청년신서비스직종정책은 청년 1인 채용 일자리에 임금보조금이 월 단위로 5년간 지급되는데 법정 최저임금(SMIC,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과 연계된 사회보장분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주는 법정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NSEJ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들은 대부분 풀타임으로 청년층에게 지급된 임금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 경쟁시장체계가 독점체계로 바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NSEJ 운용에 지출된 비용이 많아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한 한계가 있다. 결국 전문적인 직무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의 직업훈련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6) 주거보조제도

1) 차등적 주거수당(Aide Personalisee au Logement, APL)¹³³⁾

1977년 추진된 주택 재정지원 개혁의 일환으로 차등적 주거수당(APL)이 도입되어 프랑스의 현재와 같은 주거급여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비 보조 제도는 크게 ‘주택수당’(AL, Allocation de Logement)과 ‘차등적 주거수당’(APL,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AL과 APL의 운영주체는 서로 다르지만 전달체계는 가족수당기금(CAF,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으로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등적 주거수당은 사회보장법 상의 주택수당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을 대신할 목적으로 도입된 건축주거법 상의 주택정책으로 자가 가구도 지원 가능하며, 학생 또는 저소득층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주가 국가와 사전에 협약 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133) 봉인식 외, 경기도 주거급여 추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4;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99. 재인용

차등적 주거수당은 주택관련 부처(Ministère du Logement)가 담당하며, 가족수당기금(CAF)이 임대인에게 직접 주거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구의 임차료 및 가구원의 수와 정비례하여 차등 지원된다. 2011년 기준, 가구 당 월평균 지원액은 225.7유로이다.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 사회가족부 산하 사회보장기구 중앙기관에서 관리하는 전국가족수당기금(CNAF,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이다.

2) 사회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¹³⁴⁾

주택수당은 가족주택수당(ALF, Aide au LCF)과 사회주택수당(ALS, ALC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주택수당은 1971년 개인보조의 지원대상 확대차원에서 가족주택수당(ALF)의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소득계층을 위해 도입되었다. 정책 대상자는 개인주택수당과 가족주택수당 미포함 계층인 25세 이하 저임금 청년근로자, 학생, 장기실업자, 자녀가 없는 부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다.

사회주택수당은 주택관련 부처(Ministère du Logement)에서 담당하며, 가족수당기금(CAF)을 통해 임대료나 주택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범위로는 임대주택(기숙사, 청년근로자 숙소 등)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나 주거비용, 소유하는 주택의 개·증축 시, 건축행정 규범에 의한 주택수당 지급이 포함되며, 해당가구의 소득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특히 서민 주택(HLM) 거주 시 주택수당은 집주인에게 매달 직접 지급된다.

134)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100. 발췌·요약



자료: 이태진 외. (2010).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급여 시행 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22; 이철선 외(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p.100. 재인용

[그림 4-3] 프랑스의 주거지원 제도

3) 대안적 주거: 세대간 주택임대(Ensemble 2 Generations)¹³⁵⁾

2006년 대안적 주거 방식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대간 주택임대는 청년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독거노인의 주택에서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제도이다. 청년들은 독거노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노인에게 저녁식사, 인터넷 이용 등 간단한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청년-노인의 서면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감을 해소하여 두 세대 간의 교류를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해당 정책의 대상자는 18세~30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과 주택을 소유한 노인들이다.

세대간 주택임대는 시민단체인 앙상블 2 제네라시옹(Ensemble 2 Générations)이 직접 운영하며,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무료거주’로 낮에는 자유롭게 생활하되 저녁식사 전에 귀가해야 하며, 자유시간은 주 1회 저녁시간과 월 2회 주말(금~일),

135) 이수옥, 김태환, 황관석, 변세일, 이형찬 외,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101. 재인용

이외에 3주간의 휴가가 부여된다. 둘째는 ‘낮은 월세’로 청년이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되, 거주하는 노인에게 낮 시간 외출, 영화, 독서, 컴퓨터 같은 간단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월세액은 일드 프랑스는 80~100유로이며, 지방의 경우 50~90유로이다. 마지막 유형은 ‘높은 월세’이다. 이는 노인에게 대한 최소한의 자발적이고 수동적인 감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세액은 파리의 경우 400~450유로이며, 일드 프랑스와 지방은 약 250~350유로이다.

(7) 의료지원제도

1) 국가의료보험¹³⁶⁾

프랑스의 의료보험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보험금, 국가의 부담금, 그리고 개인의 본인부담금 등을 통한 재원 조달을 통해 운영되며, 개인 본인부담금은 공제조합(Mutuelle), 민간보험회사, 민간 공제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충보험 가입을 통해 조달한다. 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 의무가입이며, 개인 본인부담금을 통한 의료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136) 이태형 외, 복지국가의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의 사회참여 방안 조사 연구: 청년 허브 연구보고서 News From Welfare-State 자료집,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 2014, p.45-46; 노대명 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p.356-383;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p.102-104. 재인용



자료: 노대명 외(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65; 이철선 외(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p.102. 재인용

[그림 4-4] 프랑스의 의료보험제도 기본구조

프랑스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법정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단일보험체계가 아니라 직업군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가 동종업종 내 종사자간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Mutuelle)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정 의료보험은 총 4개 레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레짐별로 세부적 급여내용이 차별적이다. 병원 이용 시, 레짐별로 지불되는 법정비용과 환자부담분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민간보험을 보완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표 4-19> 프랑스의 법정 의료보험 유형

제도유형	적용대상자	총인구 대비 적용인구 비율
일반 레짐(Régime générale)	민간부문 피고용인, 학생	87.1%
자영업자 레짐(Régime autonomes)	비농업 자영업자, 전문직 등 자유업 종사자	5.1%
농업 레짐(Régime agricole)	농업부문 종사자	5.9%
특수 레짐(Régime spéciaux)	군인, 지하철 종사자, 재외국민 등 13개 특수직업군	4.2%

자료: 노대명 외(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64; 이철선 외(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p.103. 재인용

프랑스의 의료보험은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와 정부가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을 감독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규모를 결정한다. 예산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차년도 건강보험지출목표를 국회에서 결정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보건부는 각 부문별로 예산 배분 및 각 지방별 보건의료지출 예산을 결정하는 단계를 따른다. 건강보험비상위원회는 건강보험지출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상황을 보고 하는 역할을 한다. 급여지급 방식은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에서 프랑스 내 101개 도 단위 건강보험기초공단(CPAM)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재원은 고용주가 임금 총액의 12.8%, 근로자가 0.75%를 부담하며, 1998년부터 일반사회보장부담금보험료(CSG)가 건강보험 재정에 할당되어 재원충당이 실행된다. 보험금 상황방식 사회보장제도 협약에서 정해진 규정비율에 따라 운영되며, 의료보험 부담률이 70%일 시,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으로 부담한다. 만약 보충급여인 민간보험 미가입 시, 나머지 30%에 대한 보험금 상환은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개인부담 의료보험제도의 보장성 약화로 미충족 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학생의료보험¹³⁷⁾

프랑스의 의료보험 중 특이한 점은 교육부 및 사회보장기구(Sécurité Sociale)와 정식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공인고등교육기관은 학생의료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운영주체와 재원은 국가의료보험과 동일하며, 등록금 이외 기본사회보장분담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해 의료비용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비와 약값의 약 75%까지 환급한다. 상환액은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상호보험¹³⁸⁾ 가입

137) 이태형 외, 복지국가의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의 사회참여 방안 조사 연구: 청년 허브 연구보고서 News From Welfare-State 자료집,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 2014, p.8;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2016, p.104. 재인용

시, 사회보장기구가 정한 상환액 최대한도 내에서 차액환불도 가능하며 100%의 환불을 보장받으려면 추가로 민간보험이라 할 수 있는 Mutuelle에 가입해야 한다.

학생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만 28세 미만의 학생이 가입해야 하지만 추가로 가입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28세 미만 학생의 경우 거주지 관할 사회보장기구 국민의료보험 사무실 (CPAM-Sécurité Sociale)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제(CMU CMU Base)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조항으로 만 28세 이상 학생은 4년 연장이 가능하며, 기타 장기학업기간이 소요되는 의대생, 약대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38) 상호보험혜택(Assurance Mutuelle étudiant)

이상으로 살펴본 프랑스의 청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0> 프랑스의 주요 청년정책 수단

구분		주요 내용
교육: 대학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 저소득층, 28세 미만 학생 - 학자금 : 무이자, 정부가 대출금의 최대 70%까지 보증 - 긴급지원 국가기금 : 청년 구호 기금
공공부조: 청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로카시옹(청년수당, 만 18~25세) : 니트 대상 매월 461.26유로 지급('16) - 활동연대수당(RSA,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조사급여와 근로연계급여 결합(취직 후 임금이 최저소득 미만 수혜 가능) · 원칙적으로 만 25세 이상 청년 대상 · 재정은 국민연대기금에서 지원(조세) - 저소득층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고용 지원	고용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고용지원센터 無 - Mission Locale을 통한 청년취업지원 : 니트 고용지원 기관(1982) - Pôle Emploi(통합고용센터, '09)를 통한 청년취업지원 : 청년 고용 및 실업부조 상담 - 직업교육 및 훈련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고용계약('12) : 비영리부문 일자리 창출 - 세대간 연대고용계약 : 계약 기업에게 1인당 연 4,000유로 지원 - 수습직원(1,800유로), 직업훈련생(1,000유로), 인턴사원(3,000유로) 고용 시 기업지원('09) - 청년신서비스직종정책(NSEJ) :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그러나 낮은 임금 과 정규직 고용 미흡에 대한 비판 제기
주거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등적 주거수당(APL) : 임대료와 가족구성에 따라 임대료나 월세 지원 - 사회주택수당(ALS) : 시설에 따라 임대료나 월세 지원 - 가족수당기금(CAF)에서 지원 대안적 주거 활성화: 청년과 독거노인 함께 거주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기업주 부담의 국가의료보험과 개인 민간의료보험(보충보험) 운영 - 학생의료보험 가입 : 만 28세 미만까지 의무화

2. 독일¹³⁹⁾

(1) 독일의 청년정책 개관

독일은 고용지원-공공부조-기업 연계에 교육이 연계된 통합적 사회 정책으로 청년문제에 접근하며, 특히 취업준비 대학생과 청년실업자 대상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업 부조 하에 교육-고용지원-기업연계를 추진한다. 즉 교육 정책에서 대학생 취업진로과정을 학점과 연계(180학점 중 30학점)하고, 고등학교의 Dual System이 제조업기반 중소기업과 연계 운영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업부조 신청자에게 적극적인 구직과 배정된 고용프로그램 등에 참여의무를 부여하였지만 질 낮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이철선 외 2016, p.105).

(2) 교육지원제도: 대학생 대상

1) 생활비 지원(바팩: BAföG)

부모 경제력에 의한 우수 학생들의 학업중단과 국민경제 생산성 약화 방지, 청소년의 교육기회 균등을 목표로 1969년 교육촉진법(BAföG)¹⁴⁰⁾이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촉진법은 1966년부터 1969년 사민당과 기민당 연립내각은 당시 중앙과 지방 간 예산배분과 재정분담체계를 개혁하고, 1970년부터 법 시행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까지 동 법률은 총 25차례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지난 40여 년 동안

139) 독일의 청년정책은 이철선 외,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p.105-119. 재구성함

140) 개인별 교육촉진에 관한 연방법(das Bundesgesetz über die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sgesetz)

총 800만 명 이상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동 법률의 혜택을 받은 점은 법 제정 및 시행의 긍정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바벡 외, 2011년 독일장학재단 설치 및 연방정부 학자금 용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06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독립적인 학자금 용자제도가 설치되었다. 이상의 제도는 일반학교 대상 학생과 마이스터 교육촉진 제도¹⁴¹⁾에 참가한 대상자, 그리고 2가지 유형 대상에게 생활비와 학습교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일반학교 대상자는 30세까지 한정하되, 다만 제 2전공자 또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독신의 여성학생에 대해서는 상한연령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지원가능한 학교로는 일반학교 및 직업교육학교, 대학진학 준비학교, 학술원, 고등교육기관 및 부설 실습기관 등이 해당되며 단 직장 내 교육시설은 제외된다. 한편 마이스터교육 촉진제도 대상자는 관련 학문 또는 기술 분야에서 졸업자격을 갖춘 자로 ‘수공업자 규정’ 상의 수공업 또는 ‘직업교육법’에 근거한 산업기술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명시하며, 마이스터 교육촉진 지원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별도의 ‘아동추가수당’과 ‘아동양육추가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방법으로는 완전지원, 부분지원, 국가주관 학자금 용자¹⁴²⁾, 금융기관 용자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완전지원이란 고등학교까지는 아무런 상황이 요구되지 않는 완전지원 제공을 의미하며 둘째 부분지원은 일반 또는 전문대학생에게 해당되며, 지원금의 절반은 무상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무이자 국가학자금 대출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다. 만약 1년 해외학습의 경우, 법정 지원금액의 한도 내에서 전액 무상 또는 임신·10세 미만의 아동 1명 이상 양육 시, 법정지급기

141) 마이스터 교육촉진(Meister-BAföG) 지원제도는 가내수공업자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전문기술 소지자들이 기술향상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교육에 지원하여 창업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

142) 연방교육촉진법 제39조 제2항

간 초과를 허용한다. 셋째 국가주관 학자금 용자는 연방행정청에서 ① 무이자 ② 상환금액의 상한적용 ③ 상환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용자를 지급하며, 상환액이 1만유로 초과 시, 그 이상 금액은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졸업 후 5년 경과시점부터 상환이 가능하며, 우수·조기졸업생·용자금 조기상환자는 용자금 일부를 감면하는 혜택이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학자금 용자는 ① 고등교육 이수자로서 별도로 보충적 직업교육을 받을 경우 ② 수차례의 전과로 인해 교육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 ③ 졸업을 위한 특별 지원을 받은 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가족부양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 개별적 학자금 지원금액(A) = 표준적 욕구수준(B) - 경제적 능력(C)

여기에서 표준적 욕구수준(B)이란 학교유형(예: 대학교, 직업교육시설 등),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이 감안된 개인별 학업기간 동안의 생계비(식사비, 숙박, 옷, 기타 생활용품 등)와 학습교재비 및 용돈(책, 차비 등)을 포함한 총액이며, 경제적 능력(C)은 개인이 학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원기간은 실제 재학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장애인 등은 특례조항이 존재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실제로 재학하는 기간까지 학자금이 지원되고, 대학생은 전공별로 ‘교육 및 전공시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기간까지 학자금이 지원되며, 5학기 이후부터는 학업성적을 제시해야만 지원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 아동 양육 대학생, 미혼모 학생 등은 학자금 지원기간 특례 또는 지원기간 제한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대학생 졸업지원이라 하여 최대 지원기간을 초과한 학생 대상으로 성공적인 구직을 위해 유이자 학자금 용자를 최대 12개월 지원이 가능하다. 즉 향후 4

학기 이내에 졸업시험을 치를 예정이고, 동시에 대학교 졸업시험 관리부서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에 해당한다. 소요재원은 연방정부가 65%, 주정부가 35%의 비율로 분담하며, 연방정부 위임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그 외 연방정부, 학교복지처, 특수목적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학자금 용자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표 4-21> 독일의 기타 학자금 제도 현황

구분	대상	내용
교육용자 (Bildungskredit)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용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용자제도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바뀐과 동시수령 가능 ·최대 7,200유로 한도 내에서 월 100/200/300 유로로 분할하여 최고 2년간 수급 가능	3학기 이상 수료 독일 대학생, 일정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학생
대학생 복지처 용자기금 (Darlehnsfonds des Studentenwerks)	학생복지처에서 운영하는 특별 용자제도 ·지원방식, 상환조건 등에 대한 안내는 학생복지처 부설 사회상담실에서 상담과 함께 제공	타 재정적 지원대책이 없는 학생
고등교육 용자 (Studienkredit)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성취 지원을 목적으로 시중 또는 특수목적의 금융기관에서 운영 ·월 100~800유로를 최대 10학기까지 제공	일정 연령상한과 국적요건
학업비용 용자 (Studiengebührenkredite)	대학 신입생들의 주거마련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의 용자제도 ·상한액은 타 용자금액 합산 1인당 15,000유로	대학 신입생

자료: 이철선 외(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08.

2) 등록금과 장학제도

독일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 청년들의 최초 입직연령 증가 등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발로 2014년 기준, 무상교육이 실시 중에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대학생들의 평균 재학기간 증가에

따라 국민 생산성 약화 등 국가적 차원의 낭비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06년 7개의 연방주에서 일반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높아 시행은 중단된 상태이다. 단, 초장기 재학생, 졸업 후 다른 전공을 목적으로 재입학한 학생 등은 예외적으로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한다.

독일의 장학제도는 주정부, 자치단체, 교회, 노동조합, 정당, 기타 공익재단 등에서 운영 중이지만 기금 규모가 협소하고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특징이 있다. 학과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학생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학과 또는 특정 종교의 신자로 대상자가 제한되며, 장학금 수준 역시 기관별로 상이하고, 지원기간도 통상적으로 1년이 기한이지만 수차례 연장은 가능하다.

(3) 공공부조제도: 청년 대상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나, 해당 아동이 대학교 등 정규 고등교육 이수 시에는 최고 25세까지, 군대·대체복무 시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지급된다. 그 외 아동 또는 부모 소득수준이 낮아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이 미달할 경우, 별도로 추가아동수당(Kinderfreibetrag)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즉 아동 자신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세 및 보험료가 공제된 순소득 기준으로 8,004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간 근로소득은 아동의 소득, 이자수입, 바팩 지원금(융자금은 제외), 장학금이 모두 포함되는 반면 부모의 생활비 지원이나 교재비는 제외된다. 급여액은 부모에게 월 184유로씩 지급되지만, 부모가 금액에 상당하는 수준 이상으로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자식의 신청에 따라 아동이 직접 수령 가능하다.

2) 보험방식의 실업급여 I 과 부조방식의 실업급여 II

노동시장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하에 2002년 폴크스바겐 회장인 페터 하르츠가 위원장인 하르츠 위원회가 『노동시장 서비스의 현대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하르츠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독일의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법률(하르츠법률 I, II, III, IV)이 속속 도입되었는데 특히 하르츠법률 IV는 실업급여 체계의 개혁, 특히 실업자에 대한 중복제도의 통합과 행정적 일원화를 목표로 2005년에 입법화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기실업자 대상 기존 실업부조제도를 폐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 대상의 사회부조제도와 통합된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고용촉진법 상 실업보험 급여는 실업급여 I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업급여 II는 구직자를 위한 기초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을 담당하며,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럼으로써 실업급여 II 수혜자는 구직활동을 위해 아동보육, 직업교육, 심리상담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이상의 실업급여 제도는 연방고용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운영하는 직업센터(Job-center)에서 관장하는데, 자치단체는 주거, 아동보육, 마약, 채무, 정서불안 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연방고용에이전시는 직업알선, 직업교육, 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실업급여 I 은 보험기반 소득대체형 급여로 일정한 보험가입경력이 필요하나, 학생들은 해당요건 충족이 어려워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수급 완화조건은 ① 학기 중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시 ② 수강(주당 15시간), 연습 및 복습을 포함해 총 30시간 학업과 주당 10시간 이상만 근로 시 ③ 동일 조건 하에서 학생이 야간근로나 교대제 근로를 하였을 경우이며, 박사과정, 휴학생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과 자격을 인정받는다.

(학생을 위한 실업급여Ⅱ) 원칙적으로 학생들은 법률¹⁴³⁾에 근거, 실업급여Ⅱ의 수급자격에서 배제되나 예외조항이 존재

실업급여Ⅱ는 소득보충형 급여로서 15~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의 실업자들이 대상이며 가족에게는 사회급여가 지급된다. 근로능력은 육체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의 근로수행 능력이 기준이 되며, 사회급여(Sozialgeld)는 실업급여Ⅱ의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 15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실업급여Ⅱ의 경우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법률¹⁴⁴⁾에 근거하여, 수급자격에서 배제되나 예외조항(휴학, 건강, 경제적 긴급사항, 실업부여Ⅱ 수급자 자녀,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부조Ⅱ 지급이 가능)이 존재한다.

<표 4-22> 독일의 학생을 위한 실업부조Ⅱ 자격조건

대상	내 용
휴학생	- 실업부조Ⅱ 지급이 가능
건강	- 건강상의 사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해 최소한 3개월 이상 학업을 중단한 자 ·학생이 3개월 이상 학업을 중단하면 바פק의 수급자격은 중단
경제적 긴급사항	- 법률로 정한 긴급사항이 발생하고, 만약 아르바이트 등 자력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바פק을 받는 상태에서 실업급여Ⅱ 신청이 가능 ·단, 학생에게 제공되는 바פק은 변제 의무가 적용되는 학자금 용자로 전환됨
실업부여Ⅱ 수급자 자녀	- 실업급여Ⅱ·사회부조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시, 별도의 주거수당 신청이 가능 ·실제 주거비가 바פק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보조금보다 높을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인정
부양아동이 있는 학생	- 바פק 이외 제반 급여 신청자격을 획득

자료: 이철선 외(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1.

143) 사회법전 제2권 실업자기초소득보장 제7조 제5항과 6항

144) 사회법전 제2권 실업자기초소득보장 제7조 제5항과 6항

(4) 고용지원: 청년고용알선 제도

1) 직업훈련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 기여와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취업·고용안정·승진 등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필수조건 마련을 위해 도입된 직업훈련은 『직업교육법(Berufsausbildungsgesetz)』에 의거 하고 있으며, 사내 또는 사외의 시설에서 진행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직업훈련은 직업교육법, 수공업자규정, 노인장기요양법, 선원직업양성법 등에서 명시된 직종에서 시행가능하며, 원칙적으로 1회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될 시, 예외적으로 중복이 허용된다. 여기에는 직업훈련 외 교육 내용이나 질적 수준이 학교교육 수준을 능가하는 취업 준비교육(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도 포함된다.

직업훈련 수당은 개인의 생계수요, 교통비, 기타 생활비, 교재 및 학습비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본인 및 부모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부모와 거주하지 않은 직업훈련생, 단, 미성년자의 경우 훈련시설과 부모의 집 사이 거리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존재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 지급액은 생계수요(숙박비 별도지급)와 교통비, 기타비용을 포함해 지급한다. 명시금액으로는 생계 수요는 2011년 기준, 매월 348유로 외, 숙박비 149유로를, 취업준비교육 참가자는 생계수요 매월 391유로에 숙박비 월 58~74유로를 지급하며, 교통비는 교육생 개인의 숙박지와 교육시설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여 월 최고 476유로까지 제공되고, 월 1회 가족방문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그 외 기타비용으로는 학습교재, 작업복 구입비, 총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2) 이원적 직업교육 제도(das duale Ausbildungssystem): 고졸 대상

독일 내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공업 또는 상업 고등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약 60%가 이원적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서 이원적 직업교육이란 청년 직업교육시스템으로 교육공간이 직장과 직업학교(Berufsschule)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독일의 경우 직장교육이 해당 직장과의 ‘직업교육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해당 직장과의 ‘교육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제도는 직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습 및 실기와 관련한 교육을 시행하고, 반면에 이론적 교육은 직업학교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때 직업학교는 직장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직업영역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업종별 또는 지역에 따라 교육기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대략 2년~3년 6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적용 직업은 ① 은행원, 정보처리전문가, 외판원, 요리사 등 상공업 ② 제빵사, 사진사, 미용원, 안경전문가 등 수공업 ③ 조경사, 농민 등 농업 ④ 법률전문가, 측량사, 행정요원 등 공직 ⑤ 의료전문기사, 세무사, 공증인, 치과전문기사 등 자유직업으로 2013년 현재 총 349개로 파악된다.

이원적 직업교육 참여 학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업종·기업별로 월 250~950유로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외에 직업교육생에 대해서는 교통비와 소정의 용돈이 국가로부터 지원된다. 이상의 직장교육은 직업별로 마련되어 있는 ‘직업교육규정(Ausbildungsordnung)’에 근거하여 모든 직장교육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직업교육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제1조 및 제14조에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4부분으로 설정한다. ① 전공 영역별 기능·지식·숙련도 제고를 통

한 업무처리능력 향상 ②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③ 개인별 특기와 장기 개발 ④ 산업안전규칙 준수를 통한 산재사고 예방의식 고취

직업교육은 직종 특성을 감안해 주당 1~2일 또는 3~4일 주기로 분할하여 이루어지며, 최대 8주까지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업종별 직업교육규정에 의한 교육 목표 및 지침과 연방주별로 설치된 학교감독기관의 통제 하에 기본구성이 마련되며 이론적 전문지식의 전달 및 학습, 일반 교양지식의 함양, 자기계발의 능력과 기회 보장을 그 교육의 목표로 추구한다. 모든 직업교육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개인별 직업학교 교육과 직장교육이 상호 조화와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주당 12시간, 2일에 걸쳐 진행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시간제 또는 블록형 등 유동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문기술교육은 물론 독일어, 정치, 스포츠, 종교 등 일반 소양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 목표 및 주요 기능에서 직업학교 교육 및 직장교육 상호간 연계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직업학교의 감독주체(주정부)와 직장교육의 책임주체(연방직업교육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서로 상이 특징이 있는데 이는 직업학교는 학문에 기반한 이론중심이지만 직장교육은 실기교육을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대학 커리어 서비스 센터: 대학생 대상

2000년 초반, 독일 경제악화로 대학생의 고용알선을 위해 연방고용청과 대학이 연계하여 전국 160개 대학에 대학 커리어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였다. 주요업무는 대학생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해 관련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산업체 또는 해외실습에 대한 상담과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대학은 사무실 대여와 학점연계 협조를 담당하며, 실질적인 업무는 연방고용청 소속의 대학지원팀(Hochschulteam) 파견 공무원들이 담당하였다. 연방고용청 소속 대학지원팀은 대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거점별 출장소를 운영 중이며 대학출장소는 학생대상의 구직 오리엔테이션, 상담, 지원연습 및 지원서 작성 등을 최대 1년간 지원을 이행한다.

대학 커리어 서비스 센터는 학생들의 취업능력 제고 및 취업을 지원하는 일종의 교양 교과목인 ‘일반 직업 준비(Allgemeine Berufsvorbereitung, ABV)’ 과정 운영을 통해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정보 및 통신, 젠더와 다양성, 조직과 경영, 기타 전공별 내용을 구성하여 제공한다. 센터의 서비스는 실습모듈(Module des Berufspraktikums) 형태로 제공되며 대학생은 재학 중 최소 1개 이상의 직업관련 실습을 이수해야만 학점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표 4-23> 독일 대학 커리어서비스 센터의 일반 직업준비 교과목 과정의 서비스 형태

대상	내 용
소통능력 향상	대인관계에서 핵심적 자질개발을 목적으로 체계적 사고능력, 타인입장 이해능력 개발, 갈등 해결능력, 개입 및 중재능력 등을 주로 학습
멘토링 능력	대학 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토대로 관련 학과에서 대학생들의 상담기법 향상을 지원
직업관련 실습	(실습시간) 실습학점을 120, 240, 360 실습시간에 따라 각각 5, 10, 15 학점을 부여 ·국내/국외 실습 여부, 전시간/파트타임 실습여부, 1개 기관/다수기관 여부, 실습/실습+콜로키움 여부에 따라 학점인정이 차별적
해외실습	480시간 실습+별도 콜로키움 참여시 20학점, 630시간+별도 콜로키움 참여시 25학점, 780시간 실습+별도 콜로키움 참여시 30학점이 인정됨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세미나) 발표 토론 및 중재, 대화의 진행과 협상, 개인별 작업과정 최적화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

자료: 이철선 외(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5.

4) 고용지원센터(Job-Center)

독일은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Arbeitslosenhilfe)와 사회부조제도(Sozialhilfe)가 분리되어 있어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Aufstocker: 급여 보충자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행정 낭비와 수혜자 불만을 완화하고자 두 제도의 통합을 시도하였고, 사회부조제도 중 15~65세 미만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소득·자활 지원제도를 별도로 분리하고 실업부조제도와 통합(2005년 제4차 하르츠법을 발효)하였다. 그로 인해 기존 실업부조와 사회부조급여가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로 단일화되었다. 그 결과 고용지원센터가 급여 신청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고용지원센터는 실업보험을 관장하는 연방고용에이전시(Bundesagentur für Arbeit) 와 지역의 사회부조제도를 관장하는 사회부조청(Sozialamt)의 공동 산하기구가 되어 생계보장 관련 급여 지급, 채용지원 및 채용장려금, 사회적 일자리사업, 직업 재교육 등 고용알선, 지역사회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맡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약·알콜 중독자·파산자 상담지원과 수급자 동반지원 프로그램(Begleitpersonen-Program) 등을 운영한다.

센터는 채용지원 관련 개별상담자인 사례관리자와 고용알선자, 고용지원급여 전문가, 그리고 담당 센터장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또는 일반근로자 신분으로 기본적 조직구성이 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제집단별로 구분한 전문부서와 기타 업무담당의 일반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구체적인 전문부서로는 24세 이하 수급자 전문부서(U25), 50세 이상 수급자 전문부서(Ü50), 장애인전문부서, 이주배경 또는 전직자영자 전문부서 등이 있으며, 기타부서는 기업 욕구조사 및 상담, 직업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및 강화, 민원 및 이의제기 처리, 기타 일상적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청년지원: 청년고용 기업지원 제도

1) 직업교육법에 의한 사용자 지원

기업은 훈련생과 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하고, 훈련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훈련시간은 전일제를 원칙으로 적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훈련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생 대상으로 기초직업교육을 실시할 경우, 고용청으로부터 최대 216유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훈련생의 총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 분을 지원받는다. 그 외 직업교육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청년대상으로 기업이 별도 직업교육을 실시할 경우 훈련보너스(Ausbildungsbonus)가 제공된다. 훈련보너스는 당 해년도 해당 직종의 단체협상이나 지역별 평균 임금에 기초하여 책정되며, 통상적으로 4,000~6,000유로 수준이며, 장애청년을 위한 직업교육 시, 훈련보너스가 약 30% 증액된다. 지급방법으로는 최초 시작단계에서 50%, 이후 직업교육의 이수와 함께 졸업 시험 신청시점에 가서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2) 채용장려금(Eingliederungszuschuss)

채용장려금이란 장기실업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제공해 주는 급여로써 특정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기업이 대상자를 채용하여 지급한 임금의 최고 50% 이내에서 채용장려금을 고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부담하는 총 사회보험료의 전부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50세 이상의 경우 지급하는 임금의 최고 5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며, 장애인은 임금의 최대 70%를 최고 24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시작 12개월 이후 장애상태를 조사하여

채용장려금을 10%씩 감액할 수 있다.

(6) 주거보조제도(Wohngeld)

주거보조제이란 주거 기회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통상적으로 주거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뀐 수급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신청이 불가하나 2009년 이후, 예외조항에 부합하는 학생들은 주거부조 신청이 가능해 졌다. 즉 용자 형태의 바뀐 수급자, 휴학 또는 바뀐 지원 학기를 초과해 재학 중인 자, 아이 등과 가계를 이룬 학생은 예외조항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식구들과 거주 시, 공동으로 주거부조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식구가 실업급여Ⅱ 등을 통한 주거비용 수령 시, 학생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급여수준은 개인별로 실제 주거비용에서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의 크기 및 특성별 구성(연령 또는 건강상태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가구별 실질욕구¹⁴⁵⁾(tatsächlicher Bedarf)에 대해 최소한 80% 이상을 충족시켜주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특히 주거부조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이므로, 반드시 급여의 사전신청이 요구된다. 사전신청 기간은 현행 급여 승인기간의 만료 시점에서 최소한 2개월 이전에 재차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형태도 이뤄지고 있는데 독일 대학의 학생복지처(Studentenwerk)에서는 재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인형 규모의 소형아파트, 부부·가족 기숙사, 공동주택(Wohngemeinschaft 또는 Share House) 등의 형태이며, 시중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양적으로는 부족하여 대부분 입주자격 획득을 위해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한다.

145) 실질욕구는 가구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공통적으로 실질표준급여(aktueller Regelsatz) + 건강보험료 + 월세(Miete)를 합산한 금액

(7) 의료지원 제도

독일의 청년들은 25세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학생이 군대·대체복무 시, 그 기간만큼 피부양자 신분이 연장되기도 하지만 단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특히 학생이 월 360유로 또는 Mini-Job인 경우, 월 400유로를 초과하여 근로 시, 학생은 대학생 건강보험료 월 53.4유로를 납부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개인이 부양해야 하는 아동존재 시, 월 9.98유로, 부재 시 월 11.26유로가 부과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강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당사자 개인의 신청에 따라 전액 바깥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 신분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연령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재학 중 30세 이상, 재학기간 총 14학기 초과 시, 학생부모가 건강보험의 적용면제 신분(예, 공무원 또는 군인, 고소득자, 자영업자 등)인 경우, 학생은 대학생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의료 혜택은 건강보험제도 개혁조치에 따라 사실상 종결되었다. 하지만 총액진료비 상한제도에 의거하여 1년 진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의 2%(만성질병의 경우 1%) 초과 시, 초과분의 본인부담분이 면제된다.

건강보험제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개개인에게 법률로 정한 연간최소 본인부담금(jährliche Mindestzuzahlung)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환자는 86.16유로, 만성질환자는 연 43.08유로이며, 병원·약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명세서를 발급 → 환자는 자신의 질병금고에 내역서 제출 → 질병금고는 내역서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연간상한선을 초과하면 향후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상으로 살펴본 독일의 주요 청년정책 수단은 다음과 같다.

<표 4-24> 독일의 주요 청년정책 수단

구분		주요 내용
교육: 대학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등록금: 무상교육 - 대학 장학금: 일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기금 규모가 협소하는 등 제한적 - 생활비 지원: 일반학생 및 마이스터 교육 참가자 대상의 바פק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פק : 고교는 완전지원, 일반 전문대생은 1/2 무상지원, 기타 1/2는 무이자 대출, 졸업 후 취업준비생에게 유이자로 최대 12개월 지원
공공부조: 청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고졸은 18세, 대학재학 시, 25세까지 월 184유로 지급 - 보험기반 실업급여(UB1): 단시간 근로 등 근로활동 시 지급 가능 - 구직자 대상 실업부조(UB2): 원칙적으로 학생은 배제되나 휴학생 등 예외조항 존재
고용 지원	고용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연방고용청이 대학커리어서비스센터 운영, 졸업학점과 연계 - 청년실업자: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부조 및 근로취업프로그램 제공 - 고졸: 직업훈련제도 참가 시 직업훈련 수당 제공 - 고등학생: Dual System 참가 시,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월 250-290유로) 지급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법에 의한 사용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생 훈련시 훈련비, 사회보험료, 훈련보너스 지급 - 채용장려금에 의한 사용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실업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50% 지원
주거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세 대학생 : 주거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조항 존재, 대학생기숙사 - 니트 및 실업자 : UB2에서 주거비, 난방비 별도 지급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25세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적용, 이외 예외조항 존재

3. 스페인

(1) 헌법조항 및 주요 내용

1) 헌법조항 제정배경

스페인은 헌법조항을 제정하여 청년보장정책을 추진한 국가이다. 스페인의 청년관련 헌법조항 제정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청년보장정책 사례를 정리하였다.

우선 헌법조항 제정 배경을 보면 스페인의 경제적 여건의 악화가 있다. 스페인 경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2008년 세계 경제 및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불황과 함께 심각한 실업급증이 이어졌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한다. 첫 번째 노동개혁은 계약직에 대한 퇴직금을 높이고, 모든 고용자들에게 퇴직보조금 제도를 일반화하는 내용으로 2010년 이루어졌다. 이어진 두 번째 개혁은 2012년 2월에 Royal Decree-Law 3/2012 고용시장 개혁을 위한 즉각 조치(of urgent measure to reform the employment market)와 함께 이루어 졌는데, 주요 내용은 기업단위 단체협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내부유연성을 강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부당해고 등이 이루어지는 기업에는 세금을 확대하고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는 매년 20시간 업무관련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또 다른 주요 내용이었다(OECD 2013).

이어서 2013년 기업을 살리고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한 Royal Decree-Law 4/2013(on measures to support entrepreneurs, stimulate growth and create employment)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임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조치들이 담겨있었다(J&A Garrigues 2013).

스페인을 2013년 10월 까지도 26.7%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이 이어져 OECD 국가 중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OECD 2013). 특히, 스페인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자 2013년 4월 유럽연합(EU)에서는 가입국들에게 Youth Guarantee 도입을 통해 청년 직업훈련 및 고용을 촉진시키도록 권고하였다. EU의 권고에 따라 스페인에서는 청년보장 국가시스템(National Youth Guarantee System) 내용을 포함한 Royal Decree-Law 8/2014 of 4 July 승인이 이루어진다.

2) 헌법조항의 주요 내용

Royal Decree-Law8/2014는 성장, 경쟁 및 효율성을 위한 긴급조치로 크게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 재무개선, 고용가능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7월 4일 승인되었다(Council of Ministers 2014). 그 안에서 청년보장 국가시스템(National Youth Guarantee System) 내용에는 이 법이 청년보장(Youth Guarantee)에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보장에 등록된 사람들을 훈련계약 등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임금채용보조금(non-wage recruitment subsidies)이 채택되었다. 또한, 청년보장 국가시스템에 등록된 청년들에게는 2015년 8월 5일자로 무료로 4개의 온라인 훈련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공공고용서비스국(the Spain Public Employment Service)은 청년보장(Youth Guarantee)에 등록된 청년들에게 정보통신기술 및 외국어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지원도 하게 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4).

이 법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청년보장 국가시스템(National Youth Guarantee System)은 실업상태이며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고 있는

니트(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들에게 교육과 훈련이 통합되는 시스템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는 16세 이상 25세 미만(장애인인 경우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 견습생 또는 훈련생 등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다(Council of Ministers 2014; European Labour Law Network 2014). 관련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통합하여 하나로 관리하는 리스트에 등록해야 하는데, 신청자는 연령 및 국적 또는 거주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필수조건에 더해 최근 30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거나, 30~90일 사이 한 달에 4시간 이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어야 한다(European Labour Law Network 2014).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웹사이트를 통해 청년, 행정서비스, 기업 및 청년보장 국가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창업 및 청년고용전략(Entrepreneurship and Youth Employment Strategy)과 청년보장(Youth Guarantee) 등에 대해 통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든다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Council of Ministers 2014).

스페인 정부는 Royal Decree-Law8/2014 실행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활용에도 승인했다. 기업이 청년보장(Youth Guarantee) 혜택 대상자인 청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고용자리를 만들면 매월 300유로까지 세금감면을 통해 보너스를 주도록 한 것이다. 풀타임 계약에는 매월 300유로 보너스, 파트타임 고용계약에는 매월 150유로에서 220유로 사이에서 보너스를 제공한다. 보너스는 계약 후 처음 6개월 동안 적용된다(Council of Ministers 2014; European Labour Law Network 2014).

(2) 주요 정책 내용

앞서 설명하였듯이, Royal Decree-Law8/2014의 실행과 함께 청년보

장 국가시스템(National Youth Guarantee System)이 마련되고 EU의 권고에 따라 스페인 청년보장 실행계획(Spanish national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을 마련한다. 따라서 주요 정책 내용은 스페인의 청년보장 실행계획(Union Europea 2013)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스페인의 교육, 훈련, 고용정책은 지방분권화 수준이 높은 편으로 청년보장(Youth Guarantee)도 지방 및 지역 수준의 실행이 많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이 실행되는 만큼 고용·사회보장부 내에 코디네이션 기구를 갖추고 있다. 스페인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은 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훈련을 받는 중도 아닌 채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에 지원한 2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일단 정보 확인 등 형식상의 절차를 거친다. 절차가 완료되고 지원자의 프로필이 완성되면, 지원 후 4개월 이내에 질 좋은 직업 제공, 또는 훈련 및 교육조치, 지속적인 직업훈련, 견습직이나 훈련생 직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부처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운영계획 구축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책임부처인 고용·사회보장부와, 교육문화체육부 그리고 지방단체 참가 채널 역할을 하는 재정행정부가 있다. 책임부처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지만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실행 및 관리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각 지자체이다. 교육, 사회, 청년 관련 분야의 지방부처나 위원회 등이 참여해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고용 분야, 특히 지역 공공고용서비스에서 실행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청년보장계획 실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참여하며 교육, 고용, 훈련(훈련정도 상관없음)을 받고 있지 않은 15~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조치 내용은 대부분 창업 및 청년고용전략(Strategy for Entrepreneurship and Youth Employment) 행동

계획에 포함이 된다. 앞서 법안 내용에서 언급되었듯이, 스페인은 Royal Decree-Law8/2014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청년보장 국가시스템(National Youth Guarantee System)을 운영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존의 SYEE 2013-2016과 EU에서 권고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을 통합해 다루게 되는데, 청년고용전략(Stratgy for Entrepreneurship and Youth Employment) 2013-2016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면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이 실행되는 것이다.

청년고용전략(Stratgy for Entrepreneurship and Youth Employment) 2013-2016과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은 한 가지 계획으로는 모든 실업청년들을 구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 믿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함께 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청년고용전략(Stratgy for Entrepreneurship and Youth Employment)에서 커버되는 계획들이 어떻게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실행을 이루는지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 Union Europea(2013). Spanish national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

[그림 4-5] 청년고용전략(Stratgy for Entrepreneurship and Youth Employment) 2013-2016내에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의 실행 구조

이 피라미드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요 정책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 자리잡은 중간역할 향상(Improved mediation)을 위해서는 직업 안내와 노동시장 정보 및 구직 지원, 공공 고용서비스의 현대화, 고용과 자영업의 단일 포털 개설, 취업알선 기관의 역할 증진, 국내 및 국제 이동 프로그램 마련, 교육과 고용 사이 중개 프로그램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속해 있다. 이 중 직업 안내와 노동시장 정보 및 구직 지원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고용서비스, 교육·훈련센터 및 청년지원서비스 등이 연계되어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년들이 직업의 세계에 들어오길 촉진시키실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모두 힘쓰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도 자영업자들의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장려하는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고용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해서 프로파일링,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 조작, 청년보장(Youth Guarantee)에 등록한 청년들을 위해 노동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할 계획 또한 담고 있다. 교육과 고용 사이의 중개 프로그램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아래에서 두 번째 피라미드인 고용가능성 향상(Improved employability)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고용에 전념하는 훈련 제공, 언어 및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 훈련, 훈련생 제도, 훈련직과 견습직 계약을 통한 이중직업훈련 촉진, 학교를 통한 직업훈련 촉진, 전문 자격을 위한 훈련 등과 관련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Second chance programmes)은 학업을 일찍 중단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갔지만 현재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훈련에 집중하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의 규정대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고 자격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이나 교육을 다시 받으러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고용사회보장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들에게 고용에 전념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증가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최소 30%는 일단 훈련을 마치면 최장 3개월 안에 6개월은 지속가능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훈련을 다 마치지 못한 청년들도 그 훈련과정을 포함해 회사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직과 견습직 계약을 통한 이중직업훈련(Dual vocational training) 촉진에서 특징적인 것은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실행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용사회보장부에서 훈련직과 견습생 계약에 참여하는 훈련활동비용에 대해 첫해에 한해 100% 전액 지원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25세 미만의 니트 청년들과 이러한 계약을 맺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다.

피라미드 중간에 위치한 고용장려를 위한 인센티브(Incentives for hiring)에서는 100% 까지 사회보장 기여금 감면 및 보너스, 30세 미만 청년 고용 촉진, 니트 청년 6개월 이상 고용하도록 기업 고용 재정 지원, 청년 연구자를 위한 훈련 및 고용 증진 등을 다루고 있다. 청년 고용전략(Strategy for Entrepreneurship and Youth Employment)에서는 청년, 특히 경험이나 훈련이 부족하거나 경제위기에서 타격을 크게 받은 분야의 사람들에게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의 청년 중 이전에 경력이 없거나 3개월 미만의 업무경험을 가진 실업청년들을 훈련과 함께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사회보장 기여금을 100% 까지 감면(250명 이상 사업장에는 75%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러한 인센티브들이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실행을 통해 확대되는 것이다. 25세 미만의 니트청년들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촉진(Entrepreneurship)에서는 취업대신 창업을 희망

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고정 기여금 적용, 창업활동 시작과 함께 실업급여 제공, 새로운 기회 제공, 창업문화 촉진, 문의처 개선을 통한 자문 및 안내 등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고정기여금을 적용에서는 30세 미만 청년 자영업자는 등록 후 최초 6개월간 기여금 80% 감면을 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자영업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새로운 기회(Second Chance) 제공을 통해서도 창업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때문에 한 번 실패로 인해 청년들이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조언 및 지원을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내에 문의사무실 설치해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 즉 가장 위 삼각형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을 제외하고 가장 아래에서부터 중개역할 향상(Improved mediation)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고용가능성 향상(Improved employability), 고용장려를 위한 인센티브(Incentives for hiring), 그리고 창업촉진(Entrepreneurship) 등에 이르는 4개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청년보장(Youth Guarantee)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

(3) 영역별 정책내용

1) 교육지원제도: Dual vocational training(이중직업훈련)¹⁴⁶⁾

스페인에서는 청년 고용 증가를 위하여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법안에서 훈련 및 도제 계약 내용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중직업훈련을 도

146) CEDEFOP, Spain: laying the foundations for a dual system in vocational training, 2013 발췌·번역 및 요약

입하여 운영한다. 이중교육은 도제 계약에 의한 훈련과 정규 교육(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학교)에서의 훈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훈련장에서 실제 상황을 놓고 업무와 관련된 일에 대해 보완이나 대안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기업은 훈련할 장소나 장비,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 할 전문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CEDEFOP 2013).

2) 공공부조: 비기여 장애연금 (Non-contributory invalidity pension)¹⁴⁷⁾

기초수입보장 중 하나인 비기여 장애연금은 18~65세 중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나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스페인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가능하다. 특히 본인의 연 수입이 €5,150.60를 넘지 않아야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의 연 수입이 고려된다. 해당 연금은 월 €367.90씩 14번 지급(연간 €5,150.60)이 되며, 의료비 및 의약품비가 무료로 제공되고 그 외 추가 사회서비스가 포함된다(European Commission 2016).

3) 고용지원제도

① 창업 및 청년고용전략(Stratgy for Entrepreneurship and Youth Employment)¹⁴⁸⁾

높은 실업률로 인해 노동시장 개혁 및 법(Royal Decree-Law)에 명시한 관련 조치¹⁴⁹⁾ 실행 과정에서 창업 및 청년고용전략 수립이 요구되

147)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2016; Union Europe, Spanish national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 2013 발췌·번역 및 요약

149) Royal Decree-Law 3/2012 고용시장 개혁을 위한 즉각 조치(of urgent measure to reform the employment market); Royal Decree-Law 4/2013 기업을 살리고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조치(on measures to support entrepreneurs, stimulate growth and

있고 그와 함께 2013년 4월 유럽연합(EU)에서는 가입국들에게 청년보장(Youth Guarantee) 도입을 통해 청년 직업훈련 및 고용을 촉진시키도록 권고하였다. EU의 권고에 따라 스페인은 청년보장 국가시스템(National Youth Guarantee System) 운영 내용을 포함한 Royal Decree-Law 8/2014 of 4 July¹⁵⁰⁾ 를 승인하였다.

이러한 고용전략의 대상자는 16세 이상~25세 미만(장애인인 경우 30세 미만)의 청년들이며, 그 중 특히 실업상태이며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고 있는 니트(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에게 집중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을 받기 위한 청년들이 청년보장 국가시스템(National Youth Guarantee System)에 등록을 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업, 교육, 견습생 또는 훈련생 등 다양한 형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창업 및 청년고용전략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면 EU가 권고한 청년보장 역시 그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표 4-25> 청년고용전략의 역할 및 프로그램

청년고용 전략 역할	프로그램
중개역할 향상 (Improved med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안내와 노동시장 정보 및 구직 지원: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고용서비스, 교육·훈련센터 및 청년지원서비스 등이 연계되어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년들이 직업의 세계에 들어오길 촉진시키실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모두 힘쓰도록 지원 - 공공고용서비스의 현대화: 프로파일링,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 조작, 청년보장(Youth Guarantee)에 등록한 청년들을 위해 노동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 - 고용과 자영업의 단일 포털 개설, 취업알선 기관의 역할 증진, 국

create employment)

150) Royal Decree-Law8/2014 성장, 경쟁 및 효율성을 위한 긴급조치

청년고용 전략 역할	프로그램
고용가능성 향상 (Improved employability)	<p>내 및 국제 이동 프로그램 마련, 교육과 고용 사이 중개 프로그램 (15~24세 대상) 구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Second chance programmes): 학업을 일찍 중단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갔지만 현재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훈련에 집중하는 계획.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의 규정 대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고 자격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이나 교육을 다시 받으러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 이러한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최소 30%는 일단 훈련을 마치면 최장 3개월 안에 6개월은 지속가능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게 만들고, 훈련을 다 마치지 못한 청년들도 그 훈련과정을 포함해 회사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에 전념하는 훈련 제공, 언어 및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 훈련, 훈련생 제도, 훈련직과 견습직 계약을 통한 이중직업훈련(Dual vocational training) 촉진: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실행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용사회보장부에서 훈련직과 견습생 계약에 참여하는 훈련활동비용에 대해 첫해에 한해 100% 전액 지원. 기업들이 25세 미만 니트 청년들과 이러한 계약을 맺었을 때 지원. - 학교를 통한 직업훈련 촉진, 전문 자격을 위한 훈련 등
고용장려 인센티브 (Incentives for hi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기여금 감면 및 보너스: 30세 미만의 청년 중 이전에 경력이 없거나 3개월 미만의 업무경험을 가진 실업청년들을 훈련과 함께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사회보장 기여금을 100%까지 감면(250명 이상 사업장에는 75% 감면) - 30세 미만 청년 고용 촉진, 니트 청년 6개월 이상 고용하도록 기업 고용 재정 지원, 청년 연구자를 위한 훈련 및 고용 증진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특히, 경험이나 훈련이 부족하거나 경제위기로 인해 타격을 크게 받은 분야의 사람들에게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창업지원 (Entrepreneu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를 위한 고정 기여금 적용: 30세 미만 청년 자영업자는 등록 후 최초 6개월간 기여금 80% 감면을 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자영업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제공 - 창업활동 시작과 함께 실업급여 제공, 새로운 기회 제공, 창업문화 촉진, 문의처 개선을 통한 자문 및 안내 등: 창업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때문에 한 번 실패로 인해 청년들이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청년고용 전략 역할	프로그램
	록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조언 및 지원을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내에 문의사무실 설치해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Union Europea(2013). Spanish national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

②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¹⁵¹⁾

스페인의 실업급여는 16세 이상부터 은퇴 연령이전까지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실업상태, 혹은 (정리)해고된 경우, 또는 노동시간이나 급여가 10%~70% 사이에서 감소된 경우를 정책대상자로 보고 재정지원을 한다. 특히 스페인 사회보장시스템 중 하나에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사회보장에 기여한 적이 있다면, 즉 실업상태 이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고, 실직되기 전 6년 동안 최소 360일 동안 사회보장에 기여한 경우 기여 실업급여(contributory unemployment benefit)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저 €497(무자녀)에서 최대 €1,397.83(자녀2인 이상) 범위 내 최초 180일은 기본급의 70%, 181일 이후는 기본급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지난 6년간 사회보장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7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European Commission 2016).

4) 주거보조: 주거지원¹⁵²⁾

대표적인 주거지원으로는 비기여 장애연금(Non-contributory invalidity pension)을 받으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친인척이 아니며 주거비용을 지불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대상

151)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2016 발췌·번역 및 요약

152)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2016 발췌·번역 및 요약

으로 매년 € 525 지원(2016년)하는 정책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6).

5) 의료지원제도: 의료보험(Asistencia sanitaria): Sistema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국가사회보장시스템) 내 healthcare¹⁵³⁾

국가사회보장시스템(Sistema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피보험자(insured)나 그 수혜자(beneficiaries)가 스페인 healthcare 대상자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피보험자(insured)란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고용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혹은 연금이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수혜자는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 몇몇 조건을 충족하면 health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healthcare 혜택으로는 의료혜택, 응급, 재활, 의약품 혜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또는 민간 의료센터 및 병원, 혹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집에서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 기관에 가거나 필요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앰블런스 사용도 지원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중 재활이 필요하거나 의료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시스템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며, 비기여 연금(non-contributory pensions) 및 구직자 기초수입의 수혜자; 해당 보조금을 전부 소진한 실업자; 직업과 관련된 상해나 사고 피해자; 병원환자는 의약품이 전액무료이다. 반면 비입원환자 중 대부분은 수입에 따라 총비용의 10~60% 사이에 해당하는 의약품 금액을 지불하지만 외과 보철, 정형외과 장비와 휠체어에 대한 비용의 일부는 사회보장에서 지원가능하다. 그러나 치과보철과 안경은 스페인 healthcare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European Commission 2016).

153)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2016 발췌·번역 및 요약

이상으로 살펴본 스페인의 청년대상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6> 스페인의 주요 청년정책

구분		주요 내용
교육		- 이중직업훈련(Dual vocational training)
공공부조		- 비기여 장애연금 (Non-contributory invalidity pension)
고용 지원	고 용	- 창업 및 청년고용전략(Strategy for Entrepreneurship and Youth Employment) -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주거보조		- 비기여 장애연금 (Non-contributory invalidity pension) 대상자 주거보조
의료지원		- 국가사회보장시스템(Sistema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 내 healthcare

제 5절 요약 및 시사점

단일법령이 있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4개국가의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핀란드의 경우 청년기본법 (Youth Act)에 기반하여 청년보장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정책방향은 대학 및 전문직업 교육 무료와 학생보조금 등 교육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부모 소득계층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세 이상인 경우, 부모비동거 또는 단독가구인 경우 학비 지원에 부모의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20세 이상 성인 자녀의 부양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무를 갖지 않아도 되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물론 부모와 동거하는 20세 이상의 풀타임 학생에 대한 보조금은 부모소득기준에 따라 차감지급된다. 또한 핀란드는 첫노동시장 진입자의 실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어 실업부조와 유사한 노동시

장보조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용보험가입 경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이다. 3장에서 핀란드의 청년기본법을 살펴보았을 때 청년의 연령을 29세로 하고 있는 점, 청년입법의 목표가 청년의 성장과 자립지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 능동적 참여, 배경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부여 등으로 분석되었다. 핀란드의 청년정책은 이러한 청년기본법의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청년정책의 주요 정책 기조는 교육현장에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통합적 정책으로 주로 직업교육 및 견습제도 등을 니트(NEET)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법안은 연방청년대표법으로 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과 더 나은 삶의 보장을 목표로 하며, 대상 연령은 14세-24세이다. 아일랜드의 청년정책 역시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직업능력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직업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도 Youth Work Act로 청소년 및 청년의 노동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아일랜드의 청년관련 단일법령은 청년보장정책에 대한 법적 추진 근거로서의 성격은 약간 부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정책은 기존 사회정책의 공공부조에 기반하여 학생 소득보장을 연계하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자의 조기 노동시장 지위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이다. 네덜란드의 청년관련 법안인 Youth Care Act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로 청년보장계획과의 연계는 거의 없다. 청년근로에 대한 법으로 청년근로보장법이 있었으나 1998년 이후 구직자재고용촉진법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청년 근로나 고용관련 내용은 보편적인 사회정책의 범주로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발달한 국가로 청년정책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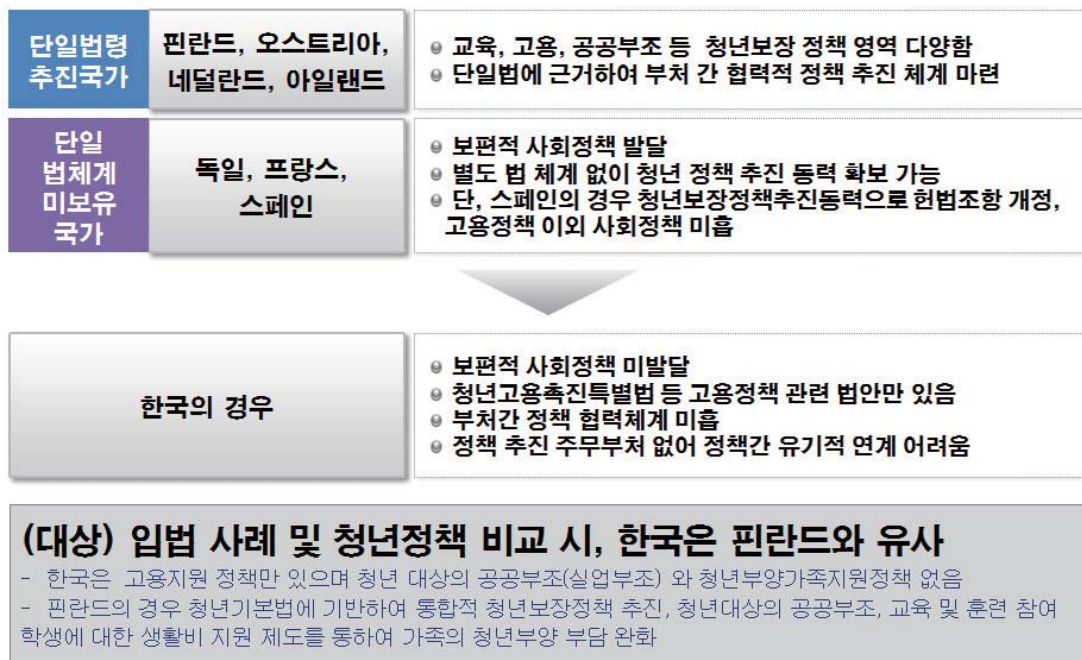
조, 교육지원, 고용지원 등 관련 정책들은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대상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바벡은 대학 등록금이 거의 무료임에도 학비가 아닌 생계비 부족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공되는 지원제도이다. 즉 소득계층에 의한 불평등 없이 대학을 다니고자 할 경우 학비와 생활비 부담 없이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청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없는 25세 미만 니트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5세 미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부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업부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단일법체계는 없으나 헌법 조항으로 청년보장정책의 추진근거를 확보한 국가로 스페인이 있다. 스페인은 사회보장이나 사회정책이 크게 발달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로 청년보장정책 추진 동력을 위하여 헌법조항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스페인은 EU의 권고에 따른 청년보장(Youth Guarantee), 그리고 Royal Decree-Law 8/2014 법률 마련에 따른 청년보장 국가시스템(National Youth Guarantee System)을 구축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해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한 국가이다. 단, 주요 정책을 보면 니트 청년을 타겟집단으로 한 고용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니트청년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중개 역할,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고용장려 인센티브 활용, 창업지원 등 다면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해 놓은 점에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청년관련 법체계와 정책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4-2]와 같다. 청년의 독립적 생애기반 구축을 위한 보장정책은 교육, 고용, 공공부조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영역별 정책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개별 제도의 지원 대상 포괄성, 지원의 충분성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법체계가 없이도 청년보장이 가능한 국가들이다. 단일법체계를 가진 국가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불충분하게 발달한 국가라 하더라도 단일법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경우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영역의 정책 추진을 위한 유기적 연계와 협력체계를 통해 통합적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입법 사례 및 청년정책 비교 시 한국의 벤치마킹 사례는 핀란드의 단일법체계에 기반한 부처간 협력체계 및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 사례, 사회정책사례 중에서 공공부조와 청년부양가족지원 정책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4-6] 국가별 청년정책 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제 5 장 청년정책 추진 방안 제안

제 1 절 청년정책 관련법 제안

1. 입법 배경 및 근거

(1) 정책 대상 및 근거

청년 정책의 대상 청년은 본인 소득이 있으면서도 차상위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거나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모의 소득이 차상위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이다. 한국의 청년정책 대상 규모를 추정한 결과, 19세-24세 청년 중 32.2%, 25세-34세 청년 중 25.4%가 정책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이 80%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25세-34세를 우선 대상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청년 4명중 1명 이상이 정책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19세-24세의 경우 대학등록금 부담 등 부모의 부양 부담이 큰 시기로 이들 까지 고려한다면 청년정책의 대상은 크게 늘어난다. 이를 보면 청년 실업 및 고용불안정의 문제는 청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자녀의 부모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업문제 해결을 목표로 고용과 교육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종합적인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유럽 주요국의 청년보장 정책 사례를 보면 청년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과 더불어 보편적 사회정책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핀란드의 대학 및 전문직업 훈련비용 무료, 교육기간 중 생활비 보조 등은 독립적인 성인직업인으로 훈련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 전혀 없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시장 진입 전 실업자

청년을 대상으로 실업부조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고용보험에 근거한 실업급여와 달리 첫 일자리 이전에 소득이 없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구직기간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

종합하면 청년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요구되는 근거를 대상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년 대상으로 할 경우

청년 개인의 문제에 주목할 경우 다음의 3가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청년 중에서 근로빈곤층이 4명중 1명이라는 점이다. 이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것으로 이들 근로빈곤 청년층에 대한 소득보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나 공공부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세대의 문제이다. 25세-34세청년 가운데 부모의 부양을 받는 켄거루 청년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실업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등 적극적인 고용지원을 통한 청년보장정책이 필요한 집단이다.

셋째, 25세에서 34세의 차상위이하 부모 피부양 청년은 미취업 등으로 결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실업, 고용불안정 및 소득불안정은 한국 사회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2) 청년 부양 가족 대상으로 할 경우

다음은 청년의 문제가 청년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을 부양하는 가족과 부모세대의 부양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데이터를 통해서 최근 19세에서 34

세까지 청년자녀세대 중에서 부모의 부양을 받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부모세대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위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청년세대의 부모 독립 지연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차상위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19세에서 24세 연령 부모피부양 청년 비율의 증가이다. 이는 부모의 소득 악화로 인하여 차상위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상위 이하인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학생은 학비나 생활비 등의 문제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청년세대를 부양하는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정책을 청년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독자적 소득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노후보장이 불충분한 노인 부모세대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긴 하나 청년보장정책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인 정책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대상이다.

(2) 입법 제안의 근거

청년보장정책 추진 근거로서 입법 검토를 제안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청년정책 대상 규모가 25%이상으로 집단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 있다.

둘째는 지금까지 청년정책에서 고려하지 못한 집단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로 잡히지 않았던 취업준비생, 졸업유예생 등 부모 피부양 청년이나 근로빈곤 청년 등 정책의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 중심의 청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조 등 복지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등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청년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은 1) 공공부조 등의 도입, 2) 장기실업자 예방을 위한 고용대책, 3) 학비 등 학생 교육지원 정책, 4) 청년세대의 결혼지연 등에 의한 저출산 심화 대응 정책, 5) 부모세대의 노후보장 위기 대응 정책 등이다.

이들 정책은 현재의 정부조직에서는 각각 소관부처가 다른 정책영역들이다. 공공부조 도입의 경우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교육은 교육부, 저출산 문제와 노후보장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협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통합적인 청년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모든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단일법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추진체계의 정책 추진 동력 확보와 추진체계의 단일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법 체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④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근거

● 25~34세 청년 중 차상위 근로빈곤 청년이 4명 중 1명임

- 청년정책 대상 규모 : 25세-34세 청년인구의 25.4%

● 25~34세 청년 중 쉼거루족은 5명중 1명(15년 기준), 점차 증가추세

- 부모의 부양을 받는 저소득 청년 규모 증가 추세: 2010년 16.6%, 2015년 20.3%
 - 부모의 부양을 받는 저소득 청년 규모로 증가 추세: 2010년 4.7%, 2015년 5.1%

● 해외국가 사례 기반, 청년 및 청년 가족문제에 대한 통합적 사회정책 필요

- 청년 뿐 아니라 청년가족 특히 부모세대의 노후보장 어려움을 고려할때 통합사회정책 요구



“청년 및 청년가족 정책추진을 위한 단일법령과 추진부처 필요”

[정책 추진의 기대효과]

- 청년의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 이행, 독립적 생애기반구축 → 청년층의 비혼, 만혼 등 저출산문제 해결
- 청년 부양 가족의 자녀 부양 부담 완화, 부모세대의 노후문제 해소

[그림 5-1] 청년정책 추진체계 근거(요약)

2. 입법 방향

(1) 입법 목적과 기대효과

청년보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이유는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추진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세대의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적 생애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근로빈곤 청년,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공공부조 등 보편적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경제적 사유로 결혼을 연기하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공부조 등을 통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곧 청년부양가족의 자녀 부양부담 완화하는 것으로 부모세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기발의 된 청년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한국에서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3건의 기본법 입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다. 이상의 3건의 발의안에서 공통점은 청년의 연령을 19세-3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체제로 청년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기본법안(2016. 5. 30, 신보라의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청년대상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개발, 사회참여의 촉진·확대,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년정책기본법안(2016. 8. 17,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은 청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대상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안(2016. 8. 24,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은 청년의 권리 및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복지 등의 증진 및 청년 문화의 창조·육성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대상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

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률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조항¹⁵⁴⁾과 고용보험법 시행령¹⁵⁵⁾에서의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¹⁵⁶⁾에서의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¹⁵⁷⁾상의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및 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 지원 등에서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을 찾아 볼 수 있다.

더불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상의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특례로 청년을 고려하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의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개별법령에서 청년 지원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청년일자리지원 특별법안¹⁵⁸⁾ 및 청년 창업 활

154)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5)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제28조의3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6)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57)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158) 2016. 10. 24.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성화 특별법안¹⁵⁹⁾과 현행법률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에서 2018년 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되어 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에 있다.

또한, 청년세법안(2016. 11. 14, 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청년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 기존에 개별법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실천되어 왔던 것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기본법의 발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으나, 앞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당 법안들에서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세 개의 법안에서 청년정책의 대상 연령은 비교적 폭넓게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기본법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정책의 구체성을 도모하기 어려운 측면이 보인다.

청년정책에서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현재의 청년 정책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에 대한 지원책이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 대상 집단의 고려에 있어서도 청년에 대한 복지, 사회, 교육, 주거정책 뿐만 아니라 청년 가족문제까지 고려하여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법에 따라 향후 제정될 개별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된 구체적인 법률이 있어야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159) 2016. 10. 24. 김정수 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 (의안번호 24, 2016.5.30)	청년정책기본법 (의안번호 1620, 2016.8.17)	청년기본법안 (의안번호 1778, 2016.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연령(19-39세), 청년 권리책임선언, 기본계획수립사항 ● 국무총리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앙 및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참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청년실태조사 실시, 청년정책 영향평가 실시 ● 국무총리소속 청년발전위원회 설치, 청년수당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연령(19-39세),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국무총리소속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 중앙부처 청년정책관 지정, 청년실태조사 실시, 청년교육훈련지원, 저소득층 학비부담경감장 학시책 실시 ● 청년주거안정 정책 실시, 청년의 가족형성지원 정책 실시, 청년문화여가지원 실시 ● 청년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그림 5-2] 청년관련 입법 발의안

제 2 절 주요 정책 제안

청년관련 입법에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교육지원이다. 청년세대가 노동시장 이행을 위하여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적절한 생활비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비, 생활비에 대한 무이자 융자 등을 말하며 현재는 대학생만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대학졸업이후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직업훈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 청년대상의 공공부조 제도로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된다. 그러나 첫 일자리 진입 전 실업상태의 청년들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첫 일자리를 구하기 전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실업부조를 통하여 소득보전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장기실업자 고용정책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검토한 청년보장정책 입법 방안 제안은 추후 연구과제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연령범위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청년의 시작 연령은 대체로 19세로 하는 국가들이 많다. 마지막 연령은 유럽국가의 경우 대체로 29세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청년 연령에서 프리터를 고려하여 34세로 하고 있다는 점, 한국의 평균 초혼연령이 30세로 대략 34세까지 미혼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34세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청년 연령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여타 유관 법령의 연령범위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9세-24세로 하고 있어 청년관련 단일법이 마련될 경우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년정책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 건강보험 DB를 활용하여 정책대상의 규모를 파악하였으나 정책 대상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공시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셋째, 청년부양가족에 대한 노후보장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청년을 부양하는 부모의 소득계층별 자녀부양비용 및 부양기간, 부담 수준 등 자녀부양실태조사 등이 요구된다.

넷째, 청년보장 정책 추진 시 요구되는 재정에 대한 추계 및 조달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 법안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관련법안과의 관계 설정과 상충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추진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의 소관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정책연계, 협력을 위한 적절한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정책 이행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검토 및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강신욱, 기초보장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년 1월호, 통권 231호, 2016.
- 고용노동부,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 고용정책,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2002-2015.
- 김문희, OECD의 유럽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 연구. The HRD Review, 글로벌리포트(1.2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 김상배, 프랑스의 견습생 제도 활성화 대책과 방향,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4.
-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김연우, 이가은, 윤아름,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김지경, 정연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 노대명 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박강우, 독일, 오스트리아 배심·참심제도와 국민의 사법참가, 인권과 정의 통권321호, 2003.
-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15.
- 봉인식, 김희연, 남원석, 김주락, 최혜진, 경기도 주거급여 추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4.
- 안정현, 프랑스 미래고용계약 2년의 성과, 해외 고용 및 고용서비스 심층 분석, 해외고용 리포트, 한국고용정보원, 2014.

참고 문헌

- 오민애, 프랑스의 청년 실업과 청년 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 노동연구원, 2016.
- 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 김미경 번역, 프랑스의 직업교육과 훈련, 한국 산업인력공단, 2010.
- 이상일, 해외 주요국가의 학자금대출 종류와 상환방식을 통해 본 우리나라 학자금대출제도 개선방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료집, 2015.
- 이수욱, 김태환, 황관석, 변세일, 이형찬 외,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 이정봉,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24호, 2010.
- 이철선, 김문길, 임성은,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청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7.
- 이태진, 현시웅, 김선미, 우선희, 김정은,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급여 시행 10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0.
- 이태형, 주수정 외, 복지국가의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의 사회참여 방안 조사 연구.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청년허브 연구보고서 News From Welfare-State, 2014.
- 정기혜 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주프랑스대사관,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추진동향, 2013.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인력 mismatch와 청년층 인력활용방안, 2012.
- 통계청, 2015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2016.4.7.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2002-201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2-2015.

- 통계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201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6, 1998, 2016.
- 최요철, 배성종, 이상호, 임응지,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2008.
- 한국교육개발원, 프랑스의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현황, 2013.
- 현대경제연구원,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중산층의식의 약화와 내핍생활 확산, 경제주평 12-30, 통권 501호, 2012.
- 현대경제연구원,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중산층의 55%는 저소득층이라 생각, 현안과 과제, 2013.
- 현대경제연구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VIP리포트 14-20, 통권 571호, 2014.
- Henri Sterdyniak, 프랑스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 PPE.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5.

[국외문헌]

- Aaltonen, K (2011). Nuorisopolitiikka [Youth Policy]. In Aaltonen, K. (ed.) Nuorten hyvinvointi ja monialainen yhteistyö [Youth well-being and cross-sectoral collaboration], Helsinki: Tietosanoma.
- Knecht, A., Kuchler, K., Atzmüller, R. (2016). Youth Policies and Gender-sensitive Youth Work in Austria, "YOUTH POVERTY, YOUTH INEQUALITY, AND YOUTH POLICY IN AUSTRIA", FORBA Research Report.
- Better Outcomes Brighter Futures (2014).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children & young people 2014-2020.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und Konsumentenschutz (2015/16).

참고 문헌

- Jugend und Arbeit in Oesterreich, Wien.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und Konsumentenschutz (2014).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 Austria.
- CEDEFOP (2013). Spain: laying the foundations for a dual system in vocational training.
- European Commission (2012.12.5.).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Proposal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on Establishing a Youth Guarantee.
- European Commission (2012d).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Estonia.
- European Commission (2012b).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Ireland.
- European Commission (2012g).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Italy.
- European Commission (2012e).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Latvia.
- European Commission (2012f).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Lithuania.
- European Commission (2012c).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12a). National report: First cooperation cycle of the EU Youth Strategy 2010-2012 Netherlands.
- European Commission (2014). The EU Youth Guarantee: Questions and answers. Brussels, Belgium.
- European Commission (2015.02.04.). EU Youth Guarantee: Questions and Answers.
- European Commission (2016).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 European Commission (2016). Youth Guarantee country by country-Finland.
- European Labour Law Network (2014). Royal Decree-Law 8/2014 of 4 July: National System of Youth Guarantee.
-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2009). Country Sheet on Youth in Spain.
-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2012a).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Slovenia.
-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2012b).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Bulgaria.
-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2012c).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the Netherlands.
-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2015a).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Austria.
-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2015b).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Slovakia.
-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2016a).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Croatia.
-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2016b). Country Sheet on Youth in Belgium.
- European Youth Forum (2012). Policy paper on youth employment.
- Federal Ministry of Economy, Family and Youth (2013). Austrian Youth Strategy.
- Fin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6).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ey project and reforms defined in the Strategic Government Programme.

참고 문헌

- Garanzia Giovani (2015). Dutch initiatives to prevent and tackle youth unemployment.
- Jenkinson, H. (2013). Youth Work in Ireland: A Decade On. *Irish Journal of Applied Social Studies*, vol 13.
- Ireland (2016).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 Ireland.
- J&A Garrigues, S. L. P. (2013). Measures to support entrepreneurs, stimulate growth and create employment. Madrid, Spain.
- Hermans, K. (2012). The Dutch Strategy to Combat Homelessness: From Ambition to Window Dressing?, *European Journal of Homelessness*, 6(2).
- Kunta nuorten osallisuussymposium (2002). [Municipality as young people's participation environment]. Jyväskylä: University of Jyväskylä.
- Liebeswar, C., Steiner, K. (2014). Österreichs Strategie zur Bekämpfung der Jugendarbeitslosigkeit: Eckdaten und Maßnahmen im Überblick (No. 284), AMS info.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2). 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2012 - 2015.
-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2016). Healthcare in the Netherlands.
- Nieminen, L. (2005). Nuoren perus- ja ihmisoikeudet [Young people's basic and human rights]. In Litmala, Marjukka & Lohiniva-Kerkela, Mirva (eds.) Nuoren oikeudet [Young people's rights]. Helsinki:Edita Publishing Oy, 2005.
- Bosscher, N. (2012). The decentralis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Dutch youth care system, Netherlands Jeugd instituut.

- OECD (2013). The 2012 labour market reform in Spain: A preliminary assessment.
- Breen, P. J. (2001). Ireland's Youth policy for the New Millenium: The Youth Work Act.
- Siurala, L. (2005). A European framework of youth policy. Brussels: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Trinko, M. (2012). Ausbildungsgarantie in Österreich, Friedrich-Ebert-Stiftung.
- UNICEF (1989).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on Europea (2013). Spanish national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
- WKO (2015). Unternehmerfuhrerschein.
- WMO (2015). 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참고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네덜란드 Youth Act
스페인 Royal Decree-Law8/2014
아일랜드 Youth Work Act
오스트리아 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참고 문헌

청년 창업 활성화 특별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기본법안(2016. 5. 30, 신보라의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2016. 8. 24,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청년세법안(2016. 11. 14, 정세균의원 대표발의)

청년일자리지원 특별법안

청년정책기본법안(2016. 8. 17,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핀란드 Act on the Financing of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Culture 1705/2009

핀란드 Government Proposal to Parliament for a Youth Act 2005

핀란드 The Act Amending the Youth Act(693/2010)

핀란드 The Act on Government Transfers for National Youth Work(1035/1973)

핀란드 The Act on Youth Committees and State Subsidies for Municipal Youth Work(117/1972)

핀란드 The Youth Work Act(1068/1985)

핀란드 Youth Act(72/2006)

핀란드 Youth Work Act(235/1995)

핀란드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417/2007)

핀란드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365/1995)

핀란드 헌법(731/1999)

[웹페이지]

AMS 홈페이지.

<http://www.ams.at/service-unternehmen/foerderungen/eingliederungsbeihilfe-co>

- me-back. 에서 2016.12.7. 인출.
aws First 홈페이지.
http://www.awsg.at/Content.Node/foerderungen_alle/-gruenden/-121711.php.
에서 2016.11.19. 인출.
Citizens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에서
2016.12.5. / 2016.12.10. 인출.
Council of Europe European Union 홈페이지.
<http://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 에서 2016.8.15. 인출.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홈페이지.
<http://www.dcy.gov.ie/viewdoc.asp?fn=%2Fdocuments%2Fyouthaffairs%2Fpolicies.htm>.에서 2016.9.20. 인출.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36>.에서 2012.12.5. 인출.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Youth Guarantee.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langId=en> 에서 2013.2.19. 인출.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76&langId=en>.에서
2016.7.20. 인출.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09&langId=en&intPageId=3756>.에서 2016.12.10. 인출.
Eurostat 홈페이지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FINLEX 홈페이지 www.finlex.fi/fi/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에서 2016.11.28. / 2016.12.10.
인출.
Netherlands Youth Institute 홈페이지.

참고 문헌

<http://www.youthpolicy.nl/yp/Youth-Policy/News/Archive/News2012x/New-brochure-about-positive-youth-policy>.에서 2016. 9. 10. 인출.
Netherlands Youth Institute 홈페이지.

<http://www.youthpolicy.nl/en/Introduction-to-Dutch-youth-policy>.에서 2016. 9. 20. 인출.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www.molit.go.kr

대학생 법률대리기관 사이트.

<https://www.oeh.ac.at/rund-ums-studieren/-versicherung#Selbstversicherung>.에서 2016.11.20. 인출.

빈 홈페이지. <https://www.wien.gv.at/>.에서 2016.11.19. 인출.

오스트리아 대학 정보사이트

<http://www.studieren.at/studienfinanzierung/wohnbeihilfe>.에서 2016.11.19. 인출.

연방가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www.bmfj.gv.at/familie/finanzielle-unterstuetzungen/familienbeihilfe0.html>.에서 2016.11.15. 인출.

오스트리아 경제회의소 홈페이지.

https://www.wko.at/Content.Node/-kampagnen/-ufs_de/index.html.에서 2016.11.18. 인출.

오스트리아 대학 정보사이트. <http://www.studieren.at>.에서 2016.11.15. 인출.

오스트리아 대학보조금청(Österreichische Studienbeihilfenbehörde) 홈페이지. <https://www.stipendium.at/>.에서 2016.11.15. 인출.

오스트리아 대학보조금청(Österreichische Studienbeihilfenbehörde) 홈페이지.

<https://www.stipendium.at/studienfoerderung/studienbeihilfe/>.에서

2016.11.15. 인출.

오스트리아 보험관련 정보 사이트. <http://www.versicherungen.at/>에서

2016.11.20. 인출.

정부3.0 홈페이지. www.korea.go.kr/service/serviceInfo/B55145200001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www.kfpp.or.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부록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2002년-2015년)

<부표 1-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2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5,248	7,888	10,548	13,603	19,037	27,389	35,722	47,203	66,304	84,037	101,543	123,977	135,327	152,299	166,028	163,801	1,159,954
지역세대원	220,559	225,511	222,064	201,734	162,821	153,219	135,025	117,128	109,810	97,581	87,416	80,262	68,614	59,436	52,668	43,554	2,087,402
- 자녀	204,255	208,882	205,622	186,506	149,512	139,490	121,675	103,977	95,725	83,829	74,609	67,507	57,161	48,763	42,561	34,742	1,824,816
- 그외	16,304	16,629	16,442	15,228	13,309	13,729	13,350	13,151	14,085	13,752	12,807	12,755	11,453	10,673	10,107	8,812	212,586
직장가입자	18,912	23,672	29,557	43,616	57,259	82,755	109,461	145,485	184,987	206,110	218,981	232,635	228,771	224,433	221,796	199,052	2,227,482
직장파양자	154,448	154,790	147,548	140,099	117,010	110,444	94,870	76,680	65,823	53,068	44,587	38,614	31,800	25,587	21,826	17,685	1,294,879
- 자녀	137,008	132,475	121,813	110,113	87,306	78,275	63,045	47,439	36,755	26,856	20,594	16,160	12,105	8,316	6,240	4,344	908,844
- 그외	17,440	22,315	25,735	29,986	29,704	32,169	31,825	29,241	29,068	26,212	23,993	22,454	19,695	17,271	15,586	13,341	386,035
의료급여세대주	576	454	381	301	288	297	303	305	291	303	289	304	403	433	446	523	5,897
의료급여세대원	2,760	2,369	2,094	1,514	1,015	909	717	573	472	413	373	335	335	353	350	340	14,922
합계	402,503	414,684	412,192	400,867	357,430	375,013	376,098	387,374	427,687	441,512	453,189	476,127	465,250	462,541	463,114	424,955	6,740,536
지역세대주	5,603	9,336	13,308	17,015	17,942	22,999	23,898	27,154	30,117	32,947	32,929	36,368	37,310	39,979	42,677	42,848	432,430
지역세대원	192,529	188,452	173,253	155,261	119,531	123,463	117,478	127,287	141,106	154,996	156,721	171,457	171,966	180,958	186,735	180,334	2,541,527
- 자녀	175,493	169,789	151,785	130,392	92,339	84,749	68,128	58,655	50,122	40,628	32,005	26,234	20,347	15,646	12,198	9,551	1,138,061
- 그외	17,036	18,663	21,468	24,869	27,192	38,714	49,350	68,632	90,984	114,368	124,716	145,223	151,619	165,312	174,537	170,783	1,403,466
직장가입자	42,206	59,567	83,123	110,529	117,244	139,753	130,391	118,961	109,764	96,309	81,782	74,549	65,403	59,192	55,282	50,311	1,394,366
직장파양자	137,769	134,945	123,582	112,892	86,905	91,753	93,058	109,971	131,755	152,051	157,065	169,544	167,897	166,620	164,558	150,018	2,150,383
- 자녀	122,699	114,712	99,240	83,910	56,009	47,787	35,923	28,827	22,939	16,688	12,102	8,901	6,141	4,084	2,676	1,878	664,516
- 그외	15,070	20,233	24,342	28,982	30,896	43,966	57,135	81,144	108,816	135,363	144,963	160,643	161,756	162,536	161,882	148,140	1,485,867
의료급여세대주	415	325	251	193	203	207	215	212	176	190	199	215	240	315	369	440	4,165
의료급여세대원	2,634	2,299	1,792	1,323	928	695	505	400	292	271	231	222	256	303	396	421	12,968
합계	381,156	394,924	395,309	397,213	342,753	378,870	365,545	383,985	413,210	436,764	428,927	452,355	443,072	447,367	450,017	424,372	6,535,83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3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4,803	8,117	10,576	14,647	20,818	26,023	34,824	43,743	56,401	76,069	94,325	110,807	132,047	142,025	157,335	169,531	1,102,091
지역세대원	198,678	214,640	215,861	201,469	177,446	143,295	132,051	111,103	96,344	93,560	85,150	77,671	72,535	62,836	54,951	49,233	1,986,823
- 자녀	183,983	198,139	199,609	185,436	162,480	129,979	118,597	98,479	83,685	80,123	71,857	65,203	59,896	51,320	44,230	39,067	1,772,083
- 그외	14,695	16,501	16,252	16,033	14,966	13,316	13,454	12,624	12,659	13,437	13,293	12,468	12,639	11,516	10,721	10,166	214,740
직장가입자	16,450	24,614	32,171	49,471	69,655	81,828	113,914	146,925	175,392	205,336	217,315	224,685	236,106	228,149	224,630	220,637	2,267,278
직장피부양자	145,601	154,633	153,461	144,781	133,121	107,756	98,158	77,430	60,641	54,037	44,742	38,890	34,498	28,718	23,843	20,578	1,320,888
- 자녀	131,636	134,474	128,705	115,780	101,775	78,390	67,804	49,734	35,781	28,561	21,241	16,476	13,203	9,850	6,798	5,075	945,283
- 그외	13,965	20,159	24,756	29,001	31,346	29,366	30,354	27,696	24,860	25,476	23,501	22,414	21,295	18,868	17,045	15,503	375,605
의료급여세대주	689	543	433	356	345	363	351	351	337	357	367	374	494	524	569	696	7,149
의료급여세대원	3,461	2,995	2,546	1,853	1,268	1,090	888	743	636	510	478	427	431	429	445	414	18,614
합계	369,682	405,542	415,048	412,577	402,653	360,355	380,186	380,295	389,751	429,869	442,377	452,854	476,111	462,681	461,773	461,089	6,702,843
지역세대주	5,153	9,702	13,976	17,679	21,124	21,574	26,167	26,815	29,587	32,617	35,817	36,491	40,404	41,325	44,341	47,301	450,073
지역세대원	175,266	179,206	168,647	153,475	135,366	106,220	114,905	112,071	122,885	137,393	151,587	153,909	167,534	168,336	176,615	182,019	2,405,434
- 자녀	160,041	161,085	148,477	129,695	106,560	74,704	69,756	55,472	46,849	39,831	32,715	26,471	22,181	17,794	13,739	10,925	1,116,295
- 그외	15,225	18,121	20,170	23,780	28,806	31,516	45,149	56,599	76,036	97,562	118,872	127,438	145,353	150,542	162,876	171,094	1,289,139
직장가입자	34,412	59,621	84,824	111,837	142,187	132,704	146,119	128,984	115,174	105,592	94,461	81,339	76,289	68,103	63,559	60,596	1,505,801
직장피부양자	129,681	135,732	128,443	115,044	100,903	80,596	93,081	97,567	116,377	136,213	154,118	155,754	167,579	162,493	161,594	157,917	2,093,092
- 자녀	117,845	117,626	105,712	88,010	69,073	45,432	39,970	29,437	22,914	17,689	13,007	9,482	7,054	4,916	3,334	2,248	693,749
- 그외	11,836	18,106	22,731	27,034	31,830	35,164	53,111	68,130	93,463	118,524	141,111	146,272	160,525	157,577	158,260	155,669	1,399,343
의료급여세대주	501	364	282	224	246	239	240	249	205	221	256	278	338	414	499	622	5,178
의료급여세대원	3,333	2,908	2,241	1,622	1,198	860	615	507	395	346	299	301	353	413	542	559	16,492
합계	348,346	387,533	398,413	399,881	401,024	342,193	381,127	366,193	384,623	412,382	436,538	428,072	452,497	441,084	447,150	449,014	6,476,07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4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4,370	7,954	11,150	14,517	20,660	26,647	31,266	40,840	49,700	62,850	82,880	100,461	115,563	135,391	144,376	158,110	1,006,735
지역세대원	171,114	193,681	205,216	194,602	175,463	153,406	121,638	106,879	89,083	80,536	80,067	73,976	68,860	65,288	57,537	51,173	1,888,519
- 자녀	157,544	178,265	188,485	178,587	160,157	138,924	109,007	94,191	77,291	68,625	67,495	61,469	56,592	52,709	45,780	40,021	1,675,142
- 그외	13,570	15,416	16,731	16,015	15,306	14,482	12,631	12,688	11,792	11,911	12,572	12,507	12,268	12,579	11,757	11,152	213,377
직장가입자	13,311	17,989	31,609	52,171	73,745	97,013	112,001	151,424	177,855	193,740	217,523	225,278	230,609	240,887	232,056	227,858	2,295,069
직장피부양자	135,923	149,198	157,517	153,293	142,089	127,068	98,870	83,825	65,773	54,501	51,092	43,687	38,713	35,129	29,444	24,980	1,391,102
- 자녀	124,386	131,366	132,819	123,132	108,832	93,194	68,575	54,750	39,328	29,726	24,673	19,020	14,977	12,082	9,138	6,408	992,406
- 그외	11,537	17,832	24,698	30,161	33,257	33,874	30,295	29,075	26,445	24,775	26,419	24,667	23,736	23,047	20,306	18,572	398,696
의료급여세대주	842	656	512	453	434	435	432	444	423	454	463	481	650	708	807	954	9,148
의료급여세대원	4,662	3,865	3,218	2,423	1,617	1,391	1,232	1,000	821	666	604	549	559	552	556	532	24,247
합계	330,222	373,343	409,222	417,459	414,008	405,960	365,439	384,412	383,655	392,747	432,629	444,432	454,954	477,955	464,776	463,607	6,614,820
지역세대주	4,538	8,725	13,850	17,958	21,509	24,998	24,229	28,913	29,053	32,370	35,808	39,492	40,658	45,160	45,954	48,820	462,035
지역세대원	149,987	162,051	158,289	147,839	131,509	118,237	96,133	105,854	104,111	114,380	129,166	142,365	144,130	157,247	158,211	165,904	2,185,413
- 자녀	136,756	145,831	139,394	126,152	105,837	86,789	61,646	56,944	44,419	37,343	32,418	27,194	22,605	19,208	15,927	12,417	1,070,880
- 그외	13,231	16,220	18,895	21,687	25,672	31,448	34,487	48,910	59,692	77,037	96,748	115,171	121,525	138,039	142,284	153,487	1,114,533
직장가입자	27,977	48,022	84,831	110,788	141,841	160,869	137,538	144,724	125,173	111,828	102,909	94,078	83,107	80,042	72,805	69,596	1,596,128
직장피부양자	120,928	130,164	131,525	122,668	105,404	97,101	83,947	100,902	107,183	125,687	144,166	160,134	159,671	169,720	163,426	161,734	2,084,360
- 자녀	111,226	114,800	109,356	95,828	73,918	57,845	39,330	34,409	24,949	19,002	14,702	11,046	8,217	6,167	4,340	2,975	728,110
- 그외	9,702	15,364	22,169	26,840	31,486	39,256	44,617	66,493	82,234	106,685	129,464	149,088	151,454	163,553	159,086	158,759	1,356,250
의료급여세대주	635	452	364	335	298	306	310	320	269	307	361	417	503	651	808	1,032	7,368
의료급여세대원	4,477	3,810	2,884	2,124	1,514	1,119	831	645	566	471	437	446	512	584	775	761	21,956
합계	308,542	353,224	391,743	401,712	402,075	402,630	342,988	381,358	366,355	385,043	412,847	436,932	428,581	453,404	441,979	447,847	6,357,26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5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4,599	7,532	10,922	15,364	20,947	27,578	33,156	37,291	47,198	55,585	68,207	88,843	104,954	119,158	138,012	144,976	924,322
지역세대원	163,592	164,867	182,014	179,926	166,788	148,276	127,245	95,969	83,820	72,920	67,702	68,330	64,584	60,786	58,317	51,958	1,757,094
- 자녀	150,417	151,246	167,080	164,446	151,839	133,895	113,829	84,582	72,422	62,225	56,727	56,523	52,586	48,897	46,136	40,500	1,533,350
- 그외	13,175	13,621	14,934	15,480	14,949	14,381	13,416	11,387	11,398	10,695	10,975	11,807	11,998	11,889	12,181	11,458	203,744
직장가입자	12,074	14,457	23,449	53,121	74,595	101,350	130,565	148,638	182,469	197,427	207,141	227,373	232,418	236,311	245,968	236,898	2,324,254
직장피부양자	140,947	139,492	152,763	156,598	151,761	136,839	117,726	85,296	72,232	58,919	50,900	48,885	42,405	38,108	34,967	30,111	1,457,949
- 자녀	129,001	123,928	129,869	125,924	116,150	99,606	81,037	54,982	42,973	31,690	24,776	20,845	16,268	13,042	10,569	8,148	1,028,808
- 그외	11,946	15,564	22,894	30,674	35,611	37,233	36,689	30,314	29,259	27,229	26,124	28,040	26,137	25,066	24,398	21,963	429,141
의료급여세대주	1,052	827	772	629	587	609	572	597	577	589	639	657	846	1,018	1,142	1,375	12,488
의료급여세대원	5,913	4,821	4,104	3,164	2,300	2,042	1,679	1,296	1,034	827	747	683	692	680	698	700	31,380
합계	328,177	331,996	374,024	408,802	416,978	416,694	410,943	369,087	387,330	386,267	395,336	434,771	445,899	456,061	479,104	466,018	6,507,487
지역세대주	4,753	8,238	12,898	18,135	22,016	25,318	28,246	26,642	30,998	30,926	34,460	38,296	42,684	43,883	48,595	49,543	465,631
지역세대원	143,653	137,715	141,476	136,103	124,261	111,729	105,203	87,748	98,163	97,346	107,554	121,449	134,178	136,045	148,467	149,551	1,980,641
- 자녀	130,864	124,199	125,059	116,079	101,260	83,910	70,719	50,029	45,605	35,326	29,689	26,075	22,294	19,056	16,541	13,769	1,010,474
- 그외	12,789	13,516	16,417	20,024	23,001	27,819	34,484	37,719	52,558	62,020	77,865	95,374	111,884	116,989	131,926	135,782	970,167
직장가입자	24,236	38,705	70,178	109,888	140,998	161,887	167,667	137,064	140,116	120,786	108,436	102,082	95,063	85,951	84,158	78,247	1,665,462
직장피부양자	124,838	121,659	127,210	126,744	113,913	102,665	101,103	90,913	111,062	116,454	133,568	149,684	163,331	160,833	169,762	162,085	2,075,824
- 자녀	115,461	108,401	107,225	99,441	81,224	62,649	50,250	33,847	28,983	20,656	15,458	11,949	9,087	6,791	5,253	3,692	760,367
- 그외	9,377	13,258	19,985	27,303	32,689	40,016	50,853	57,066	82,079	95,798	118,110	137,735	154,244	154,042	164,509	158,393	1,315,457
의료급여세대주	800	581	562	482	404	408	406	447	420	448	539	667	819	1,002	1,363	1,673	11,021
의료급여세대원	5,811	4,715	3,664	2,623	1,848	1,383	1,044	838	737	641	638	638	716	807	1,078	1,079	28,260
합계	304,091	311,613	355,988	393,975	403,440	403,390	403,669	343,652	381,496	366,601	385,195	412,816	436,791	428,521	453,423	442,178	6,226,8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5>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6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4,363	6,898	9,596	14,196	20,391	26,105	32,272	37,715	40,652	51,051	60,468	72,271	92,104	106,996	120,268	137,722	833,068
지역세대원	149,051	153,734	150,490	155,694	151,776	139,404	121,256	98,919	74,455	68,175	61,064	57,964	59,309	56,712	54,077	52,804	1,604,884
- 자녀	136,918	140,874	137,919	142,097	137,651	125,751	108,188	87,091	64,373	57,849	51,147	47,610	48,182	45,198	42,590	40,729	1,414,167
- 그외	12,133	12,860	12,571	13,597	14,125	13,653	13,068	11,828	10,082	10,326	9,917	10,354	11,127	11,514	11,487	12,075	190,717
직장가입자	10,734	11,887	20,739	45,801	74,584	100,962	134,124	168,786	176,028	201,258	209,140	214,819	233,749	237,678	240,090	249,525	2,329,904
직장피부양자	146,438	149,109	145,827	154,173	158,915	149,969	130,178	105,039	76,689	65,649	54,505	48,610	47,159	41,681	38,092	35,451	1,547,484
- 자녀	133,061	130,602	123,504	124,217	120,483	107,712	88,194	66,260	44,636	35,044	26,085	20,796	17,669	14,007	11,395	9,439	1,073,104
- 그외	13,377	18,507	22,323	29,956	38,432	42,257	41,984	38,779	32,053	30,605	28,420	27,814	29,490	27,674	26,697	26,012	474,380
의료급여세대주	1,355	1,271	1,096	865	846	893	844	842	872	869	983	1,013	1,310	1,583	1,850	2,162	18,654
의료급여세대원	7,654	6,330	5,292	4,038	3,146	2,760	2,213	1,673	1,332	1,049	958	870	866	876	928	934	40,919
합계	319,595	329,229	333,040	374,767	409,658	420,093	420,887	412,974	370,028	388,051	387,118	395,547	434,497	445,526	455,305	478,598	6,374,913
지역세대주	4,210	7,839	11,097	15,242	20,469	23,805	27,612	30,602	27,806	32,049	32,039	35,560	39,898	44,595	45,803	50,925	449,551
지역세대원	128,821	128,722	118,041	117,568	111,602	102,455	96,790	93,924	80,353	91,060	90,548	101,256	113,883	126,317	128,279	139,958	1,769,577
- 자녀	117,238	115,841	104,494	100,904	90,772	78,234	66,668	56,481	39,801	36,056	27,821	23,950	21,156	18,666	16,044	14,247	928,373
- 그외	11,583	12,881	13,547	16,664	20,830	24,221	30,122	37,443	40,552	55,004	62,727	77,306	92,727	107,651	112,235	125,711	841,204
직장가입자	22,380	35,300	58,518	98,963	141,799	165,742	172,750	169,596	135,372	136,705	117,888	107,178	102,611	97,956	90,080	89,596	1,742,434
직장피부양자	126,726	128,828	121,615	122,817	119,414	110,552	105,166	108,089	98,674	120,082	124,198	138,809	153,749	164,837	160,682	168,400	2,072,688
- 자녀	116,320	113,899	103,082	97,146	85,593	69,120	54,128	43,325	28,491	23,820	16,774	12,579	9,961	7,608	5,815	4,471	792,132
- 그외	10,406	14,929	18,533	25,671	33,821	41,432	51,038	64,764	70,183	96,262	107,424	126,230	143,788	157,229	154,867	163,929	1,280,506
의료급여세대주	1,070	1,018	803	669	593	612	613	728	704	751	893	1,130	1,450	1,811	2,335	2,827	18,007
의료급여세대원	7,638	6,324	4,611	3,262	2,372	1,819	1,380	1,116	1,035	908	926	923	1,066	1,238	1,536	1,644	37,798
합계	290,845	308,031	314,685	358,521	396,249	404,985	404,311	404,055	343,944	381,555	366,492	384,856	412,657	436,754	428,715	453,350	6,090,00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6〉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7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3,633	6,397	8,870	12,280	17,919	24,031	29,256	35,836	40,720	45,419	55,170	63,228	75,926	94,386	107,145	118,609	738,825
지역세대원	136,271	140,340	139,374	129,806	131,297	125,352	112,432	94,301	75,793	61,333	56,889	51,555	50,657	52,300	50,244	48,175	1,486,119
- 자녀	125,268	128,423	127,518	118,657	119,217	112,977	100,748	83,002	65,596	52,187	47,539	42,283	40,879	41,514	39,009	36,949	1,281,766
- 그외	11,003	11,917	11,856	11,149	12,080	12,375	11,684	11,299	10,197	9,146	9,350	9,272	9,778	10,786	11,235	11,226	174,353
직장가입자	9,776	11,711	19,361	41,540	68,255	102,895	134,099	177,166	200,241	198,020	215,147	216,209	223,500	241,852	243,318	243,411	2,346,501
직장피부양자	150,132	151,056	150,463	143,968	150,448	149,867	135,345	111,094	86,659	63,854	56,438	48,418	44,547	43,459	38,715	35,578	1,560,041
- 자녀	137,751	133,933	128,558	118,845	117,973	109,944	93,616	71,425	51,193	34,598	27,531	21,018	17,297	14,686	11,802	9,562	1,099,732
- 그외	12,381	17,123	21,905	25,123	32,475	39,923	41,729	39,669	35,466	29,256	28,907	27,400	27,250	28,773	26,913	26,016	460,309
의료급여세대주	2,152	1,841	1,569	1,303	1,381	1,358	1,329	1,344	1,370	1,371	1,638	1,749	2,145	2,653	3,120	3,508	29,831
의료급여세대원	10,251	8,370	6,806	5,416	4,547	3,826	3,061	2,406	1,808	1,450	1,373	1,217	1,194	1,272	1,345	1,291	55,633
합계	312,215	319,715	326,443	334,313	373,847	407,329	415,522	422,147	406,591	371,447	386,655	382,376	397,969	435,922	443,887	450,572	6,186,980
지역세대주	3,640	6,615	9,939	12,922	17,173	22,152	25,409	29,598	30,593	28,900	31,746	32,199	36,218	41,238	45,007	46,434	419,783
지역세대원	119,748	115,988	108,728	97,902	94,154	90,960	86,660	87,458	84,423	76,601	83,637	85,028	95,760	107,885	117,919	118,720	1,571,571
- 자녀	108,667	104,158	96,102	84,321	77,322	69,620	61,274	54,364	44,731	32,907	28,138	22,297	19,667	17,855	15,679	13,730	850,832
- 그외	11,081	11,830	12,626	13,581	16,832	21,340	25,386	33,094	39,692	43,694	55,499	62,731	76,093	90,030	102,240	104,990	720,739
직장가입자	22,493	34,064	55,724	87,417	133,039	167,773	177,018	178,631	164,578	135,840	131,497	114,487	107,114	105,505	101,562	94,255	1,810,997
직장피부양자	132,873	128,372	123,077	113,435	109,633	108,444	102,450	107,023	110,729	106,574	123,449	127,198	140,899	154,926	161,628	156,421	2,007,131
- 자녀	122,777	114,867	105,747	92,611	81,633	70,485	56,284	45,800	35,325	23,696	18,736	13,232	10,188	8,157	6,228	4,791	810,557
- 그외	10,096	13,505	17,330	20,824	28,000	37,959	46,166	61,223	75,404	82,878	104,713	113,966	130,711	146,769	155,400	151,630	1,196,574
의료급여세대주	1,897	1,545	1,257	1,062	1,045	1,127	1,124	1,330	1,312	1,466	1,761	2,134	2,659	3,287	4,139	4,682	31,827
의료급여세대원	10,455	8,097	5,910	4,283	3,304	2,525	2,040	1,775	1,607	1,434	1,453	1,475	1,714	1,936	2,342	2,394	52,744
합계	291,106	294,681	304,635	317,021	358,348	392,981	394,701	405,815	393,242	350,815	373,543	362,521	384,364	414,777	432,597	422,906	5,894,06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7>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8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3,721	6,142	9,271	12,572	17,410	23,668	30,716	36,200	42,745	47,796	50,136	60,269	67,795	78,313	95,720	108,228	690,702
지역세대원	135,155	132,131	133,327	124,610	114,474	114,840	109,543	95,252	78,953	67,103	55,016	52,492	48,351	47,206	49,427	48,122	1,406,002
- 자녀	124,168	120,925	121,494	113,383	103,939	103,281	97,473	83,841	67,893	56,812	45,737	42,727	38,511	36,824	37,879	35,992	1,230,879
- 그외	10,987	11,206	11,833	11,227	10,535	11,559	12,070	11,411	11,060	10,291	9,279	9,765	9,840	10,382	11,548	12,130	175,123
직장가입자	10,796	12,113	19,078	42,811	61,792	98,263	141,497	182,002	214,496	229,850	213,060	228,231	229,492	232,130	251,291	254,057	2,400,959
직장피부양자	162,548	153,511	151,586	145,549	138,242	139,627	133,854	113,345	88,929	71,902	54,951	49,790	43,127	39,227	38,748	35,244	1,560,180
- 자녀	151,458	140,259	134,296	124,647	114,301	109,589	98,295	77,742	55,947	41,166	28,643	23,107	17,672	14,325	12,349	10,078	1,153,874
- 그외	11,090	13,252	17,290	20,902	23,941	30,038	35,559	35,603	32,982	30,736	26,308	26,683	25,455	24,902	26,399	25,166	406,306
의료급여세대주	3,042	3,924	3,516	2,181	1,378	1,417	1,365	1,423	1,434	1,511	1,509	1,872	1,984	2,426	3,015	3,566	35,563
의료급여세대원	10,378	6,336	5,089	4,741	3,902	3,286	2,945	2,241	1,836	1,427	1,214	1,164	1,077	1,086	1,223	1,243	49,188
합계	325,640	314,157	321,867	332,464	337,198	381,101	419,920	430,463	428,393	419,589	375,886	393,818	391,826	400,388	439,424	450,460	6,162,594
지역세대주	3,578	6,474	9,574	12,911	15,663	20,281	25,078	27,993	30,644	32,139	29,023	33,203	33,637	37,486	42,523	47,211	407,418
지역세대원	115,623	111,617	103,499	96,451	83,036	81,905	83,996	84,716	85,142	85,530	74,336	84,276	84,299	93,548	104,038	114,392	1,486,404
- 자녀	104,401	99,366	90,687	82,393	67,838	62,988	59,034	53,877	46,570	39,272	27,723	25,099	19,927	17,656	16,193	14,515	827,539
- 그외	11,222	12,251	12,812	14,058	15,198	18,917	24,962	30,839	38,572	46,258	46,613	59,177	64,372	75,892	87,845	99,877	658,865
직장가입자	21,191	34,639	53,331	83,388	117,954	160,650	187,428	189,944	179,577	168,299	132,046	134,310	117,086	111,055	110,956	110,493	1,912,347
직장피부양자	140,527	134,385	124,495	116,397	100,213	98,220	102,345	103,761	109,968	118,805	108,590	129,487	130,748	141,511	153,181	161,933	1,974,566
- 자녀	132,117	122,890	109,805	98,484	78,738	68,299	60,205	49,152	38,648	29,667	18,755	15,370	10,975	8,384	6,781	5,432	853,702
- 그외	8,410	11,495	14,690	17,913	21,475	29,921	42,140	54,609	71,320	89,138	89,835	114,117	119,773	133,127	146,400	156,501	1,120,864
의료급여세대주	2,131	1,738	1,377	1,160	998	1,025	1,190	1,308	1,473	1,567	1,713	2,156	2,505	3,179	3,785	4,844	32,149
의료급여세대원	10,683	8,520	6,156	4,348	2,943	2,291	1,920	1,666	1,485	1,495	1,389	1,505	1,479	1,706	1,978	2,435	51,999
합계	293,733	297,373	298,432	314,655	320,807	364,372	401,957	409,388	408,289	407,835	347,097	384,937	369,754	388,485	416,461	441,308	5,864,88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8>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9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3,292	5,571	7,807	11,488	15,893	20,704	27,917	34,684	40,127	47,273	53,451	54,484	64,104	70,516	80,937	97,343	635,591
지역세대원	127,787	128,205	121,355	115,221	109,667	99,475	98,198	91,100	79,516	68,979	61,081	50,940	49,396	45,683	44,788	47,746	1,399,137
- 자녀	117,250	117,231	110,681	104,617	99,386	89,708	87,536	80,018	68,668	58,378	50,720	41,514	39,256	35,415	33,945	35,530	1,169,853
- 그외	10,537	10,974	10,674	10,604	10,281	9,767	10,662	11,082	10,848	10,601	10,361	9,426	10,140	10,268	10,843	12,216	169,284
직장가입자	10,404	12,225	19,596	39,542	56,503	81,765	126,520	178,465	214,989	235,531	241,279	219,770	232,920	233,482	235,202	254,389	2,392,582
직장피부양자	172,419	168,174	156,525	149,475	145,045	132,524	128,351	114,715	94,467	75,155	62,495	48,896	45,060	39,662	36,511	36,229	1,005,703
- 자녀	160,745	153,781	139,974	129,720	121,734	107,315	98,343	81,550	62,238	45,037	34,410	24,308	19,757	15,317	12,604	10,901	1,217,734
- 그외	11,674	14,393	16,551	19,755	23,311	25,209	30,008	33,165	32,229	30,118	28,085	24,588	25,303	24,345	23,907	25,328	387,969
의료급여세대주	3,426	5,104	4,159	2,606	1,681	1,270	1,358	1,391	1,406	1,489	1,596	1,669	2,022	2,170	2,599	3,298	37,244
의료급여세대원	10,241	6,129	4,716	4,484	3,854	3,109	2,544	2,263	1,747	1,453	1,186	1,078	1,080	997	986	1,116	46,983
합계	327,569	325,408	314,158	322,816	332,643	338,847	384,888	422,618	432,252	429,880	421,088	376,837	394,582	392,510	401,023	440,121	6,057,240
지역세대주	3,324	5,898	8,636	11,559	14,837	17,499	22,306	27,096	29,265	31,973	33,218	29,957	34,022	34,361	38,168	43,366	385,485
지역세대원	112,029	105,632	98,795	89,294	81,101	70,885	74,048	79,626	81,948	82,998	84,527	73,272	82,865	82,889	91,283	101,548	1,392,740
- 자녀	101,510	93,978	86,257	76,073	66,450	54,801	53,152	51,456	47,016	40,780	34,398	24,286	22,164	17,917	16,109	14,908	801,255
- 그외	10,519	11,654	12,538	13,221	14,651	16,084	20,896	28,170	34,932	42,218	50,129	48,986	60,701	64,972	75,174	86,640	591,485
직장가입자	18,317	30,517	50,790	75,283	111,092	139,886	172,878	191,939	188,871	175,033	162,383	127,600	130,726	115,860	111,645	113,035	1,915,855
직장피부양자	151,042	142,812	132,867	118,621	105,438	91,141	93,684	101,713	107,434	116,007	125,034	113,295	133,615	132,592	142,472	152,543	1,960,310
- 자녀	142,277	131,176	118,232	101,226	84,758	66,153	58,454	51,730	42,373	32,592	24,539	15,685	12,982	9,273	7,228	5,933	904,611
- 그외	8,765	11,636	14,635	17,395	20,680	24,988	35,230	49,983	65,061	83,415	100,495	97,610	120,633	123,319	135,244	146,610	1,055,699
의료급여세대주	2,356	1,955	1,536	1,335	1,107	1,053	1,088	1,301	1,449	1,689	1,771	1,924	2,365	2,756	3,521	4,141	31,347
의료급여세대원	11,294	8,847	6,535	4,580	3,062	2,121	1,787	1,620	1,499	1,366	1,400	1,353	1,467	1,441	1,698	1,976	52,046
합계	298,362	295,661	299,159	300,672	316,637	322,585	365,791	403,295	410,466	409,066	408,333	347,401	385,060	369,899	388,787	416,609	5,737,78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9>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0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2,944	4,657	6,762	9,372	13,420	17,953	22,570	30,167	37,774	43,535	51,029	57,058	57,496	66,172	72,090	81,882	574,881
지역세대원	124,219	120,929	116,602	104,762	101,197	95,158	85,010	81,624	76,306	69,657	62,287	56,517	47,610	46,594	43,282	42,587	1,274,341
- 자녀	113,818	110,776	106,286	95,363	91,625	85,812	75,997	71,693	65,846	59,157	51,638	45,998	37,921	36,187	32,570	31,413	1,112,100
- 그외	10,401	10,153	10,316	9,399	9,572	9,346	9,013	9,931	10,460	10,500	10,649	10,519	9,689	10,407	10,712	11,174	162,241
직장가입자	9,817	11,551	22,307	39,638	54,474	78,313	109,809	162,297	210,222	237,038	248,541	248,839	224,178	236,574	236,361	237,651	2,367,610
직장피부양자	185,875	177,067	168,376	152,156	146,646	137,826	120,444	109,588	96,264	80,207	66,195	56,569	45,020	42,242	37,727	35,036	1,657,238
- 자녀	173,011	162,427	151,482	134,065	124,899	113,553	95,376	81,556	66,016	50,927	37,939	29,368	20,933	17,173	13,638	11,303	1,283,666
- 그외	12,864	14,640	16,894	18,091	21,747	24,273	25,068	28,032	30,248	29,280	28,256	27,201	24,087	25,069	24,089	23,733	373,572
의료급여세대주	3,856	5,522	4,872	2,594	1,800	1,372	1,151	1,244	1,312	1,387	1,453	1,650	1,786	2,168	2,282	2,821	37,270
의료급여세대원	11,637	6,438	5,075	4,974	4,217	3,409	2,572	2,033	1,869	1,465	1,318	1,067	980	1,031	964	965	50,014
합계	338,348	326,164	323,994	313,496	321,754	334,031	341,556	386,953	423,747	433,289	430,823	421,700	377,070	394,781	392,706	400,942	5,961,354
지역세대주	2,912	5,099	7,647	10,105	12,951	15,990	18,628	23,619	28,036	30,278	32,342	33,408	30,378	34,457	34,965	38,984	359,799
지역세대원	105,170	101,624	92,683	84,593	73,994	68,237	63,165	69,401	77,077	79,006	80,919	82,343	71,056	80,501	80,267	88,054	1,298,090
- 자녀	94,991	91,102	81,147	72,184	60,597	53,002	45,903	46,011	45,450	41,439	35,645	30,026	21,351	19,876	16,113	14,692	769,529
- 그외	10,179	10,522	11,536	12,409	13,397	15,235	17,262	23,390	31,627	37,567	45,274	52,317	49,705	60,625	64,154	73,362	528,561
직장가입자	16,417	29,615	48,605	74,769	104,934	136,670	154,785	179,632	192,966	186,388	171,056	158,481	125,398	129,825	116,502	114,390	1,940,433
직장피부양자	156,753	151,212	138,931	124,943	105,690	93,581	84,231	91,269	102,978	112,007	121,696	130,710	117,345	136,375	133,923	142,099	1,943,743
- 자녀	147,598	139,671	124,808	108,149	86,460	70,257	55,820	50,357	44,466	36,058	27,374	20,644	13,358	10,946	8,050	6,317	950,333
- 그외	9,155	11,541	14,123	16,794	19,230	23,324	28,411	40,912	58,512	75,949	94,322	110,066	103,987	125,429	125,873	135,782	993,410
의료급여세대주	2,376	1,945	1,576	1,266	1,103	989	974	1,064	1,315	1,470	1,726	1,946	2,054	2,495	2,918	3,677	28,894
의료급여세대원	12,686	10,047	7,335	5,186	3,494	2,402	1,739	1,587	1,521	1,453	1,396	1,423	1,381	1,498	1,532	1,792	56,472
합계	296,314	299,542	296,777	300,862	302,166	317,869	323,522	366,572	403,893	410,602	409,135	408,311	347,612	385,151	370,107	388,996	5,627,43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1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1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3,085	4,106	5,699	8,438	11,196	15,164	19,519	23,843	31,681	39,860	45,810	53,699	58,749	58,401	67,029	72,259	518,538
지역세대원	126,695	117,732	109,959	101,182	91,902	87,131	80,251	69,546	67,256	66,981	63,363	58,116	53,269	45,113	44,742	41,613	1,224,851
- 자녀	116,228	107,500	100,395	91,905	83,336	78,549	71,662	61,382	58,172	57,020	53,065	47,561	42,511	35,329	34,104	30,719	1,069,488
- 그외	10,467	10,232	9,564	9,277	8,566	8,582	8,589	8,164	9,084	9,961	10,298	10,555	10,758	9,784	10,638	10,894	155,413
직장가입자	11,469	12,406	23,465	43,763	56,410	79,027	111,141	147,468	198,340	237,848	255,950	260,542	257,783	230,613	241,387	240,524	2,408,136
직장피부양자	207,998	189,132	175,051	161,409	146,731	137,090	123,134	100,236	88,656	77,489	66,512	56,552	49,451	40,371	38,369	34,922	1,693,103
- 자녀	195,059	173,549	158,167	143,350	127,154	115,015	99,668	77,707	63,934	51,250	39,871	30,269	23,547	17,213	14,170	11,379	1,341,302
- 그외	12,939	15,583	16,884	18,059	19,577	22,075	23,466	22,529	24,722	26,239	26,641	26,283	25,904	23,158	24,199	23,543	351,801
의료급여세대주	4,849	7,268	5,565	2,915	1,790	1,482	1,186	1,051	1,183	1,331	1,421	1,588	1,825	1,929	2,291	2,441	40,115
의료급여세대원	11,586	6,069	4,726	5,201	4,444	3,487	2,710	2,041	1,629	1,542	1,295	1,180	1,002	929	992	933	49,766
합계	365,682	336,713	324,465	322,908	312,473	323,381	337,941	344,185	388,745	425,051	434,351	431,677	422,079	377,356	394,810	392,692	5,934,509
지역세대주	3,065	4,471	6,507	8,746	11,142	13,500	16,898	19,246	24,159	28,557	30,183	32,217	33,037	29,954	34,230	34,548	330,460
지역세대원	109,544	94,366	88,430	78,914	70,238	62,527	61,249	60,308	67,460	75,285	77,225	78,936	80,112	69,496	78,471	78,037	1,230,598
- 자녀	99,414	84,117	77,862	67,497	57,715	48,869	45,232	41,312	41,847	41,251	37,308	31,676	26,749	19,234	18,169	14,878	753,130
- 그외	10,130	10,249	10,568	11,417	12,523	13,658	16,017	18,996	25,613	34,034	39,917	47,260	53,363	50,262	60,302	63,159	477,468
직장가입자	19,966	30,959	51,462	75,957	106,317	130,834	153,046	162,202	181,153	191,049	181,798	166,492	154,957	124,181	129,904	119,068	1,979,345
직장피부양자	181,491	154,808	144,809	127,803	110,020	93,077	84,806	80,202	91,729	106,330	118,004	127,670	135,998	119,991	137,609	133,452	1,947,799
- 자녀	171,701	143,049	131,078	111,877	91,113	71,315	57,999	46,458	41,832	36,506	29,319	22,303	16,853	10,938	9,128	6,708	998,177
- 그외	9,790	11,759	13,731	15,926	18,907	21,762	26,807	33,744	49,897	69,824	88,685	105,367	119,145	109,053	128,481	126,744	949,622
의료급여세대주	2,471	2,070	1,564	1,267	1,029	984	946	979	1,104	1,443	1,564	1,884	2,139	2,226	2,729	3,116	27,515
의료급여세대원	13,937	11,022	7,978	5,673	3,755	2,564	1,870	1,471	1,462	1,432	1,392	1,345	1,419	1,404	1,506	1,543	59,773
합계	330,474	297,696	300,750	298,360	302,501	303,486	318,815	324,408	367,067	404,096	410,166	408,544	407,662	347,252	384,449	369,764	5,575,49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1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2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3,113	4,330	5,582	7,728	10,540	13,158	17,023	21,645	25,954	34,480	43,151	49,659	56,103	60,954	60,231	67,824	481,475
지역세대원	124,037	122,097	106,905	95,263	89,263	80,057	74,500	66,099	57,841	60,197	61,084	58,804	54,260	50,393	43,340	43,035	1,187,175
- 자녀	112,770	111,221	97,079	86,537	80,714	72,113	66,578	58,142	50,028	51,177	51,216	48,272	43,407	39,370	33,042	31,971	1,033,657
- 그외	11,267	10,876	9,826	8,726	8,549	7,944	7,922	7,957	7,813	9,020	9,868	10,532	10,853	11,023	10,298	11,064	153,538
직장가입자	15,741	13,892	28,560	47,779	63,566	82,501	112,222	150,987	181,009	223,424	256,120	268,378	270,234	265,365	235,623	245,910	2,461,311
직장피부양자	221,471	211,560	184,422	166,522	153,946	135,426	120,860	99,809	78,759	69,105	62,731	55,721	48,942	43,262	35,817	34,983	1,723,336
- 자녀	207,437	195,630	167,149	148,973	135,196	116,137	99,998	79,635	59,754	48,433	39,487	31,752	24,649	19,208	14,040	11,917	1,399,395
- 그외	14,034	15,930	17,273	17,549	18,750	19,289	20,862	20,174	19,005	20,672	23,244	23,969	24,293	24,054	21,777	23,066	323,941
의료급여세대주	5,125	7,688	5,791	2,824	1,831	1,356	1,219	1,017	1,008	1,144	1,349	1,523	1,700	1,888	1,994	2,345	39,802
의료급여세대원	11,287	5,824	5,154	5,237	4,549	3,490	2,679	1,963	1,573	1,340	1,336	1,150	1,061	945	923	946	49,457
합계	380,774	365,391	336,414	325,353	323,695	315,988	328,503	341,520	346,144	389,690	425,771	435,235	432,300	422,807	377,928	395,043	5,942,556
지역세대주	3,076	4,768	6,178	8,021	9,964	12,325	14,601	18,101	20,329	25,065	29,171	30,964	32,632	33,535	30,241	34,774	313,745
지역세대원	106,527	99,667	83,434	75,833	65,537	58,941	56,695	58,379	58,538	66,228	73,974	76,258	77,737	79,006	68,385	76,755	1,181,894
- 자녀	96,217	89,185	73,031	64,944	53,714	45,774	41,852	40,422	37,249	37,583	36,933	33,308	28,315	24,157	17,792	16,725	737,201
- 그외	10,310	10,482	10,403	10,889	11,823	13,167	14,843	17,957	21,289	28,645	37,041	42,950	49,422	54,849	50,593	60,030	444,693
직장가입자	24,307	35,125	52,298	79,334	109,729	135,753	149,698	163,089	164,805	180,144	187,356	177,102	162,971	153,198	124,297	131,596	2,080,802
직장피부양자	189,177	178,892	147,540	132,661	110,472	94,042	81,228	78,160	79,352	93,772	110,980	122,826	131,752	138,156	120,590	137,079	1,946,679
- 자녀	179,267	166,294	133,841	117,278	92,983	73,310	56,666	46,845	38,491	34,390	29,714	23,559	17,943	13,688	8,971	7,674	1,040,914
- 그외	9,910	12,598	13,699	15,383	17,489	20,732	24,562	31,315	40,861	59,382	81,266	99,267	113,809	124,468	111,619	129,405	905,765
의료급여세대주	2,393	2,092	1,615	1,219	1,051	899	960	931	1,046	1,160	1,550	1,745	2,054	2,293	2,350	2,885	26,243
의료급여세대원	13,614	11,429	8,315	5,668	3,755	2,510	1,909	1,495	1,310	1,329	1,342	1,294	1,305	1,409	1,371	1,484	59,539
합계	339,094	331,973	299,380	302,736	300,508	304,470	305,091	320,155	325,380	367,698	404,373	410,189	408,451	407,597	347,234	384,573	5,558,90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1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3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3,053	4,506	5,826	7,526	10,072	12,496	15,179	19,108	23,734	28,846	37,751	46,516	52,241	58,211	62,566	60,998	448,629
지역세대원	115,354	119,606	109,574	92,554	83,498	77,904	68,082	61,804	55,616	52,762	56,188	57,652	55,014	51,552	48,212	41,748	1,147,120
- 자녀	104,350	108,098	99,370	83,698	75,483	69,941	60,638	54,360	48,065	44,977	47,094	47,548	44,414	40,395	36,874	31,037	996,342
- 그외	11,004	11,508	10,204	8,856	8,015	7,963	7,444	7,444	7,551	7,785	9,094	10,104	10,600	11,157	11,338	10,711	150,778
직장가입자	18,567	15,746	32,634	52,466	67,343	88,537	113,827	147,933	179,865	200,195	236,749	265,415	275,496	274,959	269,126	237,877	2,476,735
직장피부양자	224,122	226,479	205,192	176,022	158,187	142,624	119,470	99,515	80,662	62,002	56,086	52,811	48,524	43,290	38,558	32,629	1,766,173
- 자녀	210,585	209,223	187,496	157,843	139,653	123,628	100,800	80,872	62,796	45,646	37,582	31,523	25,934	20,197	15,907	11,800	1,461,485
- 그외	13,537	17,256	17,696	18,179	18,534	18,996	18,670	18,643	17,866	16,356	18,504	21,288	22,590	23,093	22,651	20,829	304,688
의료급여세대주	4,110	7,333	5,652	2,849	1,743	1,332	1,068	1,023	936	972	1,134	1,441	1,597	1,762	1,881	2,042	36,875
의료급여세대원	10,011	5,434	4,943	5,441	4,252	3,310	2,393	1,815	1,284	1,116	1,019	1,048	904	890	812	801	45,473
합계	375,217	379,104	363,821	336,858	325,095	326,203	320,019	331,198	342,097	345,893	388,927	424,883	433,776	430,664	421,155	376,095	5,921,005
지역세대주	3,099	4,981	6,602	7,618	9,582	11,235	13,603	15,896	19,066	21,203	25,669	29,653	31,141	32,634	33,613	30,780	296,375
지역세대원	96,427	97,130	87,669	72,015	63,178	55,872	54,351	54,663	57,360	57,619	65,675	73,079	75,186	76,624	77,714	67,118	1,131,680
- 자녀	86,737	86,397	77,025	61,312	51,945	43,578	39,941	37,943	36,969	33,753	33,967	32,997	29,866	25,582	21,923	16,413	716,348
- 그외	9,690	10,733	10,644	10,703	11,233	12,294	14,410	16,720	20,391	23,866	31,708	40,082	45,320	51,042	55,791	50,705	415,332
직장가입자	25,822	38,386	57,877	78,509	112,823	136,241	152,902	158,508	165,414	163,894	175,673	181,888	171,677	159,928	152,249	124,839	2,066,630
직장피부양자	189,465	186,994	170,928	135,922	114,495	95,578	82,153	74,752	76,935	80,794	98,154	116,367	128,308	135,156	139,851	120,378	1,946,230
- 자녀	180,146	174,176	156,205	120,472	97,353	76,116	58,882	46,213	38,632	31,571	28,091	24,055	19,280	14,715	11,198	7,468	1,084,573
- 그외	9,319	12,818	14,723	15,450	17,142	19,462	23,271	28,539	38,303	49,223	70,063	92,312	109,028	120,441	128,653	112,910	861,657
의료급여세대주	2,191	1,979	1,587	1,269	922	873	824	923	927	1,074	1,190	1,676	1,859	2,184	2,405	2,440	24,323
의료급여세대원	11,913	10,635	8,228	5,510	3,458	2,315	1,707	1,373	1,149	1,068	1,121	1,166	1,156	1,156	1,287	1,256	54,498
합계	328,917	340,105	332,891	300,843	304,458	302,114	305,540	306,115	320,851	325,652	367,482	403,829	409,327	407,682	407,119	346,811	5,509,73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1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4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3,100	4,170	5,967	8,017	9,959	12,093	14,360	16,856	21,066	26,450	31,317	40,152	48,678	53,707	59,366	62,912	418,170
지역세대원	106,526	111,641	107,713	95,733	80,951	72,475	65,527	55,833	51,425	50,693	49,181	51,441	53,003	50,886	48,203	45,444	1,096,675
- 자녀	95,891	100,489	96,913	86,403	72,851	64,956	58,305	49,012	44,352	43,151	41,298	42,410	42,877	40,101	37,038	33,918	949,965
- 그외	10,635	11,152	10,800	9,330	8,100	7,519	7,222	6,821	7,073	7,542	7,883	9,031	10,126	10,785	11,165	11,526	146,710
직장가입자	23,927	15,886	33,127	54,493	71,707	91,070	119,852	146,609	175,482	199,357	213,381	247,052	273,656	282,540	280,314	273,489	2,501,942
직장피부양자	228,523	229,591	220,384	197,039	167,380	146,998	126,553	100,373	82,254	64,687	51,070	48,494	47,089	43,946	39,519	35,821	1,829,721
- 자녀	215,397	213,031	201,550	178,691	148,590	128,499	108,319	83,489	65,715	49,301	36,164	30,803	26,371	21,920	17,105	13,630	1,538,575
- 그외	13,126	16,560	18,834	18,348	18,790	18,499	18,234	16,884	16,539	15,386	14,906	17,691	20,718	22,026	22,414	22,191	291,146
의료급여세대주	3,403	6,210	5,023	2,164	1,461	1,129	980	906	934	923	964	1,222	1,548	1,694	1,855	1,942	32,358
의료급여세대원	10,261	5,324	4,848	5,667	4,706	3,388	2,488	1,791	1,399	1,046	943	899	909	862	854	790	46,175
합계	375,740	372,822	377,062	363,113	336,164	327,153	329,760	322,368	332,560	343,156	346,856	389,260	424,883	433,635	430,111	420,398	5,925,041
지역세대주	2,936	4,572	6,792	8,094	8,869	10,528	12,591	14,950	17,057	19,897	21,670	26,066	30,012	31,286	32,932	33,875	282,127
지역세대원	89,893	87,400	84,792	75,021	59,493	53,492	51,134	51,971	52,526	55,154	55,805	63,300	70,443	72,174	73,430	74,328	1,070,356
- 자녀	80,591	77,641	74,192	64,575	48,779	42,021	37,997	36,070	34,101	32,830	29,874	29,900	29,063	26,233	22,939	20,043	686,849
- 그외	9,302	9,759	10,600	10,446	10,714	11,471	13,137	15,901	18,425	22,324	25,931	33,400	41,380	45,941	50,491	54,285	383,507
직장가입자	27,216	38,272	61,101	85,463	110,944	137,508	151,115	160,026	160,495	163,607	159,211	169,689	175,353	166,961	157,288	151,365	2,075,614
직장피부양자	196,334	186,907	177,780	157,747	118,219	100,931	85,578	77,011	74,576	80,276	86,697	105,314	123,932	134,591	139,241	142,588	1,987,722
- 자녀	187,177	175,135	163,062	141,509	101,446	81,814	63,147	49,379	38,992	32,934	26,780	23,657	20,319	16,304	12,612	9,761	1,144,028
- 그외	9,157	11,772	14,718	16,238	16,773	19,117	22,431	27,632	35,584	47,342	59,917	81,657	103,613	118,287	126,629	132,827	843,694
의료급여세대주	2,154	2,050	1,684	1,434	1,024	839	828	853	961	988	1,127	1,334	1,808	2,048	2,311	2,579	24,022
의료급여세대원	11,270	10,229	8,374	6,084	3,748	2,392	1,710	1,388	1,155	1,030	967	1,049	1,101	1,103	1,105	1,225	53,930
합계	329,803	329,430	340,523	333,843	302,297	305,690	302,956	306,199	306,770	320,952	325,477	366,752	402,649	408,163	406,307	405,960	5,493,77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표 1-1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5년)

가입유형*연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전체
지역세대주	3,195	8,246	11,592	11,414	11,770	12,837	15,120	17,464	19,936	24,784	30,233	34,879	43,903	52,302	56,757	61,578	416,010
지역세대원	99,299	102,255	97,257	92,458	84,372	72,133	62,891	56,255	48,464	49,133	49,017	46,907	49,159	50,458	48,695	46,818	1,055,571
- 자녀	89,130	91,612	87,350	82,996	75,870	64,399	55,800	49,273	41,823	41,877	41,340	38,762	39,568	39,956	37,469	34,940	912,165
- 그외	10,169	10,643	9,907	9,462	8,502	7,734	7,091	6,982	6,641	7,256	7,677	8,145	9,591	10,502	11,226	11,878	143,406
직장가입자	25,035	18,091	31,352	58,367	75,999	95,748	122,882	153,534	174,309	196,037	213,942	222,762	254,144	280,111	287,665	284,202	2,494,180
직장피부양자	229,419	233,547	222,906	207,761	184,491	153,601	127,987	104,251	81,299	63,361	50,329	42,010	41,185	40,744	38,630	35,464	1,856,985
- 자녀	217,536	217,546	205,118	188,808	165,623	135,040	110,326	87,953	66,409	49,374	36,781	28,172	24,500	21,120	17,822	14,102	1,586,230
- 그외	11,883	16,001	17,788	18,953	18,868	18,561	17,661	16,298	14,890	13,987	13,548	13,838	16,685	19,624	20,808	21,362	270,755
의료급여세대주	3,194	6,269	5,300	2,832	1,688	1,279	1,043	938	871	952	958	1,078	1,331	1,679	1,839	2,011	33,262
의료급여세대원	9,911	5,572	4,706	5,661	4,900	3,890	2,616	1,936	1,391	1,160	967	841	817	881	811	833	46,893
합계	370,053	373,980	373,113	378,493	363,220	339,488	332,539	334,378	326,270	335,427	345,446	348,477	390,539	426,175	434,397	430,906	5,902,901
지역세대주	3,045	4,616	6,442	8,341	9,722	10,539	12,331	14,362	16,620	18,586	21,163	22,631	26,817	30,857	32,116	33,720	271,908
지역세대원	85,920	83,011	77,762	74,225	63,223	51,504	51,819	52,113	52,429	52,711	55,720	55,816	63,481	70,187	71,739	73,346	1,035,006
- 자녀	76,773	73,499	67,886	63,615	52,525	40,417	39,231	37,236	34,700	32,246	30,823	27,504	27,667	26,880	24,272	21,389	676,663
- 그외	9,147	9,512	9,876	10,610	10,698	11,087	12,588	14,877	17,729	20,465	24,897	28,312	35,814	43,307	47,467	51,957	358,343
직장가입자	26,947	39,573	60,114	89,453	123,124	136,546	154,788	160,724	163,802	159,636	159,931	154,695	164,083	170,930	164,803	156,949	2,086,098
직장피부양자	200,699	191,758	175,903	161,913	133,899	101,751	85,261	74,734	72,355	74,302	82,289	90,020	109,583	126,823	135,647	138,355	1,955,292
- 자녀	192,096	180,572	162,757	145,825	116,764	83,441	64,197	49,110	39,193	31,380	26,314	21,423	19,075	16,264	13,244	10,482	1,172,137
- 그외	8,603	11,186	13,146	16,088	17,135	18,310	21,064	25,624	33,162	42,922	55,975	68,597	90,508	110,559	122,403	127,873	783,155
의료급여세대주	2,316	2,167	1,974	1,585	1,286	1,014	856	881	946	1,079	1,110	1,266	1,473	1,994	2,258	2,567	24,772
의료급여세대원	10,736	9,688	8,165	6,424	4,179	2,656	1,802	1,359	1,170	1,017	947	947	1,007	1,081	1,089	1,084	53,351
합계	329,663	330,813	330,360	341,941	335,433	304,010	306,857	304,173	307,322	307,331	321,160	325,375	366,444	401,872	407,652	406,021	5,406,42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부록 2: 연도별 청년고용현황

<부표 2-1> 연도별 연령별 청년 경제활동인구 현황(2002-2015)

(단위: 천명)

		남성				여성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02	전체	5,939	4,330	270	1,340	6,392	3,409	154	2,829
	19-24	1,700	740	76	884	2,284	1,238	89	956
	25-29	2,032	1,576	120	335	1,957	1,126	37	794
	30-34	2,207	2,014	73	120	2,151	1,045	27	1,079
'03	전체	5,866	4,237	293	1,336	6,306	3,339	195	2,772
	19-24	1,680	703	92	885	2,247	1,192	114	942
	25-29	1,962	1,500	127	334	1,892	1,100	49	744
	30-34	2,225	2,034	75	116	2,167	1,048	33	1,086
'04	전체	5,759	4,156	300	1,303	6,174	3,366	198	2,609
	19-24	1,619	697	93	829	2,158	1,173	117	868
	25-29	1,926	1,455	131	340	1,866	1,143	49	675
	30-34	2,214	2,004	75	134	2,150	1,051	32	1,066
'05	전체	5,615	4,007	284	1,324	6,021	3,300	197	2,524
	19-24	1,527	626	85	816	2,060	1,104	105	851
	25-29	1,927	1,439	121	367	1,880	1,185	58	637
	30-34	2,162	1,942	79	141	2,081	1,012	34	1,036
'06	전체	5,476	3,844	280	1,351	5,833	3,233	185	2,414
	19-24	1,428	563	76	790	1,924	974	95	855
	25-29	1,954	1,418	122	413	1,906	1,225	61	620
	30-34	2,093	1,863	82	148	2,003	1,034	29	940
'07	전체	5,351	3,711	270	1,370	5,690	3,163	154	2,374
	19-24	1,359	520	68	771	1,831	897	67	866
	25-29	1,987	1,417	126	444	1,931	1,262	54	615
	30-34	2,005	1,774	75	155	1,929	1,004	33	892
'08	전체	5,323	3,648	250	1,425	5,591	3,088	157	2,346
	19-24	1,355	485	62	807	1,782	838	72	872
	25-29	1,987	1,404	114	469	1,916	1,271	57	589
	30-34	1,982	1,759	74	148	1,894	980	29	885
'09	전체	5,260	3,567	278	1,415	5,544	2,979	170	2,395

부록

		남성				여성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19-24	1,328	473	62	793	1,789	805	73	910
	25-29	1,963	1,363	135	465	1,884	1,235	64	584
	30-34	1,969	1,731	82	157	1,871	938	33	900
'10	전체	5,208	3,526	268	1,414	5,467	3,005	176	2,286
	19-24	1,337	471	57	810	1,771	807	79	885
	25-29	1,901	1,331	126	444	1,824	1,208	65	551
	30-34	1,970	1,724	86	160	1,873	990	33	850
'11	전체	5,193	3,538	246	1,408	5,440	3,000	172	2,268
	19-24	1,376	480	64	833	1,798	808	69	922
	25-29	1,825	1,307	109	408	1,749	1,185	63	501
	30-34	1,992	1,751	73	167	1,893	1,007	41	845
'12	전체	5,230	3,553	227	1,449	5,412	3,026	167	2,219
	19-24	1,478	540	58	881	1,822	838	77	907
	25-29	1,748	1,231	107	410	1,665	1,133	60	473
	30-34	2,004	1,783	62	158	1,925	1,055	30	840
'13	전체	5,352	3,552	252	1,548	5,418	3,030	175	2,213
	19-24	1,608	566	59	983	1,860	830	81	948
	25-29	1,720	1,197	115	409	1,608	1,094	61	453
	30-34	2,023	1,789	77	157	1,951	1,106	34	811
'14	전체	5,366	3,597	273	1,495	5,412	3,074	205	2,133
	19-24	1,659	615	78	965	1,916	883	90	944
	25-29	1,704	1,183	133	388	1,576	1,083	73	420
	30-34	2,003	1,799	62	142	1,921	1,109	43	769
'15	전체	5,342	3,589	276	1,477	5,352	3,110	205	2,038
	19-24	1,668	639	82	947	1,929	924	101	904
	25-29	1,722	1,193	134	395	1,572	1,079	67	426
	30-34	1,952	1,757	60	135	1,852	1,107	37	708

자료: 통계청, 「2002-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부표 2-2> 연도별 연령별 청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2002-2015)

(단위: 천명)

		남성			여성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02.8	전체	3,562	2,892	670	2,869	2,259	609
	19-24	633	452	181	1,151	909	243
	25-29	1,362	1,129	233	983	803	180
	30-34	1,566	1,310	256	734	548	187
'03.8	전체	3,466	2,578	888	2,831	1,896	935
	19-24	628	350	278	1,117	731	386
	25-29	1,277	983	294	966	697	270
	30-34	1,561	1,245	316	748	469	279
'04.8	전체	3,422	2,361	1,061	2,877	1,841	1,037
	19-24	590	347	243	1,080	678	403
	25-29	1,271	886	385	1,029	705	323
	30-34	1,561	1,128	433	768	458	311
'05.8	전체	3,360	2,343	1,017	2,840	1,862	979
	19-24	555	273	282	1,030	642	388
	25-29	1,255	928	328	1,069	736	333
	30-34	1,550	1,142	407	742	484	259
'06.8	전체	3,338	2,415	923	2,795	1,862	932
	19-24	531	292	239	888	564	324
	25-29	1,288	972	316	1,098	763	335
	30-34	1,519	1,151	368	809	536	273
'07.8	전체	3,233	2,295	937	2,796	1,879	917
	19-24	478	274	205	841	509	333
	25-29	1,307	946	361	1,151	833	318
	30-34	1,448	1,076	372	804	538	266
'08.8	전체	3,205	2,320	884	2,704	1,857	846
	19-24	461	251	211	771	451	320
	25-29	1,272	940	332	1,147	842	306
	30-34	1,472	1,130	342	786	565	221
'09.8	전체	3,169	2,354	814	2,667	1,787	880
	19-24	464	241	223	756	429	327
	25-29	1,216	910	306	1,129	814	315
	30-34	1,489	1,203	285	783	544	238
'10.8	전체	3,142	2,368	775	2,719	1,826	893

부록

		남성			여성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19-24	425	203	222	751	422	329
	25-29	1,213	936	277	1,134	817	317
	30-34	1,505	1,228	276	834	587	247
'11.8	전체	3,203	2,385	818	2,778	1,864	914
	19-24	463	226	237	775	433	342
	25-29	1,196	907	289	1,122	820	302
	30-34	1,544	1,253	291	881	611	270
'12.8	전체	3,166	2,408	758	2,786	1,911	875
	19-24	500	263	237	798	442	356
	25-29	1,112	865	247	1,062	782	280
	30-34	1,555	1,279	275	926	687	239
'13.8	전체	3,172	2,398	774	2,788	1,924	864
	19-24	527	266	261	789	435	354
	25-29	1,102	862	240	1,009	748	261
	30-34	1,543	1,270	273	990	741	249
'14.8	전체	3,244	2,426	817	2,854	1,972	882
	19-24	628	341	287	878	488	390
	25-29	1,079	814	265	977	724	253
	30-34	1,537	1,272	265	999	761	238
'15.8	전체	3,223	2,410	813	2,905	2,002	904
	19-24	620	310	309	912	507	405
	25-29	1,107	843	264	996	753	243
	30-34	1,497	1,257	240	997	742	255

자료: 통계청, 「2002-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원자료

<부표 2-3> 연도별 연령별 청년 임금근로자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현황(2005-2015)

(단위: 천명)

		남성			여성		
		전체	최저 임금 미만	최저 임금 이상	전체	최저 임금 미만	최저 임금 이상
‘05.8	전체	3,360	110	3,250	2,840	162	2,679
	19-24	555	68	487	1,030	92	938
	25-29	1,255	23	1,233	1,069	27	1,041
	30-34	1,550	19	1,531	742	42	700
‘06.8	전체	3,338	117	3,221	2,795	157	2,637
	19-24	531	65	467	888	90	798
	25-29	1,288	35	1,252	1,098	23	1,074
	30-34	1,519	17	1,502	809	44	765
‘07.8	전체	3,233	152	3,081	2,796	187	2,608
	19-24	478	88	390	841	103	738
	25-29	1,307	41	1,266	1,151	35	1,115
	30-34	1,448	23	1,425	804	49	755
‘08.8	전체	3,205	152	3,053	2,704	203	2,501
	19-24	461	88	373	771	112	659
	25-29	1,272	37	1,235	1,147	41	1,107
	30-34	1,472	27	1,445	786	50	735
‘09.8	전체	3,169	168	3,001	2,667	205	2,462
	19-24	464	90	374	756	112	643
	25-29	1,216	47	1,170	1,129	38	1,090
	30-34	1,489	32	1,457	783	54	729
‘10.8	전체	3,142	134	3,008	2,719	161	2,559
	19-24	425	67	358	751	92	659
	25-29	1,213	50	1,163	1,134	33	1,101
	30-34	1,505	18	1,487	834	35	799
‘11.8	전체	3,203	171	3,032	2,778	158	2,620
	19-24	463	94	369	775	97	679
	25-29	1,196	53	1,142	1,122	28	1,094
	30-34	1,544	24	1,521	881	33	848
‘12.8	전체	3,166	135	3,031	2,786	163	2,623
	19-24	500	85	415	798	100	698
	25-29	1,112	33	1,079	1,062	34	1,028
	30-34	1,555	17	1,538	926	29	897

부록

		남성			여성		
		전체	최저 임금 미만	최저 임금 이상	전체	최저 임금 미만	최저 임금 이상
‘13.8	전체	3,172	129	3,043	2,788	162	2,625
	19-24	527	75	451	789	99	690
	25-29	1,102	38	1,064	1,009	30	978
	30-34	1,543	15	1,528	990	33	957
‘14.8	전체	3,176	208	2,969	2,697	232	2,465
	19-24	614	127	487	866	159	706
	25-29	1,051	52	999	926	38	889
	30-34	1,511	28	1,483	905	35	871
‘15.8	전체	3,223	170	3,053	2,905	212	2,693
	19-24	620	108	511	912	122	791
	25-29	1,107	41	1,066	996	45	951
	30-34	1,497	21	1,476	997	46	952

자료: 통계청, 「2005-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원자료

부록 3: 국가별 법령 전문

1. 핀란드 청년법: Youth Act(72/2006), FINLAND

제1장 일반규정

제1조(목적)

① 이 법률의 목적은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 청년의 적극적인 시티즌쉽과 역량강화 촉진 및 청년의 성장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② 이 목적의 실현은 공동성, 연대, 공평과 평등, 다문화주의와 국제주의, 건강한 생활 및 생명과 환경의 존중에 근거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① 청년이란 2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② 적극적 시티즌쉽이란 시민사회에서 청년에 의한 목적지향 활동을 의미한다.

③ 사회적 역량강화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관리 스킬을 개선하여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④ 유스워크란 청년의 여가시간에 있어서 적극적 시티즌쉽의 촉진, 청년의 역량강화, 청년의 성장과 자립의 지원, 세대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⑤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성장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⑥ 전국 청년조직이란 이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고 그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등록단체를 의미한다.

⑦ 전국 유스워크서비스조직이란 그 주된 목적이 유스워크의 전반적 개량을 목표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록단체를 의미한다.

⑧ 유스워크를 실시하는 조직이란 그 활동의 일부가 유스워크에서 이루어지고, 그 유스워크의 범위가 전국 청년조직의 활동에 필적하는 등록단체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제2장 국가의 유스워크와 청년 정책

제3조(발전과 협력)

① 법무부는 유스워크와 청년정책의 전반적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주행정기관은 유스워크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며, 지역레벨의 담당기관이다. 교육부는 주행정기관과 함께 주의 유스서비스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는 국가레벨에서 주행정부는 지역레벨에서 청년정책을 조정할 책임을 가진다.

제4조(청년정책발전프로그램)

① 정부는 4년마다 청년정책발전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발전프로그램은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의 목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지역레벨 및 지방레벨에서 청년정책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발전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② 발전프로그램은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발전프로그램의 수립 시 각 부처는 유스워크 및 청년정책에서 주요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발전프로그램에 관한 상세규정은 명령에 의한다.

제5조(청년문제에 관한 자문회의)

① 유스워크 및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가집단으로서 역할을 부과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하는 청년문제에 관한 자문회의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문회의는 교육부에 설치된다. 자문회의는 협의사항의 사전준비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의 임무는 이하의 내용에 따른다.

i) 교육부에 발전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의견으로 제출 및 청년정책발전프로그램의 실시를 매년 점검하는 것

ii) 청년에 관한 프로그램과 수단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

iii) 청년과 그들의 생활조건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

③ 자문회의에 관한 상세규정은 명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보조금위원회)

① 법무부는 전국청년조직 및 전국유스워크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의해 임명된 평가·보조금위원회에 따른 원조를 받아야 한다.

평가·보조금위원회는 평가·보조금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협의사항의 사전준비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평가·보조금위원회의 임무는 이하의 내용에 따른다.

i) 전국청년조직 및 전국유스워크서비스 조직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의 분배에 대해 매년 교육부에 제안하는 것

ii)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전국청년조직 및 전국유스워크서비스 조직의 적격성에 대해서 교육부에 매년 의견을 진술하는 것

iii) 유스워크를 실시 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분배에 관한 의견

을 매년 제출하는 것

iv) 교육부의 의뢰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있는 조직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

③ 위원회에 관한 상세규정은 명령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제3장 지방의 유스워크 및 청년 정책

제7조(유스워크 및 청년 정책의 발전과 실시)

① 유스워크 및 청년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의 일부이다. 유스워크의 실시는 지방자치체와 청년단체, 유스워크를 실시하는 기타 조직의 책임을 지닌다. 또한, 유스워크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 유스워크 및 청년정책은 청년에 대한 교육적 지도, 시설과 취미의 기회, 정보제공과 조언서비스, 청년단체 기타 청년그룹에 대한 원조, 청년의 스포츠·문화·국제·다문화활동, 청년의 환경교육 및 필요하다면 지방이 상황과 니즈에 따라 청년 워크숍 서비스 또는 기타 형태의 활동에서 이루어진다.

③ 유스워크 및 청년정책은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 청년단체 및 유스워크를 실시하는 기타 조직과의 다직종의 전문가와 협동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의 참가)

청년에게는 지방 및 지역의 유스워크,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의 취급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청년에게 그들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장 정부의 재정원조

제9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교부금)

정부보조금은 교육과 문화의 재정분담에 관한 법률(the Act on the Financing of Education and Culture(635/199))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보조는 제7조에서 정하는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년조직 및 유스워크조직을 위한 국가보조금)

① 매년 국가예산에는 전국청년조직 및 전국유스워크서비스조직에 대한 일반보조금으로서 분배되는 세출을 포함할 수 있다. 전국청년조직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등록된 그 지방조직의 활동을 위해 분배할 수 있다. 또한, 전국청년조직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보조금을 분배할 수 있다. 일반보조금은 주된 목표가 교육, 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단일영역에 있어 연구를 촉진하는 것으로 청년조직에는 분배하지 않는다. 일반보조금은 주로 노동조합운동을 촉진하고 있는 청년조직에도 분배하여야 한다.

② 이 활동 내지 보조금이 개별 법령에 딸 정하고 있으며, 또는 국가예산에서 용도지정된 세출에서 보조금을 받는 조직은 이 법률에 따른 일반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③ 국가청년조직 및 지방조직에 대한 보조금은 성과를 토대로 배분하여야 한다. 성과의 기준은 활동의 질, 범위, 비용대비효과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보조금의 배분에 있어 활동의 사회적 타당성과 보조금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영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인용가능한 지출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는 본조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조직을 인정하여야 한다.

⑥ 성과의 기준, 인용가능한 지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 조직을 인증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으로 보조금의 근거에 관한 상세규정은 명령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제11조(유스워크를 실시하는 조직에 대한 국가보조금)

① 유스워크를 실시하는 조직에 대한 일반적보조금의 세출은 매년 국가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보조금의 분배는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한다.

② 보조금의 기준에 관한 상세규정은 명령에 따라 제정하여야 한다.

제12조(국립유스센터에 대한 국가보조금)

① 국립유스센터의 운영과 건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위한 세출은 매년 국가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운영을 위해 보조금은 청년에 의한 이용도 및 센터운영방침에 따라 결정된 성과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을 시작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정액을 근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 및 원칙을 실행하고, 비영리로 활동하여야 한다. 센터가 얻은 이익은 센터 및 센터의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이용하여야 한다.

③ 센터 인증 기준 및 센터의 운영과 재무의 조직에 고나한 상세규정은 명령에 따라 제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국가보조금)

청년정책의 연구, 국제적인 청년협력, 시설의 건설·개보수 및 장비와 유스워크의 발전을 위한 세출은 국가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

제5장 준칙

제14조(국가보조금의 관할기관)

① 이 법률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국가의 보조금의 관할기관은 교육부이어야 한다.

② 교육부는 예산상의 보조금 세출을 교부하여 주행정기관에 분배할 수 있다.

제15조(법으로 정하는 국가의 원조와 임의 보조금의 재정분담)

이 법률에서 열거하는 정부보조금과 국가의 보조금은 주로 국가가 발행하는 복권과 국채의 이익에서 배분되어야 한다.

제16조(임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법률의 적용)

① 제10조내지제13조에서 열거한 국가 보조금에는 임의의 정부교부금에 관한 법률(the Act on Discretionary Government Transfers((688/2001))의 제10조내지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시행과 이행규정

제17조(시행)

① 이 법률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② 이 법률은 1995년 2월 24일 제정된 유스워크법(the Youth Work Act of 24 February 1995(235/1995) 및 이후에 실시된 동법의 개정을 무효로 한다. 다만 무효가되는 동법 제8조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유효이다.

③ 이 법률의 실시예 필요한 조치는 이 법률의 시행전까지 강구할 수 있다.

제18조(이행규정)

① 이 법률의 시행에 의해 이전에 전에 임명된 청년문제에 관한 자문회의와 청년조직보조금위원회는 임기말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② 이 법률의 시행에 의해 이전에 보조금의 승인을 받은 청년조직과 유스워크서비스조직은 교육부가 그 결정에 대해 수정 내지 취소를 하지 않는 한, 2006년 말까지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

③ 이 법률의 시행에 의해 이전에 보조금의 승인을 받은 국립유스센터는 이 법률의 시행 시점에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

2. 핀란드 개정청년법: The Youth Amending the Youth Act (693/2010)

제7조 a.(분야횡단 협력)

1. 지방자치단체간 분야횡단 협력을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리지침서와 지역교육·사회복지·보건관리부서 및 청소년관리부서와 노동부서 및 경찰부서의 대표와 함께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여야 한다. 추가로 이 네트워크는 국방부와 기타 부서의 대표 역시 포함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기관과 상호 교류하며 활동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공동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네트워크는 청소년 개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2. 상호작용성과 청소년 특화 서비스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청소년지도학과와 서비스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조건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의사결정 및 계획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의 현 상황을 검토한다.

(2) 양질의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청소년 특화 서비스의 효과와 조직화를 고취한다.

(3)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소년을 인도하고,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청소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동절차를 계획 및 향상시킨다.

(4) 각기 다른 기관별 공통절차를 계획하여 청소년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증진한다.

제7조 b. (청소년 봉사활동)

1. 청소년 봉사활동의 목적은 청소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 연락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독립을 증진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본인을 지원하여 교육이나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청소년 봉사활동은 주로 청소년 본인이 제공한 정보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 자체의 추정치에 기초한다.

2. 청소년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포스트홀더 또는 청소년 봉사활동의 이행에 관한 공식 책임자를 고용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청소년 봉사활동자는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청소년 관련 직무경험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청소년 봉사활동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동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에 관해 본 법의 준수에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위임받아 봉사활동을 준비할 수 있다.

제7조 c. (청소년 봉사활동 정보의 제공)

1. 청소년 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는 본 법이나 기타 경우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 본인의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데이터에 관한 기밀유지규정과 별개로, 청소년 본인의 식별정보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 본인의 거주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서에 제공된다.

(1) 교육제공자는 의무교육이후 추가교육을 원하지 않거나 이에 입학하지 않은 졸업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교육제공자는 직업교육이나 일반상급중등교육을 중단한 25세 미만의 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3) 국방부와 공익훈련소는 병역에 적합하지 않아 병역 또는 공익의

무를 5급으로 면제받거나 이를 중간에 중단한 25세 미만의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교육 또는 훈련제공자나 국방부 및 공익훈련소는 청소년 본인의 상황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유효한 정보에 기초하여 청소년 본인에게 7절b에 언급된 서비스나 기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2절에 명시된 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4. 기밀보호규정과 별개로 해당 절에 언급된 기관 외 기타 기관은 청소년 본인의 상황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자격으로 수령한 정보에 기초하여 청소년 본인이 서비스와 기타 지원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청소년 봉사활동의 목적으로 식별정보와 연락처를 청소년 본인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할 수 있다.

5. 본 절에 언급된 정보공개기관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또는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사전에 청소년 본인에 관한 정보가 (2)와 (4)에 언급된 경우에서 청소년 봉사활동의 목적으로 제공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6. 본 절에 언급된 정보는 청소년 본인에 관해 아동복지법(개정안 417/2007) 제25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체계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 신고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개될 수 없다.

제7조 d. (청소년 봉사활동에 관해 제공된 정보의 처리)

1. 청소년 봉사활동에 관해 공개된 식별정보와 연락처는 전자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법 (523/1999)에 따라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제공되는 경우 외에, 청소년 봉사활동을 위해 습득된 정보는 통합되거나 청소년 봉사활동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이나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청소년 개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식별정보나 연락처를 제공한 기관, 추가적으로 확정된 조치와 정보수령인과 제공된 데이터의 종류로 처리기록이 구성된다. 기록보관담당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청소년 봉사활동과 같이, 청소년 본인에 관한 데이터는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타 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업무의 이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즉각적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3. 청소년 봉사활동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본 법에 따라 청소년 개인의 상황, 건강 및 재정상태나 청소년이 수령할 혜택 및 기타 형태의 지원에 관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알게 된 모든 것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3. 오스트리아 청년대표법: The Youth Act (693/2010)

제1장

일반 규정

목적

제1항. 본 법상 절차는 연방 수준에서 정책 입안자의 청소년 관련 문제의 대변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의

제2항.

(1) 본 연방법의 목적에 의거하여, 청소년은 30세 이하의 모든 청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2) 본 연방법상 청소년 단체는 법인격을 갖는 임의 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당 단체는 전체로서 오스트리아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로, 그 주 구성원이 상기 1항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해당 단체의 주목적은 청소년 및 그 이익 신장을 대변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제2장

연방 청소년 의원단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구성

제3항.

(1) 연방 청소년 의원단은 연방 수준에서 정책 입안자의 청년 관련 문제 대변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연방 청소년 의원단은 본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있는 단체에 의하여 지명된 30세 이하의 자

들로 구성된다.

(2) 연방 청소년 의원단은 오스트리아의 청소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 경영자, 농업근로자 및 원로 의원회의 구성원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3) 연방 청소년 의원단을 구성함에 있어, 연방 복지부(Social Security and Generations) 장관은 권한 단체가 본 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당해 권한 단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집행부는 의원 총회와 집행 위원회로 구성된다.

연방 청소년 의원단 의원 총회의 구성

제4항. 의원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Federal Youth Promotion Act 제6조 제1,2,3항에 따른 청소년 기관의 대표 2인,
2. 오스트리아 대학생 단체(Austrian University Students' Representation)의 대표 2인,
3. 연방 학생 단체(Federal Pupil's Representation)의 대표 3인,
4. 각 지방 청소년 자문 위원회(Provincial Youth Advisory Boards)의 대표 2인,
5. 청소년 사업 기관 소속 대표 2인,
6. Federal Youth Promotion Act 제6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각 청소년 기관(협회 형태)의 대표 1인(인원 요건 충족 필요)
7. 오스트리아내 각 소수 인종 집단(법적 단체)의 대표 1인.

연방 청소년 의원단 집행 위원회의 구성

제5항. 집행 위원회는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과 같이 구성된다:

1. 종교 단체로 구분되며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각 청소년 기관(협회 형태)의 대표 2인,
2. Federal Youth Promotion Act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 기관(협회 형태)의 대표 2인. 단, 해당 기관의 대표는 종교단체나 정당,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
3. Federal Youth Promotion Act 제7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 형태의 각 청소년 단체 대표 1인,
4. 오스트리아 대학생 단체(Austrian University Students' Representation)의 대표 1인,
5. 연방 학생 단체(Federal Pupil's Representation)의 대표 1인,
6. 오스트리아 청소년 노동조합(Austrian Trade Union Youth) 대표 1인,
7. 연방 청소년 의원단 집행 위원회가 전무 이사를 지명하는 경우, 해당인이 집행 위원회의 고문으로서 행위한다.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활동 범위

제6항.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본 연방법에 의거한 정치, 사회적 의 사결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방 정부 및 그 공무원에 대한 청소년 이익의 대변,
2. 모든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 및 그 공무원과의 협의,
3. 연방 청소년 의원단 관련 법령, 조례 초안에 대한 의사 개진,
4. 청소년의 생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연방 정부의 계획안 논의. 다음과 같은 형식에 의한다:
 - a)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기획안,
 - b) 청소년 관련 주요 조치에 관한 기획안,
 - c) 사회, 교육, 경제, 및 문화경영 정책에 관한 기획안,
 - d) 전 세대 생활조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기획안,

부록

- e) Federal Youth Promotion Act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관한 권고
- f) Federal Youth Promotion Act 제7조 제5,6항에 의거한 청소년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권고. 지원 총액은 200,000실링(ATS)을 초과할 수 없다.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의장

제7항

(1)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의장은 집행 위원회내에서 지명된 집단 가운데서 추천으로 결정된다. 첫번째 추천인이 부의장, 두번째 추천인이 의장, 세번째 추천인이 부의장 대리가 된다. 추후 추천으로 오스트리아 연방 청소년 의원단 대행의 순서를 지정한다. 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3인의 대표는 직전에 의장직을 담당한 집단, 당시에 이를 담당할 집단, 장래에 이를 담당할 집단이 지정한 자들로 구성된다.

(2) 연방 복지부 장관은 상기 의장직 추천 결과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지하여야 한다.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의원 총회

제8항.

(1) 의장은 의원단 총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최소 1년 혹은 8개월에 1회 이상 연방 청소년 의원단 의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의원 총회는 의원단의 기본 사항을 논의하고, 집행 위원회에 제출할 결의안에 대하여 의사결정 하여야 한다.

(3)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사업행위는 집행 위원회의 의장 혹은 (필요한 경우) 그 대리의 임기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연방 청소년 의원단 집행 위원회

제9항.

(1) 의장은 위원회 총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최소 1년에 4회

이상 혹은 14일 이내에 연방 청소년 의원단 집행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방 청소년 의원단 집행 위원회는 다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연방 청소년 의원단 사업의 관리,
2. 연방 정부, 지방 정부, 대중에 대한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대변, (외부에 대한 대변 역시 담당한다.)

3. 본 법 제6항에 따른 당직 수행,
4. 의원 총회에 적용되는 운영 규칙의 채택.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a) 의결 정족수, (우선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b) 본회의 결정/결의안, (다수 투표로 결정한다.)

c) 총회 구성원의 선출, 해임, 지명 등에 관한 세부 규정.

5. 연방 청소년 의원단 집행 위원회에 적용되는 운영 규칙의 채택.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a) 의결 정족수, (우선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b) 집행 위원회의 결정/결의안, (위원의 2/3가 채택한 것이어야 한다.)

c) 집행 위원회 회의 혹은 총회에의 연사, 전문가, 정보원 초청 계획안,

d) 집행 위원회내 직무 할당 사항,

e) 집행 위원회 구성원의 구성 및 추후 지명에 관한 세부 규정. 그 지명 집단은 본 법상 집적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

f) 연방 청소년 의원단 집행 위원회의 선출, 해임, 지명 등에 관한 세부 규정. 그 지명과 해임에 관한 책임은 당해 소속 집단에게 귀속한다.

(3) 의장은 연방 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제2(4)항 및 제(5)항에 따른 운영 규칙 및 그 상시적 개정사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집행 단위

제10항.

(1) 청소년 단체가 연합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연방 청소년 의원단 집행 위원회가 2/3 이상의 투표로써 당해 집단이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 단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연방 복지부 장관은 당해 집단과의 사이에 당해 집단이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한 합리적인 경비 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계약은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방 청소년 의원단 사무소 운영 경비에 대한 보수 및 집행 위원회 구성원의 여비, 경비 등의 지급. 1995년 여행 경비 규정(Travel Expenses Regulation)(연방 관보 제133/1955호)을 준용한다.

2. 상기 1항의 상정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3) 당해 집단은 상기 1항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집행 단위"로서의 지위를 사용할 수 있다.

(4) 연방 복지부 장관은 공식 Wiener Zeitung 관보를 통하여 상기 1항의 상정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을 발표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집단과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이상, 연방 청소년 의원단의 사무 업무는 연방 복지부 장관이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종결 조항

기타 참조 법령

제11항. 연방법에 기타 참조 법령의 표시가 있는 경우, 상시적으로 개정되는 바에 따라 최신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

관련 인사의 지명

제12항. 연방법에 관련 인사의 지명을 규정하는 경우, 이는 모든 성(性)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발효일

제13항. 본 연방법은 2001년 1월 1일부로 발효한다.

체결

제14항. 연방 복지부 장관이 본 연방법의 집행을 담당한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한 연구로,
연구의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연구관리번호 NHIS-2016-1-109)

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⑥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2016년 11월 28일 印刷

2016년 11월 30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값 11,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09-9 93360

